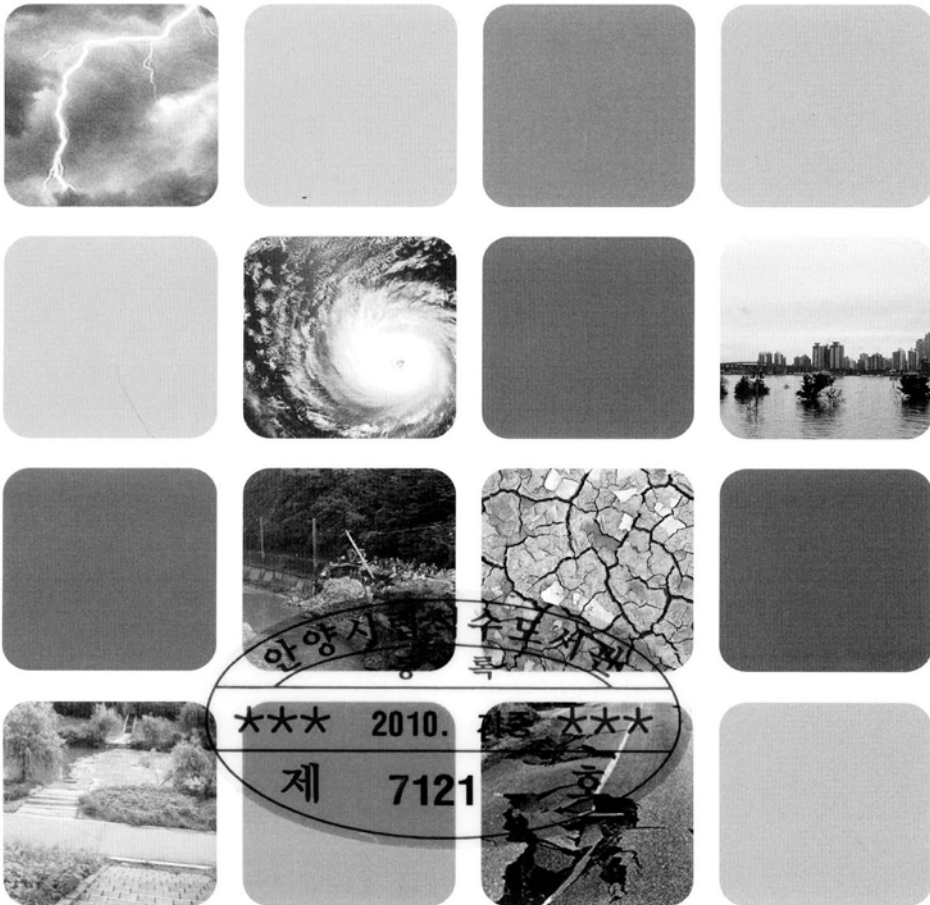


자연재난 *manual* 표준행동 매뉴얼 2010



자연재난 *manual* 표준행동 매뉴얼 2010



안전관리현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1.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 생활 주변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1.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목 차

제1장 총론	7
제1절 안양시의 지리적 위치 및 기후	9
제2절 표준매뉴얼 작성 배경 및 목적	12
제3절 재난의 이해	13
제4절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17
1. 태풍	17
2. 호우	22
3. 홍수	22
4. 대설	23
5. 황사	25
6. 가뭄	26
7. 지진	29
8. 폭염	30
9. 한파	31
10. 강풍	32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35
제1절 조직체계	37
1.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37
2.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39
제2절 단계별 근무체계	42
1. 상황근무 체계	42
2. 안양시 긴급구조 통제단 편성	52
3. 유관기관 등 파견근무자 비상근무 계획	60
제3장 자연 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65
제1절 풍수해 단계별행동요령	67
제2절 풍수해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75

제3절 대설	95
제4절 황사	128
제5절 가뭄	131
제6절 지진	138
제7절 폭염	180
제8절 한파	197

제4장 업무 유형별 표준행동 요령	207
1. 추진방향	209
2. 실·과·소·구 및 유관기관 주요 추진사항	209

제5장 상황발생시 본부장 행동요령	247
제1절 대설시 행동요령	249
제2절 태풍시 행동요령	253
제3절 호우시 행동요령	259

제6장 상황발생시 상황실 행동요령	263
제1절 상황실 행동요령	265
제2절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추진	288
제3절 야간대피행동요령	295
제4절 재난안전선(SAFETY LINE) 운영방안	298

제7장 국민행동요령	303
1) 태풍	305
2) 홍수	307
3) 호우	308
4) 강풍	310
5) 대설	311
6) 한파	311
7) 지진	315

※ 참고 자료	321
○ 기상특보 및 발령기준	323
○ 하천 현황	324
○ 재해관련 비상근무시 담당동 지정 현황	325
○ 재해 예·경보시스템 현황	326
○ 배수펌프장 현황	327
○ 보유자원(수방자재, 관용장비)현황	328
○ 사망자안치소,폐기물,분뇨처리 업체 현황	329
○ 제설장비 및 긴급동원 장비 현황	332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담당자 현황	335
○ 상황판단회의	337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349
○ 재난관리시스템 담당별 행동절차(SOP)	356

제1장

총론

제1절 안양시의 지리적 위치 및 기후

제2절 표준매뉴얼 작성배경 및 목적

제3절 매뉴얼의 일반사항

제4절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여 백

제1장 총론

제1절 안양시의 지리적 위치 및 기후

1. 지리적 위치

- 안양시는 경기도의 중남부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남으로 약 25km 지점에 그리고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북으로 약 19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은 과천시·의왕시, 서쪽은 광명시, 시흥시와 접하며 남쪽은 군포시, 북쪽은 서울시 금천구와 관악구가 접하고 행정구역 면적은 58.47km²임
- 안양 및 주변지역간 광역교통체계는 동서축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전철(4호선)이 있으며, 남북 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1호선(경수산업도로), 국도47호선, 국가지원 지방도57호선(관악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철도 등 지리적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요충지 역할을 수행함

2. 수리적 위치

- 안양시의 동단은 관양동과 의왕시 포일동, 과천시 갈현동의 경계, 서단은 박달동과 광명시 가학동이 경계, 남단은 수리산 능선인 안양9동과 군포시 대야동이 경계를 이루며, 북단은 석수1동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이 경계를 이룸

□ 안양시의 수리적 위치

구 분	동 경	북 위	해 당 지 역
국 동	126° 59' 07"	37° 23' 49"	의왕시와의 시계(평촌동)
국 서	126° 52' 22"	37° 24' 18"	광명시와의 시계(박달동)
국 남	126° 54' 15"	37° 21' 16"	군포시와의 시계(수리산)
국 북	126° 55' 56"	37° 26' 52"	서울시와의 시계(삼성산)

3. 행정구역현황

- 안양시는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31개의 행정동, 7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만안구는 3개의 법정동(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으로 나누어지며 행정동은 14개로 세분화 되어 있음
- 동안구는 4개의 법정동(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나누어지며 행정동은 17개로 세분화되어 있음

4. 지형 · 지세

- 한남정맥의 말단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서남쪽에 수리산(474m)과 수암봉(395m), 북쪽에 관악산(629m), 삼성산(455.8m)이 솟아 있으나 대체로 준평원의 잔구지역으로 그 중앙에 평야지대가 발달하여 타원형의 분지를 이룸
- 하천퇴적지형과 산지지형 사이의 기복 차는 비교적 큰 편으로 최고점인 관악산 정상과 최저점인 안양천 하상과는 고도차가 약 600m 이상임
- 표고 100m미만이 전체의 63.5%인 37.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m이상은 17.1%인 10.0㎢를 차지함
- 경사는 5%미만이 전체의 58.6%인 34.316㎢, 15%이상이 35.5%인 20.745㎢로 분포함

5. 기상 · 기후

- 안양의 기온은 한서의 차가 커서 연교차가 29.4℃에 이른다. 또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의 연평균 기온은 12.5℃로 서울의 2009년 연평균 기온 12.9℃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

(단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온도	11.9	12.1	12.5	13.5	12.7	12.3	12.1	11.7	12.3	12.8	12.0	12.9	12.3	13.0	13.0

- 연평균 강수량은 1,253mm로서 전국평균치 1,190mm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해에 따라 강수량의 변화는 심한 편으로 1995년에서 2009까지의 강수량 변화를 보면

최대 1,703mm(1998년)~최소 995mm(1996년)로 그 차이는 708mm에 이른다. 또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겨울철의 건계와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형성되는 여름철의 우계와의 구별이 뚜렷하다.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하여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의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의 66%에 이른다. 특히 북태평양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거나 열대지방에서 고온 다습한 남서기류가 장마 전선으로 유입될 때에는 1일 강수량 1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연 강수량>

(단위:mm)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강수	1,539	995	1,191	1,703	1,371	1,105	1,093	1,208	1,531	1,137	1,139	1,380	1,198	1,323	1,488

6. 수 계

- 안양천은 의왕시 백운산자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경유 안양시 도심을 중앙으로 흘러 광명, 서울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 됨
- 안양천의 유역면적은 286km², 하천연장은 32.5km이며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막천, 삼봉천 갈현천 등 대소 지천이 형성되어 있음
- 안양천 유역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시흥 및 서울의 일부를 포함

제2절 표준매뉴얼 작성 목적 및 적용범위

1. 매뉴얼 작성 목적

본 매뉴얼은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유형별에 따라 단계별(대비, 대응, 복구)로 조치하여야 할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매뉴얼 적용범위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적용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용
-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사태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어 시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

3. 매뉴얼 사용방법

본 매뉴얼은 일반사항과 특수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련 매뉴얼 작성시 일반사항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사항 부분은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첨삭 후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다.

4. 관련법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동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대통령령 제123호) 제17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동 규정 제20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절 재난의 이해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인적재난·국가기본재난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폭염,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

나.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나목)

다.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다목)

2. 자연재난의 발생 유형

2.1 태풍(typhoon)

- 일반적으로 적도부근 해상에서 중심최대풍속이 초속 17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른다.

※ 세계기상기구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이 33m/s 이상 것을 태풍(TY), 25~32m/s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STS), 17~24m/s인 것을 열대폭풍(TS), 그리고 17m/s 미만인 것을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한다.

2.2 호우(heavy rain)

- 일반적으로 큰 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 기상학적으로 우량 · 강우강도 · 지속시간 등에 따른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각의 강우 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용한다. ⇒ 집중호우

【호우시 시간당 강우량과 벌어지는 상황】

강우량 (mm/hr)	사람이 받는 느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실외상황	차에 있을때	재해발생 상황
10~20	세게 내리는 비	걸을때 바지를 적신다.	지면에 물 웅덩이가 생긴다.	와이퍼를 빨리 하여도 잘 보이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하다.
20~30	장대비라고 말한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옷이 젖는다.			하수나 작은하천에 물이 넘치고 작은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30~50	물통으로 붓듯이 내린다.		도로가 강과 같이 된다.	고속주행시 바퀴와 노면의 사이에 수막이 생기고 브레이 크가 잘 듣지 않게 된다.	산사태가 쉽게 일어 나고 위험지대에서는 대피준비가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하수관으로 부터 빗물이 넘친다.
50~80	폭포와 같이 내리며 쿵쿵소리가 난다.	우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보라가 일어나 도로면이 새하얗게 되고 시야가 나빠진다.	차량운전은 위험하다.	도시에서는 지하실이나 지하상가에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재난이 발생한다.
80이상	가슴이 답답한 압박감이 있다. 공포를 느낀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높다.

2.3 홍수

- 홍수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땅이 물에 잠기게 된 상태의 큰물

2.4 대설(heavy snow)

- 일시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같은 양이라 하여도 도심지역에 내린 경우와 기타 지역에 내린 경우 대처 방법이 다르다.
- 도심지역은 산간지역에 비하여 적은 양의 적설이 있어도 교통두절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산간지역의 과다한 적설은 도로두절을 초래하여 마을간 고립 현상이 발생한다.

2.5 황사(Asian dust, yellow sand)

-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 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한다.
- 보통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간다.

2.6 가뭄(drought)

-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쬘어 수문학적으로 물의 균형이 깨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가뭄의 특성은 다른 재난과 달리 피해가 서서히 발생한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물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가뭄이라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자연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2.7 지진(Earthquake)

-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이다.

【지진의 규모 및 자연, 사람에 대한 영향】

규 모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 영향	JMA진도 (8등급)
2.5미만	사람의 몸으로는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됨	느낄 수 없음	0(무감)
2.5~3.0	정지하고 있는 사람, 특히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 다소 흔들린다고 느낌	민감함 사람만이 느낌	I(미진)
3.0~3.5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창문이 다소 흔들림	여러사람이 느낌	II(경진)
3.5~4.0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움직이며 형광등과 같은 매달린 물건이 흔들거리거나 그릇의 물이 출렁임	약간 놀람, 자다 깬	III(약진)
4.0~5.0	건물의 흔들림 심하고 불안정하게 놓인 꽃병이 넘어지며 그릇의 물이 넘침, 많은 사람이 집밖으로 뛰어나옴	매우 놀람, 자다 깨 밖으로 나옴	IV(중진)
5.0~6.0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짐 굴뚝, 돌담, 축대 등이 파손됨	서 있기 곤란하고 심한 공포를 느낌	V(강진)
6.0~7.0	건물파괴 30%이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땅에 금이 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음	도움 없이 걸을 수 없음	VI(열진)
7.0~8.0	건물파괴 30%이상 산사태가 나고 땅이 갈라짐	이성 상실	VII(격진)
8.0~9.0	건물 완전 파괴됨. 철도가 휘고 지면에 단층현상이 발생	대공황	
9.0이상	관측된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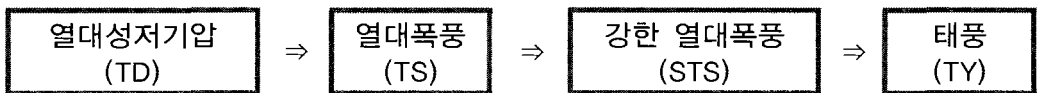
제4절 자연재난의 발생 유형

1. 태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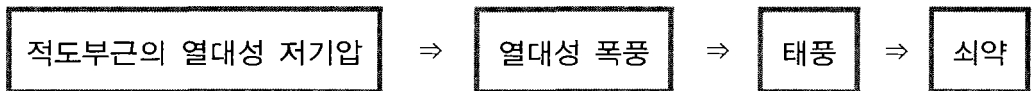
1.1 태풍이란

- 북태평양의 적도부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 발달과정



- 성장과 소멸



- 태풍의 종류

- 태풍(Typhoon) :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것
- 허리케인(Hurricane) :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
- 사이클론(Cyclone) : 인도양, 아라비아해, 벥골만에서 발생하는 것

1.2 태풍의 발달조건

- 소용돌이가 있어야 하며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위도 5~20°, 경도 110~180° 사이의 북태평양에서 발생한다.
- 해수면온도는 26~27℃ 이상이어야 한다.
- 공기가 따뜻하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야 한다.

1.3 태풍의 강도 및 진로

- 연평균 26~28개가 발생하는 태풍 가운데 2~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강풍과 폭우를 몰고와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체로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되며 북위25도 부근에서

방향을 바꾸어 북동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상 진로를 벗어나거나 전향점이 유동적인 태풍이 많아 진로를 예상하기가 어렵고,

- 태풍 크기는 작은 것이라도 직경 200km 정도이고 큰 것은 무려 1,500km가 되는 것도 있다. 또한 그 위력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약 1만배 정도이다.

1.4 태풍의 강도 분류

구 분	중 심 기 압	최 대 풍 속
초 대 형 (초 A 급)	920 hPa 이하	65 %
대 형 (A 급)	920 ~ 950 hPa	50 ~ 65 %
중 형 (B 급)	950 ~ 980 hPa	30 ~ 50 %
소 형 (C 급)	980 hPa 이상	17 ~ 30 %

1.5 태풍의 일반적인 강도

- 초속 10m : 우산이 뒤집어 진다.
- 초속 20m : 사람이 바로서기 곤란
- 초속 30m : 목조가옥이 붕괴된다.
- 초속 35m : 차량이 전복
- 초속 40m : 작은 돌맹이가 날아간다.
- 초속 50m : 철탑이 휘어지고 주택이 붕괴된다.

1.6 태풍 이름

- 태풍위원회는 아시아 각 나라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태풍경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양식의 태풍 이름에서 아시아 (14개국)의 고유이름으로 변경하여 2000년부터 사용
- 태풍이름 및 4자리 숫자로 된 인식번호는 열대폭풍(TS) 이상의 열대저기압에 대해 일본 동경 태풍센터에서 부여함
- 태풍이름 목록은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140개가 각 조 28개씩 5개조로 구성되고, 1조부터 순환하면서 사용하게 됨.
(태풍이름 순서는 제출국가 알파벳순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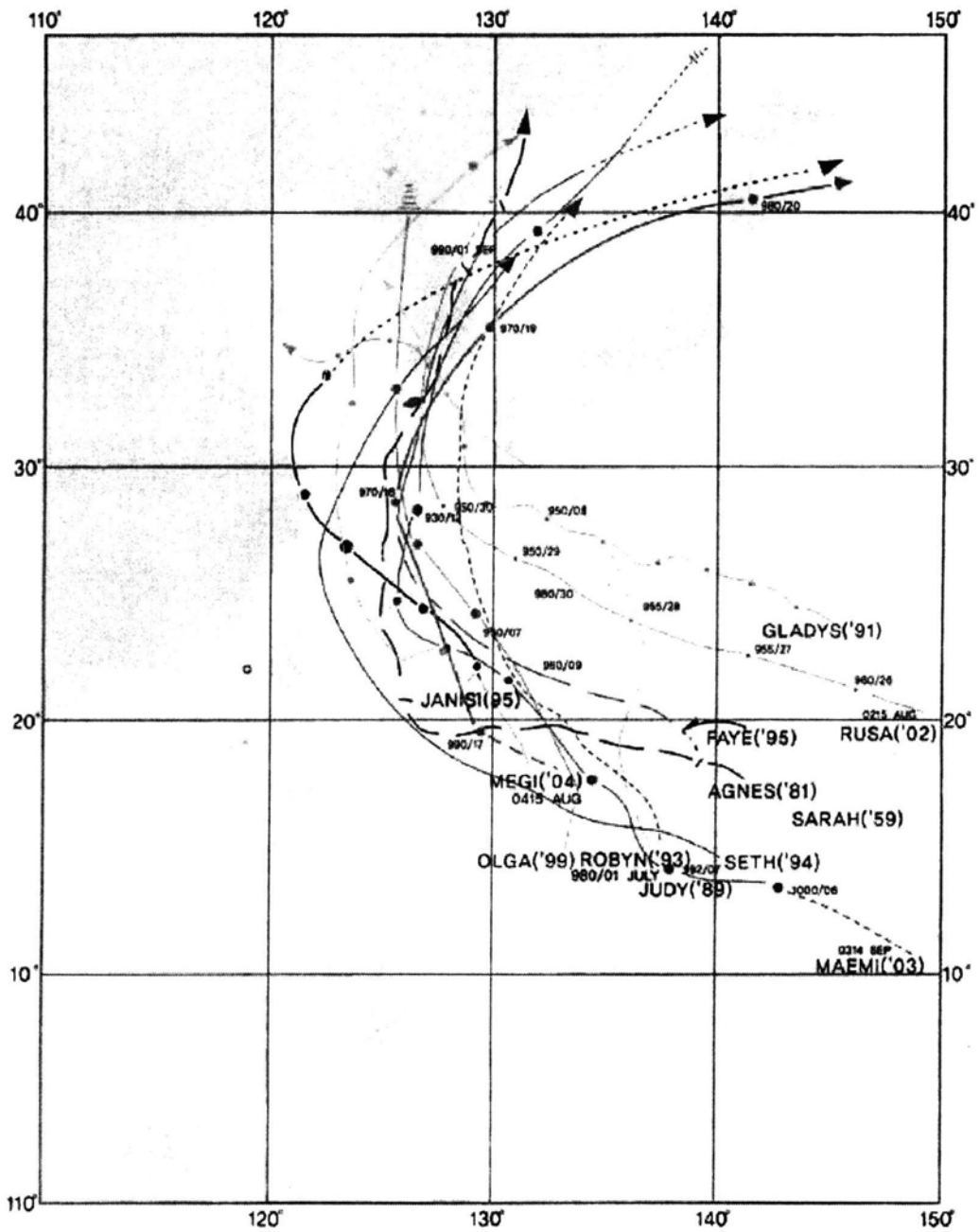
○ 태풍 이름

국가명	1 조	2 조	3 조	4 조	5조
캄보디아	담레이	콩레이	나크리	크로반	사리카
중국	하이쿠이	위투	평선	두쥐안	하이마
북한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무지개	메아리
홍콩	카이탁	마니	풍왕	초이완	망온
일본	텐빈	우사기	간무리	곶푸	도카게
라오스	블라벤	파북	판폰	켓사나	녹텐
마카오	산바	우딕	봉풍	파마	무이파
말레이시아	즐라왓	스팟	누리	멜로르	므르복
마크로네시아	에위니아	피토	실라코	네파탁	난마돌
필리핀	말릭시	다나스	하구핏	루핏	탈라스
한국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노루
태국	쁘라빠룬	위파	메칼라	니다	꼴랍
미국	마리아	프란시스코	히고스	오마이스	로키
베트남	손띤	레끼마	바비	꼰선	선까
캄보디아	보파	크로사	마이삭	찬투	네삿
중국	우쿵	하이옌	하이선	덴무	하이탕
북한	소나무	버들	노을	민들레	날개
홍콩	산산	링링	돌핀	라이언록	바난
일본	야기	가지키	구지라	곤파스	와시
라오스	리피	파사이	찬흠	남테운	파카르
마카오	버빙카	페이파	린파	말로	상우
말레이시아	룸비아	타파	낭카	므란티	마와르
미크로네시아	솔릭	미탁	사우델로르	파나피	구출
필리핀	시마론	하기비스	몰라베	말라카스	탈림
한국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태국	망콧	라마순	모라꼿	차바	카눈
미국	우토르	마트모	아타우	에어리	비센티
베트남	짜미	하룽	밤꼬	송다	사오라

1.7 과거 주요 태풍 비교

태풍명 구 분		매 미	루 사	사 라
발 생 연 월 일		'03. 9.12~9.13	'02. 8.30~9. 1	'59. 9.15~9.17
통 과 구 역		삼천포→청송→ 울진→동해	제주→고흥→ 남원→보은	제주→여수→ 울산→동해
상륙시 중심기압 (hpa)		950	967	952
최 대 풍 속(m/s)		60.0(제주)	30.7(남해)	46.9(제주)
최 대 일 우 량 (mm)		410.0(남해)	870.5(강릉)	168.0(제주)
주 요 피 해 지 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전국	영동, 영남, 호남
이 재 민 (명)		61,836	63,085	373,459
인 명 피 해 (명)		131	246	849
재 산 피 해 (억 원)		4조 2,225	5조 1,479	2조 5,415
특 징	태 풍 특 성 및 피해원인	강우보다는 강한 바람이 특성 ※ 풍속 60m/sec의 강풍	바람보다는 많은 강우량으로 전국적 피해 발생	강한 바람과 많은 강우량
	피 해 양 상	대규모 정전사태	많은 침수피해	많은 인명피해
	기 록 부 분	최대풍속 60.0m/sec (59년 “사라” 호 46.9m/sec 갱신)	일우량 870.5mm로 1911년 기상 관측이래 최고 갱신	역대최고 인명피해

1.8 과거 주요태풍 진로도



2. 호 우

2.1 호우란

- 일반적으로 큰 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호우는 각각의 강우 강도의 우량을 훨씬 상회하는 강한 강우 현상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집중호우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 이상일 때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집중호우는 대단히 습한 많은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유입할 때 발생하며 구름이 낮게 형성되어 지형의 영향으로 더욱 국지성을 띤다.
-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여 정마전선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7~9월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80mm이상 수백mm가 단시간에 내려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산악지대는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최고기록은 1819. 7. 26 미국 뉴욕주에서 118.6mm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2. 8. 5 서울에서 118.6mm를 기록한 바 있고 최근에는 1987. 7. 22 부여에서 100mm가 내린 바 있으며 2002. 8. 31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시 강릉에서 100.5mm가 내린 바 있다.
※ 집중호우란 용어는 1958. 7. 1 일본 조일신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음
- 이러한 집중호우 현상은 소규모 저기압이 갑자기 형성되면서 나타날 때가 많아 보통의 일기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기상 레이더나 기상 위성의 도움 없이는 정확하게 예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3. 홍 수

3.1 홍수예보 실시

- 홍수의 규모와 발생시각을 예측하여 하천연안 주민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사전에 홍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 도모

3.2 홍수 예·경보 발령기준

- 홍수예보 발령
 - 홍수주의보 : 홍수예보 발령지점의 수위가 경계 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 경보 : 홍보예보 발령지점의 수위가 위험 홍수위를 초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예보 해제

- 홍보경보가 발생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위험 홍수위 또는 경계 홍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때 홍수경보 해제
-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경계 홍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때 홍수주의보 해제
- 홍수경보는 일단 홍수주의보로 바꾼 후 해제함을 원칙으로 함

○ 홍수예보 발령권자

- 홍수예보 시설이 있는 유역 : 관할 홍수통제소장
- 홍수예보 시설이 없는 유역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3.3 홍수예보의 전달

- 홍수예보 발령(해제)권자는 홍수예보를 발령(해제)하는 경우 방송, 신문 등 통신매체 및 관할 시·도지사과 관계기관에 통지
- 해당 시·도지사는 산하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구역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보

4. 대 설

4.1 대설이란

- 우리나라의 대설은 겨울철 시베리아 대륙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하게 된다. 이때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으로부터 남서기류에 의하여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가 계속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오게 된다.

특히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을 넘는 습한 공기와 동해에 위치한 북동기류가 만나 대설의 원인이 된다. 영동지방의 대설은 대륙성 고기압이 자주 확장하는 1, 2월에 많이 발생한다. 대설로 인한 재해는 연중 12월부터 2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근래에는 3월에도 발생되며 도시지역의 교통체증과 차량의 미끄럼 사고와 함께 출근길의 대혼잡을 초래하기도 한다.

4.2 기본방향

〈 기본 방 향 〉

- 설해대책기간 : 2009. 12. 1 ~ 2010. 3. 15
-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체제 정립 ⇒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수도권 교통 및 도로별 제설대책 강구 ⇒ 원활한 교통소통
- 현장 행정지도 강화 ⇒ 자율적 방재체제로 전환
- 제설장비 확보 : 전용제설차등 6종 91대 / 1,179개노선 334.2km

4.3 목적

〈 목 적 〉

폭설시 교통두절, 고립, 눈사태 예상지구 등을 사전 지정·관리하고 제설장비와 자재를 비축, 유사시 제반사태 수습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로 시민 불편 최소화

4.4 단계별 조치사항

- 1단계(신 적설 3cm 이내 예상)
 - 교통통제 : 평상시 운행속도의 20% 감속운행
 - 조치계획
 - ▶ 제설장비 가동점검 및 인력대기로 상황발생시 즉시가동
 - ▶ 도로정보는 인터넷과 지역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안내간판 설치
- 2단계(신 적설 5cm 미만 강설확률 90%이상)
 - 교통통제 : 평상시 운행속도의 50% 감속운행
 - 조치계획
 - ▶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 ▶ 주요도로 사전 제설작업 시행과 장비 및 인력 비상체제로 대기
 - ▶ 도로정보는 인터넷과 지역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안내간판 설치
- 3단계(신 적설 5cm 이상 예상)
 - 교통통제 : 위험지역의 교통제한·통행중지 및 우회

- 조치계획
 -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호 및 예방활동
 - 주요도로 사전 제설작업 시행과 제설장비 및 인력 전량 가동
 - 우회도로 우회 및 안전조치
 - 도로정보는 인터넷과 지역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안내간판 설치

5. 황 사

5.1 황사란

-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와 황하지역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다량의 미세립 토사 및 먼지가 한랭전선 후면에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를 타고 상층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부유하다가 하강하는 먼지
-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가 1~10 μ m이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수 시간에서 수 년 정도 공중에 부유 (1 μ m=1백만분의 1m)
- 발원지에서 배출된 황사가 100이면 보통 30정도가 발원지에 재침전, 20은 주변 지역으로 이송, 20은 장거리 이송되어 우리나라 및 일본에 영향을 주며, 태평양까지 침적됨 (1회에 100~200만톤 이송)

5.2 황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발생시기 : 3월 ~ 5월
- 다발지역 : 서울·경기 및 서해안지역
- 부정적인 영향
 - 태양 빛을 차단하여 시계를 악화시킴
 - 농작물, 활엽수 기공을 막아 생육에 지장을 줌
 - 빨래, 음식물 등에 부착, 악영향을 미침
 - 반도체등 전자제품 불량률이 증가(평소의 3~4배)
 -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 산화질소 등 유해물질 및 중금속 함유로 호흡기, 눈질환 등 유발
- 긍정적인 영향
 - 태양에서 복사열 흡수로 냉각효과 발생(지구 온난화 방지)
 - 산성비 및 산성 토양의 중화효과(적조현상 해소)
 -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 제공으로 생산력 증대

5.3 황사발생 증가

5.3.1 최근의 황사발생 빈도의 증가이유

- 매년 사막화 면적의 급속한 확대
- 최저수준의 강우기록 및 고온 건조한 날씨의 장기간 지속으로 지표토질이 바람에 날아가 푸석 해짐

5.3.2 중국의 사막화 현황

- 사막화된 면적은 약168.9km² (전국토의 17.6%)로서 신장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영하자치구, 섬서성, 내몽고자치구, 산서성,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11개성에 주로 분포·신장자치구의 타마르칸 사막 (33만km²)과 같이 고대로부터 형성된 사막지역 외에 사막화 지역이 매년 확대

5.3.3 중국의 사막화 발생의 원인

- 중국의 사막화 문제는 해당지역의 기후가 건조하고 자연현상 자체가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으나 과잉목축, 초지와 임야의 무분별한 개간, 약재 및 특용작물의 과잉재배, 해당지역 수자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 인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화되는 양상임

5.3.4 사막화 진전으로 인한 피해현황

- 사막화로 인하여 초래된 퇴화 초기면적은 약 105만km² (전국 초지 총면적의 56.6%), 퇴화경지면적은 7.7km² (전국 퇴화경지 면적의 45.5%차지)로서 이는 양 사육두수에 있어서 5,000만 마리 분 감소 및 식량 300만톤 감산으로 환산되는 수준임
- 양자강 홍수와 황화단류 현상이 서부지역 사막화에 따른 중상류 지역 토사유실과 관계있다는 주장도 있음

6. 가 물

6.1 가뭄이란

- 우리나라 수자원 부존량의 연간 편차는 매우 크나 지역별 연간 분포는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 변동이 심하다. 연간 유출량 697억m³에서 약 67%인 467억m³가 홍수기인 5월에서 9월에 집중되며, 6대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로길이가 짧아 직접 바다로 유출된다. 또한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량은 총 강수량의 약10배 하천 유출량의 약19배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규모 지하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지하수개발은 불리하다. 그러나 비홍수시 또는 물 부족시에 중·소규모 지하수 개발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충분하다. 이러한 수자원 공급량이 실제 수요량 보다 부족하게 되면 한발 현상이 발생한다.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의 이상 발달이 있게 되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형성되지 못하므로 대륙지방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저기압의 진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동서 계절풍의 발달이 억제되어 가뭄이 일어나게 된다.

-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한발로는 1939, 1968, 1978, 그리고 1982년도 발생한 한발과 1994년의 한발을 들 수가 있다.

6.2 단계별 제한급수 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 공급) ~ 4단계(급수 중단)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소독, 급수전)
	1-2단계	10 ~ 30% 감량 공급시	○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 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소독, 급수전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 절수 적극유도 ○ 식수용 지하수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 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 ~ 50% 감량 공급시	○ 인근 지자체간 긴급 급수지원 ○ 물 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 실시 ○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 ~ 60% 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 ~ 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이상 감량 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 중단	○ 먹는 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개인관정 공동 이용

7. 지 진

7.1 지진이란

- 지진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각변동으로서 급격한 단층운동에 의한 단층지진,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지진, 지반의 함몰에 의한 함락지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각 시대의 지진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활동의 시간적 변화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는 지진 활동이 활발하였고 특히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19세기 이후에는 지진활동이 거의 중지되었다. 20세기에 와서는 쌍계사 지역에서 강진이 기록되었다.
- 또한 2008년 1년 동안 7회의 유감지진이 발생되었고, 2004년 충북 속리산 지역에서 진도 .2의 큰 지진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진활동 추세에 관해서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여 중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

7.2 우리나라 지진의 특성

- 우리나라는 지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이 속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진대에 속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99년~2008년 10년 평균 41회 정도 발생하며 이중 규모 3.0 이상은 8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 4.0 이상은 1회 정도로 발생한다.
- 지진피해는 가스관 파손, 누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등의 2차 피해가 지진으로 인한 1차 피해보다 더 커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 시설물의 안전대책이 요구됨

8. 폭염

8.1 폭염 상황

○ 폭염 예보

- 주간 최고기온이 32℃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야간 최저기온이 25℃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폭염 주의보

- 일평균 온도 및 습도를 기준으로 한 온열지수가 낮 동안에 40℃일 때
- 야간 최저온도가 26℃를 넘는 상황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지속될 때

○ 단계별 상황대비 및 주민행동요령 마련

- 평시(준비)단계 : 폭염예보
- 경계(비상)단계 : 폭염주의보

8.2 폭염예방 및 대책

단계별	예 방	대 책	시민행동
폭염예보	· 폭염상황 전파 · 부문별 폭염대책 점검 · 주요시설 정전대비 준비 · 비상연락망 정비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대규모 시설순찰 실시 · 관련기관 유사시 체제전환 · 비상 대기 태세 확립	· 방송 등 청취, 폭염대비 · 주요시설의 정비점검 · 냉방장비 및 식수준비 · 노약자 및 어린이 예방
폭염주의보	· 비상근무 실시전파 · 시민행동요령 전파 · 안전사고 사전예방 · 유사시 출동태세	· 비상근무 실시 · 홍보 및 순찰 강화 · 대형사고 예상지역 집중근무 · 관련기관 비상근무 실시	· 야외활동·외출 자제 · 외출시 모자, 선캡 등 착용 · 생체 유지를 위한 운동 실시 · 유사시 119 신속 연락 · 식중독 및 일사·냉방병 등 예방

9. 한 파

9.1 한파란

- 뚜렷한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서고동저의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배치 아래에 있을 때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한파가 몰아닥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24시간 이내에 10℃ 이상의 기온 하강이 예상되면 한파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다.

9.2 한파의 특성

- 한기(寒氣)가 매우 급격하게 유출되므로 하루에 온도가 10℃ ~20℃ 하강하여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오며 한대나 온대지방에서는 폭설을 수반하고, 일상생활이나 교통·운수·에너지 소비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 소규모 한기는 하루, 이틀이면 약해지지만 대규모 한파는 수 주간에 걸쳐 강력한 한기를 뿜고 물결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감.

9.3 한파관련 기상특보 발령기준

구 분	한 파 (寒波)	비 고
주의보	• 10월~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 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경 보	• 10월~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 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 발효 기준값 :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 값

10. 강 풍

10.1 강풍이란

- 강하게 부는 바람이다. 특히 기상특보 측면에서 볼 때 육상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말한다. 이와 비슷하게 피해를 줄만한 강한 바람으로 “폭풍”이란 용어가 있으며 최대풍속 13.9m/s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규모 (단계)	바람세기	피 해	파 고
1	33~42m/s	(약간) 농작물, 광고간판	1.2 ~ 1.5m
2	43~49m/s	(보통) 지붕, 작은 시설물, 홍수	~ 2.4m
3	50~58m/s	(심각) 작은 건축물, 저지대 도로 유실	~ 3.6m
4	59~69m/s	(극심) 지붕파괴, 나무전도, 도로유실, 해안가 주택침수	~ 5.5m
5	70m/s이상	(파멸) 대부분의 건물파괴, 농작물소실, 큰도로 유실, 주택침수	5.5초과

10.2 특보는

- 기상청은 강풍과 풍랑, 해일의 발생이 예상될 때 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수시로 기상정보 또는 기상 속보를 발표한다. 또한 강풍과 풍랑, 해일의 발생이 특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각각 그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특보는 실태분석 자료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명시하여 방재기관 또는 보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강풍 기상특보 발령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경 보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우리나라 일최대풍속 최고 순위

순 위	일최대풍속(%)	나타난 날	지 점	발생원인
1	51.1	2003.9.12	고산	태풍(매미)
2	47.4	2000.8.31	흑산도	태풍(쁘라삐룬)
3	45.0	1954.9.14	울릉도	태풍(준)
4	43.7	2002.8.31	고산	태풍(루사)
5	43.3	1952.3.19	울릉도	저기압

○ 우리나라 일 최대순간풍속 최고 순위

순 위	일 최대순간 풍속(%)	나타난 날	지 점	발생원인
1	60.0	2003.9.12	제주	태풍(매미)
1	60.0	2003.9.12	고산	태풍(매미)
3	58.3	2000.8.31	흑산도	태풍(쁘라삐룬)
4	56.7	2002.8.31	고산	태풍(쁘라삐룬)
5	51.9	1957.1.1	울진	저기압

여 백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제1절 조직체계

제2절 단계별 근무체계

여 백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제1절 조직체계

1.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1.1 계 획

-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한다.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복구에 대한 사항
-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에 관한 사항
-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한다.

1.2 목 표

〈 피해의 최소화 〉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대피제』 확대 추진
 - 사전대피 예상지역 관리체계 정립
- 지역자주 방재체제 구축
 - 자율방제 체제구축
- 방재기반확충 및 방재과학 기술의 발전 도모
 - 방재사업 및 방재기술 분야 투자 확대

1.3 기본방향

- 인명 최우선 방재체제 정착에 우선적 역점을 두어 제반대책 추진
- 민·관·군 공조체제 강화로 한 단계 앞선 사전 예방활동 전개
- 재난위험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 등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기상 정보의 On-Line화 구축 완료에 따른 효율적 활용

- 재난보고 체제의 전산화로 방재조직 효율적 운영
- 가뭄 및 지진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 시민자율 방재 의식 제고
- 한해 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경제산업과 에서 운영

1.4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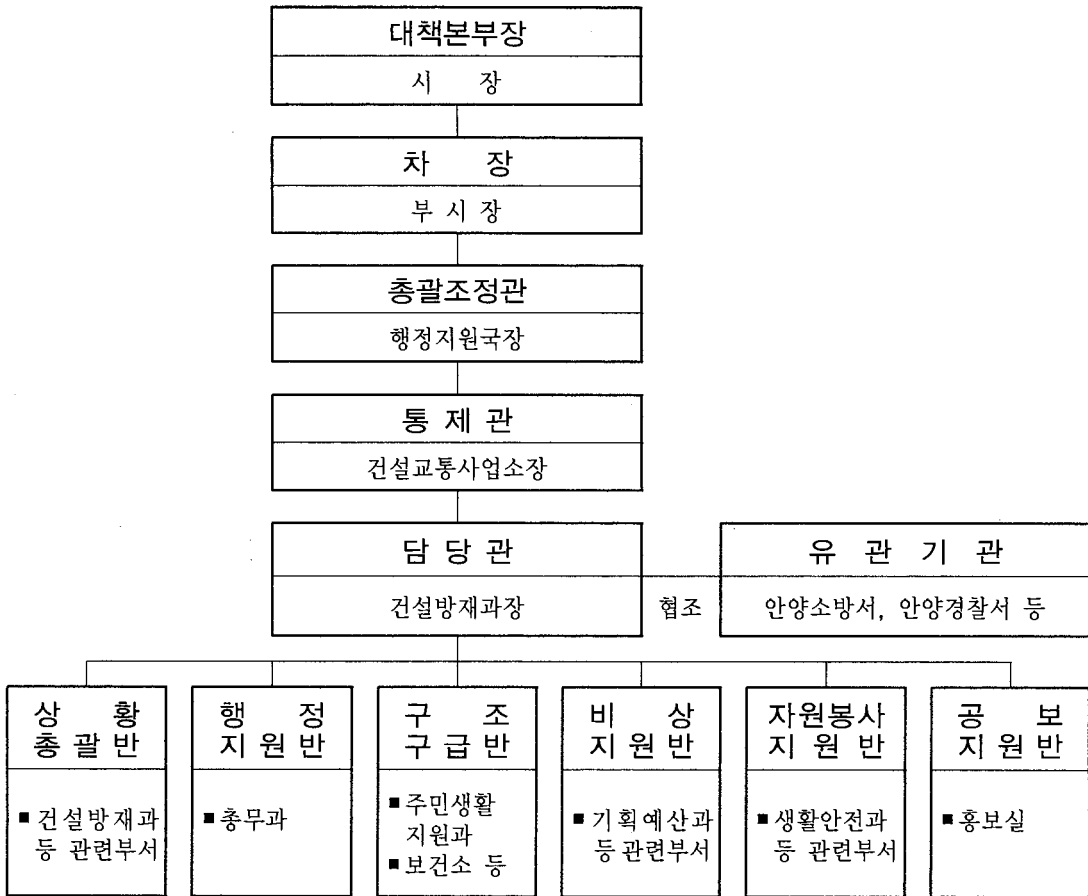
- 재난대책에 관한 관련 실·과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
- 재난예방, 재난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1.5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재난예방, 재난 상황조사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응급 복구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2.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2.1 조 직



2.2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임무

○ 조 직

- 본 부 장 (시 장) : 본부의 대표로서 의장이 되며 본부 업무를 총괄
- 차 장 (부시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
- 총괄조정관(행정지원국장)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통제관(건설교통사업소장) : 본부장 및 차장,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실무반 지휘
- 담 당 관(건설방재과장) : 본부운영의 실무 책임자로서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실무반 : 본부회의에서 정한 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을 둠

2.3 실무반 임무

실무반	구성	주요임무
상황총괄반	건설방재과 등 관련부서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9.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10.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11.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12.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4.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15.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7.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18.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19. 기타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행정지원반	총무과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3.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안양소방서 안양경찰서 1580부대 167연대3대대	1. 구조·구급 업무는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과 협조 2.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3. 구조구급 상황 파악,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가동 4.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등) 5.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실 무 반	구 성	주 요 임 무
비상지원반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세 정 과 회 계 과 생활안전과 경제산업과 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청 소 과 녹지공원과 도시정비과 건 축 과 보 건 소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처리과 하 수 과 안양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KT 안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 파악 2. 본청 각 부서 및 구·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11. 시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4.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확보 15.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자 원 봉 사 지 원 반	가족여성과 생활안전과 유관기관	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4. 기타 자원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공보지원반	홍 보 실	1. 보도지원팀 및 공보팀 구성 운영 2.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3.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인터넷, 지역방송 등) 4. 재난 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5.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6.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7.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8.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9.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절 단계별 근무체계

1. 상황근무 체계

1.1 상황관리 기간

- 하 계 : 5. 15 ~ 10. 15 (5개월간)
- 동 계 : 12. 1 ~ 익년 3. 15 (3.5개월)
- 근무장소 : 재난안전대책상황실(평일2명, 공휴일2명)

1.2 기상특보 발효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수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table border="1"><tr><th>구 분</th><th>3급</th><th>2급</th><th>1급</th></tr><tr><td>바람(m/s)</td><td>17 ~ 24</td><td>25 ~ 32</td><td>33이상</td></tr><tr><td>비(mm)</td><td>100 ~ 249</td><td>250 ~ 399</td><td>400이상</td></tr></table>	구 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 ~ 24	25 ~ 32	33이상	비(mm)	100 ~ 249	250 ~ 399	400이상
구 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 ~ 24	25 ~ 32	33이상											
비(mm)	100 ~ 249	250 ~ 399	400이상											
강 풍	○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2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이상이 예상될 때												

1.3 상황근무

- 평 상 시 : 건설방재과 직원이 상황유지
- 재난대책기간중 : 단계별 근무체제에 따라 상황근무
- 비상상황 근무체제 : A급, B급, C급등 3단계로 구분 근무

계절별	기상특보별	기 상 상 황	근무체제	근무자
여 름 철	호우(태풍) 주의보시 C 급	호우(태풍) 및 홍수주의보가 발표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준비체제	분관등17명 상황실 4명 사무실 13명
	호우(태풍) 경보시 B 급	호우(태풍) 및 홍수경보의 발표시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경계체제	담당관등32명 상황실 9명 사무실 23명 (상황근무자의 전직원1/3교대)
	A 급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비상체제	통제관등97명 상황실 23명 사무실 74명 (상황근무자의 전직원1/2교대)
겨 울 철	강설예보시	신적설이 3cm내외 예상	준비체제	팀장 등 6명
	대설주의보시	신적설이 5 ~ 10cm 미만 예상	경계체제	팀장 등 6명
	대설경보시	신적설이 10 ~ 30cm 이상 예상	비상체제	담당관등16명 전직원1/2 담당동 현장근무
비 계 절	태풍주의보시	평균 최대풍속이 14m/s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0m/s이상 예상될 때	준비체제	팀장 등 6명
	태풍경보시	평균 최대풍속이 21m/s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5m/s이상 예상될 때	경계체제	담당관등 9명
		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체제	통제관등9명 전직원1/2 담당동 현장근무

■ 대응단계시 상황근무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계	97명			23명			74명
상황총괄반	8명			5명			3명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피해상황종합보고서 작성 - 긴급상황관리(인명구조, 피해, 등) - 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락 - 상황근무조 편성 및 복무단속	2	건설방재과	시설6급	김영남	건설방재과	공업8급	박상훈
재해사전조치사항 (지시, 보고, 확인)	1	"	시설7급	안덕수			
- 각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강우량 보고 및 수집 - 문서발송 및 접수 - 방재전산 시스템 운영 - 상황실 전산 상황 보고	1	"	통신8급	정기형			
- 응급조치 종합상황 보고 - 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사항 - 군·경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2	"	시설7급	안덕수	건설방재과	시설7급	박태규
민방위 동원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과	행정7급	이기환	생활안전과	행정6급	이선옥
행정지원반	17명			3명			14명
- 보고자료 작성 등 (의전) - 수해지역 여론, 선행, 미담사례, 수해민원처리 - 공무원 비상근무 및 복무관리	1				총무과	행정6급	조대현
- 각 실과소 보고서 및 일일 피해복구 상황 취합후 검토 조치할 사항분석 및 건의 ※ 검토의견을 총괄운영반에 제출 - 긴급 재정에 관한 사항	2	기획예산과	행정6급	박성순	기획예산과	행정6급	이종운
구청(동안, 만안) 계	14			2명			12명
- 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 실시간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상황 조사	4				동 안	행정6급	유지형
						행정8급	김주영
					만 안	행정6급	노상호
						행정9급	김종욱
- 주요피해 우려지역 현장 순찰 및 상황 수시 파악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수명사항 현장전파 및 지휘	10	만 안	시설7급	전현호	만 안	시설6급	라대규
						시설8급	권경우
						공업6급	최석준
		동 안	시설7급	오택수	동 안	행정7급	박수정
						시설6급	이호장
						시설8급	김종곤
						행정6급	박동철
						행정7급	한 현

임 무	근무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구조·구급반	8명			2명			6명
- 이재민 수용 및 구호대책 - 구호물자 관리 및 배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7급	박문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8급	손태현
- 적십자사와 업무협조 - 사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동안보건소	간호6급	신경희	만안보건소	간호6급	김인자
예방접종 및 수해지역 방역 등					만안보건소	간호7급	김진희
						간호7급	윤미란
					동안보건소	간호7급	김창희
						보건7급	조정희
비상지원반	41명			8명			33명
건축물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4	건축과	시설6급	황금섭	건축과	시설6급	김언종
						시설7급	이승남
						시설7급	민경애
- 교통시설물 (주차장)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 피해지역 차량견인 - 차량피해 상황파악	3	교통시설과	시설8급	황준우	교통시설과	시설6급	김진수
						행정7급	서충인
문화재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2				문화예술과	행정6급	이종근
						행정7급	이춘성
각종 체육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2				체육청소년과	시설6급	진형렬
						시설7급	김기호
- 묘지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 축산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4				위생과	보건6급	박성학
						행정7급	윤진문
						축산7급	장희선
						보건8급	최권희
여성단체 및 수해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 급식대책	3				가족여성과	행정6급	이강숙
						행정6급	홍성화
						행정6급	이영철
- 농경지,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 상가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 대책 - 산업체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5	경제산업과	농업7급	홍문기	경제산업과	지도사	최숙현
		녹색정책과	농업7급	이도상	녹색정책과	행정7급	신현문
						환경8급	이운섭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 도로·교량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 - 건설장비(군장비포함) 동원 및 지원대책	6	건설방재과	기능7급	최성근	건설방재과	시설6급	김종강
						시설7급	이기돈
						시설7급	이장우
						행정6급	이종환
						시설8급	김갑순
하천 및 하수도 등 소규모 시설 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2	환경보전과	시설7급	박승준	환경보전과	시설8급	국승열
공공건물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2				시설공사와	시설6급	이충진
						시설7급	주동완
산사태 등 산림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2	녹지공원과	녹지7급	백시원	녹지공원과	녹지6급	박성즙
- 상수도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 비상급수 대책	2	맑은 물 공급 과	시설7급	박국진	맑은 물 공급 과	기능8급	이성호
하수도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1				하 수 과	시설6급	최진필
각종 쓰레기 및 분뇨 처리대책	3	청 소 과	행정7급	구본준	청 소 과	행정6급	조남동
						행정6급	박종화
자원봉사지원반	5명			2명			3명
- 대민지원사항, 급식대책 - 자원봉사 활동	2	가족여성과	행정7급	이정호	가족여성과	행정7급	정은정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협조	1				생활안전과	행정7급	강성룡
- 긴급대피 인명구조 상황관리 - 구조·구급활동 총괄	2	안양소방서	지방소방교	손종익	안양소방서	지방소방경	민상흠
공보지원반	4명			1명			3명
- 보도자료 수집 언론기관 제공 - 언론보도사항을 분석하여 종합보고서 작성 - 상황실 언론기관, 기자방문시 안내	4	홍 보 실	행정6급	김광택	홍 보 실	행정6급	김궁한
						행정7급	이주빈
						행정7급	박서진

※ 상황이 연장될 경우 과 및 소관기관에서 근무자 재조정

■ 호우(태풍) 특보시 상황근무

○ 호우(태풍) 주의보시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계	17명			4명			13명
○ 상황총괄	1	건설방재과	시설6급	김영남			
○ 각 실과소 및 관련기관 기상특보 전파 ○ 강우량 보고 및 수집	1	"	통신8급	정기형			
○ 재해위험지구 예찰 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지역자율방재단 비상대기	1	"	시설7급	안덕수			
○ 녹지시설 및 산간계곡 입산자 야영객 대피	1				녹지공원과	녹지8급	최복기
○ 민방위대원 비상대기 조치	1				생활안전과	행정7급	이기환
○ 구호물자 점검 및 확보	1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7급	박문규
○ 농축산업 시설 점검	1				경제산업과	농업7급	홍문기
○ 도로·교량 등 점검	1				건설방재과	시설8급	이장우
○ 하수도, 수문 펌프장점검 ○ 주택, 건축공사장 점검	1				"	전기8급	박상훈
○ 주택·건축공사장 점검	1				건축과	시설7급	김근홍
○ 공장시설 점검	1				경제산업과	기능7급	최소현
○ 재난위험시설 점검	1				건설방재과	시설7급	박태규
○ 둔치주차장 관리	5	교통시설과	시설8급	황준우	교통시설과	시설6급	김진수
						시설7급	서충인
						시설8급	사기영
						통신9급	조정호

※ 상황이 연장될 경우 과 및 소관기관에서 근무자 재조정

○ 호우(태풍) 경보시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계	32명			9명			23명
○ 상황총괄	1	건설방재과	과장	김명철			
○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 기상 상황 보고 및 강우량 보고	1	"	통신8급	정기형			
○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 소집 ○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응급복구 인력장비 동원 현황파악 ○ 지역자율방재단 비상대기	1	"	시설7급	안덕수			
○ 재해·산사태 위험지구 주 민대피 및 산간계곡 행락 지와 야영객 대피	1				녹지공원과	기능8급	이영주
○ 민방위대원·예비군 비상 출동 대기, 경보통제소 상황연락	1	생활안전과	행정7급	이기환			
○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 물자 , 이재민 구호 및 수용	1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7급	박문규			
○ 사망자·부상자 조치대책 ○ 응급복구 및 사전조치 사항 완료보고	1				건설방재과	시설7급	박태규
○ 도로·교량 (공공시설)	2	건설방재과	시설8급	이장우	"	기능8급	최성근
○ 하천·하수도·펌프장 (공공시설)	2	환경보전과	시설7급	박승준	환경보전과	시설6급	곽동근
○ 산사태, 사망, 임도, 공원 (공공시설)	1				녹지공원과	녹지9급	강성희
○ 상수도 시설 (공공시설)	1				맑은 물 공 급 과	기능8급	이성호
○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시설)	1				청 소 과	공업7급	송태규
○ 체육시설 (공공시설)	1				체육청소년과	시설7급	권유태
○ 문화재시설 (공공시설)	1				문화예술과	행정7급	이춘성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1				시설공사와	시설7급	박만준
○ 둔치주차장 관리 (공공시설)	5	교통시설과	시설8급	황준우	교통시설과	시설6급	김진수
					교통시설과	시설7급	서충인
					교통시설과	시설8급	사기영
					교통시설과	통신9급	조정호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 농작물, 농경지, 축산시설 (사유시설)	2				경제산업과	농업7급	홍문기
					위 생 과	축산7급	장희선
○ 건축물 (사유시설)	2				건 축 과	시설7급	권영일
						시설7급	이정모
○ 공 장 (사유시설)	1				경제산업과	행정7급	이건표
○ 묘 지 (사유시설)	1				위 생 과	행정7급	윤문진
○ 전력시설 (유관기관)	1				한 국 전 력 사 공	사 원	박근수
○ 통신시설 (유관기관)	1				KT안양지사	4급	조국형
○ 군부대시설 (유관기관)	1	1580부대	상황실	상황 요원			
○ 경찰시설 (유관기관)	1				안양경찰서	경 사	하건용

※ 상황이 연장될 경우 과 및 소관기관에서 근무자 재조정

▣ 폭풍특보시 상황근무

○ 강풍주의보시

근무체제	임 무	조 직	근 무 자		
			계	상황실	사무실
준비체제	○ 비상근무 강화		6명	3명	3명
	○ 상황총괄	분 담 관 (복구지원팀장)	1명	1명	
	○ 각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건설방재과 복구지원	1명	1명	
	○ 사전조치사항 보고		4명	1명	3명
	- 자율방재단 점검	건설방재과 복구지원	1명	1명	
	- 비닐하우스시설 보호 조치	경제산업과	1명		1명
	- 건축물시설점검	건 축 과	1명		1명
	- 도로시설물점검	건설방재과	1명		1명

※ 실과별 탄력운영

○ 강풍경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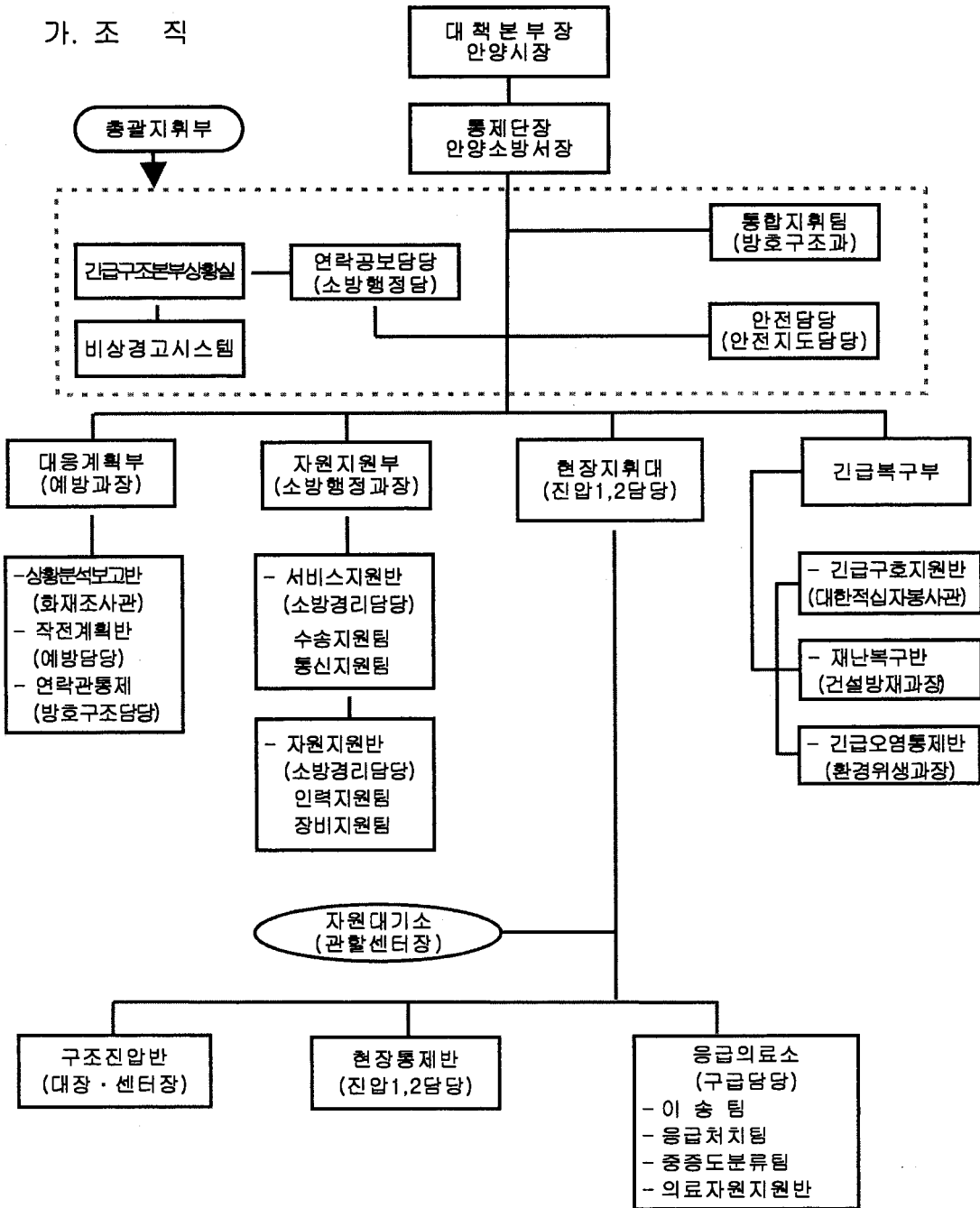
근무체제	임 무	조 직	근 무 자		
			계	상황실	사무실
경계체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근무 강화		9명	3명	6명
	○ 상황총괄	담 당 관 (건설방재과장)	1명	1명	
	○ 각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피해상황 파악	건설방재과 복구지원	1명	1명	
	○ 사전조치사항 보고		7명	1명	6명
	－ 재해발생대비 인력장비 동원태세 준비	건설방재과 복구지원	1명	1명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강화	경제산업과	2명		2명
	－ 건축물시설점검	건 축 과	2명		2명
	－ 도로시설물점검	건설방재과	2명		2명

※ 실과별 탄력운영

2. 안양시 긴급구조 통제단 편성

2.1. 안양시 긴급구조 통제단

가. 조 직



나. 기 능

- 1) 안양시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2)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
-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다. 긴급구조상황실 운영

- 장 소 : 소방서상황실
- 운 영
 - 근무인원 : 5명
 - 근무시간 : 09:00 ~ 익일 09:00 (24시간 상시)
- 임 무
 - 화재의 신속접수 및 보고
 - 대형 및 주요 화재시 소방응원 조치 등 상황 대처
 -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 접수 및 보고
 - 통신 기자재 관리 유지
 - 기타 긴급 지시사항 이행

라. 현장지휘본부

1) 지휘본부

가) 설치기준

- 재난의 양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
 - 소규모 : 자체소방력(1개대)으로 진압 가능
 - 중규모 : 인근 1~2개 소방력 지원으로 진압 가능
 - 대규모 : 본부단위 소방력의 투입과 외부지원 필요시
- 소규모 재난이라도 복잡성 등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나) 설정시 조치

- 방재센터 있는 건물은 방재센터 내(무선장애시 옥외 설치)
- 지휘본부의 위치 등을 출동 각대에 통보

2) 지휘요령

가) 지휘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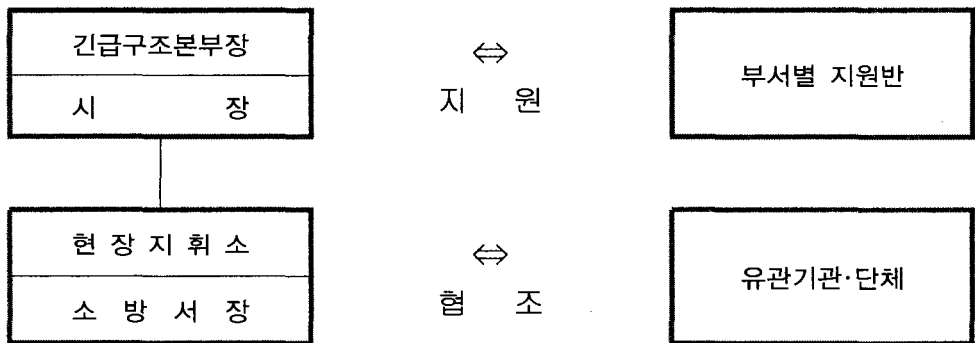
- 인명구조 최우선, 소화활동은 연소저지 주목적
- 화재상황, 부대집결 및 기능장악, 구체적인 명령
- 특히 화재, 대규모 재난시 군·경의 특수부대, 민간구조대등 신속한 응원 요청

나) 지휘본부의 임무

- 현장의 장악 : 각 기능별 구조대 통합조정 지휘(방송시설 확보)
- 종합상황 파악 : 대상물상황, 현재상황, 인명·작업·확대위험 파악
- 관계기관 연락 : 행정기관, 경찰, 가스, 전기, 수도 등
- 필요부대 확보 : 응원요청, 예비대의 확보
- 휴대무선의 통제 및 유무선 통신망 구축, 교대요원 확보, 경계선의 설정
- 활동방침 결정 및 필요 기자재의 확보
- 현장 홍보 및 현장보고

3) 긴급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가) 사고수습체계도



- 현장접근통제, 경비(경찰, 군)
- 현장구조·구급(경찰, 군, 자원봉사자등 협조)
- 구조전략을 위한 협의 및 종합대책수립(구조기관 대표)
-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의료기관)
- 중장비등 동원여부 판단(관련기관)
- 자원봉사 업무 종합 조정 통제

나) 긴급구조재난본부

구 분	본부장	임 무
중 앙	소방방재청장	○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 조정 ○ 긴급구조 기관간의 역할 분담 ○ 긴급구조 기관이 행하는 구난활동의 지휘통제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 상시 상황실 설치 운영 ○ 재난발생시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소속 직원 파견 요청 ○ 통제관 1인을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명 ※ 지역구조본부장은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하여 총괄, 조정
도	도 지 사	
시	시 장	

다) 운영위원회

구 분	위원장	임 무
중 앙	소방방재청장	○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조정
위 원		○ 다음중 본부장(소방방재청장)이 위촉 - 행안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라)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구분	설치위치	통제관	운영체계	임 무
중앙	소 방 방 재 청	소방방재청장	상시운영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도	도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시군	소 방 서	소 방 서 장		

마) 현장지휘소

구분	통제관	임 무
중앙	소방방재청장	○ 현장 접근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선 설치·운영→경찰청 협조 ○ 긴급구조기관의 요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인력 관리 ○ 공동지휘 통신망 구성 ○ 종합적 구조전략을 위한 전문기술팀 편성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기관과의 대책회의 ○ 사태별 전문구조요원 적정 배치
도	소방본부장	○ 헬기 연락관 지정 공조체제 유지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 협조
시	소 방 서 장	○ 긴급구조장비 물품 등 수급관리 ○ 구조구급요원, 자원봉사자 생필품, 숙식지원 요청 ○ 긴급구조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출입통제

4) 시 「현장지휘소」

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



※ 경찰, 군 등 긴급구조기관의 현장지휘소는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경찰·군 연락관은 현장 출동부대중 상위부대의 지휘관 또는 참모
- 각 담당반장은 소방서의 분야별 해당간부가 담당

나) 시장이 현장에 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 구조본부장인 시장은 현장지휘본부장을 통하여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휘 통제
- 긴급구조본부 구성요원은 시장의 분야별 해당 참모가 담당하며 지휘본부장(통제관)산하 각 담당관의 업무 지원
- ※ 홍보반, 자원봉사관리반장은 시장 판단 하에 시의 간부가 업무 대행 가능

다) 각 반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반	○ 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본부장 보좌 ○ 재난원인 조사 및 재해실태 파악 ○ 소방 활동 상황파악 및 2차 재해발생위험 파악 ○ 재해경과의 기록 및 상황보고
정보반	○ 관계 자료의 확보 및 대상물 실태 파악 ○ 인명위험 및 재해의 확대위험 파악 ○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정리 및 종합등 ○ 사상자 발생요인 파악
통신반	○ 현장지휘망 및 유·무선 ○ 명령전달, 통신연락 및 관계기관과의 구축
홍보반	○ 현장상황 촬영 기록보존 ○ 기타 언론관련 업무
응급의료지원반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긴급의료제공기관과의 협조 등 ○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사상자 처리
자원봉사관리반	○ 자원봉사자의 등록접수 ○ 민간전문가등 직할지원대의 관리 및 소모물품의 관리 및 배포 등

바. 장비 및 인력동원

1) 유관기관 정보관리(평상시 관리체제 유지)

가) 지원출동 가용자원정보관리 및 협조체제 구축

- 구조요원, 경비요원, 중장비조작요원
- 소요 중장비 보유업체 파악 관리
- 의료기관 현황, 응급 병상수 및 전문과목 현황 파악

나) 전문기술단체, 학회 등 관리

- 건축, 토목, 방사능 기술 등 전문지식 소유자(단체)
- 폭발물, 특수위험물 자격자등

2)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

- 관계기관, 단체의 협조 및 정보필요시 → 출동요청
- 전문지식, 미소유 특수장비 필요시 → 지원요청
- 예) 사고종별 전문기술자, 첨단 구조장비 등
 - 토사 또는 건물붕괴 : 토목·건축기술자, 토목기계장비
 - 승강기관계사고 : 승강기회사의 기술자
 - 진입불능인 건물 내 사고 : 경비용역 회사원
 - 인쇄기 등의 사고 : 기계제조회사의 기술자
 - 전기사고 : 전기안전공사, 전력회사의 기술자
 - 가스사고 : 가스공사기술자 또는 안전공사요원 등
 - 폭발물·위험물사고 : 폭발물·위험물 처리업자, 기술자

3) 자원봉사자 현장관리 강화

- 접수창구 일원화 전문분야별 활용방안 강구
- 기능별 현장 지휘책임자 지정 통제
-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숙식 및 휴게 공간 제공

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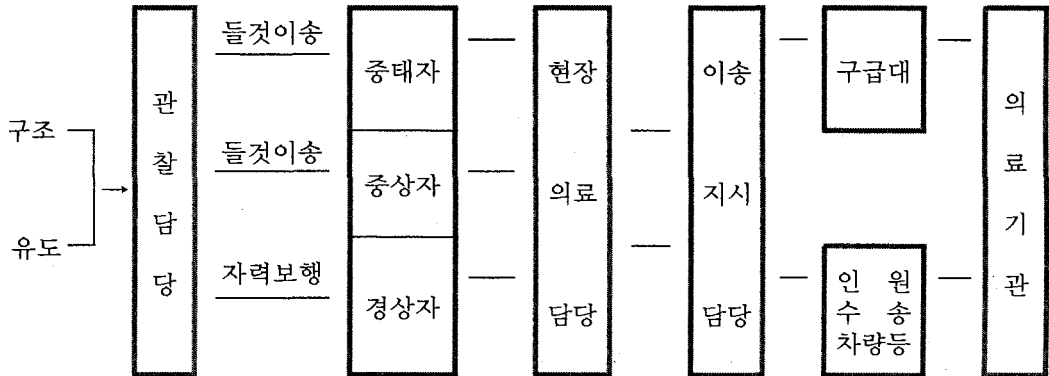
1) 응급의료소 설치장소 선정 요건

- 2차 재해위험이 없는 장소
- 구급대 등의 진입, 이송로를 별도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지형이 평평하고 쉽게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 군중에 의한 혼란의 염려가 없는 장소

2) 부상자 카드 작성 활용

- 다수 부상자 사고는 사회성과 뉴스성이 큼
 - 혼란한 초기단계부터 부상자 관리 중요함
- 부상자카드 작성으로 부상자 인적사항, 이송병원 등 정서관리
- 매스컴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모든 소방 활동에 긍정적인 큰 영향을 줌

3) 부상자 조치(현장 전문의 긴급 배치)



아. 현장보도

1) 주민에 대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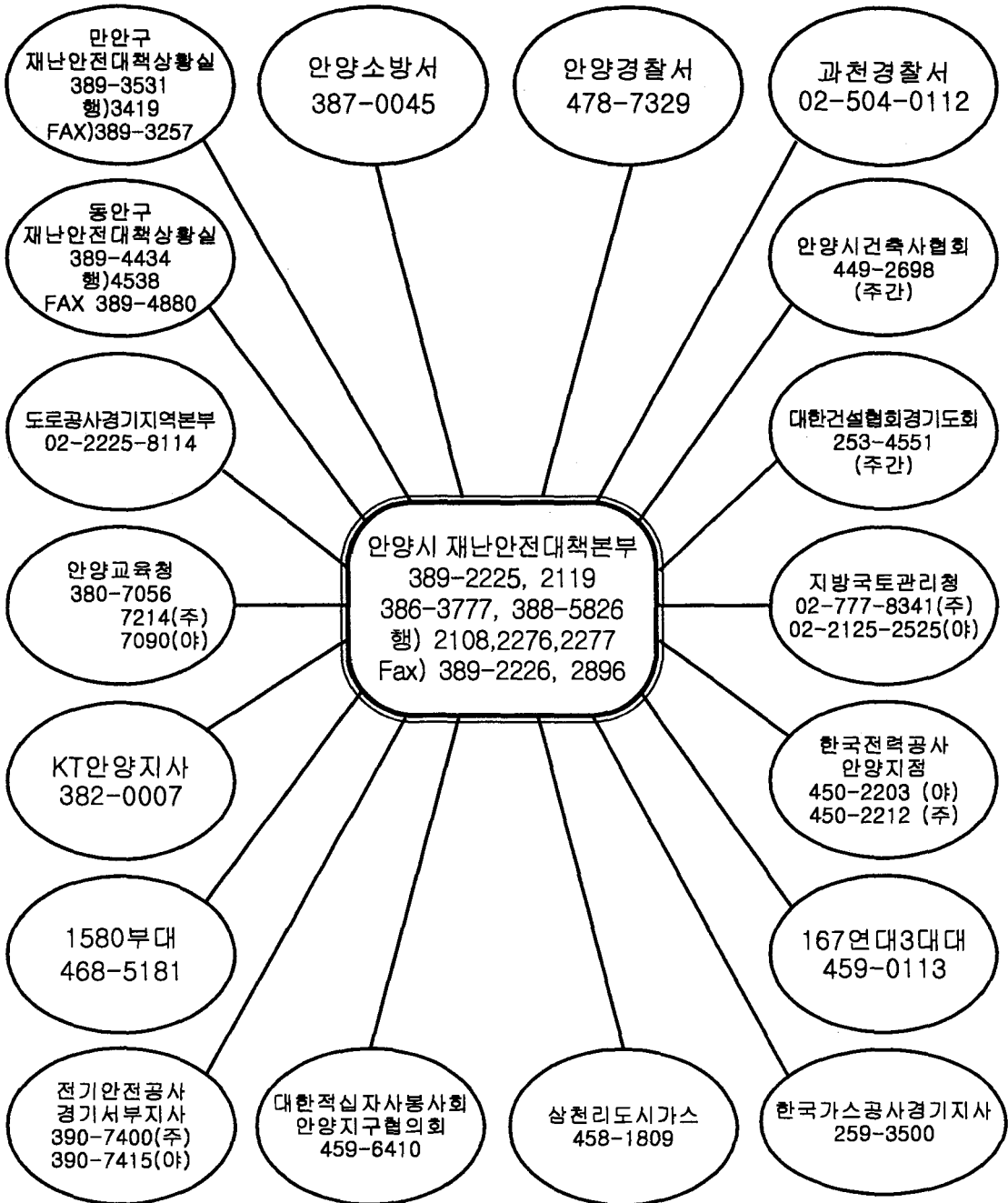
- 위험정보의 통보, 소방 활동에의 협력 요청
-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부상자 소재 제공
- 경계구역, 교통통제 등의 통보와 협력 요청
- 교통규제, 경계구역 등의 해제통보, 협력 요청
- 소방대의 활동내용, 구조 상황 등

2) 보도관계자에 대한 홍보

- 보도의 통합운용(보도지원반장이 정례 또는 수시 브리핑)
- 보도진에 대한 협조 요청(구조 구난지역 통제선 출입 제한 등)
- 현장지원 협조(통제선 출입시 완장 패용, ID카드 발행 등)
- 출동인원 장비 등, 구조·구급활동사항 및 향후 구조 활동 방향
- 보도 발표 시 필요한 사항
 - 사고일시, 장소, 책임자, 사고개요, 부상자, 사고 상황 등
 - 부상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부상정도, 수용병원 등)

3. 유관기관 등 파견근무자 비상근무 계획

3.1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3.2 유관기관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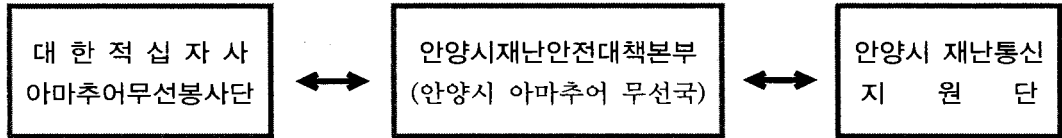
부서및유관기관	임무	협조사항
안양교육청	· 학교시설 보호 · 비상체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 이재민 발생에 대한 지원계획 · 교육시설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교실, 강당 체육관등) · 재난에 따른 사전조치 사항 통보 (교육 위원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예방 및 복구시 학생동원 (필요시) · 학생 및 학부모를 통한 대민 홍보 전개로 자율참여 의식고취
안양소방서	· 인명구조 · 화재진압	· 재난구조반의 인명구조 활동 · 재난안전대책본부상주근무(비상체제시) · 헬기지원 요청 시 협조 · 실종자 수색 협조
한국전력 안양지점	· 전력시설 보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방호대를 편성운영 · 중요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불량개소는 우기전 개보수	· 수해침수지역의 감전사고 사전조치 · 피해 송·배전로의 신속복구 · 지중선 시설작업에 따른 재해사전 예방대책 강구 · 수해시 전기취급 요령홍보 (수해지역주민, 감전사고 발생예상 전지역 주민 등)
167연대3대대	· 피해발생 및 복구계획보고 (군부대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자체시설 보호	· 응급복구 지원 및 인명 구조(병력, 장비) · 대민 지원(현역, 예비군 등) · 군사시설 보호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 정비 · 군 시설 피해 발생시 최단 시간 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 · 헬기지원 요청 시 지원협조
안양경찰서		· 교통통제, 사망·실종자확인 · 재난위험지역 예방순찰활동 강화
공군항공부대		· 안양시 국지 기상 안내
농협중앙회 안양시지점		· 피해 지역의 농약적기 공급 · 각종피해복구 융자금의 적기지원
K T 안양	· 각종 시설피해 예방대책 수립 · 피해 통신시설의 신속복구	· 피해예방 홍보(낙뢰 등) · 피해시설 신속복구

3.3 재난 구조 자원봉사단 임무

구 분	봉 사 단 체	협 조 사 항
인명구조 봉사단	· 안양지지역자율방재단 · 안양시 의용 소방대 · 안양시 해병전우회(수중인명구조대)	· 인명 구조 활동 지원 · 사망,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의료 자원봉사단	· 한림대성심병원 의료 봉사팀 · 메트로병원 의료 봉사팀. · 대한적십자사 129 구급 봉사대 · 안양시 의사(한 의사) 연합회	· 의료 방역 활동 및 약품 지원
통신 지원 봉사단	· 대한적십자사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 안양시 재난 통신 지원단	· 통신 두절시 송, 수신 협조 · 긴급 상황 발생시 무선에 의한 상황 전파
차량 지원 봉사단	· 안양시 모범 운전자회	· 차량 지원 및 부상자 긴급 후송
자 원 봉 사 단	· 대한적십자사 안양부녀 봉사회 · 안양시지역자율방재단 · 시민안전봉사대 외 6개 단체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 · 재난 지역에서의 각종 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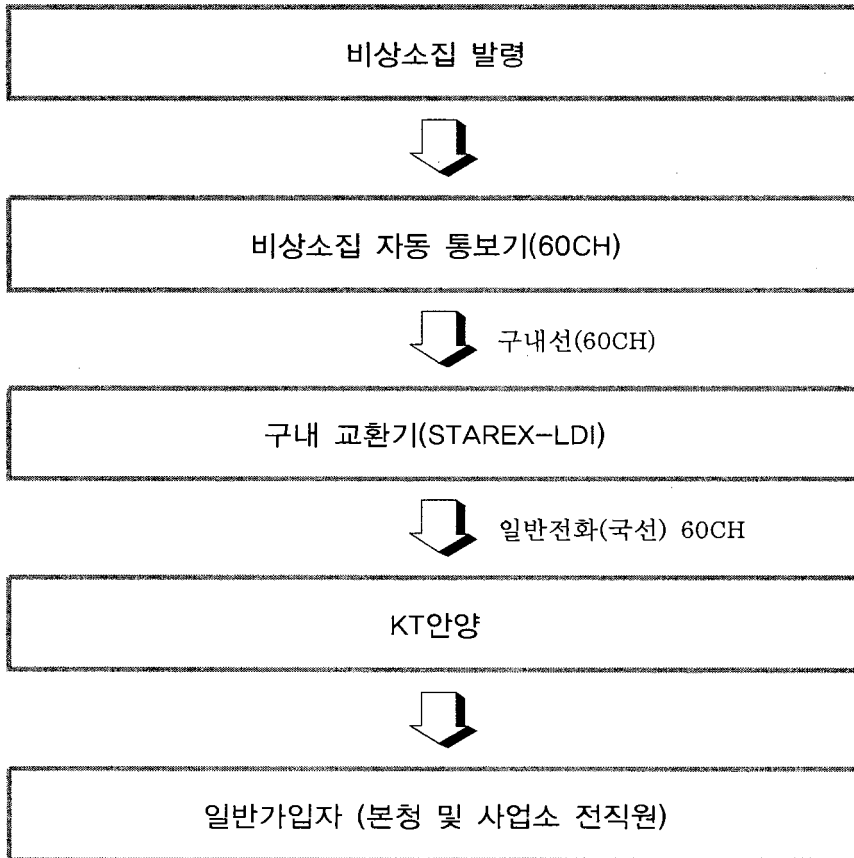
3.4 재난 발생시 비상연락 통신체계

가. 비상통신 연락체계 (유선 불통시)



나. 공무원 비상소집

○ 공무원 비상소집 계통도



※ 1명 호출시 : 평균 1초소요 (전직원 호출시 약 20분소요)

다. 자동음성통보

○ 자연 재난 정보 및 상황 전파

자연재난 상황 발생 예상(재난안전대책본부)



전파대상 선정

하천둔치 주차차량, 반지하 거주자, 재해취약지역 통반장,
대규모공사장, 농가 등 전파 대상 선정



재해취약 대상에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 전파

문자 및 음성으로 기상특보 및 재난 상황을 전파하여,
주민 대피 등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유도



재해담당자 및 재해취약지역
주민에게 피해 최소화 유도

방재시설 가동 및 주민 대피 등 자연재난 예방 활동 지속 전개

제3장

자연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제1절 풍수해 단계별 행동요령

제2절 풍수해 재난상황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3절 대 설

제4절 황 사

제5절 가 물

제6절 지 진

제7절 폭 염

제8절 한 파

여 백

제3장 자연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제1절 풍수해 단계별 행동요령

1. 목 적

이 매뉴얼은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해일)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법적근거

가. 작성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를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법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영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자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 재난현장표준작전 절차 및 응급상당지도 체계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평가
- ② 그 밖에 재난관리의 단계별 표준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나. 기타 사항

- 안양시 안전관리계획
-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 안양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조례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3. 적용범위

-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 활동에 적용
-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피해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시 적용

4. 위기형태

- 태풍·호우로 인하여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발생
- 대설로 인하여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발생

5.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원칙

1. 풍수해(태풍·호우, 강풍) 발생

가. 대응개념

- 목표 : 풍수해(태풍·호우) 징후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현장 수습을 통한 피해 최소화
- 대응 방향
 - 초기 관련정보 부재를 고려한 대응절차 자동 시행
 - 신속한 상황 전파 (유관기관, 대국민, 언론기관 등)
 - 자연재해저감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 신속한 긴급 대응 조치 : 긴급지원체계 가동, 주민대피조치 등
 -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의사결정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실시
 - 유관기관 지원 요청 및 투입
 - 위험지역 주민 대피 및 통제

나. 대 응 지 침

- 태풍·호우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동 실행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태풍진행상황 주시
 -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유관기관, 방송사 등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사전 대응조치 실시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추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및 자원동원 협조체계 가동
 - 행락·등산·야영객, 주민대피 등 신속한 인명피해 예방조치

다. 판단·고려 요소

- 태풍의 진로, 중심기압, 크기, 강도, 및 동반되는 풍속, 강수의 량
-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 호우의 강우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게릴라성 호우
- 호우피해 예상지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능력 및 응원가능여부
- 필요 장비·인력 등의 확보 가능성

2. 대설 발생

가. 대응개념

- 목표 : 대설 징후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현장 수습을 통한 피해 최소화
- 대응 방향
 - 초기 관련정보 부재를 고려한 대응절차 자동 시행
 - 신속한 상황 전파 (유관기관, 대국민, 언론기관 등)
 - 자연재해저감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 신속한 긴급 대응 조치 : 긴급지원체계 가동, 주민대피조치 등
 -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의사결정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실시
 - 유관기관 지원 요청 및 투입
 - 위험지역 주민 대피 및 통제

나. 대응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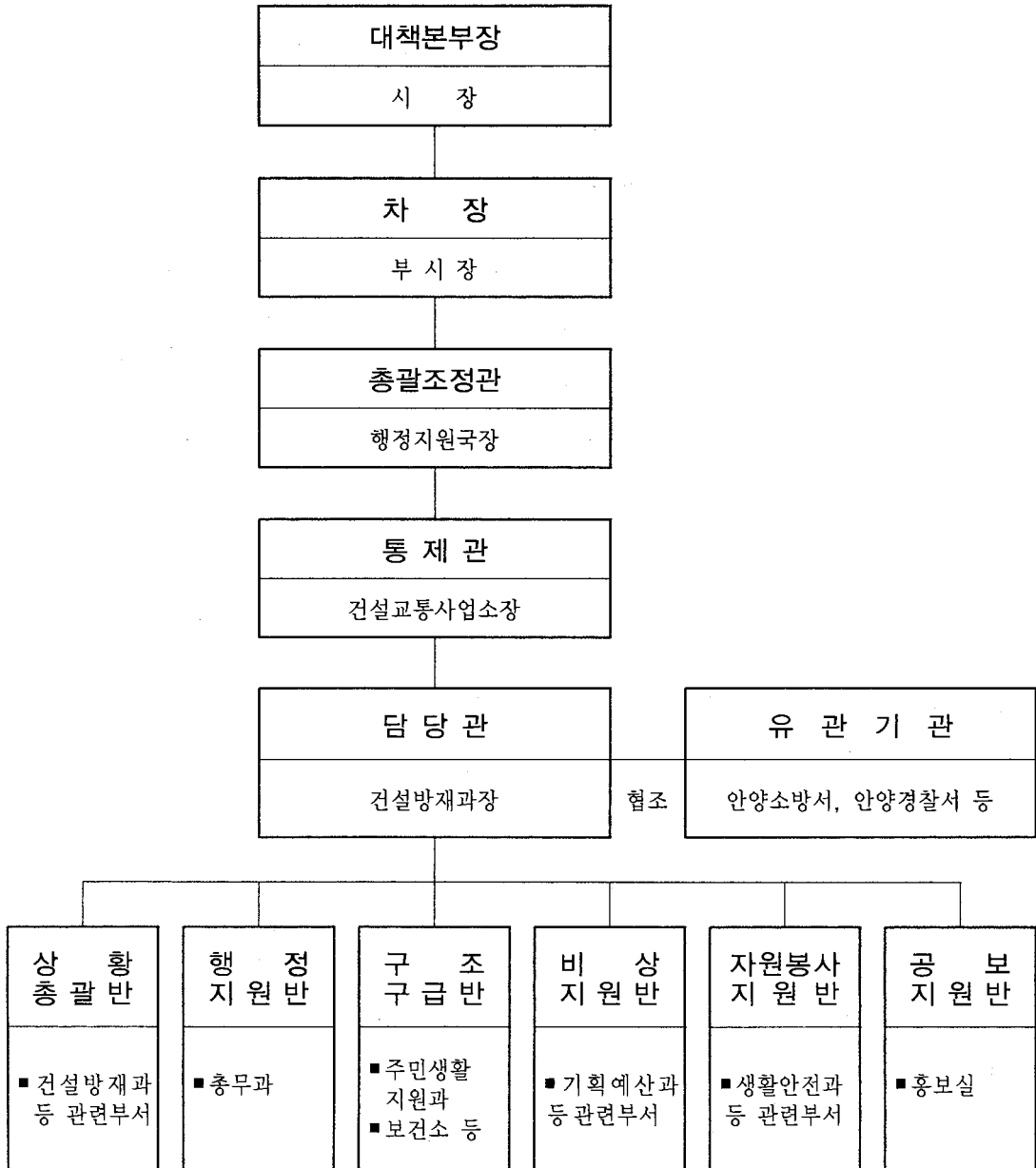
- 대설 위기징후 발생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자동 시행
- 기상정보 및 대설 진행상황 파악·전파
 - 유관기관, 언론기관(대국민)
- 위기수준 평가 및 대처를 위한 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 신속한 위기 대비/대응 조치
 - 위기상황 전파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취약시설 점검, 제설작업 준비 등 사전대비
 - 대응조직 구성, 위기상황 신속 대응
 -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활동 전개

다. 판단/고려 요소

- 대설 예상 강설·적설량, 피해예정 범위·규모
- 대설 재난상황의 심각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 고립예상지역/도시교통 마비 예상지역 파악
- 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능력 및 응원 가능 여부
- 필요 장비·인력 등의 확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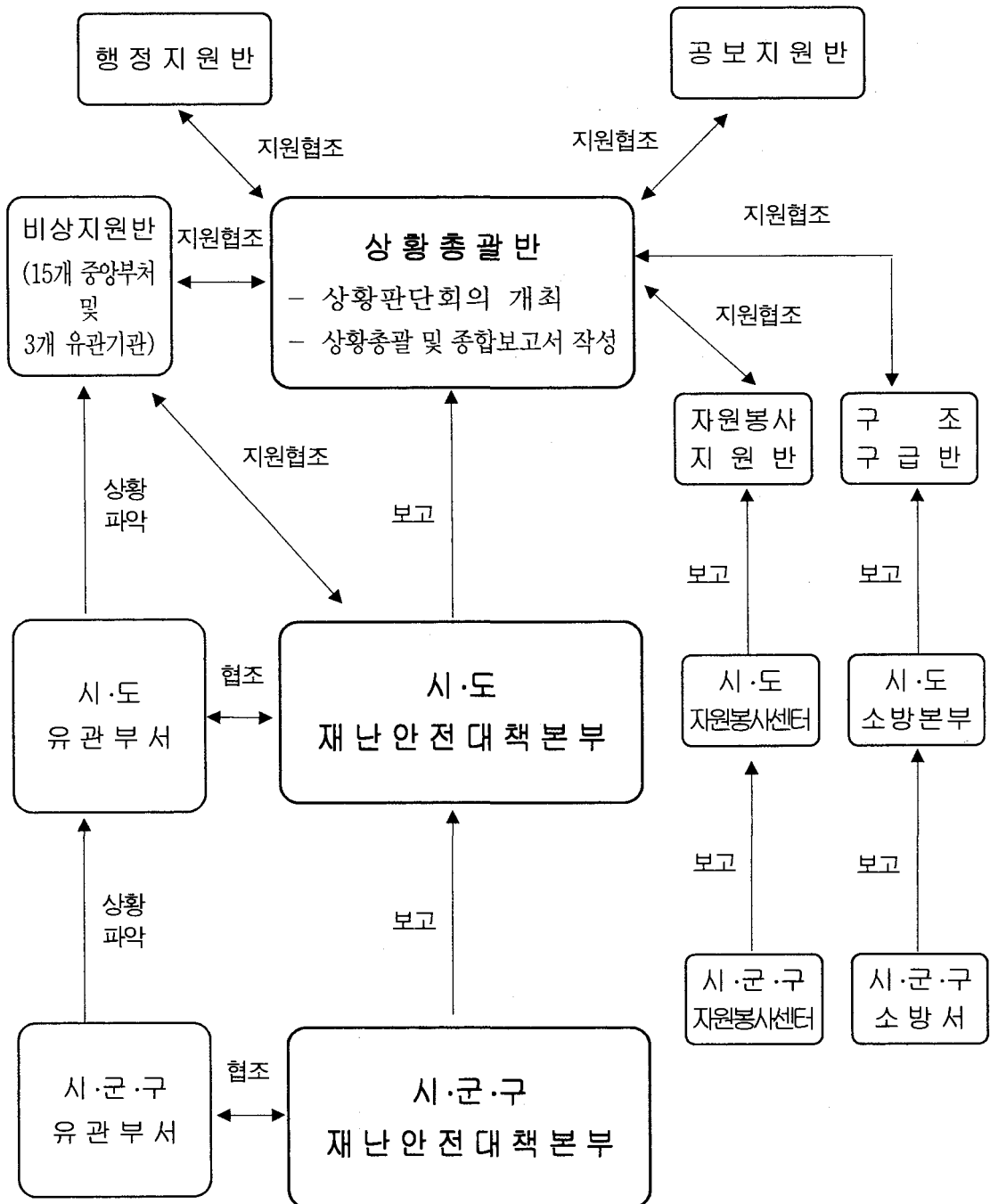
6.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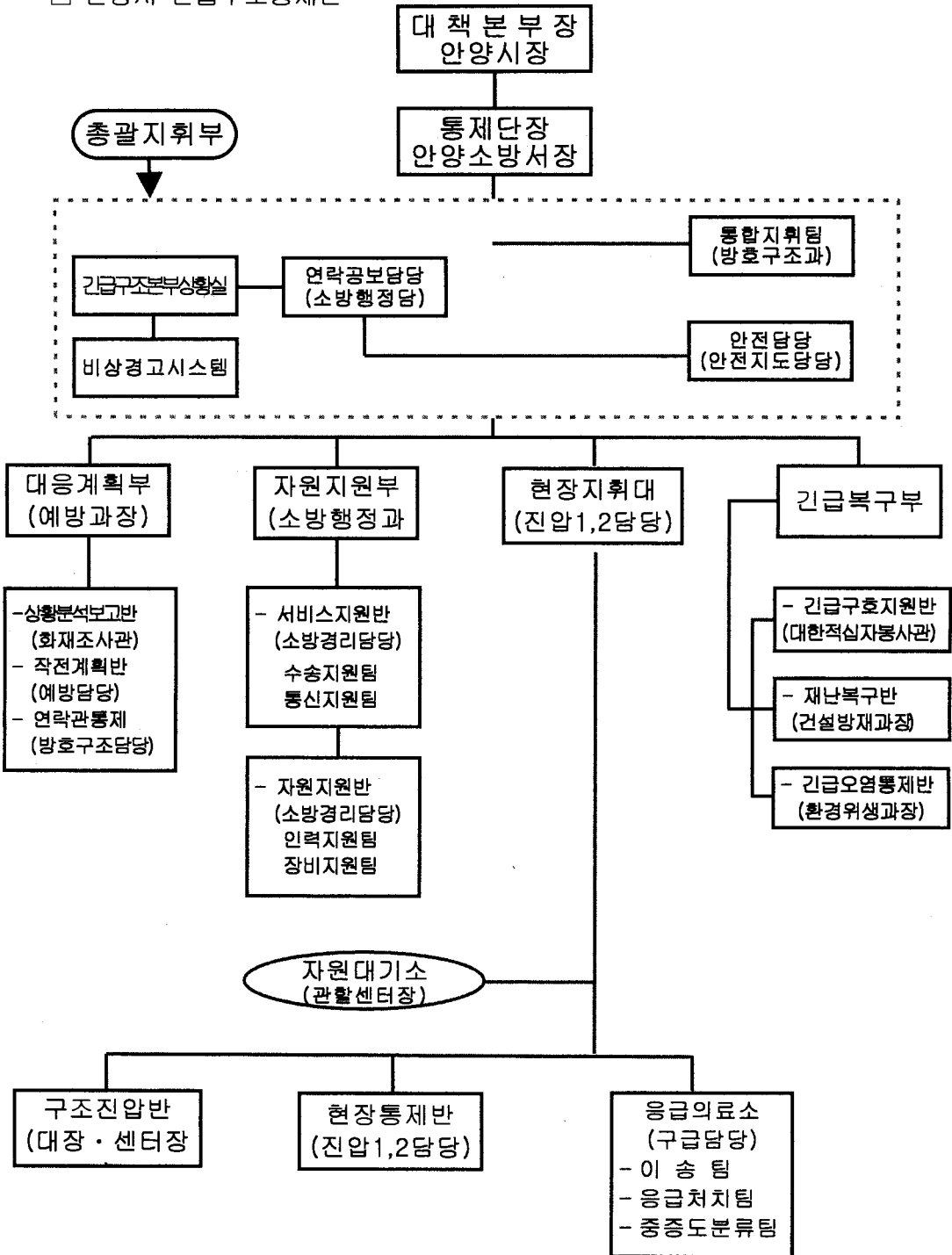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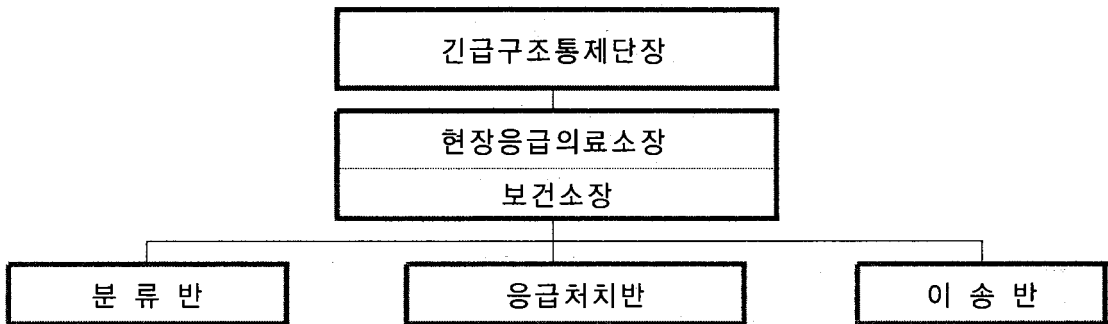
☞ 구성 및 임무 : 부록 1 참조

☐ 상황보고 절차도



☐ 안양시 긴급구조통제단

□ 현장응급의료소



제2절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1. 풍수해(태풍·호우·강풍) 발생

1.1 상 황

《 태풍발생 상황 》

- 현재위치 : 2007년 12월 01일 09시 현재
33.7N, 127.5E (제주도 제주시 동북동쪽 약 90km부근해상)
- 중심기압 : 915 hPa
- 중심부근 최대풍속 : 54%
- 태풍크기 : 대형 (풍속 30%이상 반경 : 530km이상~800km미만)
- 태풍강도 : 매우 강 (최대풍속 : 50%이상)
- 진행방향 및 속도 : 북동방향으로 20km/h의 속도로 이동중

《 피해상황 》

- 인명피해 : 00명 사망, 000명 부상, 000명 실종
- 건물피해 : 전파 00동, 반파 000동
- 침수피해 : 도시 : 00 ha, 농경지 00ha, 건물 00동
- 하천제방 붕괴 : 00하천 Km 붕괴(유실)
- 도로붕괴 : 00도로 Km 붕괴(유실)
- 산사태 발생 : 00번지 국유림 00ha 유실
- 강한 바람으로 전주가 넘어지고 화재발생으로 전기 공급 불능
- 도로붕괴로 가스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가스공급 불능
- 통신주와 이동통신 중계소가 파손되어 통신 두절
- 수도관 파열과 정수시설 피해발생으로 수돗물 공급 불가능

1.2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관계기관/부서
현장투입前	○ 재난상황 접수 및 확인 ○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등 전파 ○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 인력 및 장비 확보 - 긴급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 임무숙지 및 출동준비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총무과
임무수행時	○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 현장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이재민수용시설 운영·관리 ○ 사망·실종자 처리 ○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재난쓰레기 처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지원 및 협조 ○ 주민대피 및 안내 ○ 식용수 확보 및 지원 ○ 재난수습 보도지원 ○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건설방재과 총무과 총무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생활안전과 안양소방서 건설방재과 교통시설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청소과 총무과 맑은물공급과 홍보실 생활안전과
철 수 時	○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귀	건설방재과 생활안전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총무과

1.3 조치내용

가. 현장투입전

1) 재난상황 접수 및 확인

- ①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확인
- ② 재난상황 접수자는 즉시 상황관리자에게 보고

2)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① 보고

- 상황실장 : 시장, 부시장, 건설교통사업소장, 행정지원국장, 건설방재과장 등

②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상황실 요원

- 유관기관 상황실 유무선, Fax 등으로 상황 전파

③ 주민에 대한 재난 상황 신속 전파

- 대국민 전파 : 상황실 요원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재난종합상황실에 등록된 문자메시지 동의서 제출자 전원에게 휴대전화로 SMS 전송)
- 재난발생 사실과 주민행동요령 등을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민방위 중앙 경보통제소에서 피해지역에 재해경보 발령
(필요시 시·도 경보통제소에 재해경보 발령 통지)
- ☞ 민방위경보 발령과 비상연락망 : 부록 8

3)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현황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대응 수준에 따른 현장투입 인력 및 장비 확보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파견 요청
-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에 관한 사항 등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긴급구조 통제단 설치 요청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요청
 - 기동방역반 편성 요청
 - 재난쓰레기 처리 지원 요청
 - 식용수 지원 요청 등
 - 대규모 피해발생시 외국구조대 국가별 통역요원 지원 요청 등

○ 회의 결과 실행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개최계획 : 부록 3

4)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① 피해지역 인명피해 상황 파악

- 현장에 파견된 소방, 군 및 비상지원본부 등과의 정보 교환

- 파견단체와 정보교환(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존재 여부 등)
- 관계기관과의 통화시간·내용(협조요청, 상황전파 등), 현장파견부서와의 조치시간·내용(출동시간·인원, 현지조치 사항 등)

- 인근 지역 주요시설(병원, 이재민 수용시설 등)의 위치 및 규모 확인

② 지자체 및 소방 등 유관기관 정보를 실시간 공유

- 피해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파악(연락처, 담당자 등)
- 현장투입 유관기관의 구조장비 및 인력투입 파악
 - 구조지역의 할당, 현장지휘 관련 등

5) 임무숙지 및 출동 준비

① 피해상황 및 피해규모에 따라 출동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규모 결정

- 피해가 확대 및 2차 재해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에 추가 장비 및 인력 지원 대기 요청

② 구조장비 및 투입부서, 인력의 투입준비·명령

- 현장투입 될 관련부서 유관기관 및 직원에게는 현장에서의 임무를 숙지토록 조치
- 현장투입 부서별 장비 및 인력 확인
 - ○○과 : 관련장비(○○, △△ 등)
- 할당된 지역의 교통상황 파악 및 접근방법 검토

나. 임무수행시

1)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① 현장출동시

- 피해 현장에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이동로 파악·이동
- 피해현장과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피해 및 구조구급 상황 파악

② 현장 도착시

- 현장지휘본부 검토 및 위치 선정
- 피해 상황과 예측 규모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 신속한 업무수행 체계 구축

③ 상황보고·전파

- 내 부 : 소방방재청, 중앙 및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방재과장 등
- 외 부 : 안양소방서, 군부대, 안양경찰서 등
- 언론사 : 지역방송 및 신문사 등
- 보고내용 :
 - 기상청 정보 및 현 피해상황
 - 피해상황에 따른 대응수준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사항

2)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 및 운영

① 비상지원본부 설치

- 비상지원본부 구성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하고 시장이 총 지휘책임
 - 실무책임자 : 재난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
 -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4개반의 지원반을 구성
 -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 ☞ 비상지원본부(C.P) 구성 및 근무반 : 부록 6
- 지원반 임무 및 역할
 - 초기대응반
 - 재난현장 2차피해 발생직후 조사 및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 최초 피해현황 파악 및 즉보
 - 사망·부상자 파악 즉보
 - 교통두절 상황파악 및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 ⇒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 상황분석보고반
 - 기상악화 상황 수시 전파
 - 중앙종합상황실, 도 및 시 상황실과 hot-line 구축
 - 재난진행상황 파악

- 재난피해 분석·판단
- 관계기관·단체협력반
 - 소관관리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마련
 - 소관관리시설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자재 확보
 - 타 기관·단체 인력·장비 필요시 지원 및 요청
 - 자원봉사자 접수 및 적정 배치·운영
- 대민보호지원반
 - 이재민수용 및 이재민구호
 - 사망·실종자 후송 및 사망자 장례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 민심동향, 미당사례 확인 및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②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 현장대책회의 개최

- 현장대책본부가 설치된 후
- 사망 및 부상자가 대규모로 점점 늘어나는 경우
-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책회의 개최시 회의내용 포함 사항

- 현장지휘 체계의 숙지 및 보고 체계운영에 관한 사항
- 유관단체 및 외국구조대의 인명구조 구역 할당운영에 관한 사항
- 차량 및 민간인 통제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재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 상황실 운영 및 통신망 운영 사항
- 주민대피 및 민간보호에 관한 사항
- 식용수 공급에 관한 사항
- 구조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
- 구급차량지원 차량통제,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구조계획 수립

- 구조의 우선순위 결정(생존자 우선 구조 후 사망자 수습)

③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실시 사항

-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2차 피해 우려 지역 내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위험구역 내 주민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조치
- 지역 경찰서의 장에게 통행제한 요청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 진화, 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요청
 - 지역 내 관할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의 응급조치 사항
 - 화재진화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2차 피해 예상 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 추가 붕괴, 유실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방재활동 확인 지시 및 확인
 - 위험시설 경계(군부대 및 경찰서 등)
-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지시 및 확인
 - 피해 극심 지역 내 공급되는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요청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상황실에 전기, 가스 공급 차단의 필요성 파악 및 공급 차단 요청
- ④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보고 실시
 - 지역재난종합상황실 보고 내용 및 유관기관별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긴급지원 필요 여부 보고
 - 시설별 피해 상황 집계 후 지휘체계 보고 및 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 피해보고 양식 : 부록 2

〈각 기관별 피해 집계 및 보고 List〉

유 관 기 관	주 요 내 용 (피해 집계 및 보고)	비 고
한국전력 안양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안양지점	전력설비(송변전, 배전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가스설비	
철도공사	열차(교량, 터널)	
농업기반공사안양지사	농업용댐, 농업용저수지 등	
안양교육청	학교시설	
군 부 대	군사시설	
KT안양지사	통신시설	

○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피해 심각 지역의 지역재난종합상황실과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상황의 집계

○ 유관기관별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⑤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확인 및 통신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구성 확인

·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관기관 상황실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유관기관은 상황실 구성 후 시재난종합상황실에 구성 현황 통보

- 유관기관과의 통신 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주요임무 : 부록 4

3)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 부록 5

①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우회교통로 확보 : 안양경찰서 협조

- 현장 주변 출입자 통제 및 응급환자수송로 확보

- 현장주변출입자통제 및 교통관리

- 현장주변차량 및 출입자 우회소통 대책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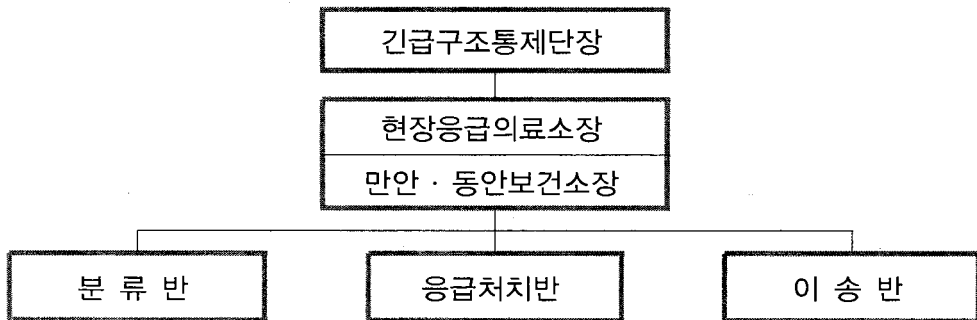
○ safety line 설치 : 비상지원본부(초기대응반)에서 설치

②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긴급구조차량 현장진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
 - 주차차량 이동 및 진입로 적치물 이동조치
 - 차주 미연락시 견인차량을 이용한 주차차량 이동조치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기 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 조 직



○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급처치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5) 이재민 수용 및 관리

- 식료품, 음용수 및 생활필수품 등 확보 요청
- 이재민수용건물 관리 담당공무원 지정
- 통신 및 난방시설 등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

구 분	계		학 교		교 회		관공서		경로당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계	158	17,026	50	7,807	36	5,783	3	270	69	3,166
만안구	67	7,608	18	3,573	16	2,542	-	-	33	1,493
동안구	91	9,418	32	4,234	20	3,241	3	270	36	1,673

6) 사망·실종자 처리

- 사망자 임시 안치소(병원, 장례식장 등) 지정·운영

시 설 명	위 치	전 화	안치실	비 고
계	5개소		49	단위 : 구
샘안양병원 장례식장	안양5동 613-6지하 (안양병원내)	467-9770	11	
석수장례식장	안양2동18-1 (남서울병원내)	473-2929 473-6919	6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8동 342-105 (메트로병원내)	467-9010 449-9000	10	
성심장례식장	평안동 896 (한림대성심병원)	455-3388	12	
(주)안양장례식장	호계동167-1	382-5004	10	

- 현장수습
 - 사고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및 부분시체 보관처리
- 신원확인자에 대한 조치
 - 유가족 시신 확인
 - 생전자료 수집, 사망자 신원파악 → 주민전산망
 - 사후자료 수집 → 전문 식별팀
 - 지문 및 유류품 검사 등
-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조치
 - 시료채취 가능시
 - DNA감식용 시료채취(2개씩) 및 인수
 - 시료운송수단 강구 → 국과수 및 감식기관 협의
 - 유가족 혈액채취 및 결과 통보
 - 시료채취 불가능시
 -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인정사망처리」 추진
 - 미확인 사망자 본적지 파악
- 시신 미수거 사망자 유토함 준비
- 사망자 수송
 - 영구차 확보
 - 이송지역별 현황 파악 및 협조
 - 이송지역 내 병원현황 파악 협조
- 장례지원
 - 종교단체와 협의 합동 위령제 의식 시행
 - 시신 안치병원에 분향소 설치 지원
 - 사망자 매장신고 등 행정절차 지원 장의사 연락망 확보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분향소 설치 등 유족 위로계획 수립
 - 유가족 의문사항 문답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시장 등 간부공무원 방문 위로 계획 수립 시행
 - 유가족에 사고 수습 일일상황 통보
- 유가족 구호
 - 여성협의회에 협조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
 - 부모사망자 유자녀세대 보호대책 강구
 - 분향소의 각종시설, 보안 지원

- 부상자 위로
 - 부상자가족 위문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부상자 신원확인 및 가족사항 파악 통보
- 부상자 구호
 - 현장 응급소 및 부상자 입원병원에 급식지원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담당 공무원 배치(안내, 애로사항 조치, 연락체제)

7)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설사환자 등 전염성 질환자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 조치
- 피해지역, 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감시원 배치·관리
- 보건소 별 기동방역반 편성

< 방역물자 비축현황 >

구 분	계	살충제 (ℓ)	살균제 (ℓ)	유충구제용(ℓ)
계	1,898	422	1,034	442
만 안 구	400	150	150	100
동 안 구	1,498	272	884	342

8) 재난쓰레기 처리

- 동원장비 지정시 덤프, 집게차 등 지정 및 확보
- 권역별 쓰레기 임시 적치장 지정·운영
 - 적치장 매일2~3회 소독 및 탈취제 살포
- 이재민수용시설 등 집단시설 내 임시 화장실 설치·운영
- 경찰서와 협의 쓰레기 수거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 단속 요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현황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 설 규 모			
				인원 (명)	차량 (대)	중장비 (대)	수집운반량 (톤)
11개업체							
중앙개발(합)	권정애	안양3동 707-3	447-4916	21	9		15,974
동양환경(주)	전태수	안양8동 373-1	444-0139	18	9		10,602
세명개발(주)	서진식	호계3동 666-2	455-2132	13	7		15,034
(주)성일기업	홍형주	박달1동 7-12	448-2559	15	6		8,071
한우실업(주)	송두호	관양동 1473-1 부림빌딩 401호	422-2448	17	7		12,282
(주)현대산업	김중환	호계동 997(2층)	452-8504	14	5		11,081
(주)안양위생	원영희	안양2동 857-48	468-2861	16	6		10,614
원진개발(주)	박홍식	관양동1488-7 우정타운 202호	426-0484	19	7		9,434
남영개발(주)	양한두	비산3동 1026-11	388-9905	16	8		13,348
대정개발(주)	김춘자	안양6동 428-2 한솔주택상가102	444-9494	15	5		10,903
합동환경(주)	이종선	호계동 997(2층)	451-6427	15	7		9,40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차량 보유	비고
		주 소	전화		
8개업체					
세창환경건설(주)	민영노	안양동 220-13	443-2060	4	
동방산업(주)	차상호	관양2동 896	421-4034	3	
오광기업(주)	박범의	박달동 703	466-8491	3	
경기환경건설(주)	김경숙	관양동 1594	422-3333	4	
(주)태산기업	최태식	호계동 801-4	457-9950	8	
(주)정우환경개발	성기연	호계동 1000-34	424-8211	4	
(주)우성환경	김종배	안양6동 504-4 계림빌딩 402	459-5553	4	
(주)대진환경개발	김원태	호계2동 923-13 동남아빌딩 302	451-4211	3	

9) 자발적 민간 참여 관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재난안전대책본부내 자원봉사지원반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주요 건설업체의 중장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민간 참여의 지도 및 확인
 - 지역별 필요 인력 및 장비 확인
 - 민간 참여의 지역별 배분 및 인계

10) 주민대피 및 안내

-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통한 주민 대피 및 건물 출입 통제
- 재난방송요청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마을앰프, 자막방송 등)
- 여진발생 우려로 인한 주민대피령 발령 검토 및 발령
 - 대피장소 공지
- 이재민 발생 따른 긴급지원
- 피해 발생에 따른 보도문안

11) 재난수습 보도 및 지원

- 보도자료 작성
 - 피해발생 정보 및 현재 구조 및 피해상황
 - 피해현장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
 - 교통통제의 필요성
 - 피해지역 실상 보도 및 복구를 위한 전국민 동참 유도

12)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 지원시점 : 동시 다발적 피해로 구조구급 및 치안유지 역량 부족시
- 지원기관 :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 지원내용 : 인력, 장비 추가지원 및 관련전문가

13) 피해 조사 실시

- 피해조사는 관련실과소별로 피해 조사
- 복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여 처리
- 복구대책은 피해유형별로 소관부서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

다. 철수시

1)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회의내용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완료에 따른 복구계획 등 후속조치 강구
- 실종자 대책 마련
- 철수에 따른 대안 마련

○ 회의 결과 실행

- 피해지역 복구 등 필요사항 지원 요청

2)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인력 및 장비지원 현황 파악

- 기관 및 단체명, 지원인원(대표자와 명), 지원기간 등
- 장비명, 수량 등

○ 차량 및 출입자 통제, 치안유지 협조(경찰, 군)

○ 식료품, 식수 및 생필품 등 지원(소방서, ○○단체 등)

○ 구조 및 환자수송(병원, 119구조대 등)

3)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율방재단 중심의 봉사자 접수 및 배분
- 동원 지정된 장비 소유자의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배치
- 피해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및 장비 지원

○ 공공시설물

- 주요 도로·교량의 우회도로 및 가교 설치 등 응급복구 추진
- 하천시설은 수충부·주요 구조물 우선 복구로 2차 피해 예방
- 사망·산사태 및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 신속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 파손된 철도의 신속한 복구 추진 및 대체 수송대책 시행
- 응급복구 우선순위 사전 지정 순위에 따라 복구 추진

○ 기타 시설물

-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우선 응급복구 추진
- 전·반파된 주택은 안전점검 후 이용 및 철거 조치
- 국민생활 필수시설(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우선 복구 추진

○ 복구계획 검토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복구계획 검토

4)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피해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여부

-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여부(지휘체계 확립 여부)

○ 피해 시설물 통제여부

- 피해가 발생되어 이재민 수용시설로 피난한 건물의 통제여부

○ 치안유지 여부

- 도난 및 폭동 방지 등 치안 유지 여부

○ 대책본부와 현장파견 기관간 협조체계 또는 보고체계(통신), 언론보도의 원활성 여부

○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부

○ 기타 피해 현장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5)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귀

1.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안양소방서

- 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구급 활동 실시
- 피해지역 주민대피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지원
- 대규모 사체수습 지원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안양경찰서

- 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재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재해현장의 교통통제
- 피해지역 주민대피
-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 등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수도권단, 1580부대, 제167연대 3대대

- 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 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긴급 구조 및 현장 확인 인력지원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및 지원
- 지역 안정화대책 각종 소요사태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안양교육청

- 학교 피해시설 피해 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응급수업대책 수립 마련
- 학생피해조사 및 보고
- 비상시 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 이재민수용에 따른 제반 조치

☐ 수원기상대

- 기상상황의 파악·분석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환경위생과, 청소과

- 매립지 등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환경오염 위험시설 점검 및 대응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맑은물공급과, 하수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피해지역에 대한 음용수 및 하수처리 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음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 상·하수도 피해시설물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식수원 오염대비 지역 순찰

☐ 경제산업과, 위생과(산업분야)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피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 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녹색정책과(에너지분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전기시설, 가스설비 및 정유설비 등 피해조사 및 긴급 복구
- 주요관공서 전력지원대책 수립
- 전력수급 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및 가스공급대책

☐ 문화예술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요원 파견
- 문화재 피해 현황 파악 등 자체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조치
-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대책 강구

☐ 정보통신과, 홍보실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해 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 전파(TV, 라디오)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시민 홍보 및 지원
- 관련부처 홍보은행사항 방송
- 방송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원
- 보도자료 제공 및 주민 홍보계획 수립
- TV, 신문 등 언론사와 협조체제 구축
-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통신대책
- 재해수습상황 사진촬영 및 기록
- 통신시설의 피해상황파악 및 응급 대책

□ 건축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건축물 시설 피해조사
- 2차 피해 대비 붕괴우려 대형 사업장 점검 실시
-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파악 관리
-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
- 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풍수해로 방사능오염물질 피해 점검·확인 및 대책 마련
-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대피 조치

□ 만안·동안보건소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 의료 지원
- 각종 의료, 구호물품 수급대책 마련
- 전염병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 및 실시
-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제3절 대 설

3.1 상 황

《 대설발생 상황 》

☐ 예비특보 발표현황

- 대설경보 : 전국

☐ 참고사항

-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

☐ 피해발생

【 상황 1 】

○ 고속도로 통행불가지역 발생

- 심야시간대의 강설로 00일 00시경 8~10cm의 적설로 00고속도로 00IC~00 분기점 구간에 정체 발생
- 강설이 지속됨에 따라 오전 00시까지 총 25~30cm 적설로 정체구간이 길어지면서 양방향 통행 불가로 동 구간내 800여대의 차량 고립

【 상황 2 】

○ 도심 교통마비사태 발생, 농림시설(비닐하우스 등) 파손

- 00일 00시부터 07시까지 00지역 일원에 10cm 적설로 도심내 주요 간선 도로 및 시외곽도로의 통행 불가로 극심한 교통난에 빠지며 아침 출근 시간 교통 마비사태 발생
- 00일 00시경 00지역 일원 35~70cm의 적설로 노후가옥 50채 파손 및 영농비닐하우스 000동 붕괴되고 00지역 교통두절로 00개 마을 고립

○ 노후가옥 붕괴로 인명피해 발생

- 00지역 노후가옥 붕괴로 인명피해 00명 발생

3.2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관계기관/부서
현장투입前	○ 대설상황 접수 및 확인 ○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등 전파 ○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 인력 및 장비 확보 - 긴급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 임무숙지 및 출동준비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총 무 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총 무 과
임무수행時	○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 현장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이재민수용시설 운영·관리 ○ 사망·실종자 처리 ○ 재난쓰레기 처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지원 및 협조 ○ 주민대피 및 안내 ○ 재난수습 보도지원 ○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건설방재과 총 무 과 총 무 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생활안전과 안양소방서 건설방재과 교통시설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 소 과 총 무 과 생활안전과 홍보실 생활안전과
철 수 時	○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귀	건설방재과 생활안전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총 무 과

3.3 조치내용

가. 현장투입 전

1) 기상상황 접수 및 확인

- ① 기상청 방재기상정보 시스템 확인
- ② 기상상황 접수자는 즉시 상황관리자에게 보고

2)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① 보고
 - 상황실장 : 시장, 부시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기획경제국장, 건설방재과장 등
- ②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상황실 요원
 - 유관기관 상황실 유무선, Fax 등으로 상황 전파
- ③ 주민에 대한 재난 상황 신속 전파
 - 대국민 전파 : 상황실 요원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재난종합상황실에 등록된 문자메시지 동의서 제출자 전원에게 휴대전화로 SMS 전송)
 - 대설 발생 사실과 주민행동요령 등을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3)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현황 예측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대응 수준에 따른 현장투입 인력 및 장비 확보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파견 요청
 - ※ 대규모 피해발생시 외국구조대별 통역가능자 유관기관에 파견 요청
-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에 관한 사항 등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긴급구조 통제단 설치 요청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요청
 - 재난쓰레기 처리 지원 요청
- 회의 결과 실행
 - 대설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 대설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개최계획 : 부록 3

4)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① 대설 피해지역 인명피해 상황 파악

- 현장에 파견된 소방, 군 및 비상지원본부 등과의 정보 교환
 - 파견단체와 정보교환(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존재 여부 등)
 - 관계기관과의 통화시간·내용(협조요청, 상황전파 등), 현장파견부서와의 조치시간·내용(출동시간·인원, 현지조치 사항 등)
- 인근 지역 주요시설(병원, 이재민 수용시설 등)의 위치 및 규모 확인

② 소방 등 유관기관 정보를 실시간 공유

- 대설 피해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파악(연락처, 담당자 등)
- 현장투입 유관기관의 구조장비 및 인력투입 파악
 - 구조지역의 할당, 현장지휘 관련 등

5) 임무숙지 및 출동 준비

① 대설피해상황 및 피해규모에 따라 출동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규모 결정

- 2차 재해에 의한 피해확대 및 피해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에 추가 장비 및 인력 지원대기 요청

② 구조장비 및 투입부서, 인력의 투입준비·명령

- 현장투입 될 관련부서 유관기관 및 직원에게는 현장에서의 임무를 숙지도 록 조치
- 현장투입 부서별 장비 및 인력 확인
 - ○○과 : 관련장비(○○, △△ 등)
- 할당된 지역의 교통상황 파악 및 접근방법 검토

나. 임무수행시

1)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① 현장출동시

- 피해 현장에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이동로 파악·이동
- 피해현장과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대설 피해 및 구조구급 상황 파악

② 현장도착시

- 현장지휘본부 검토 및 위치 선정
- 대설 피해상황과 예측 규모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 신속한 업무수행 체계 구축

③ 상황보고·전파

- 내 부 : 소방방재청, 중앙·경기도 및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방재과장 등
- 외 부 : 안양소방서, 군부대, 안양경찰서 등
- 언론사 : 지역방송사 및 신문사 등
- 보고내용 :
 - 기상 및 현 피해상황
 - 피해상황에 따른 대응수준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사항
 - 현장 도착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 등

2)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 및 운영

① 비상지원본부 설치

○ 비상지원본부 구성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하고 시장이 총 지휘책임
 - 실무책임자 : 재난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
-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4개반의 지원반을 구성
-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 ☞ 비상지원본부(C.P) 구성 및 근무반 : 부록 6

○ 지원반 임무 및 역할

- 초기대응반
 - 최초 피해현황 파악 및 즉보
 - 사망·부상자 파악 즉보
 - 재난현장 2차피해 발생징후 조사
 - 교통두절 상황파악 및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 ⇒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 상황분석보고반
 - 추가 피해 상황 수시 전파
 - 중앙종합상황실, 도 및 시 상황실과 hot-line 구축
 - 재난진행상황 파악
 - 재난피해 분석·판단
- 관계기관·단체협력반
 - 소관관리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 대책 마련

- 소관관리시설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자재 확보
- 타 기관·단체 인력·장비 필요시 지원 및 요청
- 자원봉사자 접수 및 적정 배치·운영
- 대민보호지원반
 - 이재민수용 및 이재민구호
 - 사망·실종자 후송 및 사망자 장례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 민심동향, 미당사례 확인 및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②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 현장대책회의 개최

- 현장대책본부가 설치된 후
- 계속하여 폭설이 예상 될 경우
- 사망 및 부상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경우
- 기타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책회의 개최시 회의내용 포함 사항

- 현장지휘 체계의 숙지 및 보고 체계운영에 관한 사항
- 차량 및 민간인 통제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재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 상황실 운영 및 통신망 운영 사항
- 주민대피 및 민간보호에 관한 사항
- 구급차량지원 차량통제,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구조계획 수립

- 구조의 우선순위 결정(생존자 우선 구조 후 사망자 수습)

③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실시 사항

- 대설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및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2차 피해 우려 지역 내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위험구역 내 주민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조치

- 안양경찰서장에게 통행제한 요청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 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요청
 - 지역 내 관할 군부대 및 유관기관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의 응급조치 사항
 - 고립지역에 대한 응급조치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지시 및 확인
 - 피해극심지역 내 공급되는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요청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상황실에 전기, 가스 공급 차단 필요성 파악 및 공급 차단 요청
- ④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보고 실시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별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긴급지원 필요 여부 보고
 - 설별 피해 상황 집계 후 지휘체계 보고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 대설 피해보고 양식 : 부록 2

< 각 기관별 피해 집계 및 보고 List >

유 관 기 관	주 요 내 용 (피해 집계 및 보고)	비 고
한국전력 안양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전력설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가스설비	
철도공사	열차(교량, 터널)	
안양교육청	학교시설	
군 부 대	군사시설	
KT안양지사	통신시설	

○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피해 심각 지역의 지역재난종합상황실과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상황의 집계

○ 유관기관별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⑤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확인 및 통신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구성 확인

·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관기관 상황실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유관기관은 상황실 구성 후 시 재난종합상황실에 구성 현황 통보

- 유관기관과의 통신 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주요임무 : 부록 4

3)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① 비상지원본부 설치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 부록 5

②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긴급구조차량 현장진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

- 주차차량 이동 및 진입로 적치물 이동조치

- 차주 미연락시 견인차량을 이용한 주차차량 이동조치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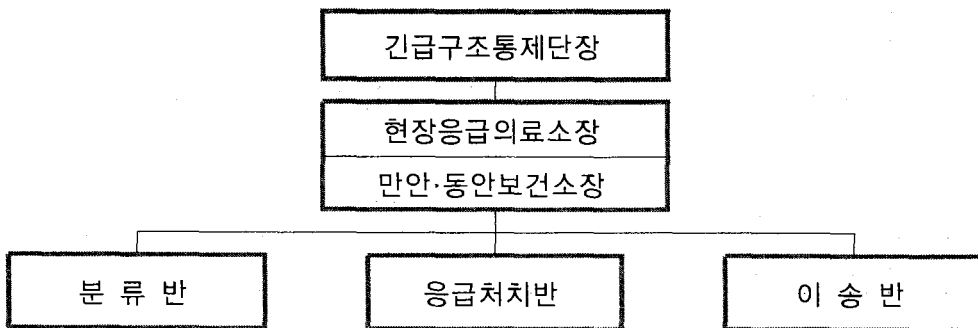
○ 기 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 조 직



○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5) 이재민 수용 및 관리

- 식료품, 식용수 및 생활필수품 등 확보 요청
- 이재민수용건물 관리 담당공무원 지정
- 통신 및 난방시설 등 지원

< 이재민수용시설 >

구 분	계		학 교		교 회		관공서		경로당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계	158	17,026	50	7,807	36	5,783	3	270	69	3,166
만안구	67	7,608	18	3,573	16	2,542	-	-	33	1,493
동안구	91	9,418	32	4,234	20	3,241	3	270	36	1,673

6) 사망·실종자 처리

○ 사망자 임시 안치소(병원, 장례식장 등) 지정·운영

시 설 명	위 치	전 화	안치실	비 고
계	5개소		49	단위 : 구
샘안양병원 장례식장	안양5동 613-6지하 (안양병원내)	467-9770	11	
석수장례식장	안양2동18-1 (남서울병원내)	473-2929 473-6919	6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8동 342-105 (메트로 병원내)	467-9010 449-9000	10	
성심장례식장	평안동 896 (한림대성심병원)	455-3388	12	
(주)안양장례식장	호계동167-1	382-5004	10	

○ 현장수습

- 사고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및 부분시체 보관처리

○ 신원확인자에 대한 조치

- 유가족 시신 확인
- 생전자료 수집, 사망자 신원파악 → 주민전산망
- 사후자료 수집 → 전문 식별팀
- 지문 및 유류품 검사 등

○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조치

- 시료채취 가능시
 - DNA감식용 시료채취(2개씩) 및 인수
 - 시료운송수단 강구 → 국과수 및 감식기관 협의
 - 유가족 혈액채취 및 결과 통보
- 시료채취 불가능시
 -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인정사망처리」 추진
 - 미확인 사망자 본적지 파악

- 시신 미수거 사망자 유토함 준비
- 사망자 수송
 - 영구차 확보
 - 이송지역별 현황 파악 및 협조
 - 이송지역 내 병원현황 파악 협조
- 장례지원
 - 종교단체와 협의 합동 위령제 의식 시행
 - 시신 안치병원에 분향소 설치 지원
 - 사망자 매장신고 등 행정절차 지원 장의사 연락망 확보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분향소 설치 등 유족 위로계획 수립
 - 유가족 의문사항 문답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시장 등 간부공무원 방문 위로 계획 수립 시행
 - 유가족에 사고 수습 일일상황 통보
- 유가족 구호
 - 여성협의회에 협조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
 - 부모사망자 유자녀세대 보호대책 강구
 - 분향소의 각종시설, 보안 지원
- 부상자 위로
 - 부상자가족 위문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부상자 신원확인 및 가족사항 파악 통보
- 부상자 구호
 - 현장 응급소 및 부상자 입원병원에 급식지원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담당 공무원 배치(안내, 애로사항 조치, 연락체제)

7) 재난쓰레기 처리

- 동원장비 지정시 덤프, 집게차 등 지정 및 확보
- 권역별 쓰레기 임시 적치장 지정·운영
 - 적치장 매일2~3회 소독 및 탈취제 살포
- 이재민수용시설 등 집단시설 내 임시 화장실 설치·운영
- 경찰서와 협의 쓰레기 수거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 단속 요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현황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 설 규 모			
				인원 (명)	차량 (대)	중장비 (대)	수집운반량 (톤)
11개업체							
중앙개발(합)	권정애	안양3동 707-3	447-4916	21	9		15,974
동양환경(주)	전태수	안양8동 373-1	444-0139	18	9		10,602
세명개발(주)	서진식	호계3동 666-2	455-2132	13	7		15,034
(주)성일기업	홍형주	박달1동 7-12	448-2559	15	6		8,071
한우실업(주)	송두호	관양동 1473-1 부림빌딩 401호	422-2448	17	7		12,282
(주)현대산업	김중환	호계동 997(2층)	452-8504	14	5		11,081
(주)안양위생	원영희	안양2동 857-48	468-2861	16	6		10,614
원진개발(주)	박홍식	관양동1488-7 우정타운 202호	426-0484	19	7		9,434
남영개발(주)	양한두	비산3동 1026-11	388-9905	16	8		13,348
대정개발(주)	김춘자	안양6동 428-2 한솔주택상가102	444-9494	15	5		10,903
합동환경(주)	이종선	호계동 997(2층)	451-6427	15	7		9,40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차량 보유	비고
		주 소	전화		
8개업체					
세창환경건설(주)	민영노	안양동 220-13	443-2060	4	
동방산업(주)	차상호	관양2동 896	421-4034	3	
오광기업(주)	박범의	박달동 703	466-8491	3	
경기환경건설(주)	김경숙	관양동 1594	422-3333	4	
(주)태산기업	최태식	호계동 801-4	457-9950	8	
(주)정우환경개발	성기연	호계동 1000-34	424-8211	4	
(주)우성환경	김종배	안양6동 504-4 계림빌딩 402	459-5553	4	
(주)대진환경개발	김원태	호계2동 923-13 동남아빌딩 302	451-4211	3	

8) 자발적 민간 참여 관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재난안전대책본부내 자원봉사지원반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주요 건설업체의 중장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민간 참여의 지도 및 확인
 - 지역별 필요 인력 및 장비 확인
 - 민간 참여의 지역별 배분 및 인계

9) 주민대피 및 안내

-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통한 주민 대피 및 건물 출입 통제
- 재난방송요청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마을앰프, 자막방송 등)
- 추가 피해발생 우려로 주민대피령 발령 검토 및 발령
 - 대피장소 공지
- 이재민 발생 따른 긴급지원
- 피해 발생에 따른 보도문안

10) 재난수습 보도 및 지원

- 보도자료 작성
 - 대설피해 발생 정보 및 현재 구조 및 피해상황
 - 대설 피해현장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
 - 교통통제의 필요성
 - 피해지역 실상 보도 및 복구를 위한 전국민 동참 유도
- 자료배포 및 기자브리핑 실시 : 일간지 및 방송사 등

11)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 지원시점 : 동시 다발적 피해로 구조구급 및 치안유지 역량 부족시
- 지원기관 :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 지원내용 : 인력, 장비 추가지원 및 관련전문가 지원

12) 피해 조사 실시

- 피해조사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하여 시설물별 피해 조사
- 복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여 처리
- 복구대책은 피해유형별로 소관부서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

다. 철수시

1)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회의내용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완료에 따른 복구계획 등 후속조치 강구
 - 실종자 대책 마련
 - 철수에 따른 대안 마련
- 회의 결과 실행
 - 피해지역 복구 등 필요사항 지원 요청

2)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인력 및 장비지원 현황 파악
 - 기관 및 단체명, 지원인원(대표자와 명), 지원기간 등
 - 장비명, 수량 등
- 차량 및 출입자 통제, 치안유지 협조(경찰, 군)
- 식료품, 식수 및 생필품 등 지원(소방서, ○○단체 등)
- 구조 및 환자수송(병원, 119구조대 등)

3)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율방재단 중심의 봉사자 접수 및 배분
 - 동원지정된 장비 소유자의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배치
 - 피해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및 장비 지원
- 공공시설물
 - 교통통제구역 우회도로 및 제설대책 추진
 - 응급복구 우선순위 사전 지정 순위에 따라 제설대책 추진
- 사유 시설물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철거 작업 추진
 - 주택 및 창고, 축사 등 건축물 철거 및 보수
 - 국민생활 필수시설(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우선 복구 추진
- 복구계획 검토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복구계획 검토

4)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피해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여부
 -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여부(지휘체계 확립 여부)
- 피해 시설물 통제여부
 - 피해가 발생되어 이재민 수용시설로 피난한 건물의 통제여부
- 대책본부와 현장파견 기관간 협조체계 또는 보고체계(통신), 언론보도의 원활성 여부
-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부
- 피해 현장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5)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귀

3.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안양소방서

- 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고립지역 인명구조구급 활동 실시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피해지역 주민대피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지원
- 대규모 사체수습 지원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 안양경찰서

-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피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폭설현장의 교통통제
-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 등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수도권단, 1580부대, 제167연대 3대대

-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 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긴급 구조 및 현장 확인 인력지원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및 지원
- 지역 안정화대책 각종 소요사태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안양교육청

- 피해 상황 전파·보고
- 학교 피해시설 피해 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응급수업대책 수립 마련
- 학생피해조사 및 보고
- 비상시 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 이재민수용에 따른 제반 조치

☐ 수원기상대

- 기상상황의 파악·분석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환경위생과, 청소과

- 매립지 등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환경오염 위험시설 점검 및 대응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맑은물공급과, 하수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피해지역에 대한 음용수 및 하수처리 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음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 상·하수도 피해시설물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식수원 오염대비 지역 순찰

☐ 경제산업과, 위생과(산업분야)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피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 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녹색정책과(에너지분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전기시설, 가스설비 및 정유설비 등 피해조사 및 긴급 복구
- 주요관공서 전력지원대책 수립
- 전력수급 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및 가스공급대책

□ 문화예술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요원 파견
- 문화재 피해 현황 파악 등 자체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조치
-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대책 강구

□ 정보통신과, 홍보실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해 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 전파(TV, 라디오)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시민 홍보 및 지원
- 관련부처 홍보운행사항 방송
- 방송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원
- 보도자료 제공 및 주민 홍보계획 수립
- TV, 신문 등 언론사와 협조체제 구축
-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통신대책
- 재해수습상황 사진촬영 및 기록
- 통신시설의 피해상황파악 및 응급 대책

□ 건축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건축물 시설 피해조사
- 2차 피해 대비 붕괴우려 대형 사업장 점검 실시
-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파악 관리
-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
-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풍수해로 인한 방사능 물질 보관 건축물 피해 점검·확인 및 대책 마련
-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대피 조치

□ 만안·동안보건소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 의료 지원
- 각종 의료, 구호물품 수급대책 마련
- 전염병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 및 실시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부록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단계 근무조 편성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총괄조정관 행정지원국장 통 제 관 건설교통사업소장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건설방재과장					
			협조	유 관 기 관	
				안양소방서, 안양경찰서 등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준비단계:2명 비상단계:8명	준비단계: 4명 비상단계:17명	준비단계:2명 비상단계:8명	준비단계: 7명 비상단계:4명	준비단계: 1명 비상단계:5명	준비단계:1명 비상단계:4명
1.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3.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분석·모니터 및 전파 4.기상 및 수습 대책 관련 특별 지시사항처리 5.본부장 특별 지시 사항 처리 6.피해정보 수집·보고 7.긴급상황 관리 (죽보사항 처리, 인명 구조, 인명 피해, 교통두절 상황 등) 8.재난현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9.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 계획 수립 보고 10.현장 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 자원단 운영 지원 11.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1.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보고서 작성 2.상급기관 및 시장 현장 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3.상황근무자 근무 명령 및 복무 단속 4.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5.상황근무자 식사 아식 등 후생 복지 6.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 동향 미담 사례 등 확인 7.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처리 등 8.피해자 보상 대책	1.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 지원반 설치 운영 2.국가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응급 구조현황 파악 3.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관리 4.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 구조 실시 5.피해지역주변 주민 대피 및 인명구조 활동 실시 6.부상자 의료 지원 및 기동 의료반 편성 운영 7.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 8.의료 및 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 9.의연금에 관한 사항 10.기타 대민 구호에 관한 사항	1.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 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3.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 장비확보 지도 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 요청 4.국민생활 필수 시설 응급복구 추진 5.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화장 설치 운영 6.사고현장주변 교통 통제 및 질서유지	1.자원봉사지원 업무 총괄 2.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3.사유시설 복구 등 대민 자원활동 추진 4.수해주택 안전 점검 및 무상 수리	1.재난상황별 국민 행동요령 홍보 2.재난예경보 발령 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 재난방송 등) 3.재난수습을 위한 공보지원 (현장 대변인 공동취재 단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6.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7.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8.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9.기타 대민 홍보와 관련된 사항

□ 비상단계 상황실 및 사무실 근무조 편성 기준

○ 근무조 인원 : 차장 외 83명

○ 총 책 임 관 :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지원국장)

통 제 관(건설교통사업소장)

- A조 (전직원 1/2상황근무)

구분	상황총괄반 (8명)	행정지원반 (17명)	구조구급반 (8명)	비상지원반 (41명)	자원봉사지원반 (5명)	공보지원반 (4명)
반장	건설방재과장	총무과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도시정비과장	가족여성과장	홍보실
A조	건설방재과 8	총 무 과 1 기획예산과 2 만 안 구 7 동 안 구 7	주민생활지원과 3 만안보건소 3 동안보건소 2	건 축 과 4 교통행정과 3 문화예술과 2 체육청소년과 2 사회복지과 2 주민생활지원과 1 가족여성과 2 경제산업과 5 도시계획과 2 도시정비과 6 생활안전과 2 시설공사와 2 녹지공원과 2 맑은물공급과 2 하 수 과 1 청 소 과 3	가족여성과 2 생활안전과 1 소 방 서 2	홍보실 4

- B조 (전직원 1/2상황근무)

구분	상황총괄반 (8명)	행정지원반 (17명)	구조구급반 (8명)	비상지원반 (41명)	자원봉사지원반 (5명)	공보지원반 (4명)
반장	건설방재과장	총무과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건설과장	가족여성과장	홍보실
B조	건설방재과 8	총 무 과 1 기획예산과 2 만 안 구 7 동 안 구 7	주민생활지원과 3 만안보건소 3 동안보건소 2	건 축 과 4 교통행정과 3 문화예술과 2 체육청소년과 2 사회복지과 2 주민생활지원과 1 가족여성과 2 경제산업과 5 도시계획과 2 도시정비과 6 생활안전과 2 시설공사와 2 녹지공원과 2 맑은물공급과 2 하 수 과 1 청 소 과 3	가족여성과 2 생활안전과 1 소 방 서 2	홍보실 4

소관과에서 A.B조로 편성 교대근무

【부록 2】

피해보고 양식

□ 각부서

구 분	지 역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시 00동	○ 건물 00% 피해 (전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주유소 0동 전파 등) ○ 지역 00% 피해 ○ 인명 피해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지원 요청 사항
경미 피해	00시 00동 일원	○ 건물 00% 피해 ○ 주요시설 피해 ○ 지역 00% 피해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유관기관

구 분	지 역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시 00동	○ 시설 00% 피해 ⇒ 2차 피해 현황 ○ 주요 기능 상실 여부	○ 긴급 복구 현황	○ 지원요청사항
경미 피해	00시 00동 일원	○ 시설 00% 피해	○ 긴급 복구 현황	

【부록 3】

태풍·호우·해일·대설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개최계획

태풍·호우·해일·대설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 완벽한 대처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회의 일시 : '00. 00. 00. () 00:00

□ 회의 장소 : 안양시재난종합상황실

□ 참석 인원 : 00명

- 회의주재 : 본부장(시장)
- 회의참석 : 시 재난관련부서장, 유관기관
- 간 사 : 재난관리담당

□ 주요회의 내용

◆ 태풍·호우 피해 유관기관간 대처계획 협의 ◆

- 피해발생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제 운영강화
-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태세 확립
 - 현장 CP형 비상지원본부 설치 여부 및 파견근무자 (유관기관) 소집 대상 범위 결정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피 철저 이행 홍보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2차 피해 예방대책 협의 및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등

□ 행정사항

○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

부서 및 기관별	검 토 사 항	비고
경제산업과	농림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계획 수립	
주민생활지원과	이재민 응급구호 계획 수립	
도시정비과	기반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건축과	주택피해조사	
맑은물공급과	상수도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하수과	하수도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청소과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건설방재과	재난상황의 총괄계획 수립	
수도군단, 제1580부대 167연대3대대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안양교육청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 주택 등 사유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공공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한국전력 안양지점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가설 ○ 필요시 피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기 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구내 임시 내전설비 설치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삼천리도시가스	○ 주택 등 사유시설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공공시설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회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KT안양지사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위통신망 지원 ○ 통신 응급소통	

재난대책 상황보고

0000.0.0 00시현재
안양시재난대책본부

상황개요

○○지역에 태풍·호우, 대설로 00명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

□ 기상상황

- 태풍위치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 특보상황 :
- 강수(적설)량 :

□ 피해상황

- 인 명 : 0명 (사망 0명, 부상 0명, 실종 0명)명
- 이 재 민 : 0세대 0명
 - ○○동 0세대/0명, 00동 0세대/0명
- ※ 000대피 00명 (재해구호물자 생필품 0세트, 취사용 0세트 지급)

□ 재산피해 : 백만원(잠정)

- 건물피해 : 동 (전파 0동, 반파 0동)
- 공공시설 : 000백만원

구분 \ 시설별	도 로	교 량	소규모	기 타
물 량	건/ m	건/ m	건/ m	건/ m
피 해 액(천원)				

- 사유시설 : 000만원

□ 주요 조치사항

【 비상근무체제 가동 】

- 비상근무 : 000명(각과 00, 구청 및 동 00)
- 재난예방대책 상황지시 및 실종자 수색 강화 지시 0회

○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군부대, 소방서,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한전, 한국통신 등

【 건물 붕괴예상에 따른 긴급 주민 대피 】

○ ○○동 00여명 사전대피 조치

【 위험지역 사전조치 】

○ 붕괴위험 교량(000개소), 사전예찰 및 주민홍보(000개소)

□ 응급복구 지원상황

인력·장비 지원현황

○ 인력지원 : 000명

- 공무원 000, 군부대 00, 주민 00

○ 장비지원 : 불도저 및 덤프, 굴삭기 등 00대

【 건물피해 조치 】

○ 피해현황 : 0동

계	전 파	반 파	비 고
0동	0동	0동	

※ 전파·반파 피해 추정액 : 00백만원 (전파는 공가)

⇒ 인력동원 : 00명(공무원 0, 소방 0, 주민 0)

⇒ 장비동원 : 덤프 0대, 굴삭기 0대, 기타 0대

【 교량피해 조치 】

○ 피해현황 : 0개소 0.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완료 : 00개소 0.00km

⇒ 장비 00대(백호우 0, 덤프 0등), 인원 00명 동원

【 도로피해 조치 】

- 피해현황 : 0개소 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 완료 0개소 0.0km, 추진중 0개소 0.0km
 - ⇒ 장비 0대(백호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인원 00명 동원

【 기타시설 조치 】

- 피해현황 : 0개소 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 완료 0개소 0.0km, 추진중 0개소 0.0km
 - ⇒ 장비 0대(백호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인원 00명 동원

□ 향후계획

-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피해 예방
- 피해지역에 대한 방역실시 및 쓰레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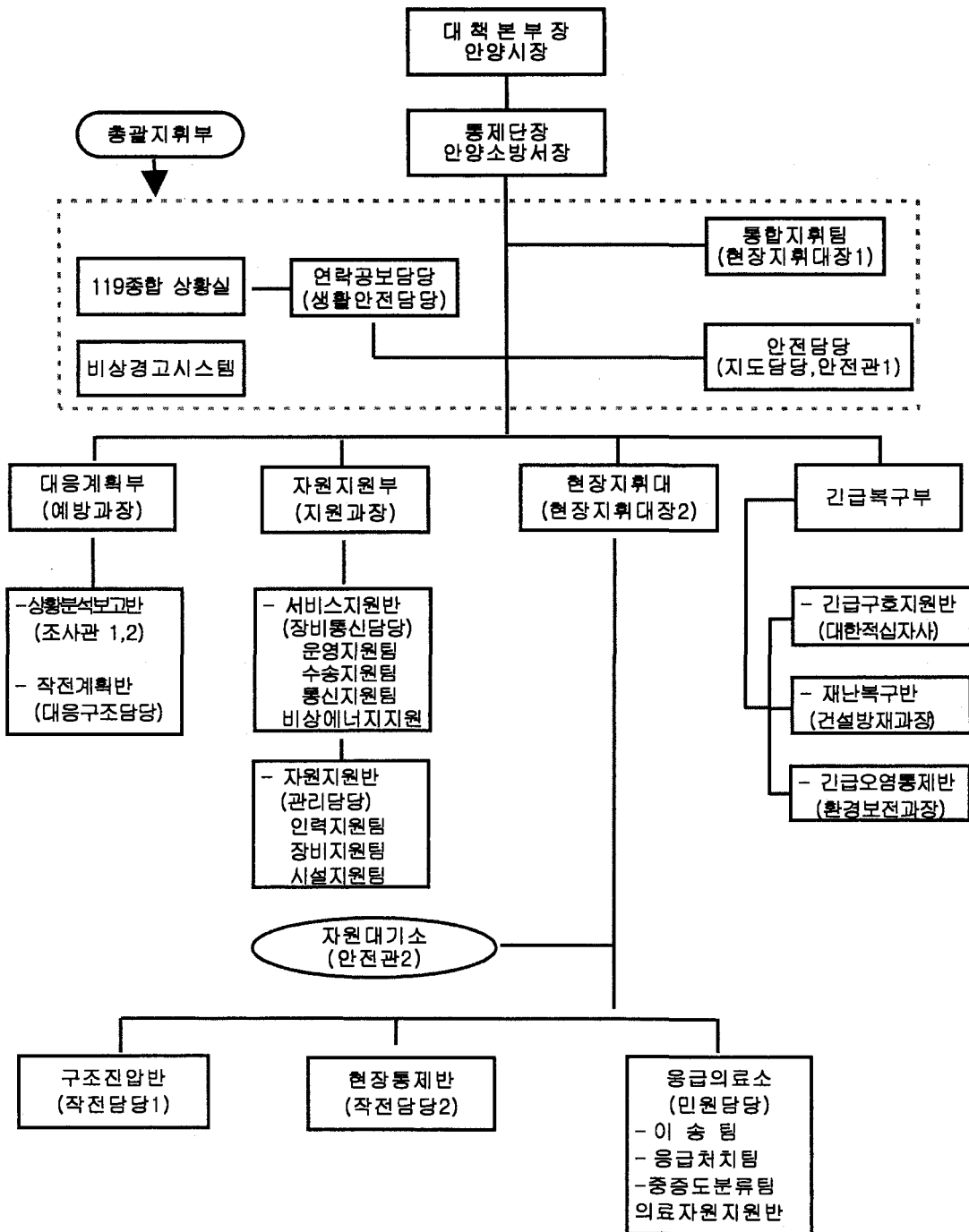
【부록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주요임무

기관 · 단체	연락처	주요 임무
수도군단 1580부대 제167연대3대대 9703부대	449-6300 443-4249 459-0113 468-1942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안양교육청	380-7082	○ 응급 수업대책 및 휴교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390-7401	○ 주택 등 사유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공공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한국전력 안양지점	450-2283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가설 ○ 필요시 피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기 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구내 임시 내전설비 설치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 감전예방 안내전단 배포 등 전기안전 홍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259-3562	○ 가스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가스설비 가설 ○ 가스누출 점검 및 응급조치 ○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홍보
삼천리도시가스	454-3002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회	459-6410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급식대상자가 많거나 장기화 될 경우 인근농협 급식센터와 협의)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KT 안양지사	385-0060	○ 비상자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위통신망 지원 ○ 통신두절지역 현황 파악 ○ 통신 응급소통

【부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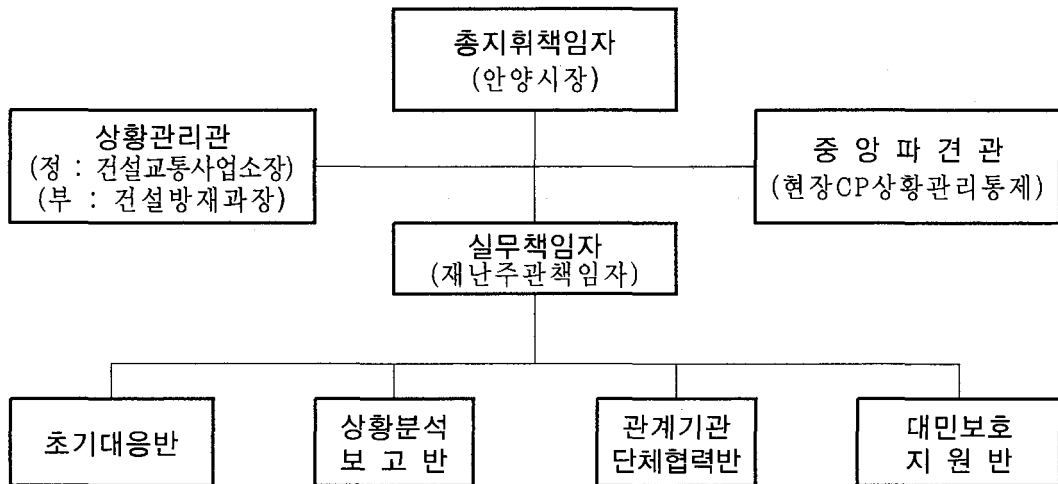
안양시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부록 6】

비상지원본부(C.P) 구성 및 근무반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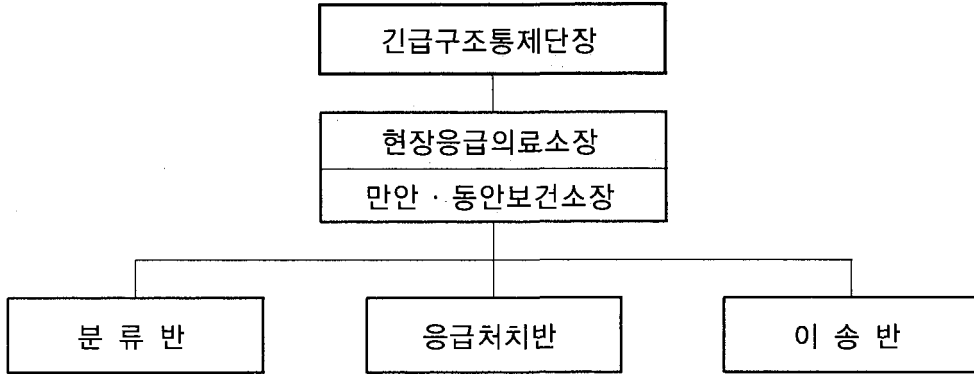
□ 근무반편성

구 분		초기대응반(5)	상황분석보고반(5)	관계기관단체 협력반 (5)	대민보호지원반(5)
A조	반장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반원	건축과 2 하수과 1 건설방재과 1 맑은물공급과 1	도시정비과 2 교통행정과 1 총 무 과 2	총 무 과 2 생활안전과 2 경제산업과 1	사회복지과 2 환경위생과 1 मान·동안보건소 2
B조	반장	건설방재과	도시정비과장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장
	반원	건축과 2 하수과 1 건설방재과 1 맑은물공급과 1	도시정비과 2 교통행정과 1 총 무 과 2	총 무 과 2 생활안전과 2 경제산업과 1	사회복지과 2 환경위생과 1 मान·동안보건소 2

【부록 7】

현장의료소 조직 및 임무

□ 조 직



□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 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부록 8】

민방위경보 발령과 비상연락망

□ 경보발령 권자 : 시장

□ 경보발령 근거 : 전달규정 제17조(재해경보의 발령)

- 재해경보는 시장·군수가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시·군 경보전달 책임자 또는 도 경보통제소장은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재해경보의 전달요령 규정에 따라 재해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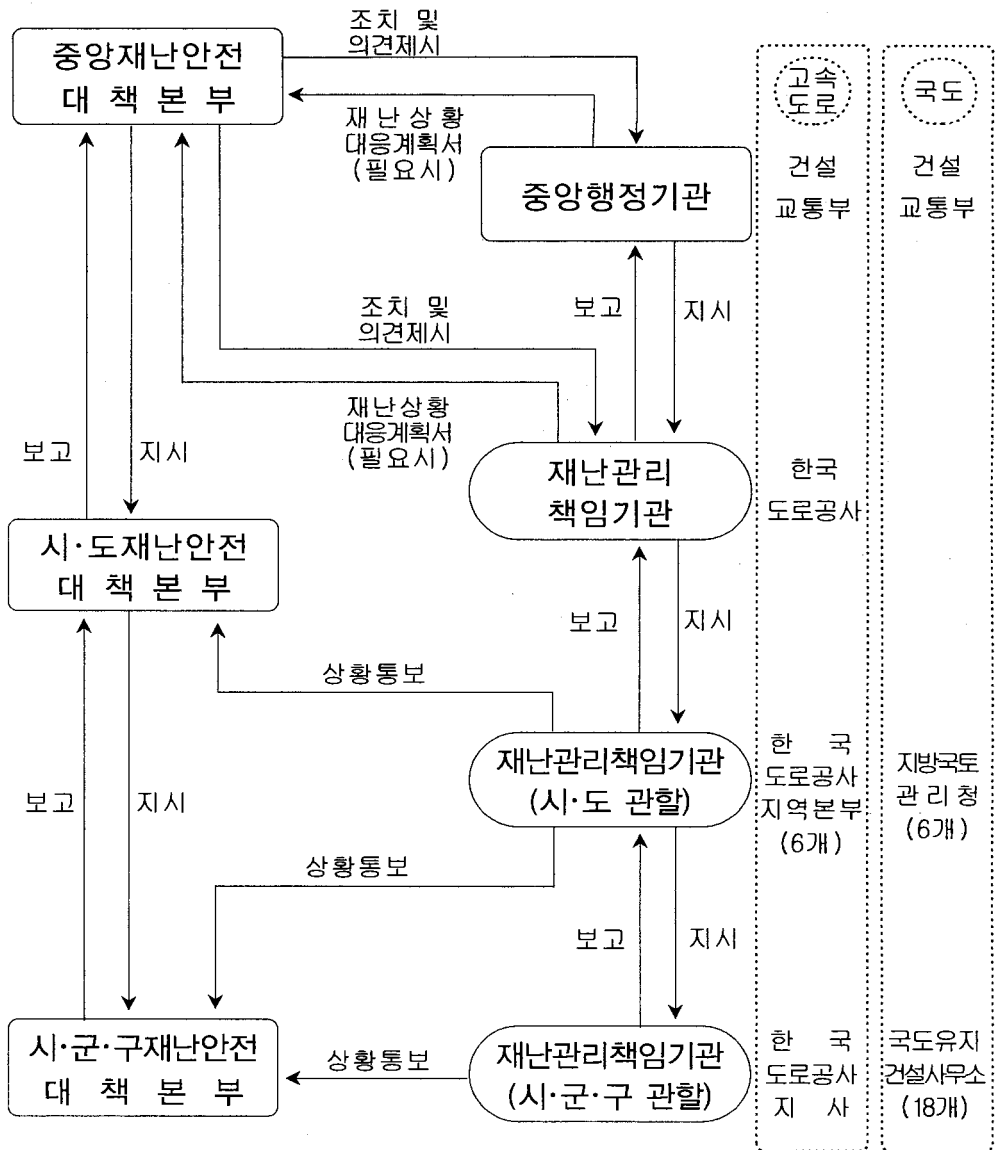
□ 재해경보의 종류

- 재해경계경보
 - 발령시기 : 홍보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재해위험경보
 - 발령시기 :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 재해경계해제
 - 발령시기 : 재해경계경보 또는 재해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해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해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 비상연락망

성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 무 실	휴 대 폰	
신 영 옥	389-2020	010-3011-8046	정보통신과장
김 득 수	389-2200	011-222-2511	통신운영팀당
손 종 택	389-2320	010-2504-5282	담 당 자
백 승 찬	389-2575	010-5292-4933	"

상황보고 체계도



제4절 황 사

- 황사는 발생하여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에는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기상청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황사가 발생하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되면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가축이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염이 빨리되고 황사가 늦게 도달하는 지역은 가축질병이 뒤늦게 나타난다. 황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가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황사대처 주요업무 지침 >

- 발생 전, 중, 후로 나누어 대처한다.
-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황사에 노출 시키지 않는다.
- 가축은 분무 소독을, 가축과 접촉하는 기구는 세척과 소독을 한다.
- 황사 종료 후 2주일까지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

1. 황사 발생 전

(1) 노약자 응급대책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실내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 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기상청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을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발생대비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3) 농림 축산

- 목초지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대피 준비
- 농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 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장 점검

(4) 점검사항

- 환자 및 재해약자를 위한 시설 확인
- 노약자, 환자, 정신지체아의 신원파악 및 강제 대피 방안 강구
- 집단으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수립
- 사회복지단체, 마을 노인회 단위 집단대피 계획 수립
- 지역주민에게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준비 시킨다.

2. 황사 발생 중

(1) 노약자 응급대책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방지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 금지 및 단축수업 또는 휴업
- 황사 발생 기간 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3) 농림 축산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 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4) 점검사항

- 동장, 통장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재해약자의 수용상황, 자택채류 상황 파악
- 재해 상황에 따라 2차 피해가 없는 곳으로 대피 시키고 도에 통보
- 기상예보를 이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검토 한다.
- 등교중인 학생의 건강,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조치
- 실내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홍보
- 황사노출 및 오염된 물품은 세척하고 음식물 소독을 홍보, 교육

3. 황사 종료 후

(1) 노약자 응급대책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제거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 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3) 농림 축산

-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 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4) 행정사항

- 피해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한다

제5절 가 물

- 가뭄의 특성은 다른 재해와 달리 피해가 서서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물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가뭄이라는 재해가 될 수도 있고, 자연 현상에 불과 할 수도 있는 것이 가뭄의 특성이다. 가뭄의 피해 현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제2의 피해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며, 피해기간 역시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가뭄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대처법이 다르다. 도심지역에서의 대처는 절수운동이며, 농촌지역은 농사철에 따라 파종법과 논물을 이용하는 요령이 달라진다. 가뭄이 심해지면 농사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은 기간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뭄의 피해는 피부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당국이나 주민들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 가뭄대처 주요 업무 지침 >

- 병충해, 환경파괴 등 보이지 않는 피해를 찾는다.
- 물 소비 요소나 사용처를 찾아내 물 낭비를 최소화 시킨다.
- 사용자에게 가뭄대비 절수운동 홍보에 주력 한다.
- 지역실정에 따라 1~6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한다.

1. 비상대책 - 가뭄 초기단계

(1) 용수대책 -- 관련업체 확인

- 긴급 암반관정, 간이용수원 개발추진
- 농업인, 공무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 학생 등을 이용한 인력동원 준비
- 민·관·군 보유 가뭄대책 장비 동원 준비
- 양수기, 송수 호수 등 양수장비 동원 점검
- 대·중·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지구 및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지구의 조기 급수 촉구
- 지하수탐사 및 암반관정 개발
- ① 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에서 보유한 급수차량 상태점검
- ② 안양 소방서에 급수차량 확인
- ③ 급수관련 업체지원 가능여부 파악

계	임대차량	관용차량	비 고
74대	30대	44대	

(2) 응급조치

-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 농업, 공업, 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을 일시적으로 긴급 식수원으로 전환하여 사용
- 농작물에 대한 보호조치 강구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물 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유도
- ①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6단계(취수원 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구 분	기 준	내 용
I 단계	10% 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II 단계	10~30% 감량 공급시	○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 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자발적 유도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III 단계	30~50% 감량 공급시	○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IV 단계	50~60% 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개인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V 단계	60% 이상 감량 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VI 단계	취수원 고갈기	○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② 가뭄 발생예상지역의 한해장비 점검·정비

- 자체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③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 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 공급 실시
-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 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 포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 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④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 지하수법 개정 등 관련법령의 정비 착수
 - 지하수법을 지하수기본법으로 정비 착수
 - 지하수보전 위주의 제한적 개발·이용을 위하여 허가제 도입검토
 - 지하수개발 관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준공 신고제 도입검토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추진
 - 효율적 업무 추진과 중복조사 배제를 위하여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조사 업무 일원화 추진
 - 지하수 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전체적인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관정을 활용하여 보조 관측망 설치 운영 검토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
 - 장기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추진
- 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 예비용수 공급 시설 및 관로의 복선화

(3) 재해응급(상황)대책

① 상황관리

- 상황실 설치
 - 10~50% 감량 공급 시 가뭄상황실 설치 운영

○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 운영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 기능 수행
- 가뭄상황실에서 추진한 예산, 장비, 인력 지원상황 등을 당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②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희 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 (군, 소방서등)
-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 샘물 공급

③ 범시민 절수운동전개 및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홍보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은 수세식 변기 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 운동 등

2. 총력비상대책 - 가뭄 확산단계

(1) 용수대책

- 긴급 암반관장, 간이용수원 개발추진
- 민·관·군 보유 총동원 양수급수 실시
- 가뭄 영농대책 총력 추진
- 작물별 물 절약 대책실시 및 비상급수 추진
- 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에서 보유한 급수차량 이용하여 급수
- ② 안양소방서에 급수차량 지원을 요청하여 급수
- ③ 급수관련 업체지원 가능여부 파악

계	임대차량	관용차량	비 고
74대	30대	44대	

※ 물탱크 : 25대 (5톤 5대, 2톤 20대)

※ 화재진압 출동 외 소방차 지원요청 : 14대

(2) 응급조치

-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 농작물에 대한 보호조치 강구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물 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유도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절수운동 전개
- ①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희 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 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군·소방서)
 -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 샘물 공급
- ② 절수 캠페인과 목욕탕·수영장 등 영업시간 단축
- ③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 (가) 중앙지원
 -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50ha 이상 피해시 지원
 - (나) 자치단체 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대파대 (종자대 및 비료대)
 - ⇒ 농약대 (농약살포 소요액)

(3) 한해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 ① 유류대 및 전기료
 - 한해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의 50% 지원
- ② 장비구입비
 -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장비 구입비의 50% 지원
- ③ 시설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 설치비의 50% 지원

(4) 한해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① 지원대상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대상자

② 지원항목

- 이재민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3. 지휘소 설치 및 각 부서 활동

(1) 상황관리

- 현장 지휘소는 지휘소를 설치한 직후 가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
- 현장지휘자는 장기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뭄 현장에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지휘소가 설치한 지휘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 지휘소의 설치는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따름
- 지휘소의 자원봉사자 완장 및 민간 자원봉사자 등록대장과 각종 상황처리 대장 등 비치

① 상황실 설치

-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2개 구청에 상황실 설치 운영

②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각 유관기관별로 특성에 따라 설치·운영하되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 기능수행, 관계부서에서 추진한 예산, 장비, 인력 지원상황 등을 당일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4.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 유관기관 협조사항

-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근무 실시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
- 민·관·군 가뭄대책 장비 및 인력 총동원

① 환경수도사업소 협조

② 경제산업과 협조

③ 안양소방서 협조

※ 유관기관 협조사항 참고

5. 상황반 관리

(1) 상황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 주민들에게 가뭄에 대한 대처요령 홍보

(2) 홍보

- ①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절수운동 전개
- ② 가뭄극복 3대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③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 건물은 수세식 변기 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제6절 지 진

1. 개 요

1. 목 적

이 매뉴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지진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 활동에 적용
- 지진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시 적용

3. 위기형태

- 강진 발생으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발생
- 지진으로 인한 2차피해 우려시(여진 계속시)

4.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 / 고려 요소원칙

□ 인구밀집지역 강진발생

가. 대응 개념

- 목표 : 지진발생시 피해범위/규모 등 신속한 상황파악 및 신속한 피해현장 대응을 통한 피해 저감
- 대응 방향
 - 초기 관련정보 부재를 고려한 대응절차 자동 시행
 - 신속한 상황 전파 (유관기관, 주민, 지역 언론기관 등)
 -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의사결정
 - 신속한 긴급 대응 조치 : 긴급지원체계 가동, 주민대피조치 등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실시

- 화재 및 폭발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실시
- 유관기관 지원 요청 및 투입
- 위험지역 주민 대피 및 통제

나. 대응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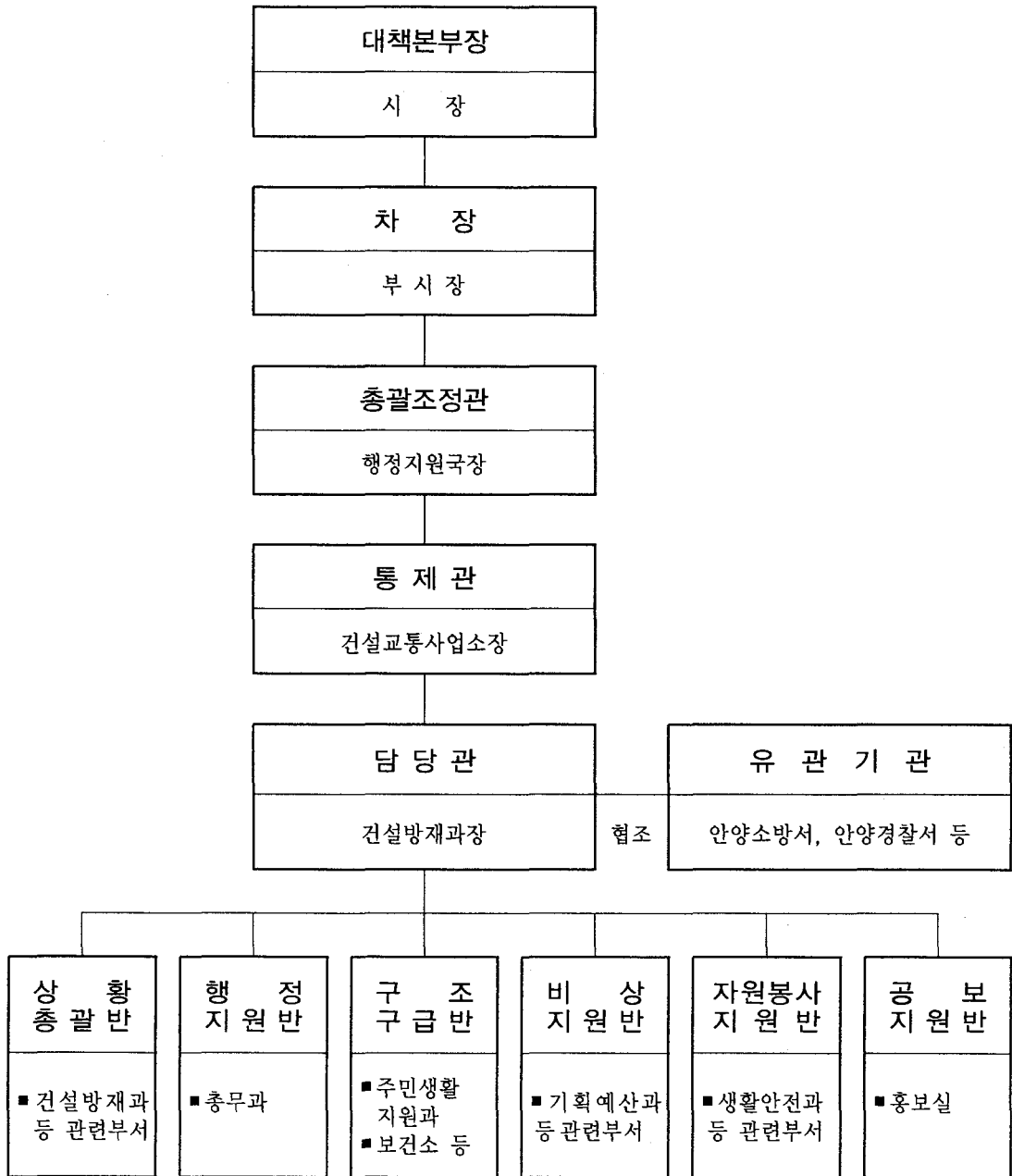
- 지진발생에 따른 가용수단을 동원한 피해 상황 파악 및 유관기관 전파
 - 피해 범위 및 규모의 신속한 파악과 집계
- 재난상황실 및 유관기관간 통신 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 2차 피해 방지 및 긴급 구조/구급 주력
 - 접근성 및 구조인력 투입시간 고려 교통소통 대책 최우선 확보
 - 강진 발생 후 화재 및 폭발 등 2차 피해 유발 요소에 대한 점검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 붕괴된 건물 내 인명 구조를 위한 가용 수단을 동원한 긴급 구조와 구급 시행
 - 여진 등을 고려한 붕괴위험 및 인명피해위험지역 조사 후 주민통제 조치
- 현장대책본부의 구성 및 가동
 - 현장대책본부의 설치 및 반별구성, 임무 부여
 - 유관기관이 참여한 현장대책회의 개최
 - 현장지휘체계 확립
 -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지·공간 통신망 확보
 - 각급 구조대(인력, 장비)의 배치
 -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및 현장 배치
 - 주민대피 및 주요시설 보호대책 강구
 - 피해상황 및 대응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다. 판단·고려 요소

- 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건물 및 구조물의 여진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의 진입 방지
- 지진으로 파손된 전기, 가스 등 주요 라이프라인의 재 공급시 안전성을 고려한 공급 방안 마련
- 지진 후 동반되는 여진피해, 산사태, 교량붕괴 등을 고려 지역 조사 후 safety line 설치 및 주민대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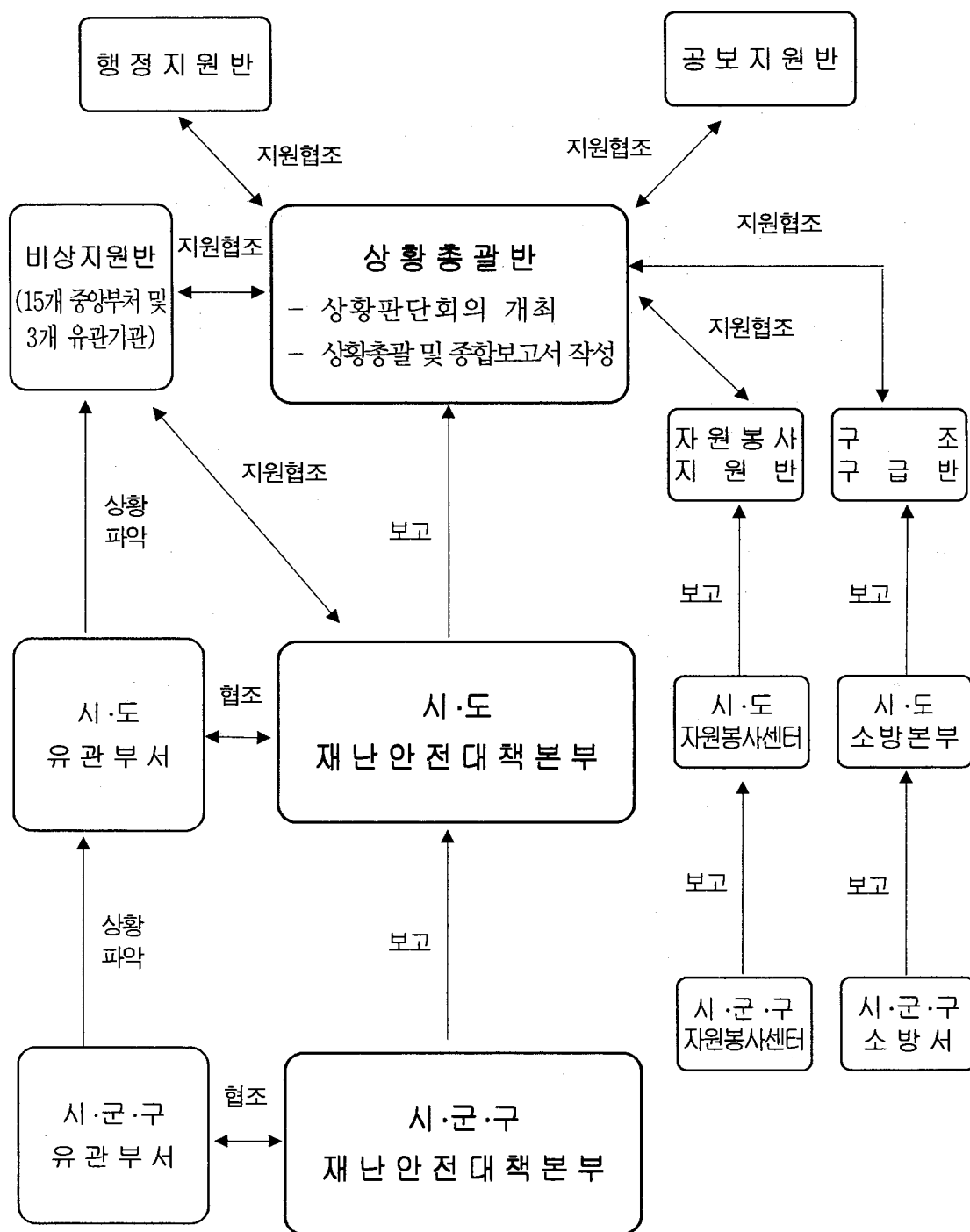
5.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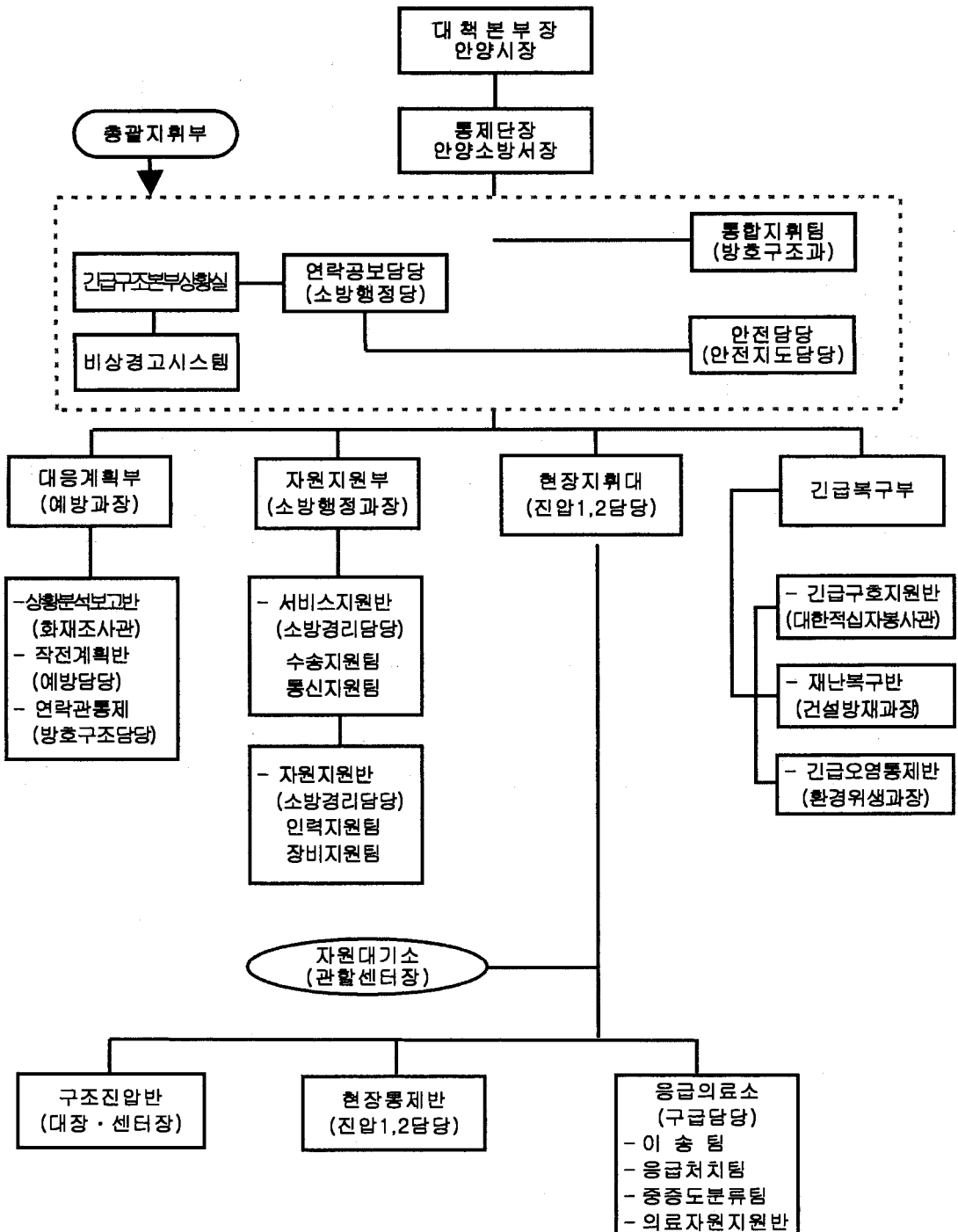


☞ 구성 및 임무 : 부록 1 참조

☐ 상황보고 절차도



□ 안양시 긴급구조통제단



II.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1. 인구밀집지역 강진 발생

1.1 상 황

《지진발생 상황》

- 시가지 중심에서 리히터규모 6.0(진도 VIII)의 강진발생으로 인접 ○○시·군·구 등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건물이 전파 및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 발생

《피해상황》

- 인명피해 : 00명 사망, 000명 부상, 000명 실종
- 건물피해 : 건물붕괴 00동, 부분파손 000동
- 도심 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도시로 탈출을 위한 차량 운행으로 도심 교통마비
- 지진에 의한 공포로 주민들이 거리에 뛰어나오고 원전시설 위험 등 유언 비어가 난무하며 일부 상점에 약탈현상 발생
- 시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진화 실패로 화재 확산
- 전주가 넘어지고 화재발생으로 전기 공급 불능
- 가스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가스공급 불능 및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발생
- 통신주와 이동통신 중계소가 파손되어 통신 두절
- 수도관 파열과 정수시설 피해발생으로 수돗물 공급 불가능

1. 2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관계기관/부서
현장투입前	○ 지진상황 접수 및 확인 ○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등 전파 ○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인력 및 장비 확보 - 긴급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 임무숙지 및 출동준비	해 당 동 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총 무 과
임무수행時	○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 현장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 ○ 이재민수용시설 운영·관리 ○ 사망·실종자 처리 ○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재난쓰레기 처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지원 및 협조 ○ 주민대피 및 안내 ○ 식용수 확보 및 지원 ○ 재난수습 보도지원 ○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해 당 동 과 총 무 과 총 무 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생활안전과 안양소방서 건설방재과 교통시설과 보 건 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 건 소 청 소 과 총 무 과 총 무 과 맑은물공급과 홍 보 실 생활안전과
철 수 時	○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귀	건설방재과 생활안전과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 총 무 과

1. 3 조치내용

가. 현장투입전

1) 지진상황 접수 및 확인

- ①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 확인 (지진발생지역 진앙, 규모 및 시간 확인)
- ② 지진상황 접수자는 즉시 상황관리자에게 보고

2)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① 보고

○ 상황실장 : 시장, 부시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기획경제국장, 건설방재과장 등

②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상황실 요원

○ 유관기관 상황실 유무선, Fax 등으로 상황 전파

③ 주민에 대한 재난 상황 신속 전파

○ 대국민 전파 : 상황실 요원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재난종합상황실에 등록된 문자서비스 동의자 전원의 휴대전화로 지진 재난 SMS 전송)

○ 지진발생 사실과 주민행동요령 등을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피해지역에 재해경보 발령 통지)
(필요시 시·도 경보통제소에 재해경보 발령 통지)

☞ 민방위경보 발령과 비상연락망 : 부록 8

3)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현황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대응 수준에 따른 현장투입 인력 및 장비 확보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파견 요청

※ 대규모 피해발생시 외국구조대별 통역가능자 유관기관에 파견 요청

○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에 관한 사항 등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긴급구조 통제단 설치 요청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요청

- 기동방역반 편성 요청

- 재난쓰레기 처리 지원 요청

- 음용수 지원 요청 등

- 대규모 피해발생시 외국구조대 국가별 통역요원 지원 요청 등
- 회의 결과 실행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요청
 - ☞ 지진발생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개최계획 : 부록 3

4) 현장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 ① 지진피해지역 인명피해 상황 파악
 - 현장에 파견된 소방서, 군 및 비상지원본부 등과의 정보 교환
 - 파견단체와 정보교환(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존재 여부 등)
 - 관계기관과의 통화시간·내용(협조요청, 상황전파 등), 현장파견부서와의 조치시간·내용(출동시간·인원, 현지조치 사항 등)
 - 인근 지역 주요시설(병원, 이재민 수용시설 등)의 위치 및 규모 확인
- ② 지자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정보를 실시간 공유
 - 지진피해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파악(연락처, 담당자 등)
 - 현장투입 유관기관의 구조장비 및 인력투입 파악
 - 구조지역의 할당, 현장지휘 관련 등

5) 임무숙지 및 출동 준비

- ① 지진피해상황 및 피해규모에 따라 출동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규모 결정
 - 지진피해가 확대 및 2차 재해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에 추가 장비 및 인력 자원 대기 요청
- ② 구조장비 및 투입부서, 인력의 투입준비·명령
 - 현장 투입될 관련부서 유관기관 및 직원에게는 현장에서의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 현장투입 부서별 장비 및 인력 확인
 - ○○과 : 관련장비(○○, △△ 등)
 - 할당된 지역의 교통상황 파악 및 접근방법 검토

나. 임무수행시

1) 현장이동·도착 및 상황보고·전파

- ① 현장출동시
 - 피해 현장에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이동로 파악·이동
 - 피해현장,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지진 피해 및 구조구급 상황 파악

② 현장 도착시

- 현장지휘본부 검토 및 위치 선정
- 지진피해 상황과 예측 규모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 신속한 업무수행 체계 구축

③ 상황보고·전파

- 내 부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방재과장 등
- 외 부 : 안양소방서, 군부대, 안양경찰서 등
- 언론사 : 지역 방송 및 신문사 등
- 보고내용 :
 - 기상청 지진정보 및 현 피해상황
 - 피해상황에 따른 대응수준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사항
 - 현장 도착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 등

2)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 및 운영

① 비상지원본부 설치

○ 비상지원본부 구성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하고 시장이 총 지휘책임
 - 실무책임자 : 재난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
-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4개반의 지원반을 구성
-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 ☞ 비상지원본부(C.P) 구성 및 근무반 : 부록 6

○ 지원반 임무 및 역할

- 초기대응반
 - 재난현장 2차 피해 발생 직후 조사 및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 최초 피해현황 파악 및 즉보
 - 사망·부상자 파악 즉보
 - 교통두절 상황파악 및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 상황분석보고반
 - 추가 지진상황 수시 전파
 - 재난대책상황실, 도 재난종합상황실과 hot-line 구축
 - 재난진행상황 파악
 - 재난피해 분석·판단

- 관계기관·단체협력반
 - 소관관리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마련
 - 소관관리시설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자재 확보
 - 타 기관·단체 인력·장비 필요시 지원 및 요청
 - 자원봉사자 접수 및 적정 배치·운영
- 대민보호지원반
 - 이재민수용 및 이재민구호
 - 사망·실종자 후송 및 사망자 장례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 민심동향, 미담사례 확인 및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② 현장대책회의 및 대응계획 수립

○ 현장대책회의 개최

- 현장대책본부가 설치된 후
- 사망 및 부상자가 대규모로 점점 늘어나는 경우
- 화재 등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책회의 개최시 회의내용 포함 사항

- 현장지휘 체계의 숙지 및 보고 체계운영에 관한 사항
- 유관단체 및 외국구조대의 인명구조 구역 할당운영에 관한 사항
- 차량 및 민간인 통제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재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 상황실 운영 및 통신망 운영 사항
- 주민대피 및 민간보호에 관한 사항
- 식용수 공급에 관한 사항
- 구조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
- 구급차량지원 차량통제,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구조계획 수립

- 구조의 우선순위 결정(생존자 우선 구조 후 사망자 수습)

③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실시 사항

- 지진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2차 피해 우려 지역 내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위험구역내 주민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조치
- 안양결창서장에게 통행제한 요청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 진화, 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요청
 - 관할 군부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의 응급조치 사항

- 화재진화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2차 피해 예상 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방재활동 확인 지시 및 확인
- 위험시설 경계(군부대 및 안양경찰서 등)

○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지시 및 확인

- 피해극심지역내 공급되는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요청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상황실에 전기, 가스 공급 차단의 필요성 파악 및 공급 차단 요청

④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 보고 실시

-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도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해 중앙긴급지원 요청
 - 시설별 피해 상황 집계 후 지휘체계 보고 및 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 지진 피해보고 양식 : 부록 2

< 각 기관별 피해 집계 및 보고 List >

유 관 기 관	주 요 내 용 (피해 집계 및 보고)	비 고
한국전력 안양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전력설비(송변전, 배전 등)	
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가스설비	
철도공사	열차(교량, 터널)	
안양교육청	학교시설	
군 부 대	군사시설	
KT안양지사	통신시설	

○ 유관기관별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⑤ 유관기관 대응조직 구성

○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확인 및 통신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구성 확인

·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관기관 상황실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유관기관은 상황실 구성 후 시 재난종합상황실에 구성 현황 통보

- 유관기관과의 통신 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주요임무 : 부록 4

3)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 부록 5

①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우회교통로 확보 : 안양경찰서 협조

- 현장 주변 출입자 통제 및 응급환자수송로 확보

- 현장주변출입자통제 및 교통관리

- 현장주변차량 및 출입자 우회소통 대책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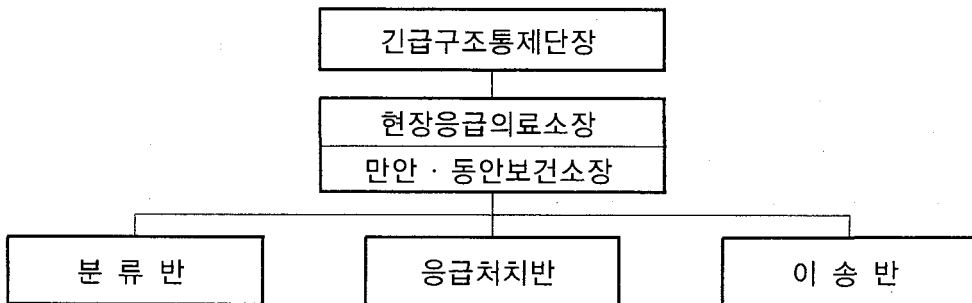
○ safety line 설치 : 비상지원본부(초기대응반)에서 설치

②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긴급구조차량 현장진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
 - 주차차량 이동 및 진입로 적치물 이동조치
 - 차주 미연락시 견인차량을 이용한 주차차량 이동조치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기 능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 조 직



○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 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5) 이재민 수용 및 관리

- 식료품, 음용수 및 생활필수품 등 확보 요청
- 이재민수용건물 관리 담당공무원 지정
- 통신 및 난방시설 등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

구 분	계		학 교		교 회		관공서		경로당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계	158	17,026	50	7,807	36	5,783	3	270	69	3,166
만안구	67	7,608	18	3,573	16	2,542	-	-	33	1,493
동안구	91	9,418	32	4,234	20	3,241	3	270	36	1,673

6) 사망·실종자 처리

- 사망자 임시 안치소(병원, 장례식장 등) 지정·운영

시 설 명	위 치	전 화	안치실	비 고
계	5개소		49	단위 : 구
샘안양병원 장례식장	안양5동 613-6지하 (안양병원내)	467-9770	11	
석수장례식장	안양2동18-1 (남서울병원내)	473-2929 473-6919	6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8동 342-105 (메트로 병원내)	467-9010 449-9000	10	
성심장례식장	평안동 896 (한림대성심병원)	455-3388	12	
(주)안양장례식장	호계동167-1	382-5004	10	

- 현장수습
 - 사고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및 부분시체 보관처리
- 신원확인자에 대한 조치
 - 유가족 시신 확인
 - 생전자료 수집, 사망자 신원파악 → 주민전산망
 - 사후자료 수집 → 전문 식별팀
 - 지문 및 유류품 검사 등
-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조치
 - 시료채취 가능시
 - DNA감식용 시료채취(2개씩) 및 인수
 - 시료운송수단 강구 → 국과수 및 감식기관 협의
 - 유가족 혈액채취 및 결과 통보
 - 시료채취 불가능시
 -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인정사망처리」 추진
 - 미확인 사망자 본적지 파악
- 시신 미수거 사망자 유품함 준비
- 사망자 수송
 - 영구차 확보
 - 이송지역별 현황 파악 및 협조
 - 이송지역 내 병원현황 파악 협조
- 장례지원
 - 종교단체와 협의 합동 위령제 의식 시행
 - 시신 안치병원에 분향소 설치 지원
 - 사망자 매장신고 등 행정절차 지원 장의사 연락망 확보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분향소 설치 등 유족 위로계획 수립
 - 유가족 의문사항 문답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시장 등 간부공무원 방문 위로 계획 수립 시행
 - 유가족에 사고 수습 일일상황 통보
- 유가족 구호
 - 여성협의회에 협조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
 - 부모사망자 유자녀세대 보호대책 강구
 - 분향소의 각종시설, 보안 지원

- 부상자 위로
 - 부상자가족 위문 및 애로사항 청취 조치
 - 부상자 신원확인 및 가족사항 파악 통보
- 부상자 구호
 - 현장 응급의료소 및 부상자 입원병원에 급식지원
 - 부모 부상 유자녀 보호대책
- 담당 공무원 배치(안내, 애로사항 조치, 연락체제)

7)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설사환자 등 전염성 질환자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 조치
- 피해지역, 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감시원 배치·관리
- 보건소별 기동 방역반 편성

< 방역물자 비축현황 >

구 분	계	살충제 (ℓ)	살균제 (ℓ)	유충구제용(ℓ)
계	1,898	422	1,034	442
만 안 구	400	150	150	100
동 안 구	1,498	272	884	342

8) 재난쓰레기 처리

- 동원장비 지정시 덤프, 집게차 등 지정 및 확보
- 권역별 쓰레기 임시 적치장 지정·운영
 - 적치장 매일 2~3회 소독 및 탈취재 살포
- 이재민수용시설 등 집단시설내 임시 화장실 설치·운영
- 경찰서와 협의 쓰레기 수거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 단속 요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현황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 설 규 모			
				인원 (명)	차량 (대)	중장비 (대)	수집운반량 (톤)
11개업체							
중앙개발(합)	권정애	안양3동 707-3	447-4916	21	9		15,974
동양환경(주)	전태수	안양8동 373-1	444-0139	18	9		10,602
세명개발(주)	서진식	호계3동 666-2	455-2132	19	7		15,034
(주)성일기업	홍형주	박달1동 7-12	448-2559	15	6		8,071
한우실업(주)	송두호	관양동 1473-1 부림빌딩 401호	422-2448	16	7		12,282
(주)현대산업	김중환	호계동 997(2층)	452-8504	14	5		11,081
(주)안양위생	원영희	안양2동 857-48	468-2861	14	6		10,614
원진개발(주)	박홍식	관양동1488-7 우정타운 202호	426-0484	16	7		9,434
남영개발(주)	양한두	비산3동 1026-11	388-9905	16	8		13,348
대정개발(주)	김춘자	안양6동 428-2 한솔주택상가102	444-9494	18	5		10,903
합동환경(주)	이종선	호계동 997(2층)	451-6427	17	7		9,40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차량 보유	비고
		주 소	전화		
8개업체					
세창환경건설(주)	민영노	안양동 220-13	443-2060	4	
동방산업(주)	차상호	관양2동 896	421-4034	3	
오광기업(주)	박범의	박달동 703	466-8491	3	
경기환경건설(주)	김경숙	관양동 1594	422-3333	4	
(주)태산기업	최태식	호계동 801-4	457-9950	8	
(주)정우환경개발	성기연	호계동 1000-34	424-8211	4	
(주)우성환경	김종배	안양6동 504-4 계림빌딩 402	459-5553	4	
(주)대진환경개발	김원태	호계2동 923-13 동남아빌딩 302	451-4211	3	

9) 자발적 민간 참여 관리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자원봉사지원반
 - 자발적 민간 참여 접수
 - 주요 건설업체의 중장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민간 참여의 지도 및 확인
 - 지역별 필요 인력 및 장비 확인
 - 민간 참여의 지역별 배분 및 인계

10) 주민대피 및 안내

-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을 통한 주민 대피 및 건물 출입 통제
- 재난방송요청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마을앰프, 자막방송 등)
- 여진발생 우려로 인한 주민대피령 발령 검토 및 발령
 - 대피장소 공지
- 이재민 발생 따른 긴급지원
- 지진 발생에 따른 보도문안

11) 재난수습 보도 및 지원

- 보도자료 작성
 - 지진발생 정보 및 현재 구조 및 피해상황
 - 지진피해현장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
 - 교통통제의 필요성
 - 피해지역 실상 보도 및 복구를 위한 전국민 동참 유도

○ 보도문

< 보도문안 >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월 ○○일 ○○:○○ ○○지역에 규모 ○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 (6.0)의 지진은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진도에 따라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진재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좀 더 강력한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발생시 나와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여진발생시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책상 밑이나 방석 등으로 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인화성 물건인 성냥, 라이터, 가스레인지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 가스, 수도 밸브를 잠급시다.
-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불을 끄시다.
-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TV, 라디오 등 재난방송 청취 및 행정기관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자료배포 및 기자브리핑 실시 : 일간지 및 방송사 등

12) 유관기관 추가 지원 요청

- 지원시점 : 동시 다발적 피해로 구조구급 및 치안유지 역량 부족시
- 지원기관 :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외교부 등
- 지원내용 : 인력, 장비 추가지원 및 관련전문가(외국구조대 통역가능자 등) 지원

13) 지진피해 조사 실시

- 피해조사는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시설물별 피해 조사
- 복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여 처리
- 복구대책은 피해유형별로 소관부서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

다. 철수시

1) 철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회의내용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완료에 따른 복구계획 등 후속조치 강구
- 실종자 대책 마련
- 철수에 따른 대안 마련

○ 회의 결과 실행

- 피해지역 복구 등 필요사항 지원 요청

2) 유관기관 지원사항 파악

○ 인력 및 장비지원 현황 파악

- 기관 및 단체명, 지원인원(대표자외 명), 지원기간 등
- 장비명, 수량 등

○ 차량 및 출입자 통제, 치안유지 협조(경찰, 군)

○ 식료품, 식수 및 생필품 등 지원(소방서, ○○단체 등)

○ 구조 및 환자수송(병원, 119구조대 등)

3) 복구활동 및 복구계획 수립

○ 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자원봉사센터 중심의 봉사자 접수 및 배분
- 동원지정 된 장비 소유자의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배치
- 피해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및 장비 지원

○ 공공시설물

- 주요 도로·교량의 우회도로 및 가교 설치 등 응급복구 추진
- 하천시설은 수충부·주요 구조물 우선 복구로 2차 피해 예방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 신속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 파손된 철도의 신속한 복구 추진 및 대체 수송대책 시행
- 응급복구 우선순위 사전 지정 순위에 따라 복구 추진

○ 기타 시설물

- 역 등 다중이용시설 우선 응급복구 추진
- 전·반파된 주택은 안전점검 후 이용 및 철거 조치

- 국민생활 필수시설(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우선 복구 추진
- 복구계획 검토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복구계획 검토

4)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 지진피해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여부
 -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여부(지휘체계 확립 여부)
- 지진피해 시설물 통제여부
 - 피해가 발생되어 이재민 수용시설로 피난한 건물의 통제여부
- 치안유지 여부
 - 도난 및 폭동 방지 등 치안 유지 여부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파견 기관간 협조체계 또는 보고체계(통신), 언론보도의 원활성 여부
-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부
- 기타 지진피해 현장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5) 현장지휘본부 해체 및 현장출동 부서의 복귀

1.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안양소방서

- 지진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구급 활동 실시
- 피해지역 주민대피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지원
- 대규모 사체수습 지원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안양경찰서

- 지진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에 따른 자체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재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재해현장의 교통통제
- 피해지역 주민대피
-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 등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수도권단, 1580부대, 제167연대 3대대

- 지진재난에 유관기관과 공조유지
- 재난상황실 핫라인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 조사
- 기관 협조요청에 따른 대응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긴급 구조 및 현장 확인 인력지원
 - 주요 관공서 경비지원 요청 협조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및 지원
- 지역 안정화대책 각종 소요사태 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 안양교육청

- 학교 피해시설 피해 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응급수업대책 수립 마련

- 학생피해조사 및 보고
- 비상시 이재민 수용시설 운용
- 이재민수용에 따른 제반 조치

☐ 수원기상대

- 지진상황의 파악·분석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환경보전과, 청소과

- 매립지 등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환경오염 위험시설 점검 및 대응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맑은물공급과, 하수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피해지역에 대한 응용수 및 하수처리 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응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 상·하수도 피해시설물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식수원 오염대비 지역 순찰

☐ 경제산업과, 위생과(산업분야)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피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 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녹색정책과(에너지분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전기시설, 가스설비 및 정유설비 등 피해조사 및 긴급 복구

- 주요관공서 전력지원대책 수립
- 전력수급 대책 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및 가스공급대책

□ 문화예술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요원 파견
- 문화재 피해 현황 파악 등 자체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조치
-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대책 강구

□ 정보통신과/홍보실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해 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 전파(TV, 라디오)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시민 홍보 및 지원
- 방송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원
- 보도자료 제공 및 주민 홍보계획 수립
- TV, 신문 등 언론사와 협조체제 구축
-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통신대책
- 재해수습상황 사진촬영 및 기록
- 통신시설의 피해상황파악 및 응급 대책

□ 건축과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건축물 시설 피해조사
- 2차 피해 대비 붕괴우려 대형 사업장 점검 실시
-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파악 관리
-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
-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및 피해 점검·확인 등 대책 마련
-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대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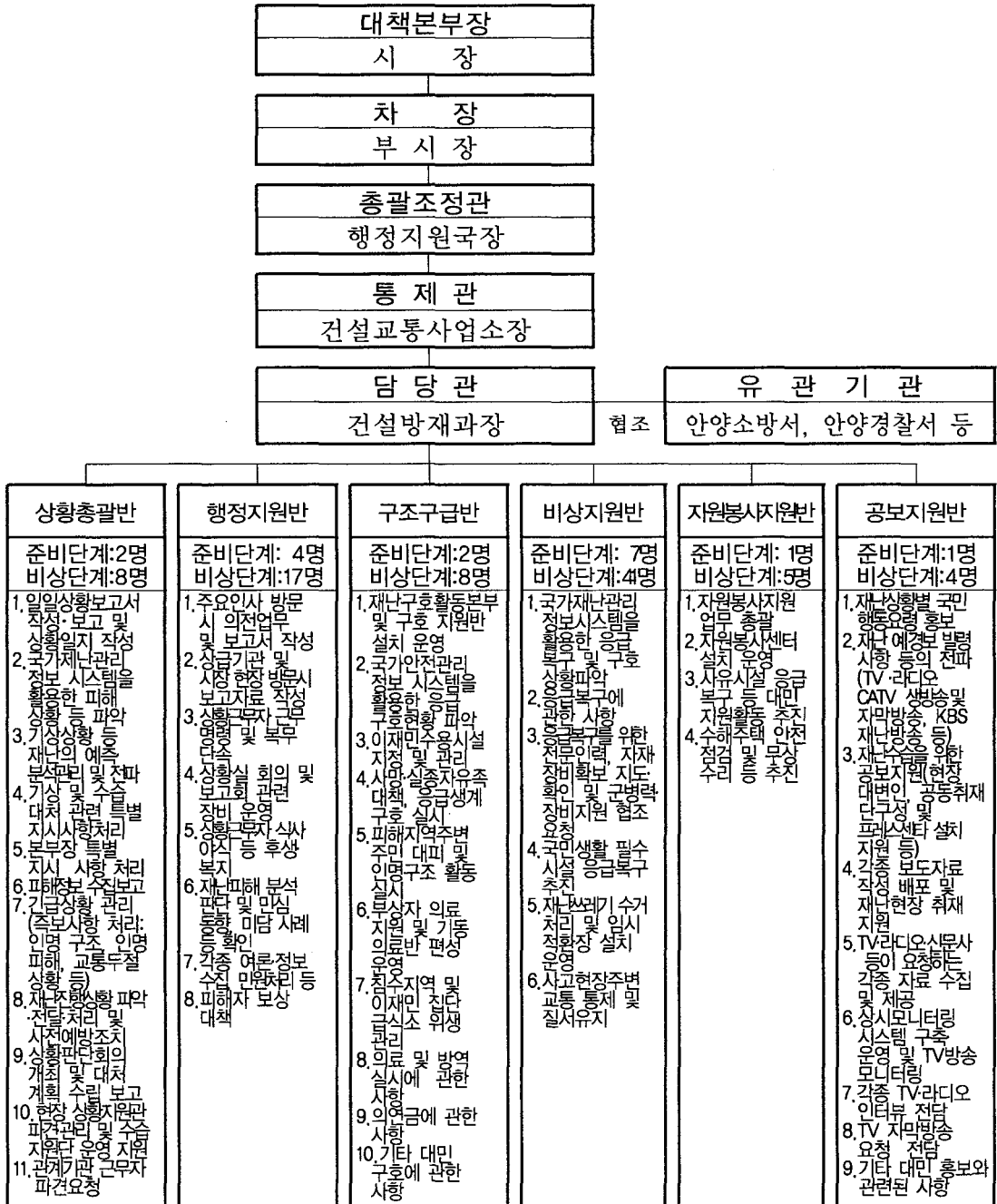
□ 만안·동안보건소

- 기상상황 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상황 담당자 파견
- 자체시설 피해조사
- 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 의료 지원
- 각종 의료, 구호물품 수급대책 마련
- 전염병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 및 실시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부록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단계 근무조 편성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비상단계 상황실 및 사무실 근무조 편성 기준

○ 근무조 인원 : 차장 외 83명

○ 총 책 임 관 :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지원국장)
통 제 관(건설교통사업소장)

- A조 (전직원 1/2상황근무)

구분	상황총괄반 (8명)	행정지원반 (17명)	구조구급반 (8명)	비상지원반 (41명)	자원봉사지원반 (5명)	공보지원반 (4명)
반장	건설방재과장	총무과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건축과장	가족여성과장	홍보실
A조	건설방재과 8	총 무 과 1 기획예산과 2 만 안 구 7 동 안 구 7	주민생활지원과 3 만안보건소 3 동안보건소 2	건 축 과 4 교통행정과 3 문화예술과 2 체육청소년과 2 사회복지과 2 주민생활지원과 1 가족여성과 2 경제산업과 5 도시계획과 2 도시정비과 6 생활안전과 2 시설공사와 2 녹지공원과 2 맑은물공급과 2 하 수 과 1 청 소 과 3	가족여성과 2 생활안전과 1 소 방 서 2	홍보실 4

- B조 (전직원 1/2비상근무)

구분	상황총괄반 (8명)	행정지원반 (17명)	구조구급반 (8명)	비상지원반 (41명)	자원봉사지원반 (5명)	공보지원반 (4명)
반장	건설방재과장	총무과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건설과장	가족여성과장	홍보실
B조	건설방재과 8	총 무 과 1 기획예산과 2 만 안 구 7 동 안 구 7	주민생활지원과 1 만안보건소 3 동안보건소 2	건 축 과 4 교통행정과 3 문화예술과 2 체육청소년과 2 사회복지과 2 주민생활지원과 1 가족여성과 2 경제산업과 5 도시계획과 2 도시정비과 6 생활안전과 2 시설공사와 2 녹지공원과 2 맑은물공급과 2 하 수 과 1 청 소 과 3	가족여성과 2 생활안전과 1 소 방 서 2	홍보실 4

소관과에서 A.B조로 편성 교대근무

【부록 2】

지진 피해보고 양식

□ 각부서

구 분	지 역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시 00동	○ 건물 00% 피해 (전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주유소 0동 전파 등) ○ 지역 00% 피해 ○ 인명 피해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지원 요청 사항
경미 피해	00시 00동 일원	○ 건물 00% 피해 ○ 주요시설 피해 ○ 지역 00% 피해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유관기관

구 분	지 역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시 00동	○ 시설 00% 피해 ⇒ 2차 피해 현황 ○ 주요 기능 상실 여부	○ 긴급 복구 현황	○ 지원요청사항
경미 피해	00시00동 일원	○ 시설 00% 피해	○ 긴급 복구 현황	

【부록 3】

지진발생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개최계획

지진발생으로 우리지역에 인명피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완벽한 대처계획 수립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00년 00일 00일 00시 규모 0.0지진발생

□ 회의 일시 : '00. 00. 00. () 00:00

□ 회의 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 참석 인원 : 00명

- 회의주재 : 본부장(시장)
- 회의참석 : 시 재난관련부서장, 유관기관
- 간 사 : 재난관리담당

□ 주요회의 내용

◆ 지진발생으로 인한 유관기관간 대처계획 협의 ◆

- 지진발생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제 운영강화
-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태세 확립
 - 현장 CP형 비상지원본부 설치 여부 및 파견근무자 (유관기관) 소집 대상 범위 결정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피 철저 이행 홍보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2차피해 예방대책 협의 및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등

□ 행정사항

○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

부서 및 기관별	검 토 사 항	비고
경제산업과	농림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계획 수립	
주민생활지원과	이재민 응급구호 계획 수립	
도시정비과	기반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건축과	주택피해조사	
맑은물공급과	상수도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하수과	하수도시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청소과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건설방재과	재난상황의 총괄계획 수립	
수도군단 제1580부대 167연대 3대대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안양교육청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 주택 등 사유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공공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한국전력안양지점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가설 ○ 필요시 피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기 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구내임시 내전설비 설치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수원)	○ 주택 등 사유시설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공공시설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회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KT안양지사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위통신망 지원 ○ 통신 응급소통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재난대책 상황보고

0000.0.0 00시현재
○○○○○○○○

상황개요

○○지역에 리히터규모 6.0(진도Ⅷ)의 강진발생으로 상당수의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 발생

□ 지진개요

- 진원시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 진 양 : 35.38 N, 127.22 E (○○군 동쪽 9km 지역)
- 규 모 : 3.3

□ 피해상황

- 인 명 : 0명 (사망 0명, 부상 0명, 실종 0명)명
- 이 재 민 : 0세대 0명
 - ○○동 0세대/0명, ○○동 0세대/0명
- ※ 000대피 00명 (재해구호물자 생필품 0세트, 취사용 0세트 지급)

□ 재산피해 : 백만원(잠정치)

- 건물피해 : 동 (전파 0동, 반파 0동)
- 공공시설 : 000백만원

구분 \ 시설별	도 로	교 량	소규모	기 타
물 량	건/ m	건/ m	건/ m	건/ m
피 해 액(천원)				

- 사유시설 : 000만원

□ 주요 조치사항

【 비상근무체제 가동 】

- 비상근무 : 000명(각과 00, 구청 및 동 00)

- 재난예방대책 상황지시 및 실종자 수색 강화 지시 0회
-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군부대, 소방서,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한전, 한국통신 등

【 건물 붕괴예상에 따른 긴급 주민 대피 】

- ○○동 00여명 사전대피 조치

【 위험지역 사전조치 】

- 붕괴위험 교량(000개소), 사전예찰 및 주민홍보(000개소)

□ 응급복구 지원상황

인력·장비 지원현황

- 인력지원 : 000명
 - 공무원 000, 군부대 00, 주민 00
- 장비지원 : 불도저 및 덤프, 굴삭기 등 00대

【 건물피해 조치 】

- 피해현황 : 0동

계	전 파	반 파	비 고
0동	0동	0동	

※ 전파·반파 피해 추정액 : 00백만원 (전파는 공가)

⇒ 인력동원 : 00명(공무원 0, 소방 0, 주민 0)

⇒ 장비동원 : 덤프 0대, 굴삭기 0대, 기타 0대

【 교량피해 조치 】

- 피해현황 : 0개소 0.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완료 : 00개소 0.00km
 - ⇒ 장비 00대(백호우 0, 덤프 0등), 인원 00명 동원

【 도로피해 조치 】

○ 피해현황 : 0개소 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 완료 0개소 0.0km, 추진중 0개소 0.0km

⇒ 장비 0대(백호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인원 00명 동원

【 기타시설 조치 】

○ 피해현황 : 0개소 0.0km

○ 복구현황

- 응급복구 완료 0개소 0.0km, 추진중 0개소 0.0km

⇒ 장비 0대(백호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인원 00명 동원

□ 향후계획

○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피해 예방

○ 피해지역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쓰레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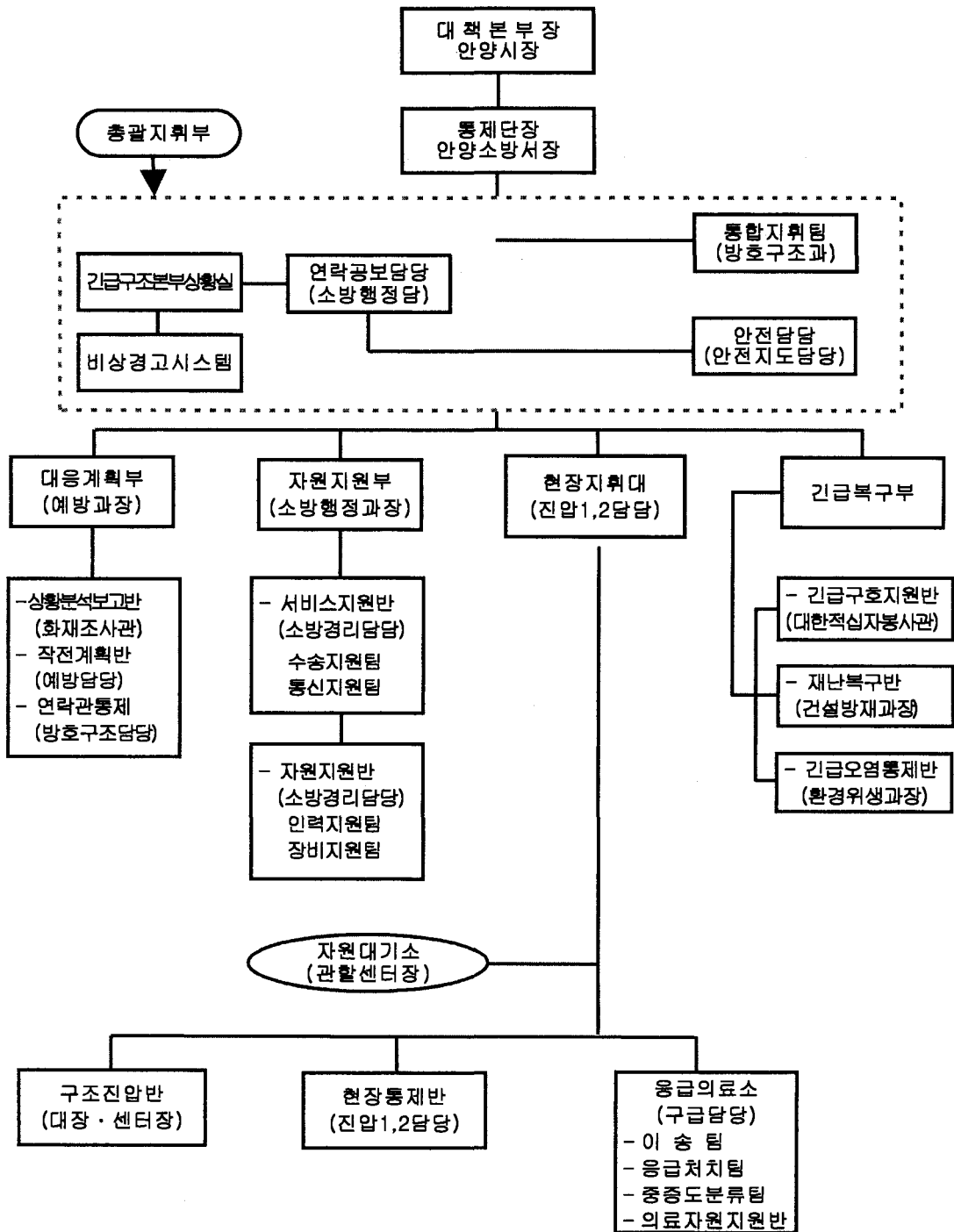
【부록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주요임무

기관 · 단체	연락처	주요 임무
수도군단 1580부대 제167연대3대대 9703부대	449-0300 440-3344 468-5181 459-0113 468-1942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안양교육청	380-7056 380-7214(주) 380-7090(야)	○ 응급 수업대책 및 휴교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390-7400(주) 390-7415(야)	○ 주택 등 사유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공공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한국전력 안양지점	450-2212(주) 450-2203(야)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가설 ○ 필요시 피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기 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구내 임시 내전설비 설치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 감전예방 안내전단 배포 등 전기안전 홍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259-3500 1544-4500	○ 가스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가스설비 가설 ○ 가스누출 점검 및 응급조치 ○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홍보
삼천리도시가스	458-1809 (상황실)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회	459-6410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급식대상자가 많거나 장기화 될 경우 인근농협 급식센터와 협의)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KT 안양지사	385-0060 (상황실)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위통신망 지원 ○ 통신두절지역 현황 파악 ○ 통신 응급소통

【부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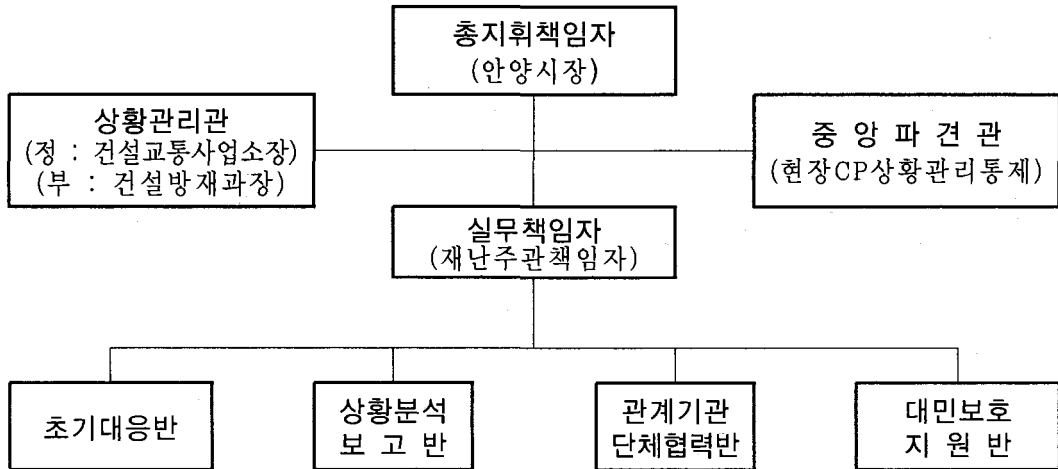
안양시간급구조통제단 조직도



【부록 6】

비상지원본부(C.P) 구성 및 근무반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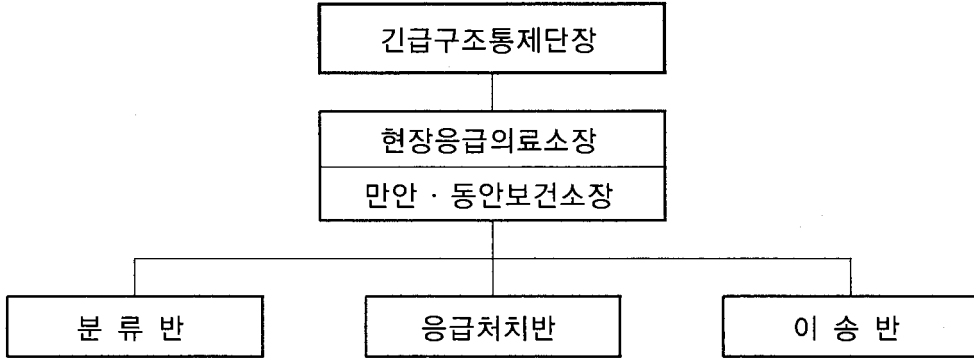
□ 근무반편성

구 분		초기대응반(5)	상황분석보고반(5)	관계기관단체 협력반 (5)	대민보호지원반(5)
A조	반장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반원	건축과 2 하수과 1 건설방재과 1 맑은물공급과 1	도시계획과 2 교통행정과 1 총 무 과 2	총 무 과 2 생활안전과 2 경제산업과 1	사회복지과 2 환경보전과 1 만안·동안보건소 2
B조	반장	시설공사과장	도시정비과장	생활안전과	환경보전과장
	반원	건축과 2 하수과 1 건설방재과 1 맑은물공급과 1	도시계획과 2 교통행정과 1 총 무 과 2	총 무 과 2 생활안전과 2 경제산업과 1	사회복지과 2 환경보전과 1 만안·동안보건소 2

【부록 7】

현장의료소 조직 및 임무

□ 조 직



□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 급 처 치 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부록 8】

민방위경보 발령과 비상연락망

□ 경보발령 권자 : 시장

□ 경보발령 근거 : 전달규정 제17조(재해경보의 발령)

- 재해경보는 시장·군수가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시·군 경보전달 책임자 또는 도 경보통제소장은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재해경보의 전달요령 규정에 따라 재해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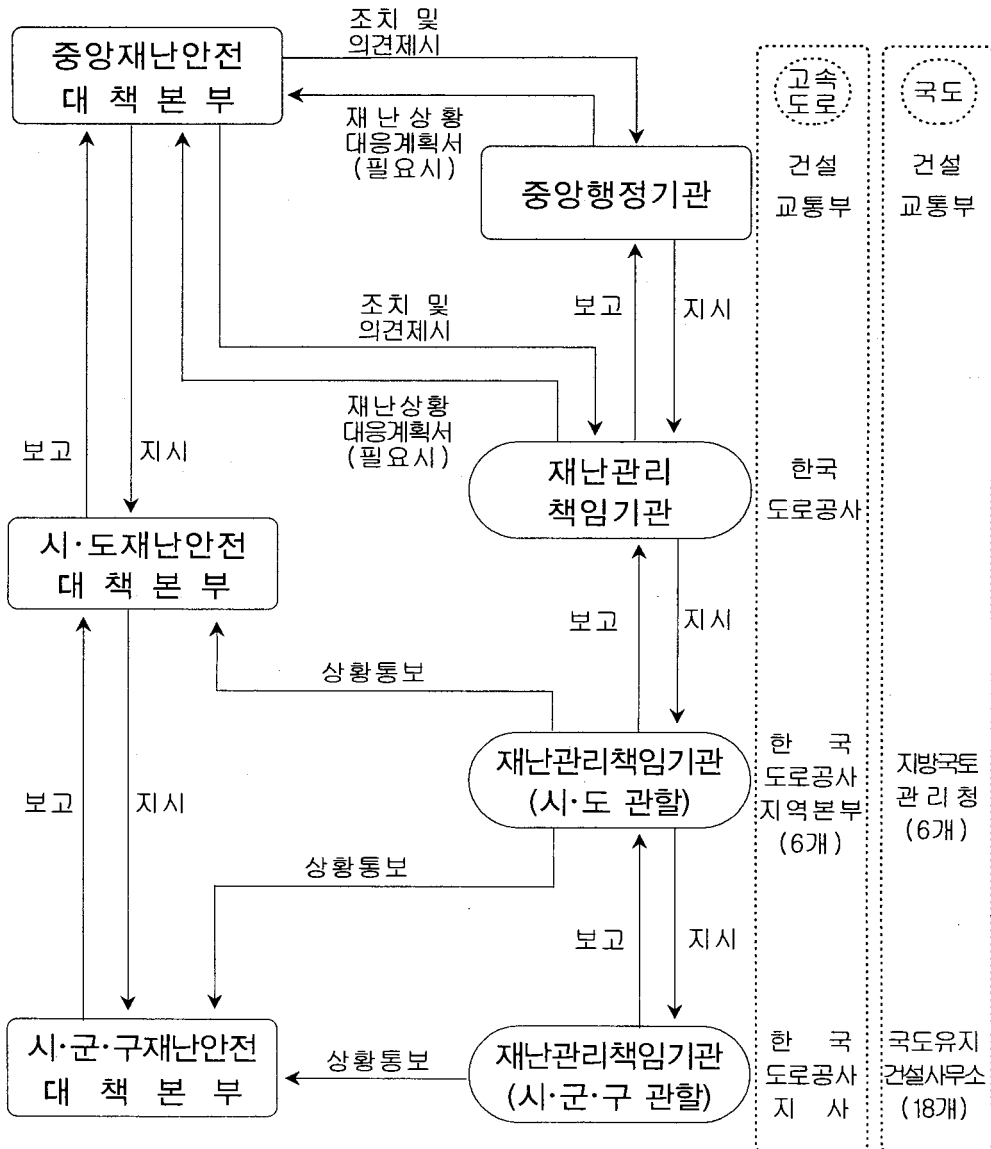
□ 재해경보의 종류

- 재해경계경보
 - 발령시기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재해위험경보
 - 발령시기 :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 재해경계해제
 - 발령시기 : 재해경계경보 또는 재해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해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해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 비상연락망

성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 무 실	휴 대 폰	
신 영 옥	389-2020	010-3011-8046	정보통신과장
김 득 수	389-2200	011-222-2511	통신운영팀당
손 종 택	389-2320	010-2504-5282	담 당 자
백 승 찬	389-2575	010-5292-4933	"

상황보고 체계도



【부록 9】

지진 피해보고 양식

□ 각부서

구 분	지 역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시 00동	○ 건물 00% 피해 (전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주유소 0동 전파 등) ○ 지역 00% 피해 ○ 인명 피해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지원 요청 사항
경미 피해	00시 00동 일원	○ 건물 00% 피해 ○ 선박 및 기타 피해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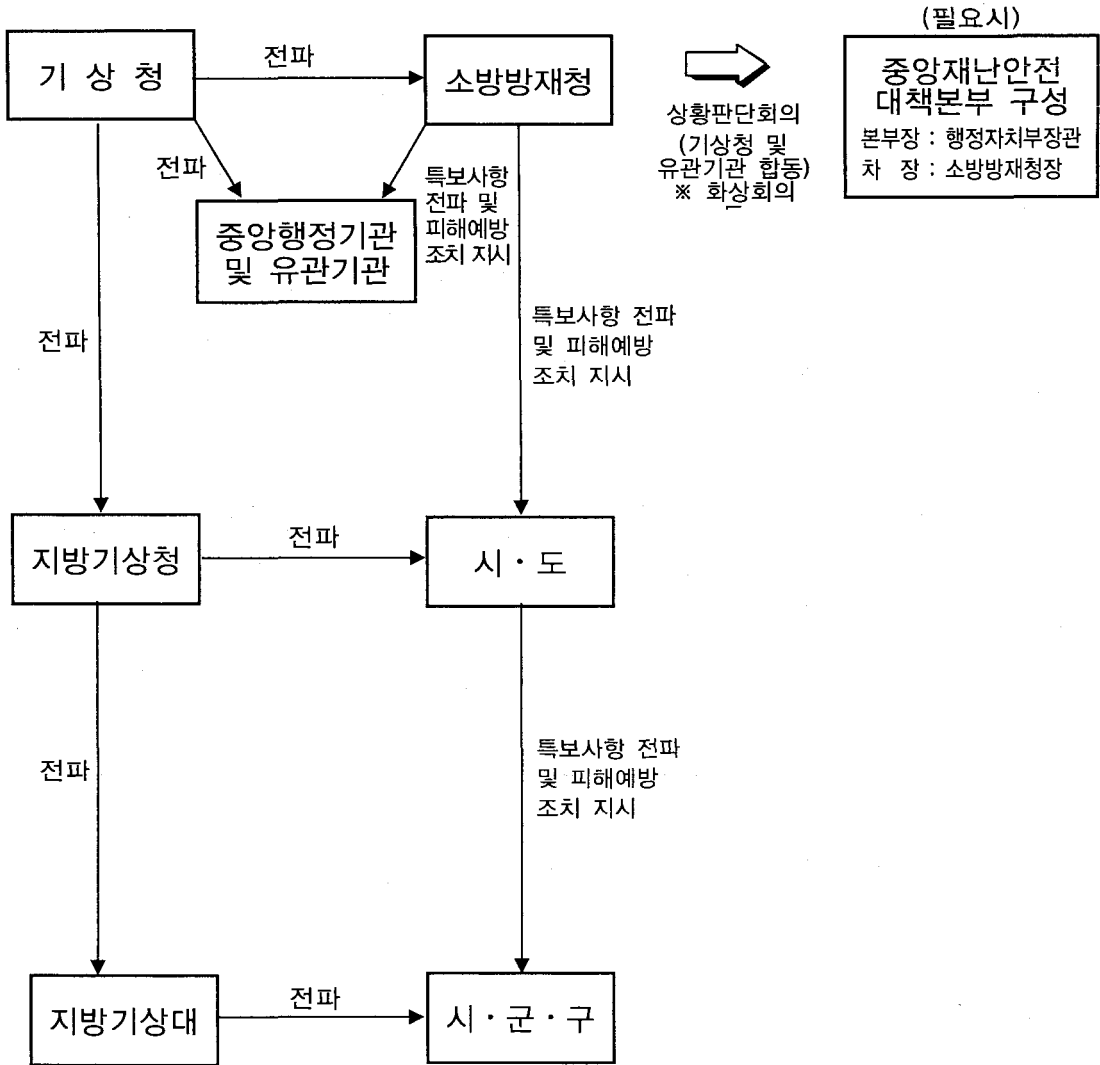
□ 유관기관

구 분	지 역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시 00동	○ 시설 00% 피해 ⇒ 2차 피해 현황 ○ 주요 기능 상실 여부	○ 긴급 복구 현황	○ 지원요청사항
경미 피해	00시 00동 일원	○ 시설 00% 피해	○ 긴급 복구 현황	

【부록 10】

지진 발생시 업무 흐름도

< 지진 정보 전파 체계 >



1. 전파방법 : 컴퓨터 통신, 동시동보 팩스,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2. 국민홍보 : TV·라디오, 아카넷TV, CBS문자서비스, 앰프방송,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
3. 지진특보는 기상청에서 해안지역 시·군·구에 직접 전파

제7절 폭염

- 지구 온난화로 무더위,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우리나라 무더위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단계별 폭염예방 및 대책 >

단계별	예 방	대 책	국민행동
폭염예보	· 폭염상황 전파 · 부문별 폭염대책 점검 · 주요시설 정전대비 준비 · 비상연락망 정비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대규모 시설순찰 실시 · 관련기관 유사시 체제 전환 · 비상 대기 태세 확립	· 방송 등 청취, 폭염대비 · 주요시설의 정비점검 · 냉방장비 및 식수준비 · 노약자 및 어린이 예방
폭염주의보	· 비상근무 실시전파 · 시민행동요령 전파 · 안전사고 사전예방 · 유사시 출동태세	· 비상근무 실시 · 홍보 및 순찰 강화 · 대형사고 예상지역 집중 근무 · 관련기관 비상근무실시	· 야외활동·외출 자제 · 외출시 모자, 선캡 등 착용 · 생체 유지를 위한 운동 실시 · 유사시 119 신속 연락 · 식중독 및 일사·냉방병 등 예방

- 우리나라 기온전망

- 최근 이상기온현상 등으로 인하여 매년 5월부터 8월 상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을 예견됨

1. 중점계획

- 폭염에 대비한 종합적인 시스템 확립
- 신속·정확한 정보유지 및 상황전파
 - 폭염상황대책반 구성 및 사후처리 확보
 - 폭발위험성이 많은 주요시설물 점검
 - 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유지

- 단계별 상황대비 및 주민행동요령 마련
 - 평시(준비)단계 : 폭염예보
 - 유사시 단계 : 폭염주의보
- 실·국 분야별 대응체계 확보
 - 실·국 분야별 폭염대책 계획수립 및 관련기관 확보
- 유사시 대내외적 관련기관·인력 확보 및 체계 확립
 - 관련기관 확보 및 체계 확립
 - 국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
- 대 주민홍보를 통한 실효성 확보계획
 - 주민행동요령 사전홍보
 - 폭염상황 실시간 제공
 - 대중매체를 통한 예방 및 대응방안 홍보

2. 종합추진계획

가. 폭염상황

- 폭염예보
 - 주간 최고기온이 32℃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야간 최저기온이 25℃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폭염주의보
 - 일평균 온도 및 습도를 기준으로 한 온열지수가 낮 동안에 40℃일 때
 - 야간 최저온도가 26℃를 넘는 상황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지속될 시

나. 폭염이 미치는 영향

《 개 인 》

- 무더위는 느끼는 온도 25℃ 이상
 -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촉진
 - 일사병, 열 경련, 열에 의한 피로, 뇌일혈, 냉방병 등
- 사망률 증가 온도 30~32℃
 -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36℃가 되면 30℃일 때 보다 50% 증가
 - 고령자, 노약자 등이 체력적으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수면에 적절한 온도 18~20℃

- 밤의 기온이 25℃ 이상이면 열대야로 불면증, 불쾌감, 피로감 증대 및 탈진 등 증상 발생(노약자 주의)
- 수면 장애로 인한 개인·사회적인 손실발생 (미국의 경우 연간 150억 달러)

《 산 업 》

○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등)의 생산량 감소

- 고온으로 인한 벼도열병, 이삭도열병 등으로 쌀 생산에 영향
- 바닷물 온도상승으로 인한 적조발생
- 닭, 소,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한 양계장, 목축업, 양돈업 등 피해

○ 2, 3차 산업에 있어서는 정전에 따른 기회손실, 생산성 감소 등

- 여름철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사태로 기회 손실 발생
- 기온상승에 따른 집중력 감소, 업무능률 저하로 생산성 감소 우려
- 야외 작업중단으로 인한 공정 차질
- 사무실, 작업장 등 적절한 기온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 증가

《 사회전반 》

○ 야채, 농축산물, 생활필수품등 수급 차질로 주민의 생활 불편 가중

- 생산량 감소 및 재고 물량 감소로 품귀 현상 및 가격 급등
- 가계 부담 증가로 경제난 가중

○ 사회적 생체리듬 상실로 인한 후유증 발생

- 관광지, 휴양지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교통체증, 무질서등 발생 우려
- 열대야로 강가 등 야외공원에서 수면 등으로 피곤 누적
- 자정 이후 쇼핑족(올빼미족)등 증가로 일상생활에 악 영향

○ 각종 전염병 발병 가능성

-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 증가
- 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탈수 등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접촉도가 증가하면서 전염율 증가
- 음용수로 인한 수인성 질환과 음식물 매개 질환 증대

○ 사회전반의 기강 해이, 무기력감 확산으로 우발적 사고 증가

-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짜증이 자주 나고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게 되며, 우발적 강도·살인 사고도 증가 우려

다. 폭염상황 관리체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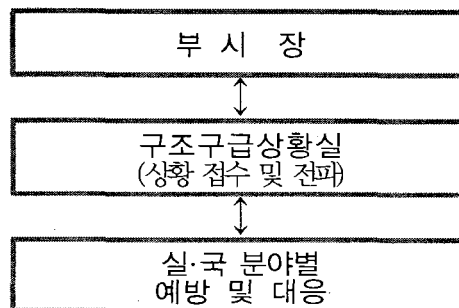
【 기 구 】

- 상황접수 : 안양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소방서 구조구급 재난상황실
- 상황처리
 - 응급처리 : 안양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소방서
 - 예방 및 복구 : 각 부서별 소관 실·국

【 실·국별 기능 】

- 홍보실
 - 주민홍보
- 건설교통사업소, 도시국
 - 폭염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 추진
 - 대규모 공사장, 유원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기획경제국
 - 에너지 수급관련 예방 및 대응
 - 농업·임업·축산분야 예방 및 대응
- 행정지원국
 - 유사시 주민 및 공무원 전파, 시·군 협조 체계 구축
- 보건소
 -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대기 및 급수, 생활환경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소방서
 - 상황접수 및 전파, 순찰 및 응급조치 계획수립

라.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도



3. 분야별 폭염예방 및 대책

가. 홍보 분야

- 폭염발령 단계에 대한 비상연락 등 신속한 정보제공
 - 폭염예보 및 폭염주의보 경보전달체계 확립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시민행동요령 홍보
 - 전광판, SMS문자통신, 모바일, 지방언론, 공중파 방송을 통한 실시간 홍보

나. 보건 분야

- 개인건강관리 집중홍보 강화
 - 시민행동요령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실시간 홍보 실시
-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폭염대책 자체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의 냉방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예방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요원에 대한 폭염 사전예방 요령 교육 실시
- 세균이질성 등 수인성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강화
 - 비상방역 실시강화 및 병원, 약국 등 비상근무체계 협조요청
 - 피서지 설사환자 신고센터 설치와 식품접객업소 위생 강화 및 예방요령 적극 홍보
-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전개 및 대인홍보 강화
 - “건강한 여름나기” 요령을 홍보실은 지속적인 홍보
- 폭염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행동요령 전파
 - 역학 조사반 및 전염병 퇴치사업단 합동조사 실시
 - 발병원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예방요령 주민홍보

다. 환경 분야

- 폭염에 따른 오존피해가 증가됨으로 예방 및 저감대책 추진 강화
 - 오존경보 상황실운영과 경보발령 전파체계 확립
 - 공회전 차량단속 강화 및 살수 차량을 이용한 도로 물청소 실시
- 하절기 쓰레기 수거 대책
 - 환경미화원 폭염에 따른 일사병 예방관리 철저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지도·단속 강화 및 신속처리
- 부패, 악취 등 사전방지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철저
-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지원
 - 고지대 등 급수 취약지역에 급수차를 활용한 급수지원 실시
 - 취수장(저수지) 녹조현상 발생 및 간이상수도 수질오염 대책마련

라. 농정 분야

- 폭염으로 인한 수리시설 등에 안전시설 설치
 - 익사사고 우려지역 위험 안내표지판 및 철조망 설치
 - 공사 중이거나 중단된 사업장의 웅덩이 매우기 및 순찰강화
-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 폭염 시 가축보호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
 - 그늘막, 선풍기 등 폭염에 대비한 시설 확충

마. 건설분야

- 대규모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재난발생 위험요소 제거
 - 하계 휴가철 주민이용이 많은 건축물 및 시설물 일제점검
 - 전기 등 에너지 소비과다시설 합동점검
-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시간 준수
 - 건설공사 시에는 하계 휴가철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 작업지양
-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공사 인부들 장비착용 후 작업 실시하도록 권고
 - 도로보수 및 건설공사장 교통안전관리요원 증원배치

바. 소방 분야

- 대량위험물제조소 등 특별소방검사 실시
 - 점검반을 편성운영 및 안전교육 병행실시 의법 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
- 화재출동태세 확립 및 진압 대책 강구
 - 신속한 출동 및 진압태세 유지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구축
- 상수도시설 단수대비 소방용수 확보
 - 대체 활용 가능한 소방용수시설 파악관리
 - 저수조 관리 철저 및 취·정수장으로부터 직접 공급체제 유지

- 폭염대비 인명구조대책
 - 수난구조장비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인명구조·응급처치 전개
 - 잠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인명구조 협조체제 구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통제선 설치 및 예방순찰 활동 강화
- 노약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구급이송 대책마련
 - 무선 페이징 시스템 수혜대상자 정기점검 등 관리 철저
 -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급봉사활동 홍보 및 강화

4.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

1) 폭염 시 각종 Mass-Media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습득

- 개인건강에 주의할 수 있도록 ‘오존경보’나 ‘열파주의보’ 등 현재의 기온을 살피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한다.

2) 폭염에 노출시 탈수증세, 만성질환 악화 또는 열사병에 대비

- 팔, 다리 혹은 복부 근육의 경련, 심각한 경우 현기증, 무력감, 혹은 비정상적인 불면증에 시달릴 경우 몇 시간동안 활동을 중지하고 서늘한 곳에 머물고 수분을 공급하고 휴식을 취함
- 증세가 악화될 경우 의사와 상담토록 함

※ 열사병 증세

- 신체가 체온조절을 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증가함
- 피부가 고온이며 건조, 홍반이 생김
- 현기증, 매스꺼움, 졸음, 심한갈증,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 특히, 운동선수, 무더위에 노출된 근로자, 아동, 노약자, 장애인 혹은 만성질환 환자 등이 열사병에 민감함
- 열사병 환자는 사망 가능성이 있는 바, 환자를 즉시 서늘한 곳으로 이송하여 수분을 공급하고 옷을 느슨하게 하고 적셔주며 병원으로 옮김

3) 에너지 과소비에 의한 정전·과부하 대비

- 평상시 실내온도 26~28℃ 유지로 에너지 절약과 비상시 무더위 적응 (밖의 온도와 5℃이상 차이나면 건강에 해로움)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직사광선 차단(80%까지 열을 줄여주는 효과 있음)

- 정전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 마련(촛불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지양)
- 정전 시 주요 뉴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 준비
- 문어발식 전열기구 및 장시간 사용금지, 정격 퓨즈 사용

4)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물 섭취

- 무 탄산, 무 알코올, 무 카페인 음료 섭취
- 술이나 알코올 함유 음료수 등은 가급적 삼가
- 신선한 야채와 과일 섭취
- 고기는 적은 양으로 자주섭취 (다량 섭취는 신체가 소화를 돕기 위해 내적인 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전통적인 한방차 등을 통해 더위 극복 (오미자차, 곱 향, 대추차, 둥굴레 차, 쑥차, 매실, 박하잎차, 생맥산, 황기차 등)

5) 외출 시 착용 의복

-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얇은 옷을 입도록 함(삼베, 모시 등)
- 가볍고 밝은 색의 옷이 열을 반사하고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며 넓은 차양이 있는 모자를 써서 얼굴과 머리 보호

6)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10시~오후 3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외출 삼가

- 천천히 걷고 격렬한 활동 자제하고 선선한 오전 10시 이전 이나 오후 5시 이후 활동
- 외출 시 햇빛, 자외선 차단 로션을 사용하고 물병을 가지고 다님

7) 기 타

-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거나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는 일을 삼가 심장마비 예방

5. 실·국별 세부추진계획

실·과에 당부할 사항

- 주간에는 꼭 필요한 전등만 사용합시다.
- 중식시간에 전등과 컴퓨터, 프린터 전원을 끄시다.
- 주방 등 구석진 곳의 전등은 사용 시에만 점등합시다.(평상시 소등)
- 야간 근무 시 최소한의 전등만 사용합시다.
- 개별 냉방기 사용 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합시다.(26℃ ~ 28℃)
- 커피포트나 가스렌지 사용을 금지하고 복도에 설치된 냉·온정수기를 사용합시다.

〈 홍보실 〉

- 1) 시 자체 매체를 활용한 지속 홍보
 - 인터넷 홍보
 - 「우리안양」 홍보
 - 전광판 문자 및 동영상 홍보
- 2) 시정 홍보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추진
 - ABC(안양방송) : 일일 시정뉴스 제공
- 3) 실국별 추진계획 및 주요 수범사례 : 수시 보도자료 제공

《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

- 1) 추진방향
 - 식당메뉴를 가급적 더위를 이기거나 식힐 수 있는 메뉴로 준비
 -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건강관리” 안내 및 명상곡 방송
 - 에너지 사용설비의 절약운전 및 적정 온도 유지(26℃~28℃)
 -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기기 제거
 - 고장 또는 노후설비 교체 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치

2) 추진계획

① 구내식당 메뉴 조정 및 식중독 발생 예방 철저

- 보신용 음식(삼계탕 등)이나 냉국 등 제공
- 식당 종사자에 대한 음식물 관리 특별교육 실시

② 건강관리 안내 및 영상곡 방송

- 행정정보시스템에 「오늘의 메뉴」 게시
개인별 건강관리에 도움
- 휴식(점심)시간에 더위를 식히는 효과가 있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장르의 청내 음악 방송(홍보실 협조)

③ 개별냉방기 사용시 적정온도 유지

- 사무실내 개별 냉방기 사용시 26℃ ~ 28℃로 유지
※ 중앙냉방기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운영하되 사무실 온도를 26℃~28℃로 유지 → 운전시간 08:00~19:00

④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기기 제거

- 주방 커피포트 및 가스렌지 사용 억제
- 불요불급한 지역 외 전등 소등 및 복도 형광등 격등제 실시
- 야간 근무시 사용하는 공간의 전등만 점등

⑤ 고장 또는 노후설비 교체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치

- 노후배관 교체 시 절전형으로 교체
- 동력 및 전등, 전열용 간선을 절전형으로 교체

《 복지문화국, 보건소 》

1) 추진방향

-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보호대책 추진
- 저소득 재가노인·장애인 보호대책 추진
-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대책 추진
-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전염병 발생예방·관리 철저
-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

-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의 보건위생 수준 향상
- 주민홍보 및 언론매체를 통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확산

2) 추진계획

①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보호대책

- 냉방시설 정상작동 및 식수(냉수) 상시 확보여부 확인
- 응급환자 발생대비 119 및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 유지와 자체 응급능력 확보
- 냉방기 집중사용에 따른 과부하 위험발생 및 식중독 발생예방 유의
- 무더위 지속발생시 자립작업장 및 근로시설 작업중단 및 휴식조치

② 저소득 재가노인 및 장애인 보호대책 추가

- 가정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방충망 보수 및 찬 물수건 제공 등 생활편의 지원
- 야쿠르트 배달원을 통한 독거노인 건강상태 파악 등 시책 권장

③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철저

- 병의원, 약국 등 관내 모니터망 재점검 및 보건자 찾기 사업 지속실시
 - 보건소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식품위생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집중보건검사 및 건강검진 병행 실시
- 피서지에 대한 설사환자 신고센터 설치·운영
 - 관내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접객업소 등에 대한 관련부서 합동 위생 점검·교육·홍보 강화
 - 피서객에 대한 수인성전염병 예방요령 등 홍보 및 환자 발생 즉시 초기 대응태세 유지
- 김밥·도시락 제조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위생교육 및 식품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강화

④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 예방교육 실시
-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한 현황 분석

⑤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의 보건위생 수준 향상

- 집단급식종사자 특별교육 실시

⑥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전개 및 언론매체홍보 활성화

○ 홍보방법

- 수인성전염병·식중독 예방·개인건강 유의사항 등 전단 및 스티커 등 자체 제작 후 배포(구별 플래카드 제작·게시 등)
- 가두홍보 실시(각 보건소별 자체계획 수립)
- 교육청 등 관련단체 협조체계 유지(사전 공문발송 등)
- 방학 및 휴가철 여행, 각종 수련회 행사 참석 시 안전급수 및 개인위생 홍보협조
(하계수련회 등 종교단체와 협조 강화)
- 방송·언론매체 적극 활용 홍보

⑦ 환자발생시설 행정조치 강화 및 사전 지도·점검 실시

- 역학조사반 및 전염병 퇴치사업단(42개반), 말라리아 퇴치사업단(11개반) 편성 운영
- 집단발병 시는 부시장을 실장으로 하여 상황실 운영
- 역학조사반, 방역기동반을 “방역대책반”으로 연계하여 합동 운영
- 원인조사 강화
-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발생시 도 역학조사관 참여 합동조사
- 보건소에서 확인이 어려운 질환은 신속히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 요망

⑧ 전염병 유행예측 및 감시활동 강화

- 콜레라 발생대비 모니터망 점검 및 확인
- 비브리오 패혈증,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유행 예측 감시를 통한 사전예보 및 홍보활동 강화

⑨ 개인건강 주의 홍보실시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게재

〈 환경수도사업소(청소분야) 〉

1) 추진방향

- 적환장·무단투기 된 쓰레기의 적치·부패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
- 음식물쓰레기 보관에 따른 부패 및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

2) 추진계획

- 환경미화원 일사병 관리 철저
 - 시가지 청소는 기온이 강하하는 시간에 집중 실시하고 작업 시 모자 착용
 - 재활용선별장 등에 근무하는 미화원의 경우 기온이 가장 정점에 오르는 오후 작업시 휴식시간 조정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지도·단속 강화 및 신속처리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운영
 - 주민들의 쓰레기투기신고 활성화 홍보
 - 투기된 쓰레기의 경우 시·군에서 선 조치 후 과태료 부과
- 적환장에 적치된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즉시 반출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철저
 - 하절기중 (7월~8월)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부패,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주기 탄력 운영

〈 환경수도사업소(급수분야) 〉

1) 급수(예방)대책

- 고지대 급수대책
 - 고지대 급수량 부족지역의 급수차를 이용한 상수도 운반급수 실시 및 먹는 샘물 공급
- 취수장(저수지) 녹조현상 발생시 대책
 - 1 단계 : 조류발생 징후 단계
 - 주 2회 이상 조류 분석
 - 2 단계 : 조류발생 초기단계
 - 주 3회 조류분석, 응집제 상향조정
 - 전염소 및 분말활성탄 처리강화, 여과지 역세회수 증대
 - 3 단계 : 조류 경보단계

- 수시 조류분석, 응집제 상향조정, 활성탄 투입증대
- 4 단계 : 수화 발생단계
 - 수시 조류분석, 유산동 살포검토
- 간이상수도 수질오염 대책
 - 급수불량 지역은 긴급 상수도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비상급수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시·군, 동·소방서)
 - 급수량 부족지역 유무 확인
 - 급수량 부족지역의 급수차를 이용한 상수도 운반급수 실시 및 먹는 샘물 공급
 -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수질변화 추이 점검

《 건설교통사업소, 도시국 》

1) 추진방향

- 다중이용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실태
- 건설공사장 인부 안전관리

2) 추진계획

- 다중이용 건축물 및 시설물 재난발생 위험요소 제거
 - 하계 휴가철 주민 이용이 많은 건축물 및 시설물 일제점검
 - 전기 등 에너지 소비 과다 시설 합동 점검
 - ⇒ 백화점·대형 상가·관람 및 전시시설·청소년 수련시설·유원시설 등
 - ※ 소방 등 시설물 관리부서 합동 점검
- 도로건설 공사장 작업시간 준수
 - 도로보수 공사 시에는 하계 휴가철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 작업 실시
지양(야간작업 병행)
 - 도로보수 및 건설 공사 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2시~3시경 작업
지양(인부 휴식 조치)
 - 부족 작업시간에 대하여는 오전 또는 오후 1~2시간 연장 작업 실시
-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장비(안전모, 안전화 등) 확보 착용 확인
 - 도로보수 및 건설공사 시 교통 안전관리요원 증원배치
 - ※ 작업 중 실신 등 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을 위한 차량 등 준비

3) 향후 조치계획

- 합동 다중이용 건축물 및 시설물 일제점검
- 폭염 시 안전관리수칙 건설업체 공문 발송
- 수로원 등 현장관리요원은 폭서기중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대 작업을 피하도록 행정지도
- 건설현장에 폭서기간 중 폭염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를 통하여 건설회사에 전파 조치

〈 소 방 서 〉

1) 추진방향

- 중점사항
 - 소방시설 관리유지 상태 적정여부
 - 기온상승으로 인한 위험물시설 폭발 및 화재발생 위험 요인 제거
 - 작업장 안전시설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전기시설의 무리한 가동으로 인한 화재위험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현장 소방안전 교육 실시 등
- 결과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 의법 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 : 현지 시정조치

2) 화재진압 대책 강구 (방호팀)

- 화재출동태세 확립
 - 신속한 출동 및 진압태세 유지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구축
- 상수도시설 단수대비 소방용수 확보만전
 - 대체 활용 가능한 소방용수시설 파악관리 (하천, 호수, 사설저수조 등)
 - 저수조 관리 철저 및 취·정수장으로부터 직접 공급체제 유지
- 신속한 급수지원 대책
 - 필수 소방력을 제외한 전 차량 동원체제 유지
 - 관계기관 요청 시 적극지원 및 현장에서 화재출동체제 유지

3) 폭염대비 인명구조 대책 (구조·구급팀)

- 대 상 : 계곡, 강, 호수, 저수지, 해수욕장 등
- 중점 활동내용
 - 수난 구조장비 가동 상태 유지 및 신속한 인명구조·응급처치 전개
 - 잠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인명구조협조체제 구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통제선 설치
 - 계곡 등 위험지역 예방순찰활동 강화
 - 소방헬기 인명구조·구급 이송대비 체계 확립
 - 기타 폭염으로 인한 다수인명피해 발생시 구급 이송 체계 확립 및 신고 요령 홍보

4) 노약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구급이송대책

- 무선 페이지징 시스템 수혜대상자 정기점검 등 관리 철저
 - 방문 시 혈압체크 등 기초 의료서비스 제공
 - 수혜자 신고 접보 시 신속한 출동체계 확보
 - 폭염에 따른 건강관리 요령 등 교육
-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구급봉사활동 강화

5) 시민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홍보팀)

가. 물놀이 사고 대책 중점홍보 추진

-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700여명 사망, 폭염에 따른 물놀이 사고 증대 우려
- 주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금지구역 수영, 나 홀로 수영, 수영미숙, 웅덩이 익수사고 등
- 필요대책
 - 지역별 소규모 물놀이 지역까지 사전 파악, 취약 시간대(오전 10:00~15:00) 시민단체, 행정기관, 마을주민 합동 순찰조 집중 배치, 구명 장구 등 비치
 -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웅덩이, 굴착장소 등 일제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 2(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미비한 공사장에 대한 고발조치 확행
 - 공사 중이거나 중단된 공사장, 웅덩이 위험 표지판 및 통제시설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마을앰프, 가두방송차량, 언론, 유선방송, 전광판, 자동우량경보 시설 등을 활용, 대대적 홍보
- 지역 내 유관 기관간 상시협조체제 및 연락체제 구축·운용 등

6)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폭염에 따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점검대상 이외에도 보냉장치가 설치된 위험물 시설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공장 등 점검에 대하여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고,
- 청소년 수련시설 및 대량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이용객에 대하여는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제8절 한 파

- 뚜렷한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서고동저의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배치 아래에 있을 때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한파가 몰아닥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으로 24시간 이내에 10℃ 이상의 기온 하강이 예상되면 한파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다.

1. 기상전망 및 한파

1) 한파의 특성 및 기상특보 발령기준

가. 한파의 특성

- 한파는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으로 주로 겨울철에 나타나며 극(極) 또는 고위도 지방에서 냉각된 공기가 중위도나 저위도 지방에 넓은 범위로 퍼지는 현상임
- ※ 한파란? 뚜렷한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함 (기상청)
- 한기(寒氣)가 매우 급격하게 유출되므로 하루에 온도가 10℃ ~ 20℃ 하강하여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오며 한대나 온대지방에서는 폭설을 수반하고, 일상생활이나 교통·운수·에너지 소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 소규모 한기는 하루, 이틀이면 약해지지만 대규모 한파는 수 주간에 걸쳐 강력한 한기를 뿜고 물결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감
- 한파는 편서풍 파동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깊으며 편서풍이 어느 한도를 넘으면 남쪽으로 사행(蛇行)하여 찬 공기를 남쪽으로 보내 남북의 온도차를 줄이려는 성질이 있어 중위도 지역이 한파에 휘말려 있을 때 극 또는 고위도 지방은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게 됨

나. 한파관련 기상특보 발령기준

- 한파주의보·경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기상청에서 발령함

[표] 한파주의보·경보

구 분	한 파 (寒波)	비 고
주의보	· 10월~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발효 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경 보	· 10월~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발효 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 발효 기준값 :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2. 한파가 미치는 영향

1) 개 인

(1) 급작스런 기온 강하에 따른 건강이상 발생

-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체내 소모열을 늘리기 위해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장, 뇌혈관질환의 발생이 많아짐
- 기온저하 및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 저항력이 약화되어 감기 발생
- 건조한 날씨에 체열이 발산되지 못해 피부염, 가려움, 피부발진 등 발생

(2) 동상 발생

- 동창(凍瘡)
 - 추운날씨에 오랫동안 피부를 노출할 경우 발생
 - 노출부위가 붉게 변하고 부으며 물집이 생김
- 참호족(塹壕足)
 - 차가운 물속에 발을 오래 담그고 있을 때 발생
 - 감각이 마비되고 걸으면 통증이 있음
- 동상(凍傷)
 - 수 시간동안 영하의 온도에 노출될 때 조직이 얼어서 생김
 - 차고 창백하며 만지면 딱딱한 나무를 만지는 느낌이 듦

(3) 온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저온증 발생

- 추운 곳에서 자는 경우 발생
- 체온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며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함
- 체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이 멎을 수 있음

2) 가 정

(1) 수도 계량기, 보일러, 자동차 등 피해발생

- 영하 5℃ 이하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고 수도관이 어는 경우가 늘어남
- 보일러 배관 동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자동차 부동액 및 오일의 동결, 배터리 성능저하 등에 따른 시동 불능 등

[표] 기온조건에 따른 동파가능성

동파가능성	기 온 조 건
높 음	• 일 최저기온이 영하 5℃ 이하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
낮 음	• 일 최저기온이 영하 5℃ 이하인 날씨가 2일 미만 지속
없 음	• 일 최저기온이 영하 5℃ 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

3) 농·수산물 피해

(가) 채소, 과수 등 동결 피해 발생

- 과채류 및 엽채류의 최저한계 온도 이하 기온강하에 따른 동해 및 냉해 발생
- 과수 및 꽃논의 동결 피해로 인하여 생장장애 및 과실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 발생

(나) 기온저하에 따른 수산증·양식피해 발생

- 월동사육기는 저 수온으로 인한 체력의 소모가 크고 동사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기임
- ※ 온수성 어류는 수온 13℃ 이 하시 먹이 감소 및 행동 둔화됨

- 어패류 및 김, 미역 등 축한기 공기노출 및 수온저하에 따른 동사, 폐사 등 피해 발생

4) 사회전반

(가) 동절기 저소득층 기초생활 어려움 가중

-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
- 건설공사 등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수입 감소
- 방학으로 인한 급식지원 중단
- 경제 불황에 따른 노숙자 증가 및 동사위험 노출

(나) 도로 결빙에 따른 차량사고 발생 증가

- 도시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결빙
- 산간도로 및 응달구간, 교량구간 등 결빙
- 도로 결빙에 따른 미끄러짐 사고 발생 증가

(다) 난방시설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발생요인 증가

- 전기·가스·유류사용 급증으로 폭발성 화재 우려
- 전열기구 등 난방시설 사용자의 취급·관리 소홀
- 시장, 상가, 건물밀집지역 등 대형화재 발생위험 상존
- 안전의식 부재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위기대처능력 부족

3. 부서별 대책

1) 총괄관리 및 홍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총괄관리 및 업무협조

- 관련부서 및 실·과별 대책에 대한 총괄 관리
- 분야별 대책에 대한 조정 및 협조

(나) 홍보대책

- 한파주의보·경보 발령 사실 전파(기상청)
- 출·퇴근 및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 혹한 시 시민 행동요령 전파

(다) 홍보매체

- 언론매체, 우리안양,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

(라) 홍보방법

- 재난안전대책본부
 - 언론매체 홍보 실시로 경각심 고취
 -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한파 홍보 및 자막·안내방송 실시
 - 민방위 교육시간을 이용 시민 홍보실시
 - 반상회보 등에 한파대비 협조사항 게재

2) 농 작 물 (경제산업과)

(1) 채 소

(가) 사전대책

- 지역별 기후조건에 맞는 적정품목 선택과 안전적기 준수
- 작물별 생육시기별 최저 한계온도 이상 확보
- 보온시설 보완
 - 소형터널 + 성피 → 대형터널 + 커튼설치 보온
- 내한성 품종 선택 및 보온덮개를 이용한 보온실시
- 자연 열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온(축열 주머니 등)
- 고온성 열매채소류 축성재배는 겨울철 추울 때 가온하여 생리 장애와 동결 피해 방지

(나) 사후대책

- 정전 등으로 가온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때에는 숯, 알코올 등을 연소시켜 가온
- 보온피복 강화
- 살균제 및 요소 엽면 살포로 생육 촉진
- 피해가 심하면 다른 작물로 대체

(2) 과 수

(가) 사전대책

- 묻어주기, 싸매기, 흙덮기, 백도제나 수성페인트 발라주기 등 월동기 보호 대책 실시
- 동절기 전에 수확하고 언 과실은 언 것이 풀린 후 수확

(나) 사후대책

- 언 피해 발생 과수는 피해정도에 따라 가지다듬기 실시
- 피해를 입은 나무는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형성
- 꽃눈이 얼어 죽은 나무는 비료 감량 등

3) 서민생활 안정대책 (전부서)

(가) 동절기 기초생활 보장 강화

- 전기·수도·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 요금 체납자들에게 동절기 한시적으로 실시
- 동절기 중점관리 대상 가구 실태파악 및 지원조치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가구로 편입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강구
- 저소득층 겨울철 생계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 할인 공급
 - 동절기 유류비 현실화 등 최저생계비 인상
 -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동절기 수급자 확대
 - 저소득 농어민 등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체납액 면제
-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노인 등에게 무료예방접종 실시

(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원 강화

- 동절기 서민 일자리 지원 확대
 - 집수리,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
 -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제공
- 방학 중 급식지원 확대
 - 희망자에게 겨울방학 중에도 급식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 동절기에 독거노인 돌보기 결연사업 확대
 - 결연사업 전담시스템 구축, 홍보대사 활용 캠페인 실시

○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확대

- 경로당 난방비 인상, 노인시설난방비 추가 지원 등
- 미신고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다) 동절기 노숙인, 쪽방거주자 보호 강화

○ 민·관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기간을 운영

- 거리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활성화

○ 거리노숙인 집중상담 및 보호센터 활성화

- 동절기 前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해 집중상담 실시
- 보호시설로 유도 및 목욕·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 여성 및 아동 등은 여성·가족 센터에서 별도 보호

(라) 불우이웃돕기 등 「이웃사랑 나눔 운동」 전개

○ 민간 주도하에 「이웃사랑 나눔 운동」 전개

- 기업, 종교계와 고위 간담회 개최 등 협력 강화
- 민간 사회공헌 활동의 유기적인 연계·지원 체계 확립
- 복지 총 자원을 연계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방문

-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기관·단체별로 자체실시

○ 연말연시 이웃돕기

- 민간주도 불우이웃돕기 운동 전개 및 다양한 돕기 행사로 시민참여 유도

(마) 서민생활안정 대책 점검

○ 「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 대책반」 구성·운영

○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실시

4) 동절기 전기안전 강화 (한전)

(가) 기본목표

-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 (화재, 폭발 등)
- 안전한 서민생활보장
- 동절기 대형 정전사고 발생소지 사전차단

(나) 세부추진방법

- “설비안전점검 기본 절차서”에 의거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체 점검조 편성 및 설비별 취약개소 중점 점검
- 조속한 보수·보강으로 동절기 대형 설비 고장 사전예방
- 재난발생에 대비한 긴급복구 대응체계 구축
- 주요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대국민 안전사고예방 홍보

(다) 설비별 동절기 중점점검 및 보강사항

- 변전설비 운영실태 점검
 - 변전기기 운전상태, 누유 등 이상유무
 - 압축공기 및 유압계통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등
- 산간지역 통과 송전선로 정밀 순시점검
 - 동파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등
- 헬기이용 송전선로 항공순시 및 점검
 - 지상에서 관측 곤란한 고장 우려개소의 조기발견
- 철도횡단 송전선로 합동점검
- 배전설비 점검
 - 특용작물 재배지역의 열풍기, 수막재배 공급 변압기 점검
 - 동계 계절성 고장 중점예방 추진
 - 고장 시 원격조작을 통한 신속분리 가능토록 대비
 - 배전자동화시스템 통신망 및 원격조작 가동상태 점검
 -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재정비 및 비상동원 협조체계 구축
- 동계 고장 예방 특별 선로 순시
 - 연간 순간고장 5회, 일시 2회 이상 발생선로 기준
 - 대단위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공급선로 등
- 고객 수전설비 고장예방 활동 전개
 - 동계대비 수전설비 일제점검 안내문 발송
- 야간 불시정전 대비 냉해피해 예방활동 전개
 - 시설재배단지, 양축장, PC방, 대단위 아파트 대상
 - 정전피해 예방 홍보활동 시행
 - 특수작물 및 시설재배 단지 정전 시 사전 안내 철저
 - 장시간 정전 시 자구책 강구토록 예상 송전시간 신속안내

(라) 설비고장 대비 긴급대응능력 제고

- 긴급복구 및 비상동원체제 보강
 - 고장복구요원 비상연락망 일제정비
 -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체계 점검
 - 복구용 자재 및 장비 점검
 - 기상 특보 시 비상대비태세 철저
- 설비고장대비 모의훈련 실시
 - 송·변전설비 모의고장 복구훈련 시행
 - 배전고장복구 모의 및 도상훈련 실시

여 백

제4장

업무유형별 표준행동 요령

1. 추진방향
2. 실·과·소·구 및 유관기관 주요 추진사항

여 백

제4장 업무 유형별 표준행동 요령

1. 추진 방향

- 재난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가뭄 및 지진재해에 대한 대응체제 보강
-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재난분야에 대한 해당 실·과,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에 중점

2. 실·과·소·구 및 유관기관 주요 추진사항

가. 실·과·소

☐ 홍보실

- 사전홍보
 - 대국민 재난방지 예방홍보 실시
- 재난 발생시
 - 대 언론 신속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집중홍보
 - 대 언론 브리핑 등 언론취재 지원
- 사후홍보
 - 재난피해 복구상황 등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 자연재난홍보방법 : CATV, 안양방송

☐ 기획예산과

- 수해지역에 대한 지방재정지원
 - 피해복구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수해복구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정보통신과

- 도와 비상연락통신수단 확보 및 한국통신공사간 업무협조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통신수단 증설 등 긴급통신업무지원
- 재난안전대책상황실내 방재무선통신, 화상회의, 위성전화기 시스템 운영
 - 재난발생시 : 시 상황실과 현장간 직통망 확보로 신속한 상황처리

□ 세 정 과

- 지방세 감면 조치
 - 수해로 인하여 멸실된 과세대상 물건
 - 건축물에 대해서는 멸실후, 신축복구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정도와 상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농경지 피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농지세는 최고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복구시까지 전액 면제. 단지 농작물만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감면
 - 피해주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 (※대상세목 :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전세목)
 - 경작목적 농경지에 대하여는 하천 정용료 및 사용료 징수를 감면

□ 시설공사와

- 자연재난복구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체결
 - 자연재난복구공사는 천재·지변·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 자연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이 곤란할 경우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 마감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 신속한 자연재난복구를 위하여 선금 의무 지급율을 상향하여 지급
 - 20억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 20억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문화예술과

(1) 자연재난대상 문화재 및 시설

- 국가지정 문화재와 주변지역 시설물
- 도 및 시 지정문화재와 주변지역 시설물
- 문화재 자료와 주변지역 시설물
- 문화재 보호구역내 문화재 자체시설
- 소속기관 청사 및 부속시설물

(2) 자연재난예방 점검실시

- 자체점검실시
 - 점검반 구성 :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
 - 점 검 시 기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년 3회이상 실시
-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 배수로, 담장, 석축 등 균열위험 부분의 확인, 보수 보강 조치
 - 목조, 건축물 지붕 누수방지와 기와 고르기 정비 등 보완 조치
 -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 응급조치 실시(지지대, 포장막 설치 등)
 -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보수 조치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예방대책 강구

(3) 피해복구 대책

- 피해문화재 및 주변시설은 우선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추후 완벽한 복구 실시
- 복구대상 중 고증이나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의 지도를 받아 시행
-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재청과 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 설치

□ 체육청소년과

(1) 자연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방대책

- 대상시설
 - 체육시설, 관광지등 다중이용시설, 공사중 또는 공사중단 시설
- 다중이용시설
 - 추진내용 : 수시 또는 정기, 일제 안전점검 실시(연2회 이상)
 - 대상시설 : 운동장, 실내체육관, 관광지, 공연장 등
 - 점검주체 : 시 또는 시설주

- 점검내용
 - 구조물 안전, 전기·소방설비·소화기 등의 적정성
 - 비상시 관중대피체제구축(장내방송, 안전요원, 비상연락망 등)
 - 여름철 우기전 수방장비 확보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및 자체 비상연락체계 확립
 - 자연재난발생 우려지역 방재시설의 점검
 - 자연재난유형별 대응프로그램 및 위험정도별 대처방안 강구
 - 풍수해대비 수방자재 및 비축자재 확보

○ 공사중·공사중단 시설

- 추진내용 : 장마철 대비 우기전 수해방지 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 : 건립중인운동장·체육관, 골프장 국립중앙박물관 등
- 추진주체 : 시, 시설주, 관련기관 등
- 점검내용
 - 공사현장 침수방지 조치
 - 현장 토사유출 등 시설물 유실방지
 - 인부 등 공사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 자연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 가동여부, 긴급복구, 응급조치 대비 현황점검

(2) 자연재난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 대상시설 : 체육, 관광, 청소년, 공연장 등

○ 점검사항

- 배수시설 설치현황, 침사지·저류지 설치현황 및 절성토법면 안전대책 등 점검
- 자연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 가동여부, 긴급복구·응급조치 대비 현황 점검
- 마대, 말뚝, 로프, 샵, 곡괭이 등 수방자재 확보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점검실시

- 점검반 구성 :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
- 점검실시 : 상반기중 3~5회 실시
-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 배수로, 석축, 토사붕괴가 있는 산비탈면 등 확인 보수조치
- 공사중단 및 공사중인 시설의 자연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곳을 선정 집중 관리

(3) 시기별 자연재난방지 관리주체 자체대책 강구 행정지도

○ 행정지도방법 : 소관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대책을 강구토록 시기별로 공문 발송

○ 해빙기

- 콘크리트로 시공된 기둥, 벽면 등의 균열로 인한 붕괴사태 미연방지 조치 실시
- 외곽 옹벽 및 축대 등의 균열 및 침하현상 조사, 안전조치
- 절토법면, 암반균열로 인한 붕괴사고 대비시설 설치(안전망설치 등)

○ 장마철우기

- 건설 중인 체육시설을 침사지와 배수로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 우기전 까지 수방대책이 여의치 않을시 공사일시중단검토
- 절성토 비탈면의 안전상태 및 안전성 여부 점검, 체육시설(골프장 등) 하단 부 마을에 토사유출 최소화 조치

○ 동절기

- 진입로 등의 빙판길 방재조치 실시
- 보온을 위한 유류 등의 철저 관리로 화재예방

□ 경제산업과

○ 추진방향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 우기전 배수시설 중점 점검·정비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재난취약시설은 재난위험지구로 중점관리하면서 개보수사업 우선추진
- 저지대 상습 침수농경지에 배수개선 우선추진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피해확산 방지 및 영농재개

○ 주요추진사항

<농경지>

- 기상정보 및 재난요인 정밀분석으로 사전대책 추진
- 자연재난 유형별 종합대책 추진
- 저지대 농경지 침수해소 대책(집중호우, 유두 및 백중사리 예방대책)
- 피해시설 복구계획
 - 피해 수리시설은 조기 응급복구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응급복구한 시설은 영농기 동안 임시사용하고, 영농기 이후에 항구복구 추진
 - 복구는 다음연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일손돕기 추진
 - 지형 또는 시설물 구조상 중장비로 작업이 어려운 곳은 군·관·민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 복구

- 농경지주변 쓰레기청소 등 주변 정리정돈
- 수방자재 비축
 - 산불방지 등 타목적 수방자재와 구분관리
 - 유사시 부족량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취약시설 인근으로 배치하여 보관

□ 녹지공원과

(1) 분야별 재난대책

○ 예방대책

- 산사태·임도피해지 등
 - 주택·농경지주변 등 민생관련 피해지역은 개량복구 차원에서 완벽하게 복구하여 2차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
 - 복구완료한 곳이라도 취약지역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보완조치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피해재발 방지 철저
- 산사태·임도피해우려지
 - 산사태위험지의 확대지정관리로 재난사전 예방대책 강구
 -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위험이 있는 곳은 추가 지정하고 여건변동으로 위험요인이 소멸된 지역은 지정해제 조치
 - 산사태위험지는 산사태저지용 사방댐, 예방사방 등 항구적인 자연재난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임도 시설지는 전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우려지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
 -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비축
 - = 마대류, 말뚝, 비닐, 묶음줄 등을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적정량 비축
 - 유사시의 대피 장소지정 및 인근주민에 대한 대피요령·응급복구 조치 등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 산불피해지
 - 집중 호우시 산사태·토사유출 우려지는 우기이전(6월말)까지 사방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 방지
 - 사방복구를 완료한 곳이라도 취약지역은 집중호우 대비 보완조치 및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산림의 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 공사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재난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
- 무리한 수직굴착으로 인한 낙석·붕괴위험지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토석채취 허가취소지·채취 완료된 곳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
- 공사현장사무소, 인부막사 등 시설물은 산사태·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개소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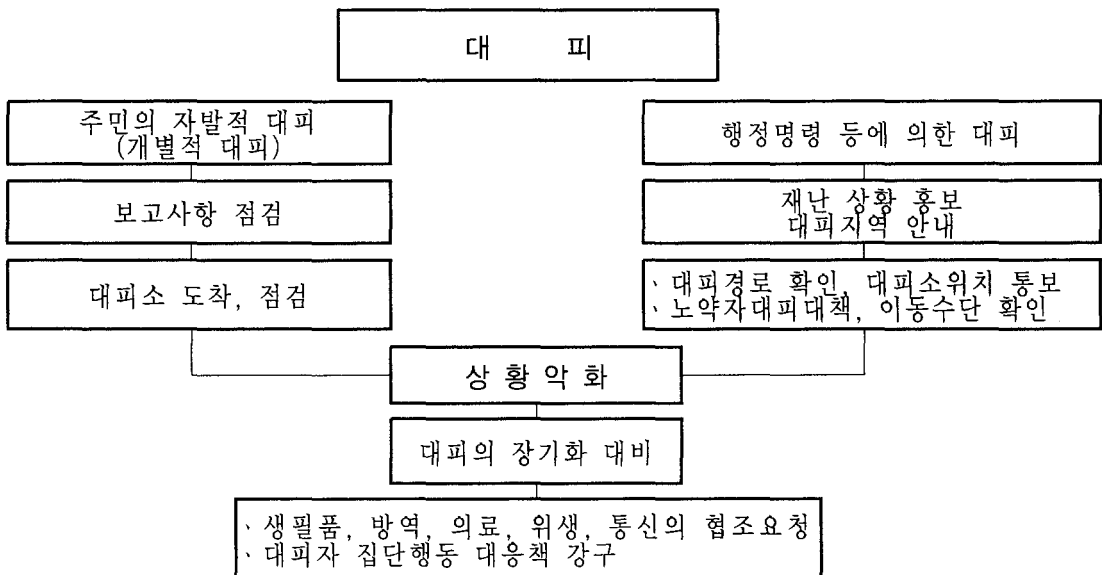
□ 주민생활지원과

(1) 주민대피 계획

○ 개 요

- 대피는 지역주민들이 주거지 침수, 산사태, 외부와의 고립 등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대피하는 일시적 대피와, 주거중인 가옥의 파괴로 말미암아 현 주거지역에서 주거가 더 이상 불가능하여 주거지 확보를 위한 장기적 이주를 위한 대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소 관리계획의 흐름도 】



○ 사전조치 사항

- 이재민수용 및 수용시설의 지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지정하고, 수용시설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 수립

※ 최근 3~5년간 이재민발생 수를 기준하여 수립

-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

= 학교시설을 지정할 경우 학교급식시설 사용 및 학교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 이행

- 이재민수용시설로 건물을 사용한 결과 전기,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처리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자연재난관련예산 등으로 보상조치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운영기준

= 피해 이재민의 거주지역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1평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저지대 등 상습 자연재난발생지역 내의 시설은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함

- 화장실, 간이목욕실 확보·설치

-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수용시설 평면도 및 안내표시도 작성·게시

-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월동시 임시수용시설 운영에 있어 유의사항

- 24시간 적절한 실내온도(17도 이상) 유지

- 적절한 통풍유지 및 철저한 화재예방 완비

○ 정보수집 및 대피

- 위험상황의 정보수집

- 대피 홍보

- 대피유도

(2) 구호품 등 공급계획

○ 개 요

큰 재난이 발생하면 주거지가 파괴되거나 침수되어 식량, 피복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도 동시에 유실되거나 오염되어 이재민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준다. 특히 주요 식량 등 부식물은 재난 발생후 즉시 공급을 하지 못하면 주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재난구호물자의 확보 및 관리
- 구호품 접수 및 배분

□ 동안·만안보건소

(1) 이재민 의료구호

- 기본방침
 -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후송체계 확립
 - 지역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료대책 추진
- 의료시설 현황
 - 응급의료기관 : 55개소
 - = 권역응급의료센터 : 2개소(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 = 지역응급의료센터 : 15개소
 - = 지역응급의료기관 : 38개소

(2) 방역 및 보건위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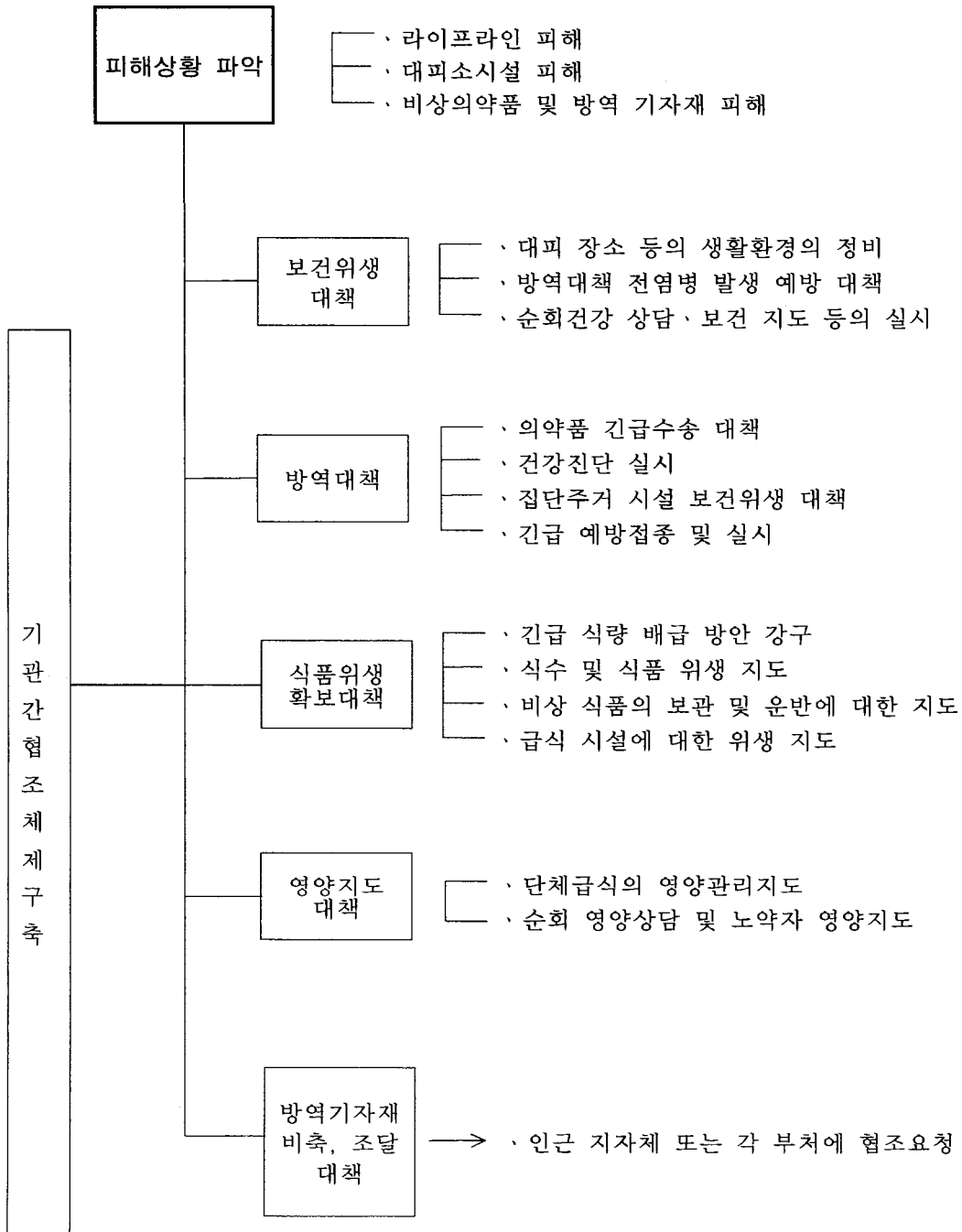
○ 개 요

- 재난이 발생하면 생활환경의 악화나 체력의 저하로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평소보다 질병과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이재민은 한번 감염되면 저항력이 없어 치명적인 질병이 전이될 수가 있으므로 재난기간에는 방역 및 보건 위생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 점검사항

- 수도, 전기,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피해상황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및 수용 상황
-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침수 가옥의 상황
- 방역 의약품 보관 장소의 피해상황
- 식품 및 식품생산 보관 관련시설의 피해상황
-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 업무처리 흐름도 】



○ 집단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 방역대책반 운영

•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 초기 역학조사 및 상황처리반 운영

• 방역조치

= 1단계 :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의뢰)

- 입원 및 격리 조치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 환자관리

→ 환자의 장내배설물 및 사용물품의 철저한 관리

→ 개인위생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등

→ 치료 완치 시까지 음식조리 및 육아 금지

- 고 위험군은 필요시 격리조치(집안격리 또는 입원격리)

→ 식품위생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수관리자 등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환자관리 실시

= 제2단계 :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관리.

-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 의심되는 질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 확인·조사

- 고 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조치

- 보건교육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보건소 내소 지도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전염병역학조사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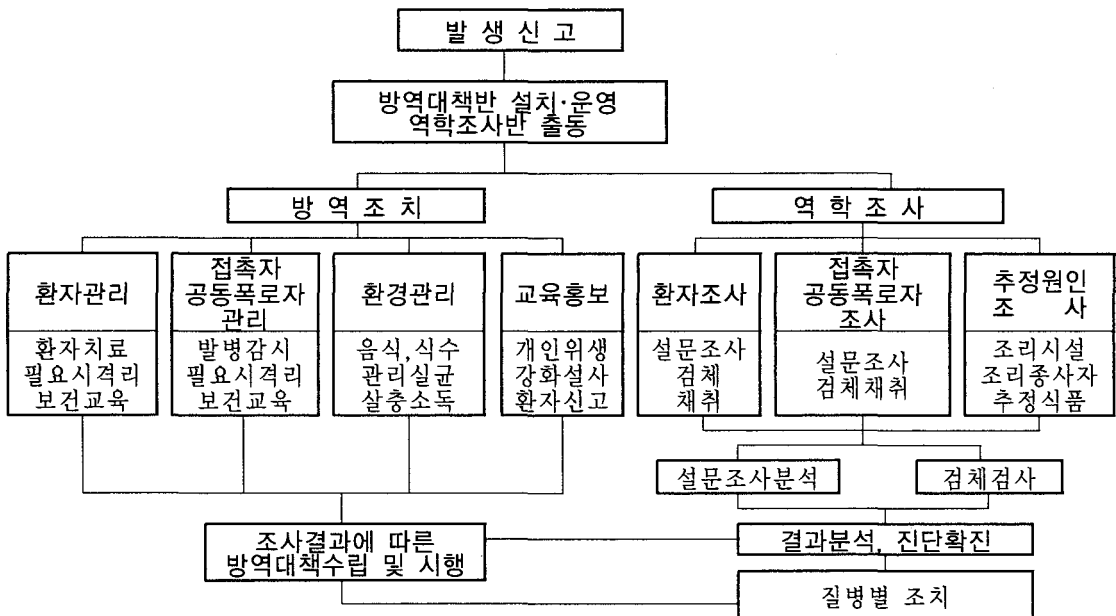
= 제3단계 : 추정 원인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조치 등

-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 운영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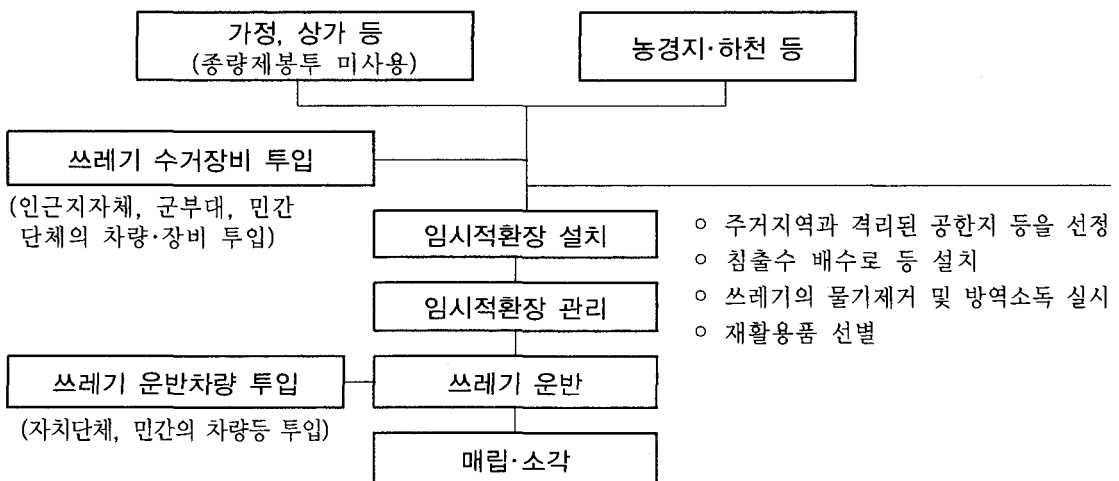


□ 청소과

○ 수해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발생량은 수해지역의 특징 및 수해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가옥, 구조물 등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 산정
- 시에서 발생량 파악 및 보고

○ 수거·처리계획



○ 긴급 수거지역 선정 및 임시 적환장 설치

- 쓰레기 장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교통소통 및 피해복구 장애지역쓰레기를 최우선 수거지역으로 선정
- 수거 즉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장비 부족, 쓰레기 물기제거 등 불가피하게 야적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해지역 인근에 임시적환장을 설치
 - 임시적환장은 재침수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없고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선정
 - 임시적환장은 매일 2~3회 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하여 위생적 관리
 - 임시적환장 바닥은 침출수 수집이 가능토록 2%이상의 구배와 주변배수로를 설치하고, 고밀도 PE 필름을 바닥에 포설함

○ 수해지역 쓰레기 배출에 관한 임시 조치사항

- 수해지역의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피해지역의 쓰레기 배출에 임시조치사항을 환경부와 협의조치
 - 침수지역 등 피해 우심지역에 한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를 결정

○ 긴급 수거를 위한 운송장비·인력확보 조치

- 자체 수거·운송장비 부족시 인근 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및 관련 민간단체에 수거·운송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 침수쓰레기 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집계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아 수거조치
 - 수거된 쓰레기의 매립지 운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중장비를 지원 받아 수거·운송 조치

○ 수해쓰레기의 쓰레기매립지 반입·처리

- 수해지역 침수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우선 실시
 - 수도권매립지 반입대상 이외의 자치단체는 수해쓰레기 반입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실시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시차량 등록을 실시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조치 후 반입

- 타기관 등의 지원차량의 경우 매립지 운영기관에 등록신청 및 수해쓰레기 수송차량 스티커 부착등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여 혼선초래 사전방지
- 매립지 관리운영기관은 임시차량이 수해쓰레기 이외의 다른 사업장 폐기물 등이 반입하지 않도록 관리
 - 폐사된 가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처리
- 수해쓰레기 매립지 반입비용 지원
 - 수해쓰레기는 매립장에서 계근하여 정상매립후(증빙서류 확보) 재난대책비 지원요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후)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강화
 - 수해지역쓰레기의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폐기물 등을 매립지에 위장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강화
 - 수해지역 쓰레기의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 폐기물 등을 매립지에 위장 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환경수도사업소

- 피해상황 파악
 - 시·군에서는 수도시설, 하천, 하수·폐수·분뇨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시 피해상황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에 보고
- 피해시설 복구
 -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신속한 복구작업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반 운영
 - 피해시설의 각종 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에 신속히 연락, 긴급복구
 - 펌프등 기계시설 :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 변압기등 전기시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유량·계측기등 : 한국계량·계측기류협동조합
 -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정부의 복구계획에 따라 적정예산을 확보·지원

□ 건설방재과

- 재난예방대책사업 추진
 - 도로, 교량, 등
- 피해상황 파악
 - 도로, 교량, 등
- 피해시설 응급복구
 - 도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실시
- 피해시설 복구
 - 도로 피해시설 항구복구

□ 건설방재과

(1) 자연재난대책(총괄)

- 예방대책
 - 자연재난예방사업 투자확대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재난방지 계획반영 의무화
 - 자연재난예방을 위한 수방시설 등의 응급복구에 따른 방재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도모
 - 도로, 하천, 댐, 광역상수도, 철도 등 주요시설의 안전 및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점검·정비 철저
 - 공공시설, 국민생활 필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방재계획 수립
 -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시행
 - 부실측정 및 사후관리 철저
 -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점검 강화
 - 방재대책 수립여부 점검확인
 - 대규모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방재대책 수립
 - 자연재난대비 자재 및 장비의 비축·수급·운용 철저
 - 응급복구용 자재의 비축, 운용 및 수송에 관한 구체적 계획수립
 - 방재상 필요한 교육·훈련실시 및 홍보
 - 광역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사고시 신속한 위치파악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GIS구축

○ 응급대책

- 재난정보수집 및 전달체계 강화
 - 기상, 수위 등의 상황을 관측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전달하기 위한 체계 강화
 - 방재 유관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정보수집 및 연락체계 확립
- 재난발생시 2차재난 방지
 - 2차 재난발생 우려장소의 점검, 기자재 확보, 응급조치 강화
 -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관리카드 작성
- 자연재난대책용 기자재·장비 및 기술자의 현황 파악
 - 자연재난대책용 자재의 보유, 활용계획, 장비의 배치상황파악
- 긴급 교통수송대책
 - 긴급수송 네트워크의 지정 및 수송시설, 거점의 안전성 확보
 - 도로 및 철도의 장애물 제거, 복구 등의 필요한 자원 확보

○ 복구대책

- 자연재난발생시 항구적인 복구조치로 재발방지
- 자연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책반 편성
- 지자체·군부대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풍수해대책

○ 예방대책

-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 도로, 하천, 댐, 광역상수도, 철도 등 방재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 내수피해방지를 위한 수문 등의 설치 및 제방 정비
 - 방재조정지, 우수저류·침투시설의 설치, 유역의 우수기능 개선
 - 댐 안전관리와 경보체제 개선 및 댐간 최적 연계운영체계 구축
 - 산사태, 급경사 등 붕괴위험도로의 산사태 방지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토사재난대책
- 풍수해 종합 운영기능 강화
 -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수해방지대책 제도화 방안
 - 하천 유역별 종합치수대책 수립 및 추진
- 풍수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의 안전성의 확보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건물이나 지하도로의 침수피해방지 시설 정비
-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방재정보의 보급 및 방재훈련의 실시
 - 홍수에측상황을 중앙 및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와 언론기관에 전파하여 하천 범람 위험성 주지
 - 우기전 홍수통제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홍수예경보 모의훈련실시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지정

○ 응급대책

- 재난의 확대방지와 2차피해 예방활동
 -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장비 확보 등 배수대책 수립
 - 토사재난의 발생, 확대방지를 위한 자재 비축 및 방지대책

○ 복구대책」

- 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및 피해원인조사
 - 피해상황, 지역특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복구방향 결정
 - 재난원인분석, 수해흔적조사 등을 통한 피해자료 조사 및 축적
- 복구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개선방안
 - 지역별 통합·전면 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제도 확대

<호우·수위의 보고 체계>

○ 우량의 통보

- 기상상황에 따라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지방기상대등)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다.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항상 정확한 기상상황 파악과 함께 우량 관측자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해서 시장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보고해야 한다.

○ 보고의 간격

- 전일 00:00~익일 00:00까지 총 우량이 50mm를 초과할 시 매시간 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다.
- 시간 강우량이 20mm이상의 경우 매시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기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필요한 정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 수위의 통보

- 수위 관측자는 기상상황을 통보 받았을때 수위변동을 감시하고 지정 수위에 달할 때는 관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다.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위관측 시설관리자와 긴밀한 협조로 수위 및 홍수 상황을 파악 보고한다.

□ 교통시설과, 건설방재과

(1) 응급복구용 건설기계 업무추진

○ 민간 건설기계

- 민간 건설기계사업자 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용 건설기계가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협회와 사업자 간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 관용 건설기계
 - 시 및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가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용 건설기계

(2) 하천 둔치주차장 현황

- 14개소(만안12 동안2), 1,945면

번호	주차장명	위치	면 수
계	14개소		1,945면
1	안양대교옆	안양2동 좌안	167
2	대교식당앞	안양2동 좌안	120
3	철교아래	안양2동 우안	158
4	삼성연립앞	박달1동 좌안	100
5	박달1동	박석교-충훈교 좌안	138
6	박달2동	충훈교-노루표 좌안	68
7	박달2동	노루표 페인트앞 좌안	350
8	석수2동	럭키아파트앞 우안	228
9	석수3동	삼영운수앞 우안	280
10	안양2동	대우아파트앞 우안	40
11	안양7동	애향공원앞 좌안	53
12	안양7동	비산대교 상류 좌안	80
13	관양2동	동사무소앞 좌안	77
14	관양2동	인덕원교밑 좌안	86

(3) 자연재난시 조치계획

준비단계



- 주차장별 관리책임자 지정
- 비상연락체계도 구축 : 직원, 견인차량, 구급차량 등
- 차량대피장소 사전지정 : 인근주차장, 학교운동장 등
- 주차장이용 안내판 설치 : 관리책임한계
 - ⇒ 견인비용, 파손시 수리비용 부담 등
 - ※ 위수탁시 우기철 주차장관리 책임근거 마련
- 방수문, 마대 준비



호우주의보 발효시(경계체제)

- 둔치주차장 순찰
- 주차장 주차통제
- 주민에게 홍보 : 이동안내방송, 인터넷 등
- 둔치주차장 주차차량 연락처 확보
- 견인차량 확보
- 방수문, 마대 설치작업
- 하천변 일부차량 견인이동



호우경보 발효시(비상체제)

- 둔치주차장 순찰 확대 강화
- 이동안내방송
- 둔치주차장 폐쇄
- 주차차량 강제 견인이동

□ 건 축 과

(1) 피해상황 파악 및 조사

○ 주택 파손·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 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 1인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거용 1동만 피해로 함
- 피해구분 : 전파·반파 구분은 피해면적을 및 용적을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점포, 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입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세입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피해보고는 하되 주택소유자에게 침수 수리비 지급

(2) 피해상황 보고

○ 피해 최초보고

- 즉시 유선보고후 전산보고서(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피해 최종보고

- 피해원인 종료후 7일 이내
- 재난확인조서 및 재난복구계획서(별첨)에 의한 공문 보고

○ 피해 확정보고

- 최종보고후 2일 이내
- 정밀피해조사결과 증감내역 및 재난대장 작성 보고

(3) 복구계획 수립

- 복구포기와 관계없이 전 피해 동수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시 정산
-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보조금 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가옥을 다른 시군구로 이축 복구할 경우 당해 복구 지역의 시·군에서 피해가옥의 복구비를 지원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건축물
 -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기타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나. 유관 기관

【 군 부 대 】

1) 방재조직 운영

- 현 군(軍) 지휘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각종 재해 대비
- 지역별 군(軍) 통합지휘관을 사전 지정하여 재난 발생시 통합 지휘관이 지역내 군(軍)의 가용병력, 장비 통합 지휘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통신수단 유지 및 필요시 무선장비 등 통신대책 강구

2) 재난예방대책

- 시설안전위원회 운영
 - 대 상 : 장군급 이상 지휘부대
 - 내 용 : 위험시설 지정 관리, 시설위치 선정 시 안전성 검토
- 시설물 안전 및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강구
 -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조치
 - 위험시설물은 철거, 이전, 보강 등 제반조치로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시설보호
 - 위험지역 및 시설 사전 파악 지정 안전대책 강구
- 재난취약지구 및 시설물을 점검·정비 재난예방대책 강구
 - 3월 : 해빙기, 5월 : 하절기, 11월 : 동절기

- 각종 재난대비 지속적인 훈련실시
 - 매년 5. 25일 「방재의 날」 민·관·군 통합훈련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훈련
 - 통합방재훈련 요청 시 인원 및 장비 적극지원
- 중요 방재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 정비
- 홍수 및 적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고지 및 격오지 부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물자를 사전에 비축하고, 적절한 보급수송 대책과 대피 계획 및 헬기 지원대책 강구
- 시설피해 대비 응급복구 자재비축 및 장비를 상시 가동 상태로 유지
- 지진 예방대책 지속 추진
- 군 표준설계도 내진설계 반영 추진
 - 기존 군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완 대책 강구
 - 지진 방재 교육훈련 실시
 - 부대훈련, 양성 및 보수과정, 예비군 교육 훈련 시
- 인명피해 예방대책 강구
 - 재난유형에 따른 단계별 인명피해 방지, 대피계획 수립
 - 태풍, 호우, 폭한, 폭설 등
 - 재난구호 활동 시 안전수칙 수립시행
 -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교육, 재발 방지대책 강구

3) 피해복구대책

- 재난발생시 능력범위 내에서 우선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차후 항구복구 대책 강구·시행함으로써 동일유형 재난 재발 방지도록 근원적 대책강구
- 재난 상황 발생시는 최단 시간 내에 피해내용을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복구계획 심의확정시 피해 복구
- 응급복구는 군 작전 및 병영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
- 군 시설, 장비 및 물자의 피해액 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산정기준에 의거 정확히 산정

4) 군부대 대민지원

- 대민 지원은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인명구조 요청이 있을 시는 선지원(先支援) 하고 후보고(後報告)

- 피해복구를 위한 군의 병력 및 장비지원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수해대책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협조
- 가용지역 용수공급 및 응급복구 시 협의하여 지원(관정개발, 용수공급 등)
- 호우·폭설로 인한 교통두절시 헬기 등 가용수단 활용 고립 인원 구조지원 대책강구, 요청 시 즉각 구조지원
- 이재민 발생 시 군작전과 보안상 문제점이 없는 체육관, 교육장, 공막사, 야전용 텐트 등 가용시설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토록 지원
- 군 피해 사항은 피해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상황을 반드시 통보하되 군사보안 대책강구

5) 기 타

- 재난발생지역 예비군 교육 훈련 연기 등조치
 - 장관급 소집부대장, 수임군부대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후 보고
 - 훈련불가능 지역은 훈련연기 또는 일정조정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 예비군에 대한 훈련 연체조치
 - 훈련여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군 동원여부 결정, 동원 후 결과보고
- 공군 기상부대는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
- 재난대책 상황근무(재난통제본부 설치운영)
 - 각종 기상상태에 따라 3단계로 운영
 - 준비단계(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비상단계
 - 운영대상
 - 육군 : 연대급 이상 전 부대, 해·공군 장군급 지휘부대 이상
 - 상황근무 단계 운영
 -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별로 부대장(기관장) 책임하에 운영
 - 전국에 걸친 재난비상시나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시는 전 부대 및 기관의 상황실을 동시개설 운영

【 경 찰 서 】

1) 재난 위험지역 예방순찰 활동 강화 및 경력지원

- 단계별 조치사항에 의거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노후건물 등 붕괴 우려지역 순찰 강화

- 산간, 계곡, 하천 등 위험지역내의 야영·등산객, 낚시꾼 등 대피 유도
- 상황에 따라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안전사고 예방
-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및 피해복구 전 경찰력 최대 지원

2) 재난 발생 시 교통대책

- 신속한 교통통제로 인명피해 최소화
 - 피해 발생 시 교통통제가 필요한 지역의 구간을 설정 차량 통제
 - 교통통제 입간판 또는 바리케이드 등 차단시설 설치
 - 상황에 따라 경력 및 장비증가 배치
- 차량 통제 시 신속한 우회도로 확보 등 소통대책 마련
 - 사고 발생지역 중심으로 원거리 차단 우회조치로 교통 혼잡 해소
 - 차량 통행량에 따른 소통확보
 - 교통 외근 근무자 신속 배치,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기 조정 등
- 신속한 지휘보고체제 확립
 - 재난발생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 신속한 지휘보고
 - 교통두절상황 신속·정확히 파악 보고·통보(유관기관 등)
 - 첩보 즉시 현장지휘체제 구축
 - └ 지휘관(경찰서장) 현장지휘
 - └ 교통간부(교통(경비)과장) 현장지휘

3) 고립 예상지역에 대한 헬기동원 계획

- 긴급 상황 대비 비상출동 대기조 편성 운용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산림청항공, 소방항공, 군부대 등)
- 헬기지원 가능업무
 -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 식료품·음료수 및 생필품, 의약품 등 보급품 공수
 - 문서 및 통신연락
- 긴급 상황 시에는 구두 승인 또는 선 조치 후 보고(경찰항공운영규칙 제3장 제6조제1항)
- 폭설·수해로 인한 고립예상지역 파악, 지형 숙지훈련
-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 홍수, 화재, 천재지변과 기타 긴급사태 발생시 경찰 헬기를 동원하여 신속, 안전하게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

- 헬기 지원요청 결과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경유 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상황 보고 시에는 정확한 사고위치, 사고내용, 구조 인원수, 구조장소의 상황, 사고지역 기상상태 등 사고 정황을 정확히 보고
- 인접 시·군 간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협조체제 유지
- 헬기장 운용 기상조건은 경찰항공 운영규정에 준하는 기상상태에서 가능하며, 긴급 특수임무 수행 시는 지휘관 및 해당 정조종사의 판단에 따름
- 헬기장은 헬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전기줄, 높은 나무, 지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 육 청 】

1) 재난예방대책

- 재난요인 사전제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내 위험시설 조사 후 재난 위험 표시, 개·보수 계획 수립 추진
 - 중요시설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관리 철저
 - 호우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대설경보 등이 발령될 경우에는 지역 실정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수업단축 또는 임시휴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적피해 예방
- 수방자재 비축
 - 천막, 가마니, 새끼, 말뚝, PP포대 등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철저
- 이재민 수용시설·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지정
 - 학교시설 등을 이재민 수용시설로 활용코자 요청 시 적극 지원
- 관계자 교육
 - 교직원 교육 : 재난대책 및 지진대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방재의 중요성 주지
 - 학생교육 : 방재의 필요성 및 재난 시 행동요령 교육, 사전예방 철저, 각종 특별활동 시간에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실시

- 관련 교과 특별활동 및 민방위 훈련 시,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실시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강화
 -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및 재난별 행동요령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
 - 홍보물 게시 및 학교 방송 활용

2) 응급조치

- 응급복구 조속 실시
 - 재난 발생시 자체복구 또는 시 재난복구 활동반, 구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피해 신속복구
- 수업대책 수립
 - 교실의 재난정도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수업실시 여부 결정(인접 학교시설 또는 천막 등 활용방안 포함)
- 이재민 수용대책 수립
 - 이재민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화기단속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
 - 수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수업대책을 포함한 장기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3) 복 구

- 학교시설 복구
 - 예산지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 또는 학교 재난복구 공제회비 지원
- 피해 농가 자녀 수업료 면제
 - 소규모 농림시설 및 소규모 증·양식시설 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2기분 면제(지원)

4) 행정사항

- 재난대책 예산 확보
 - 재난대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난대책 예산(비축물자비, 유지 보수비 등) 확보

【 한전 안양지점,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

1) 풍수해 대책

(가) 전력시설 보호

○ 재난사전 예방대책 수립

- 2007년도 방재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우기전인 5월 10일까지 완료
- 피해상습지의 사전조사 및 시설물의 단계적 이전 주요구조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보수 실시
- 재난위험지구의 주기적 점검 및 개·보수 철저
- 주요시설 배수구의 일제점검 및 개·보수 철저히 불량지 우기 전 정비
- 수방자재 확보 및 적절한 배치(가마니, 새끼, 목재, 시멘트, 철근, 유류 전기, 통신, 수도용 기재, 중장비, 수송용 장비 등)
- 설해 예방 장비의 적기확보(제설장비, 위험지구 표지판, 영화칼슘, 적사장, 강설량 측정기 등)
- 건설공사장의 각종 가설물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재대책 강구
- 내진설계 대상 시설여부 검토

○ 재난응급대책

- 재난대책 근무체제를 상황전개에 따라 3단계 【준비단계(상시대비체제, 사전 대비체제) 비상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평시는 야간 당직자가 임무수행
-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구축으로 재난 발생시 장비 및 인력의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
- 자체 복구대 및 민·관·군 지원 하에 응급복구 활동 전개
- 이재민 수용소에 대한 우선적인 전력공급

○ 재난복구대책

- 인명구조 등 재난수습에 필요한 인력·장비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제한송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시설에 우선 공급
- 사태수습이 지연될 시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주민불안 해소

(나) 가스관 및 송유관 파열시 대책

(1) 고압가스 시설

○ 예방대책

- 고압가스에 의한 재해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도록 신고체제 확립
- 재해 발생 시 주민보호, 사고확대 방지 등 신속하게 사태진압 및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긴급 연락망 구축 등 협조유지
- 지역별로 재난예방 기관을 설정, 주기적인 점검 및 보완
-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 자체 내진설계 기준 제정 검토

○ 복구대책

- 실제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실시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복구 할 수 있도록 업소 및 지원기관
의 긴급 출동반 훈련을 강화하고 긴급복구용 자재 확보

(2) 송유관

○ 예방대책

- 자동 압력제어 감지장치 및 화재감지 소화설비 수시 점검
- 소화기, 모래 등 긴급 방화설비 비축
- 인근 소방서와 협조체제 유지 및 비상훈련 실시
- 자체 내진설계 기준 제정 검토

○ 복구대책

- 송유관 회사 자체 긴급 복구 반 편성 운영
- 기름유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제방 및 저유지 축조
- 화재에 대비 인근주민대피 및 인근소방서에 협조요청
- 농경지 등에 기름유출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 환토
- 손상된 송유관 긴급복구 조치

2) 지진재해대책

(1) 전력시설

- 재난대책 근무체제는 상황전개에 따라 3단계 【준비단계(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 체제), 비상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평시에는 각 사업소의 야간 당직자가 임무수행
-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및 비상체제의 확립으로 재난발생 시 응
급복구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각 사업소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복구
대를 편성 운영

- 응급복구는 공공시설복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되 전력공급 및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공급계획
 - 비상용 발전차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비상등 → 취사용 시설 → 옥내 등 → 편의시설)에 따라 전력공급 실시
 - 인접사업소간 발전차량 등 장비와 인력의 긴급동원체제 유지 및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내선설비의 설치와 안전점검 실시
 - 인근 전력설비의 임시선로 설치용 비상자재를 확보하고 관련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비상자재를 긴급조달

(2) 가스시설

- 한국가스공사를 통한 통신 확보
 - 가스공사와 유관기관 간 직통전화(hot line)구성·운영
 - 상황전파 및 상황관리(가스공사)
 - 중앙 지령실 및 5개 통제소에서 전국 관리
 - 통제요원이 생산기지, 공급관리소, 배관 운영상황을 24시간 원격 감시·제어
 - 지하밸브기지 등 취약기지는 CCTV를 설치 감시강화
 - 생산·공급기지 인접지역의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수용대책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와 유관기관과 협조 등 이재민 대피 수용계획
 -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가스공급 중단 시 비상 공급계획
 - 한국가스공사 주관 하에 불시에 생산기지 및 가스배관에 가스누출, 화재 등 가상 상황 부여로 상황전파, 보고, 유관기관 연락, 긴급출동 및 복구 등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사고 적응훈련 실시

【 KT 안양】

1) 재난예방대책

- 재난 상황실 구성·운영
 - 운영시기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의거
 - 구 성
 - 상황실장 : 재난관련 주무 실국·장
 - 상황실장은 부실장 1인과 행정반, 복구반을 편성·운영
 - 임 무
 - 재난 상황의 접수, 관련 기관과의 협조, 재해 상황의 보고
 - 접수된 상황의 파악과 초동조치(긴급복구) 등

○ 재난대비 사전조치활동

- 재난 시 인원, 물자, 장비 등의 대피계획을 수립 대처
-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특별관리대책 수립 실시
 - 2006년 종합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 재난 취약시설물 카드화 관리로 점검체제 확립
 - 관리책임자 지정, 수시 점검

○ 구조적 재난취약요인 연차적 해소로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

- 재난 취약요인해소를 위한 방재사업 우기 전 완료
- 통신시설의 신·증설시 지진,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

○ 방재업무 관련시설의 관리

- 재난 경보전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통신시설의 정기점검(일반전화, 행정전화, 직통전화, 팩시밀리, 무선 등)
- 재난장비 및 비축장비 등의 보관 장소를 사전에 조사, 적정 소산 장소 지정 유지관리 철저
- 재난용 자재의 사전확보 및 관리(긴급복구 및 재해방지용 물자)
 - 최근 피해 발생시 소요물량을 참고로 하여 책정
 - 자국 및 인접기관의 비축장비·투자공사용 장비 현황을 파악 유사시 활용
 - 수방자재 및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 등의 비축량은 기관별로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관리

○ 전문교육기관 활용 교육실시

- 교육기관 :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 KT 연수원
- 교육대상자 : 국가시설 및 통신구 관리 담당

2) 재난지역의 통신고립 해소 및 통신지원 강화

○ 재난예상지역의 피해발생에 대비 통신지원 대책 사전 수집

- 재난위험지구 등 재난발생 예상지역 사전파악
- 복구장비 및 인력 등의 동원계획 수립 등 사전조치

○ 재난대책 통신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대책 유관기관의 재난대책용 회선 우선 지원
- 집단 이재민대피소(학교, 교회, 관공서 등)에는 이재민 편의를 위하여 대피소 개설과 동시에 지원

3)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 고립지역 우선 해소, 긴급복구, 항구복구 3단계로 구분 추진
- 시설별 긴급복구 우선순위 지정에 따른 복구추진
 - ※ 총무계획에 의거 복구는 상 순위, 호 제한은 하 순위부터 시행
- 통신시설피해 긴급복구
 - 긴급복구능력배양 → 통신두절지역 긴급회신 구성·훈련
 - 각 기 관 : 분기 1회(총무계획과 병행 실시)
 - 종합훈련 : 연 2회(총무훈련과 병행 실시)
- 통신수단별 복구방법 강구
 - TRS시스템
 - 한국통신의 유지보수용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활용
 - 인근고지에 이동용 TRS시스템을 설치, 통신제공
 - SNG 차량
 - 음성서비스용으로 개조된 방송중계용 차량 투입
 - SNG 차량에서 가입자선로까지 유선으로 연결
 - 아마추어무선국
 - 피해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
 - 이동교환기
 - 피해지역에 이동교환기를 설치, 인접 유선망과 M/W 연결
 - 주요기관과 가입자까지 유선망을 설치·연결 운용
 - 이동전화
 - 인접지역의 이동전화기지국 수용능력 및 통달범위 증설
 - 피해지역에 이동기지국 차량을 투입, 무선통화 제공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자의 사용능력 배가

- 장비 및 물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 강구
 - 재난복구 및 긴급회선구성을 위한 각종 장비의 운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훈련, 위기 전 실시
 - 재난 장비의 평시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전문인력 확보
- 사전 점검·정비 강화
 - 재난 장비의 점검·정비 및 시운전
 - 긴급복구장비 및 자재의 점검·정비
 - 각종 재난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5) 재난발생시 상황실 및 비상연락망 구축

○ 통신소통 대책반 구성 및 상황실 운용대책 강구

- 통신망 상호간 소통대책
- 피해복구 지원방안 및 상황관리 대책 등

○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발생시 조치 부서 지정 운영
-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연락수단의 다원화(일반전화, 전용회선, 이동전화 등)

【 노동사무소 】

1) 재난취약분야 집중관리

(가) 호우, 폭설로 인한 취약요인 사전 예방지도

○ 착공 시 사전 안전성 확보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 대 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사업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제방높이 20미터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3 킬로그램 이상인 잠함공사
 - 최대 인양 하중 30톤 이상의 고정식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 기타 건설설비·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작업 등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방 법 : 해당 사업장의 건설물·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시 공사 착공 30일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
 - 안전성 결여 시 공사 착공 중지
 - 착공 후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점검
- ##### ○ 건설공사 및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및 동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 대 상
 - 추락·붕괴 재해우려가 있는 가설공사
 - 가설기자재

〈가설공사 「안전시설설계도서」 작성의무화〉

- 건설공사 종류별 표준안전시설 기준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시설 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 가설공사 관련사고 유형별 분석·모델 개발 보급
 - ※ 가설공사 사고유형 : 거푸집, 비계, 흙막이, 터널굴착

〈불량기자재 유통근절〉

- 추진계획
 -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검사 시 가설 도서 및 도면에 의한 공사이행 실태 확인
 -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 시 설계도서 이행실태 확인
 - 각종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검정가설기자재 구입·사용여부 확인

○ 동절기,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취약건설현장 점검

- 대 상
 - 해빙기 : 추락·낙하, 지반 및 토사붕괴 우려 사업장 등
 - 장마철 : 침수, 붕괴 및 감전 재해 우려 사업장 등
 - 동절기 : 동파 및 화재폭발 우려 사업장 등
- 방 법
 - 노동부, 안전공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발주처 관계자 등과 합동 점검반 편성
 - 지방노동관서별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해빙기 2~3월, 장마철 6~7월, 동절기 11~12월
 - 점검내용 : 추락, 낙하·비래, 전도, 붕괴, 감전재해 예방시설, 기자재 사용 실태, 기타 현장 안전조치 상태
 - 지적사항 조치 : 산업안전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조치

2)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가)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목 적 : 사업장·학교, 공공시설물 및 가정 등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전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 전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모든 분야의 사고요인 제거 등 안전문화 정착
 - 일 자 : 매월 4일(4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날)
- 방 법
 - 가정, 학교 및 공공시설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
 - 안전문화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행사를 전개 국민의 참여의식 제고
 - 특히 시기별 호우, 태풍, 폭설 등 재난요인에 따라 위험요인 집중점검 실시

(나) 「위험상황 신고실」 운영

- 목 적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대형 중대사고 발생 징후 등 급박한 위험사항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상황을 조속히 파악, 노동부에 신고하여 대형사고 사전 대처
- 신고실 설치 :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팀) 설치
- 신고처리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험상황을 문서(기명) 또는 유선으로 신고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신고내용의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현지 출장 확인
 - 대형 중대사고 발생 징후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안전보건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명령
 -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조치결과 통보

(다) 체계적 안전교육 강화

- 초·중·고 안전교육 강화
 - 안전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대
 -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지도
 - 안전보건교육 담당교사 위촉
 - 안전·보건연수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지도안 및 사고사례집 제작·배포

○ 노·사 및 시민안전교육 강화

- 매스컴(ABN, 분당FM라디오, 지방지, 비전안양 등)을 통한 재난예방의식 고취
- 사회 공공안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지침 개발 보급
- 안전관련 시민단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라) 재난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대책

(가) 재난사업장 지원

○ 산재예방 및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융자금 지원

○ 산재보험료 등 연체금 징수면제

- 근 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직업훈련기본법 제32조,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
- 연체금 면제대상 : 재난으로 생산시설이 파괴되거나 피해복구로 조업이 10%이상 중단된 사업장
- 면제대상 징수금 : 산재보험료, 직업훈련 부담금, 장애인 고용촉진 부담금, 고용보험료 등의 연체금

※ 고용보험료연체금에 대하여는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거나 피해복구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

- 면제기간

- 고용보험료 연체금 : 피해 초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보험료 보고·납부기일까지
- 기타 보험료 및 부담금 연체금 : 피해 초일로부터 정상조업 일까지(최고 3개월)

※ 정상조업은 90%이상 조업을 의미함

- 면제방법

-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를 승인하되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장별 적정 면제기간을 정하여 승인
- 사실조사 및 동장 등을 통한 실태확인 후 판단 처리하되, 객관성 있는 자료의 수집, 검토로 면제기간 적정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감액조정

- 대 상 : 피해복구 지연 및 불능으로 인한 사업축소 예상 사업장
- 방 법 :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시행령 제70조, 고용보험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보험료 감액 조정제도 활용

○ 사업장내 직업훈련계획 변경승인

-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대 상
 - 재난으로 인하여 훈련시설이 10%이상이 파괴되어 훈련이 불가능한 사업장
 - 재난으로 인하여 훈련생의 10%이상이 결석하거나 모집이 불가능한 사업장
- 방 법 : 사업주의 사업 내 직업훈련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실 관계 확인 후 처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 호 서식)

○ 재난사업장 복구 및 재가동 기술지원

- 대 상 : 재난발생지역 소재 사업장
- 기 간 : 재난복구 기간 중 필요시기
- 내 용
 - 생산시설 보수 및 정비
 - 건축 및 시설물 정비(용접, 배관 등)
 - 시설 재가동을 위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 기타 피해복구
- 방 법
 -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 안전공단 기술 지도원 소속 지도 요원을 활용, 안전보건 관련 기술지도
 - 한국산업 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교원·학생을 참여시켜 사업장 보수 및 정비기술 지도

(나) 재난근로자 및 가족 지원

○ 산재보상업무 우선 처리

- 대 상 : 재난이 극심한 지역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 재난방지 작업 및 복구 작업 중 재난을 당한 근로자
 - 일반적인 산업재해 근로자
- 업무상 재난 인정범위
 - 사업장 경비 중 조난
 - 재난방지시설 작업 중 재해
 - 유실된 제품 및 설비 인양작업 중 재난
 - 기타 사업장 재난방지 및 복구 작업 중 재난

- 처리방법

- 요양신청 안내
-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즉시 요양조치 및 각종 보험급여 우선 지급
- 사망자는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우선 지급

○ 호우 피해 근로자 실업급여 지원

- 대 상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휴·폐업으로 실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 구직등록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 의료봉사 및 장비지원

- 대 상 :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난다발지역 산재근로자
- 지원방법
 - 근로복지공단 산하 의료기관의 의료진 (의사, 간호사)을 동원하여 현지에 파견, 응급조치
 - 구급차 등을 동원하여 최단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 후송
- 지원절차
 -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 하에 근로복지공단에 의료진 파견요청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역에 가까운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응급조치 후 후송

○ 취업알선

- 취업알선 대상 : 재난자 또는 그 가족 중 취업알선 희망자
- 방 법
 - 재난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알선 취지를 반사회, 매스컴 등을 통하여 재난지역에 안내하고,
 -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직표 배부 및 구직등록(희망임금, 근무지, 직종 등)을 받아 취업알선 전산망을 활용하여 희망조건에 일치하는 구인처에 최우선으로 취업알선
 - 생활 빈곤자 및 기존 취업자중 고용촉진 희망자는 해당훈련 실시

(다) 재난지역 주민지원 및 복구지도

○ 기계·장비 수리지원

- 대 상 : 재난발생 지역주민
- 기 간 : 재난복구 기간 중 필요시
- 내 용
 - 전기시설 보수 및 정비
 - 건축 및 시설정비(용접, 배관 등)
 - 농기계 수리 및 정비
 - 가전제품 수리 및 보일러 정비 등
 - 피해주민에 대한 복구(정비)요령 기술지도
 - 기타 복구지원
- 방 법
 - 한국산업 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교원·학생 참여지원
 - 재난발생지역 인근 훈련기관에 “재해복구 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하여 지원활동 실시
 - ※ 지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위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훈련기관 및 한국인력 관리공단본부의 민간지원사업 예산에서 충당

제5장

상황발생시 본부장 행동요령

제1절 대설시 행동요령

제2절 태풍시 행동요령

제3절 호우시 행동요령

여 백

제5장 상황발생시 본부장 행동요령

제1절 대설시 행동요령

『대설』 대비 임무 및 역할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총괄·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
- 설해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특별지시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발령
- 수습지원단 구성·파견
- 설해피해 현장방문 및 이재민 위로

대설 단계별 조치사항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때

대설경보

24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때

1)대설정보 ⇨ 대응태세 점검

- 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및 특별지시
- 수원기상대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
- 재해취약시설(교통두절 예상지구) 관리

2)대설주의보 ⇨ 준비단계

- 상황판단회의 주재(필요시)
- 각과 및 구청에 폭설대비 특별지시
- 제설자재 · 장비 · 인력 지정 및 전진배치 지시

3)대설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 피해 예상시 대책본부 상황 지휘
- 제설을 위한 장비 · 인력 등의 동원발령 및 응원요청
- 현장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설치 · 운영(필요시)
- 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수습상황 확인 및 요청

4)특보해제 ⇨ 복구단계로 전환

- 피해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설명
- 응급복구를 위한 부족 장비 · 인력 등 응원요청(필요시)
- 피해조사 및 보고

설해대비 특별지시 내용

- 대설 및 기온강하에 대비한 보온 기자재의 사전 점검과 정비철저 등
주민홍보 강화
-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눈을 쓸어
내리는 등 홍보 및 계도 철저
- 비닐하우스 피복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노끈으로 견고히 묶는
등 조치
- 휴작중인 비닐하우스는 보일러를 작동하여 보온을 실시함으로써 눈이
녹도록 조치하고 보온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는 수시로 눈 쓸어내리기
작업을 실시하여 붕괴 방지
- 노후화 하거나 붕괴우려 시설은 버팀목을 보강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축사 주변의 배수로를 깊게 정비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하여
습해(濕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강한 바람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등이 탈락되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하는 등 설해피해대책 강구 철저 등

응급복구 추진관련 특별지시 내용

-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상황이 조기 수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재해구호기금 등 가용예산을 즉시 배정하고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 집중
- 피해인근지역 공무원, 지역군부대, 시민단체 등과 협조, 인력·장비·구호 물품 등을 적극 지원, 조기 수습 조치
- 산간오지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생필품 공급, 농산물 수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축사, 농작물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수립 등 조기 지원대책 강구
- 피해를 입은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구호 특별휴가 검토

제2절 『태풍』 시 행동 요령

『태풍』 내습시 임무 및 역할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총괄·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
-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특별지시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발령
- 수습지원단 구성·파견
- 피해 현장방문 및 이재민 위로

태풍 단계별 조치사항

1)태풍정보 ⇨ 태풍대응태세 점검

- 대책본부 대응체제 점검 및 태풍대처계획 수립
- 수원기상대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
- 대책본부회의 주재(태풍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태풍주의보 ⇨ 준비단계로 전환

- 상황판단회의 주재(필요시)
- 각과 및 구청에 폭설대비 특별지시
 - 인명피해 Zero화, 태풍대비 사전예방 철저

3)태풍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점검(태풍 피해가 예상)
- 태풍피해 예상시 상황 지휘

4)태풍통과 ⇨ 복구단계로 전환

- 피해 현장방문 및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설명
- 응급복구를 위한 부족 장비·인력 등 응원요청(필요시)
- 피해조사 및 보고

태풍대비 유관기관 협조사항



공통사항

- 태풍대비 상황실 설치 운영
- 유관기관 및 산하 기관장 정위치 진두 지휘
-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현장관리책임자 정위치
-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관리시설물 점검·정비
- 응급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확보 및 인력동원체계 점검
- 통신두절 대비 비상통신수단 확보 점검
- 상습침수 및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홍보실

-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사항 보도 요청
- 언론기관에 재해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협조
- 각종 보도매체 안내, 지원, 통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과(영농분야), 녹지공원과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림시설 점검
- 농경지 배수로 정비 및 낙과방지를 위한 지주대 보강
- 산사태 위험지, 사방댐, 임도시설 점검



녹색정책과, 건설방재과, 건축과, 교통시설과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시설 등 점검
- 각종 산업공사장 가건물 사용금지
- 전주,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예방 및 재해특성에 따른 유발재해 방지 대책



정보통신과

- 통신두절대비 비상용 통신수단 확보 및 긴급 통신소통을 위한 지원 태세 점검
- 재해취약 통신시설의 점검 관리
- 긴급복구용 자재, 장비 및 인력동원태세 점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 학교강당, 교회, 공공건물 등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
- 공원부지, 공원묘지 등 소관시설 점검
- 의료기자재,약품, 방역·소독약품 및 구호품 관리상태 점검
- 응급의료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 대기



청소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처리과, 하수과

-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점검
-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시 수거 및 처리체계 점검
- 쓰레기 임시적환장 지정, TM레기 긴급수거용 운송장비 및 인력 동원 확보체계, 긴급 식수원 공급대책 등 점검



환경보전과, 건설방재과, 건축과, 시설공사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 육상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체계 점검
- 공사현장 안전조치 확립 및 홍수 예·경보 발령태세 점검
- 도로, 하천 등 시설물 점검
- 긴급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및 인력동원 태세 점검
-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관리
- 수계별 주요지점 수위현황 수시 파악
 - 하천횡단 도로,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취약시설 예찰활동 강화
 - 긴급 복구용 자재 비축, 장비 및 인력동원태세 점검



안양경찰서, 소방서

- 119, 군부대 등과 연계한 인명구조태세 점검
- 계곡, 하천, 유원지 등 야영·등산객, 낚시꾼 등 대피유도
- 신호등 감전사고예방 점검 및 안전조치
- 재해우려지역의 경비 및 방범 활동체계 점검
-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지정 등 통제체계 점검

각종 시설물별 점검철저 당부말씀(전화)

- 태풍의 강도 및 크기가 지난 0000년에 발생한 “00”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산하 기관장은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관계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긴급
대응체제 구축에 만전
-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등산객·행락객·낚시객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00일
00시까지 모두 대피토록 조치
- 자동우량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가동여부 점검
- 낙석 등 붕괴위험지구, 펌프장, 수문, 제방 등 재해취약시설 긴급 예찰활동
실시 등 사전조치 철저
- 농·축산시설 등 피해최소화 조치 및 수확 가능 농작물 등은 조기 수확 조치
- 이재민 발생에 대비 수용시설, 구호물품 등 사전준비
- 태풍의 이동상황 등 기상정보 예의주시 및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주민 홍보 강화 등

제3절 『호우』 시 행동요령

『豪雨』 시 역할 및 임무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총괄·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
-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특별지시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발령
- 수습지원단 구성·파견
- 피해 현장방문 및 이재민 위로

호우 단계별 조치사항

호우주의보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때

호우경보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때

1)호우주의보 ⇨ 준비단계(사전대비체제)

- 대책본부 대응체제 점검 및 특별지시
- 수원기상대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
- 대책본부회의 주재(호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호우대비 특별지시
 -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 강화 등

2)호우경보 ⇨ 비상단계로 전환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점검
- 호우피해 예상시 대책본부 상황지휘

3)특보해제 ⇨ 복구단계로 전환

- 재난현장 지원단 파견(필요시)
- VIP, 상급기관장 등 수해현장 방문시 수행
-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집중호우 대비 특별지시



지난 0월 00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00지방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재해위험 시설물 사전 점검·정비, 취약지역 구급체계를 강화하고 다음사항을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에 전파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재해대책 상황근무 철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태세 및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

○ 재해위험지구 등 시설물 사전점검·정비 철저

- 재해위험지구의 책임자 지정 등 현장관리 철저
- 방재시설물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사전 예찰 강화
 - 특히,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E급 시설물 특별관리
- 대규모공사장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 집중호우시 하천제방 등 예찰을 강화하고 제체누수 및 파이핑현상 등이 발견되면 즉시 긴급정비반을 투입 정비 조치

○ 가로등·신호등 감전사 피해방지를 위한 점검·정비 철저

- 담당부서, 한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안전대책 수립시행 및 협조 지원체제 구축
- 부적합 시설 정비완료 후 전기안전공사 재점검 및 미정비 시설물에 대한 단전조치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아파트 보안등·전기광고물 등 사설전기시설물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강화

응급복구 추진관련 특별지시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상황이 조기에 수습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기 바람

- 사망·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 침수주택수리비 등 해당 재원별 재해구호금 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신속히 지원
- 침수지역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예방접종 실시
- 수해지역 생활쓰레기 등 각종수해 쓰레기 제거에 최우선 추진
- 상수도 피해지역은 운반급수 실시로 수재민 생활불편 최소화
- 피해시설 응급복구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군인·예비군·민방위대원 등을 동원하여 조기 마무리하되, 전기·전화·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을 최우선 복구
- 응급복구 등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지체 없이 시달하여 응급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등

제6장

상황발생시 상황실 행동요령

제1절 상황실 행동요령

1.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제시 비상근무계획
2. 재난예방 및 수습단계별 체제
3. 상황발생시 단계별 조치
4. 재난상황 보고
5.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흐름도
6. 복구계획 확정 및 집행 흐름도
7. 건설방재과 비상근무 체계도
8. 단계별 재난상황 보고
9. 유관기관 협조체계
10. 재난발생시 비상연락 통신체계

제2절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대책

제3절 야간대피 행동요령

제4절 재난안전선(SAFETY LINE)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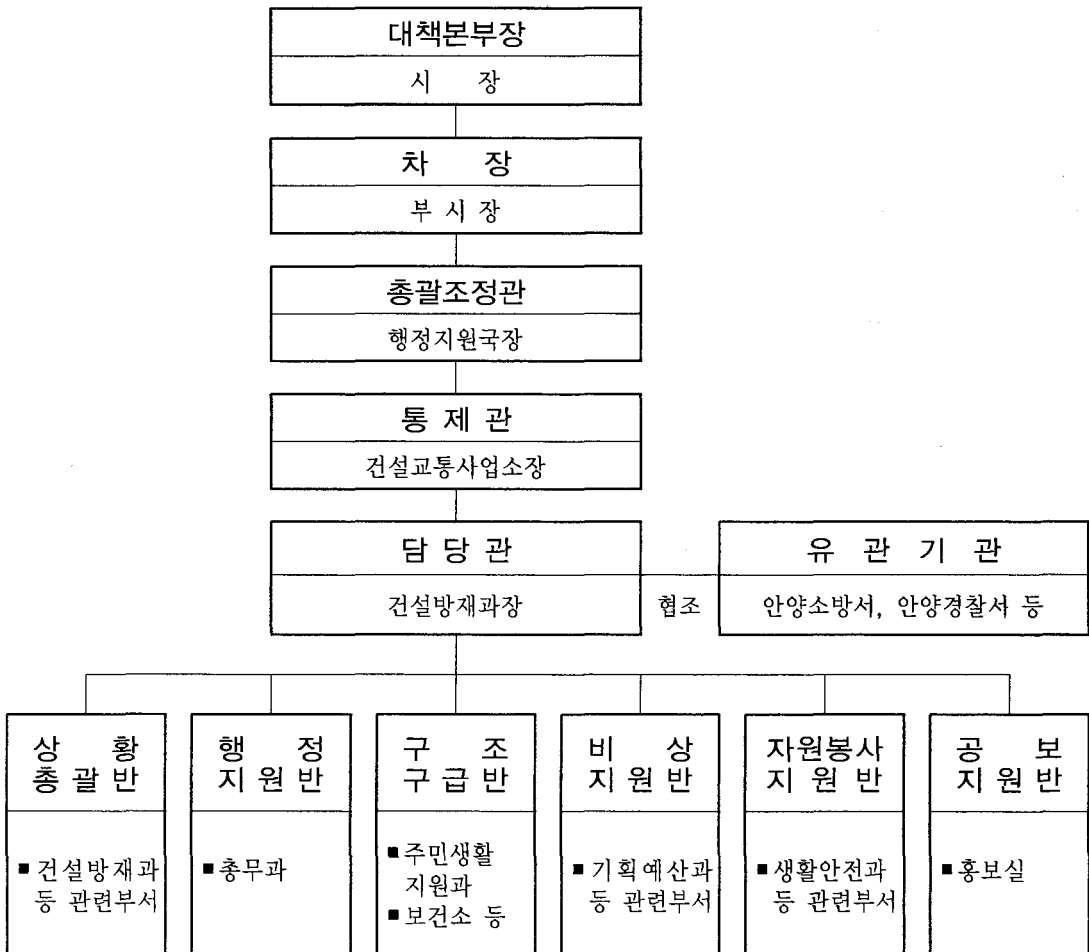
여 백

제6장 상황발생시 상황실 행동요령

제1절 상황실 행동요령

1.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체제시 비상근무 계획

1) 조 직



2)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의 구성원별 임무

○ 조 직

- 본부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행정지원국장
- 통제관 : 건설교통사업소장(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 국장(기반재난)
- 담당관 : 해당 재난관련업무 담당 과장
- 실무반 : 해당 재난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관계기관

○ 임 무

- 본부장 : 본부의 의장이 되며 본부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
- 차 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
- 총괄조정관 :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차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대행
- 통제관 :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실무반 지휘
- 담당관 :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총괄 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실무반 : 본부회의 의결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통제관 밑에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
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을 둠

3) 실무반구성 및 임무

실무반	구성	주요임무
상황총괄반	해당재난 관련실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9.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10.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11.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12.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4.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15.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7.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18.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19. 기타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행정지원반	총무과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3.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실무반	구성	주요임무
구조구급반	주민생활 지원과 보건소	1. 구조·구급 업무는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과 협조 2.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3. 구조구급 상황 파악,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가동 4.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등) 5.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비상지원반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안전과 경제산업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보건소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처리과 하수과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 파악 2. 본청 각 부서 및 구·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11. 시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4.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확보 15.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실무반	구 성	주요임무
비상지원반	안양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KT 안양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자원봉사지원반	생활안전과 가족여성과 유관기관	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4. 기타 자원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공보지원반	홍보실	1. 보도지원팀 및 공보팀 구성 운영 2.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3.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인터넷, 지역방송 등) 4. 재난 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5.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6.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7.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8.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9.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실무반별 조직 및 인원 (자연재해의 경우)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계	97명			23명			74명
상황총괄반	8명			5명			3명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피해상황종합보고서 작성 ○ 긴급상황관리(인명구조, 피해, 등) ○ 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락 ○ 상황근무조 편성 및 복무단속	2	건설방재과	시설6급	김영남	건설방재과	공업8급	박상훈
○ 재해사전조치사항 (지시, 보고, 확인)	1	"	시설7급	안덕수			
○ 각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강우량 보고 및 수집 ○ 문서발송 및 접수 ○ 방재전산 시스템 운영 ○ 상황실 전산상황 보고	1	"	통신8급	정기형			
○ 응급조치 종합상황 보고 - 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사항 - 군·경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2	"	시설7급	안덕수	건설방재과	시설7급	박태규
○ 민방위 동원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과	행정7급	이기환	생활안전과	행정6급	이선옥
행정지원반	17명			3명			14명
○ 보고자료 작성 등 (의전) ○ 수해지역 여론, 선행, 미담사례, 수해민원처리 ○ 공무원 비상근무 및 복무관리	1				총무과	행정6급	조대현
○ 각 실과소 보고서 및 일일 피해복구 상황 취합후 검토 조치할 사항분석 및 건의 ※ 검토의견을 총괄운영반에 제출 ○ 긴급 재정에 관한 사항	2	기획예산과	행정6급	박성순	기획예산과	행정6급	이종윤
구청(동안, 만안) 계	14			2명			12명
○ 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 실시간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상황 조사	4				동안	행정6급	유지형
						행정8급	김주영
					만안	행정6급	노상호
						행정9급	김종옥
○ 주요피해 우려지역 현장 순찰 및 상황 수시 파악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수명사항 현장전파 및 지휘	10	만안	시설7급	전현호	만안	시설6급	라대규
						시설8급	권경우
						공업6급	최석준
						행정7급	박수정
		동안	시설7급	오택수	동안	시설6급	이호장
						시설8급	김종곤
						행정6급	박동철
						행정7급	한현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구조·구급반	8명			2명			6명
○ 이재민 수용 및 구호대책 ○ 구호물자 관리 및 배부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7급	박문규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8급	손태현
○ 적십자사와 업무협조 ○ 사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동안구 보건소	간호6급	신경희	만안보건소	간호6급	김인자
○ 예방접종 및 수해지역 방역 등					만안보건소	간호7급	김진희
						간호7급	윤미란
					동안보건소	간호7급	김창희
						보건7급	조경희
비상지원반	41명			8명			33명
○ 건축물 피해상황 및 복구 대책	4	건 축 과	시설7급	김근홍	건 축 과	시설6급	하성철
						시설7급	이승남
						시설7급	김종원
○ 교통시설물 (주차장)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 피해지역 차량견인 ○ 차량피해 상황파악	3	교통시설과	시설8급	황준우	교통시설과	시설6급	김진수
						행정7급	서충인
○ 문화재 피해상황 및 복구 대책	2				문화예술과	행정6급	이종근
						행정7급	이춘성
○ 각종 체육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2				체육청소년과	시설6급	진형렬
						시설7급	김기호
○ 묘지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 축산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4				위 생 과	보건6급	박성학
						행정7급	윤진문
						축산7급	장희선
						보건8급	최권희
○ 여성단체 및 수해지역 자원 봉사활동 지원, 급식대책	3				가족여성과	행정6급	이강숙
						행정6급	홍성화
						행정6급	이영철
○ 농경지,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 상가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 대책 ○ 산업체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5	경제산업과	농업7급	홍문기	경제산업과	지도사	최숙현
		녹색정책과	농업7급	이도상	녹색정책과	행정7급	신현문

임 무	근무 인원	상황실근무자			사무실근무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 도로·교량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 - 건설장비(군장비포함) 동원 및 지원대책	6	건설방재과	기능7급	최성근	건설방재과	시설6급	김종강
						시설7급	이기돈
						시설7급	이장우
						행정6급	이종환
						시설8급	김갑순
하천 및 하수도 등 소규모 시설 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2	환경보전과	시설7급	박승준	환경보전과	시설8급	국승열
공공건물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2				시설공사와	시설6급	이충진
						시설7급	주동완
산사태 등 산림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2	녹지공원과	녹지7급	백시원	녹지공원과	녹지6급	박성즙
- 상수도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 비상급수 대책	2	맑은 물 공급 과	시설7급	박국진	맑은 물 공급 과	기능8급	이성호
하수도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1				하 수 과	시설6급	최진필
각종 쓰레기 및 분뇨 처리대책	3	청 소 과	행정7급	장 철	청 소 과	행정6급	조남동
						행정6급	박종화
자원봉사지원반	5명			2명			3명
- 대민지원사항, 급식대책 - 자원봉사 활동	2	가족여성과	행정7급	이정호	가족여성과	행정7급	정은정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협조	1				생활안전과	행정7급	강성룡
- 긴급대피 인명구조 상황관리 - 구조·구급활동 총괄	2	안양소방서	지방소방교	손종익	안양소방서	지방소방경	민상흠
공보지원반	4명			1명			3명
- 보도자료 수집 언론기관 제공 - 언론보도사항을 분석하여 종합보고서 작성 - 상황실 언론기관, 기자방문시 안내	4	홍 보 실	행정6급	김광택	홍 보 실	행정6급	김공한
						행정7급	이주빈
						행정7급	박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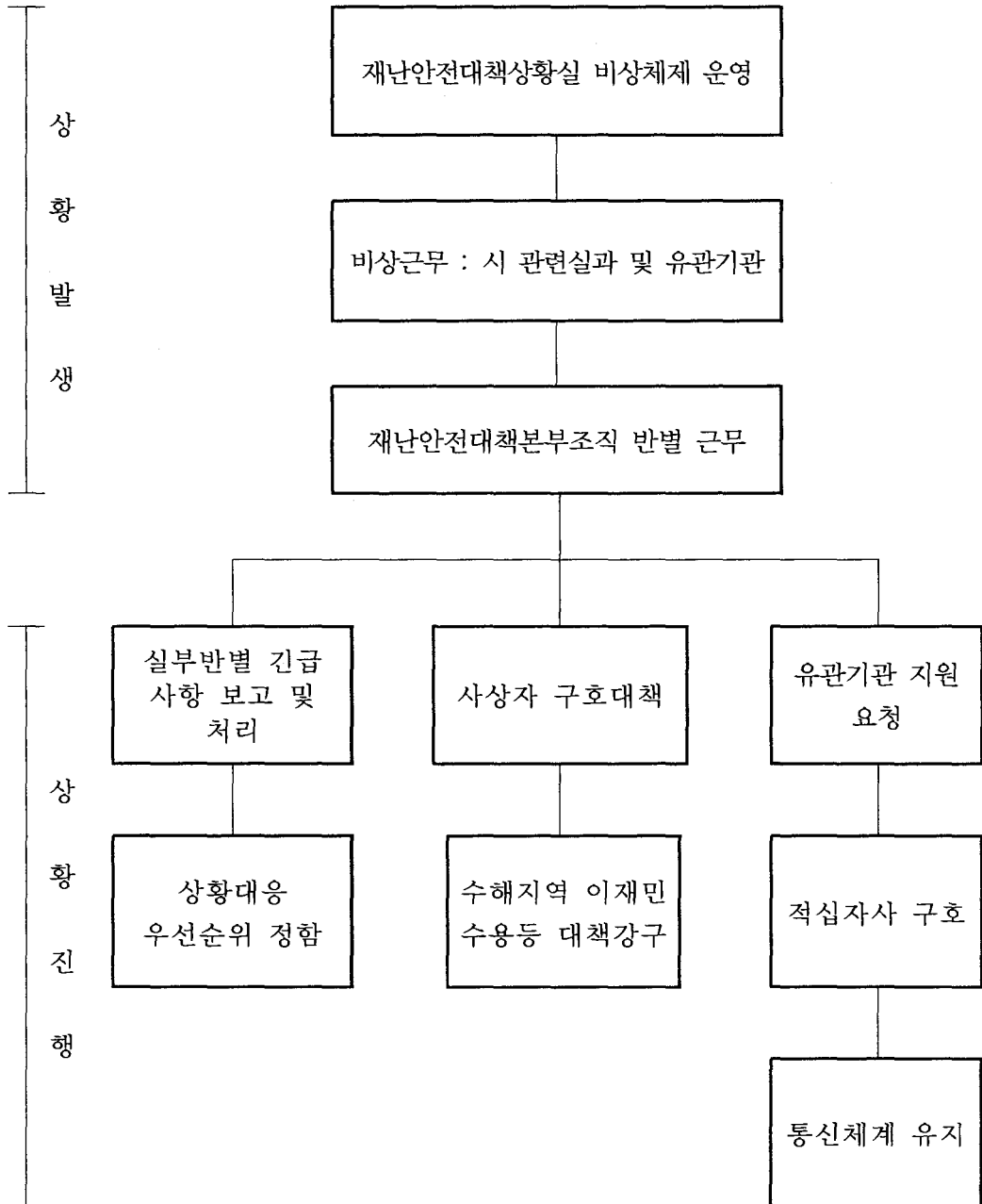
※ 상황이 연장될 경우 과 및 소관기관에서 근무자 재조정

2. 재난예방 및 수습 단계별 체제

구 분		구체적 대응체계
예 방 단 계	예찰체계	• 간부급 공무원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점검 실시 및 수시 현지점검. • 배수문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정비 : 관할지역 직원 및 주민 • 재해위험지구 모니터 및 공사현장소장 지정 예찰 활동 • 수위 및 홍수정보 분석 및 관리 • 휴대폰, 무전기 등 통신수단 지참 → 수시 연락체계 확보 • 연중무휴 24시간 상황유지 및 기상 특보시 재난 관련부서 합동 근무
	공조체계	• 취약시기별(해빙기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 유관기관 상황실과 긴급 연락체계 확보 • 상습침수지역 주민의 연락체계 확보로 필요시 즉시 대피 • 재난 발생시 인력, 장비 지원체계 구축·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수 습 단 계	초동대처	•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처(3단계) → 상시, 사전, 비상 • 산간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 인명피해 예상지구 순찰 강화 · 현장진행상황 수시보고 • 피해자 후송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강구 · 보건소, 소방구급차 및 민간병원 구급차 비상대기 (구급차 부족시 관내 전 병원 및 경찰서, 관용차량 활용) • 현장 및 외곽지역 질서 유지 · 주민소개, 사태 발생시 진입로 교통 통제, 구급차 교통로 확보 등 • 재난 사전 대피계획 수립 • 이재민 수송차량 확보 및 인솔 책임자 지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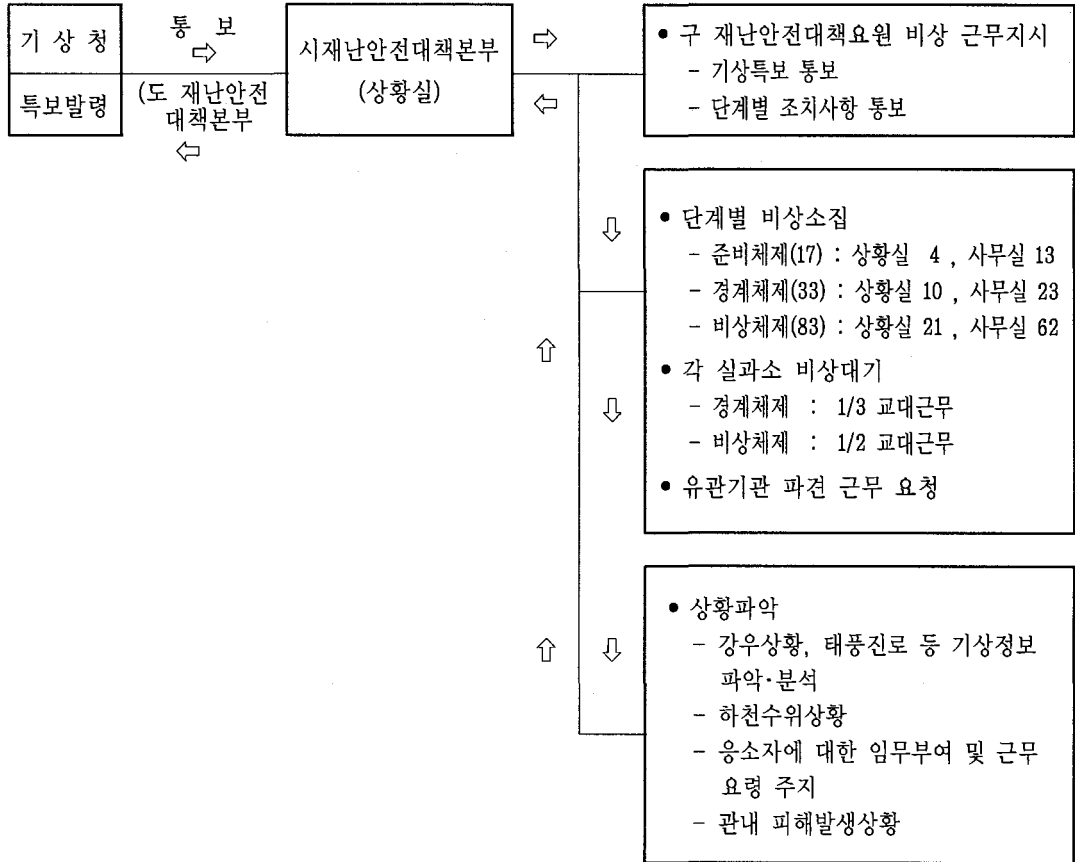
3. 상황 발생시 단계별 조치

1) 상황발생 진행시 주요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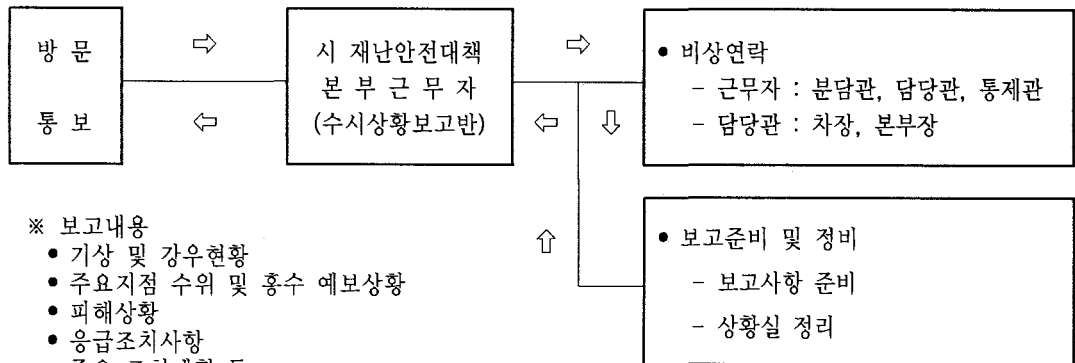


2) 상황근무 요령

○ 정보 전파



○ 주요인사 방문시



※ 보고내용

- 기상 및 강우현황
- 주요지점 수위 및 홍수 예보상황
- 피해상황
- 응급조치사항
- 주요 조치계획 등

3) 재난상황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별	조 치 사 항
상시대비체제 (주의보단계)	○ 비상근무 실시 ○ 강우관측 강화 ○ 기상정보 전파 및 재난 사전예방 강화 지시 ○ 농, 축산물 안전대책 강구
사전대비체제 (경보단계)	○ 재난대책 강화 조치 ○ 철저한 상황 관리 및 긴급사태 즉각 대처 ○ 산간계곡 및 하천의 야영객 특별 관리 ○ 통제, 퇴거, 대피명령제 철저 이행 ○ 강우량 시간별 보고 및 피해상황 파악 ○ 유관기관 합동 근무 및 피해상황 파악 ○ 위험요소 사전 예찰 강화
비 상 단 계	○ 행정 기관 · 전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유관기관 합동) · 피해상황 보고 · 수해 상습지, 산사태 위험지구내 주민 대피계획 추진 · 기 입산한 등산객 안전지대 대피 및 안내 방송 ○ 피해 발생시 조치사항 · 조난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 전개 · 이재민 구호 및 방역 실시 · 사망자, 부상자 의료 조치 · 피해지구 응급 복구 · 교통두절 구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설치 ○ 시민 행동 요령 · 기 입산한 등산객, 잔류 피서객 안전지대 대피 · 외출 자제 · 집 주위 하수도 유통 장애물 제거 · 라디오, TV 방송에 따라 행동

4. 재난상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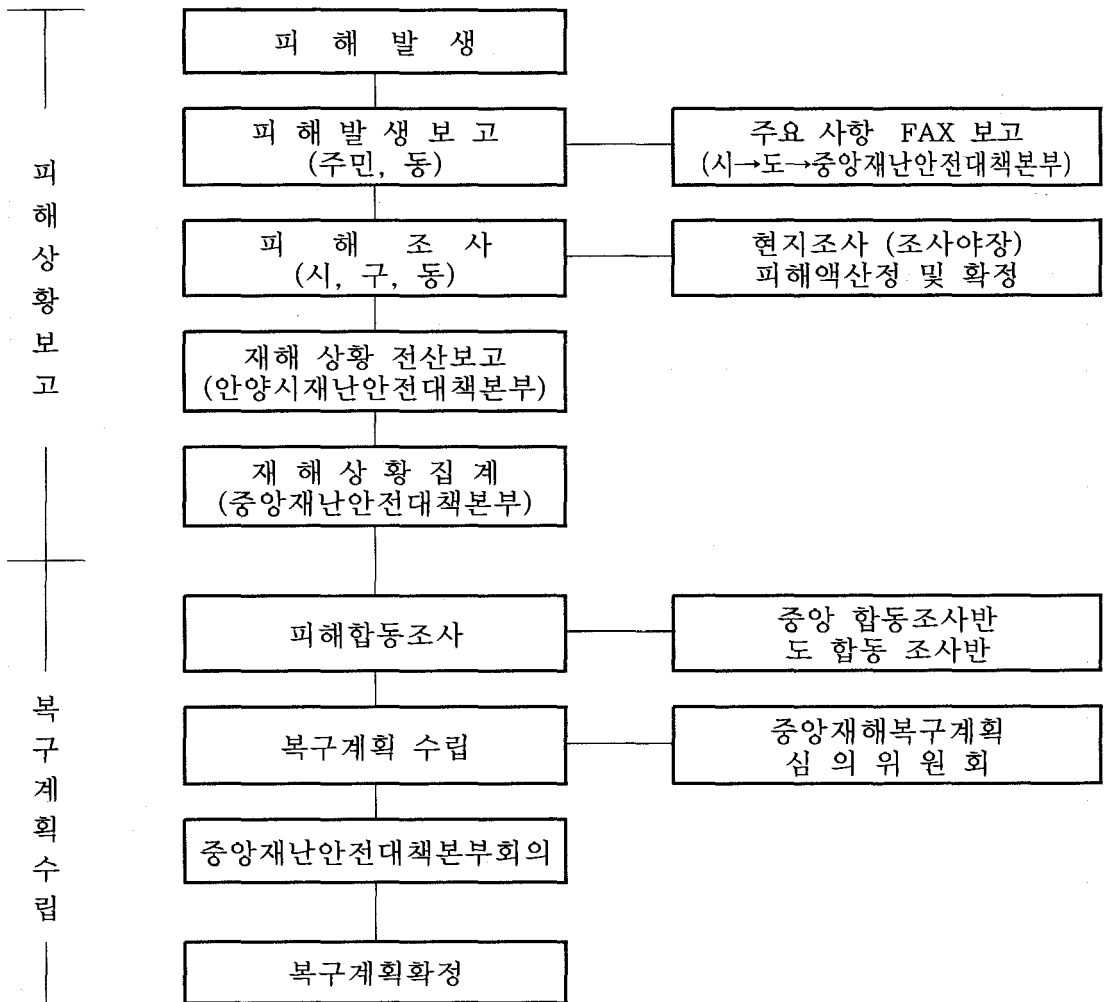
○ 보고 방법

· 보고는 방재전산 시스템 보고와 FAX, 전화 보고

○ 보고 순서

구 분	보고시기	보 고 사 항
발생보고	강우 또는 강설시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즉시 보고	재난상황보고서(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일일보고	강우 또는 강설 등 재난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고	1) 풍수해 총괄표(동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 피해내역(인명피해 포함) 3) 주요 지역별 강우(강설) 4) 피해 원인 5) 피해발생 일시 6) 피해지역 7) 응급조치(응급복구, 응급구호 및 수난 구조)사항 8) 인원 및 장비동원 사항 9) 군 지원 사항
최종보고	강우 또는 강설 등 재난원인이 종료된 후 피해 집계 마무리된 때	1) 일일보고 내용 중 1) ~ 6) 2) 인명피해 사항 3) 응급복구 조치사항(동규칙 제18호 서식) 4) 응급구호 조치사항(동규칙 제19호 서식) 5) 수난구조 사항 6) 인명 및 장비동원 사항 7) 군 지원 사항

5.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절차 흐름도



○ 사전조치사항 및 재난상황보고 서식

구분	비상근무인원	대피인원(명)			위험지구예찰점검(개소)			선박(척)		연안여객선통제			기 타			비고
		행락객	등산객	주민	대형공사장	방재시설물	기타	결박	대피	일시	항로명	척				
계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	---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 구 동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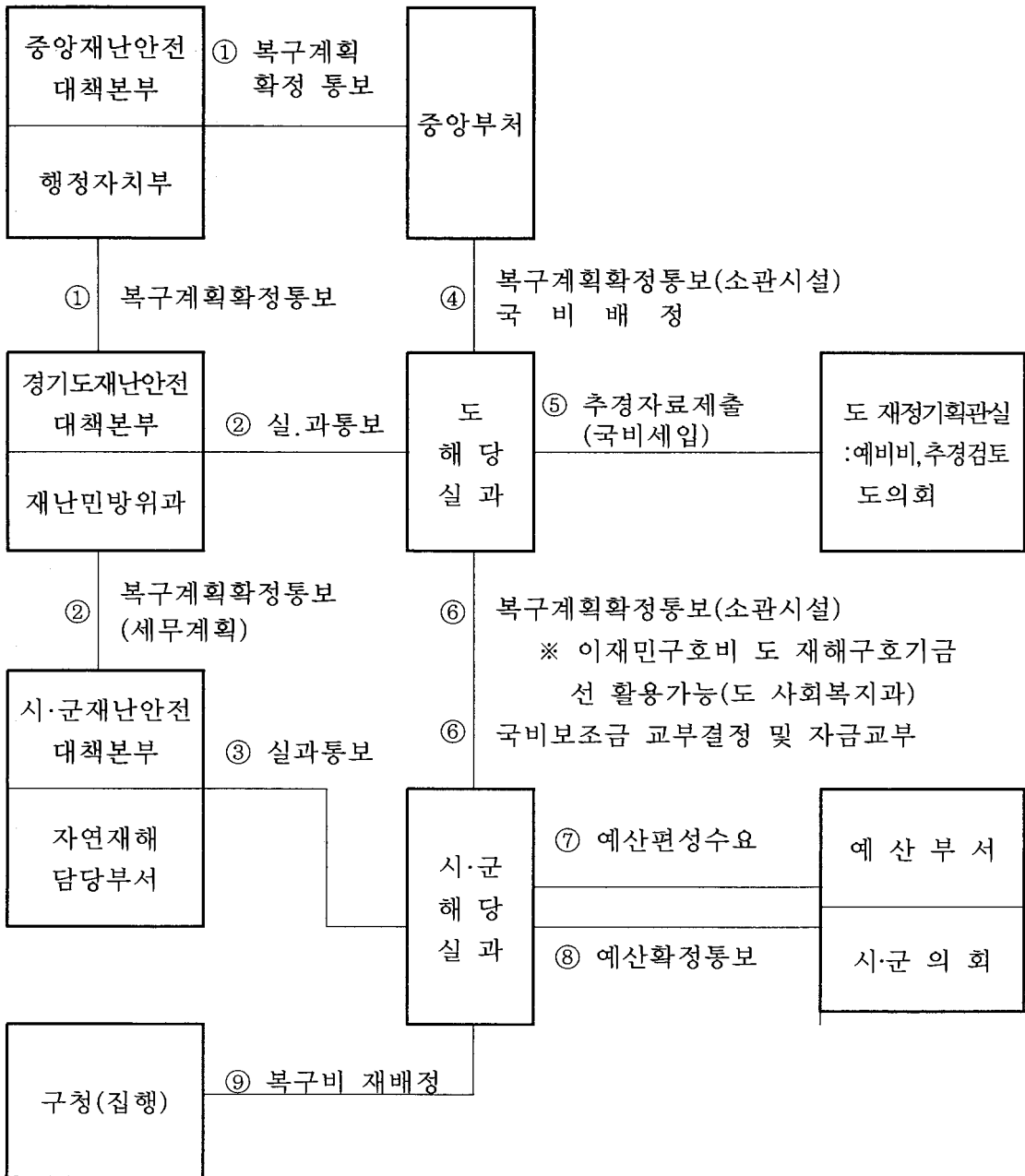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장 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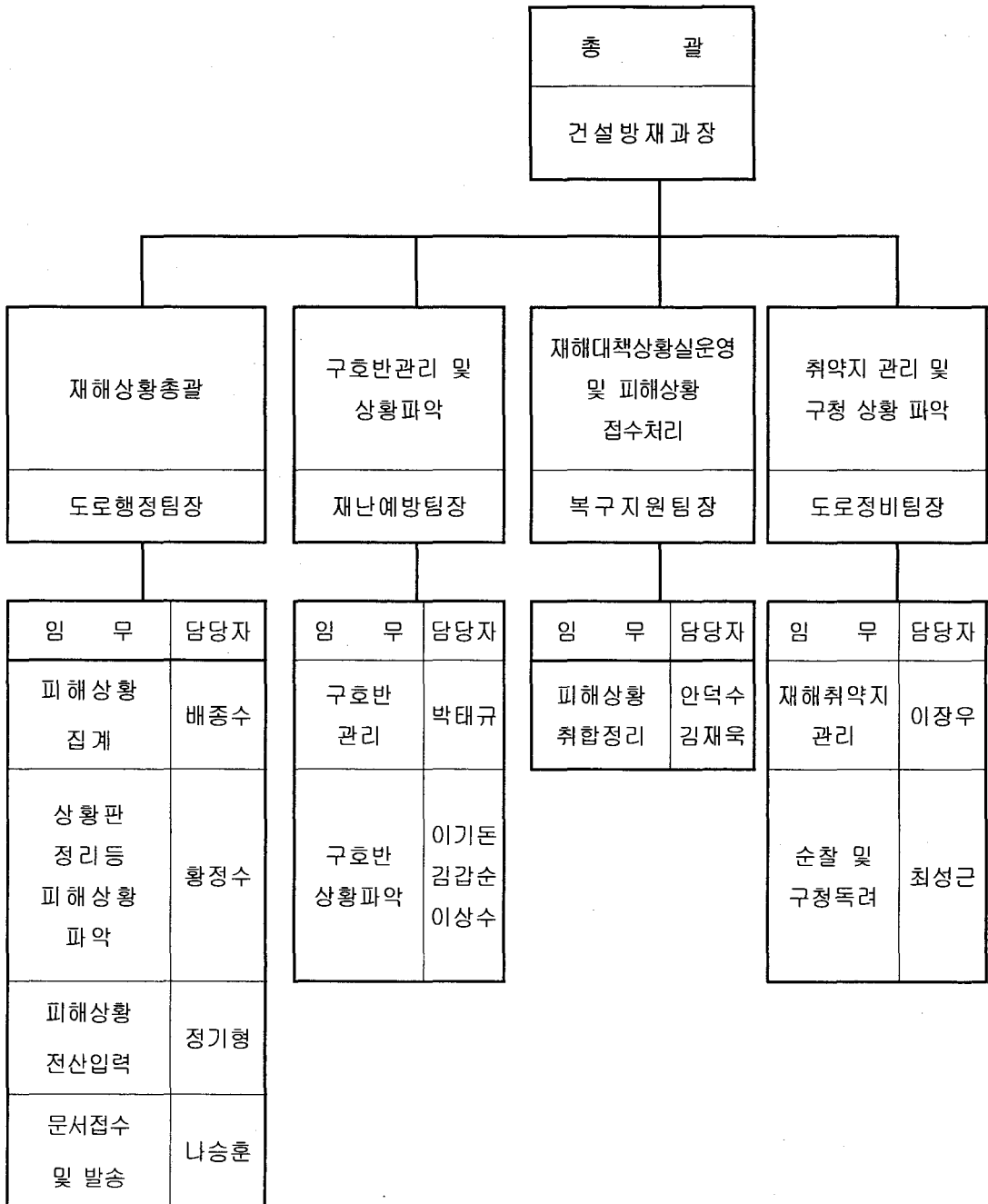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6. 복구계획 확정 및 집행 흐름도



7. 건설방재과 비상근무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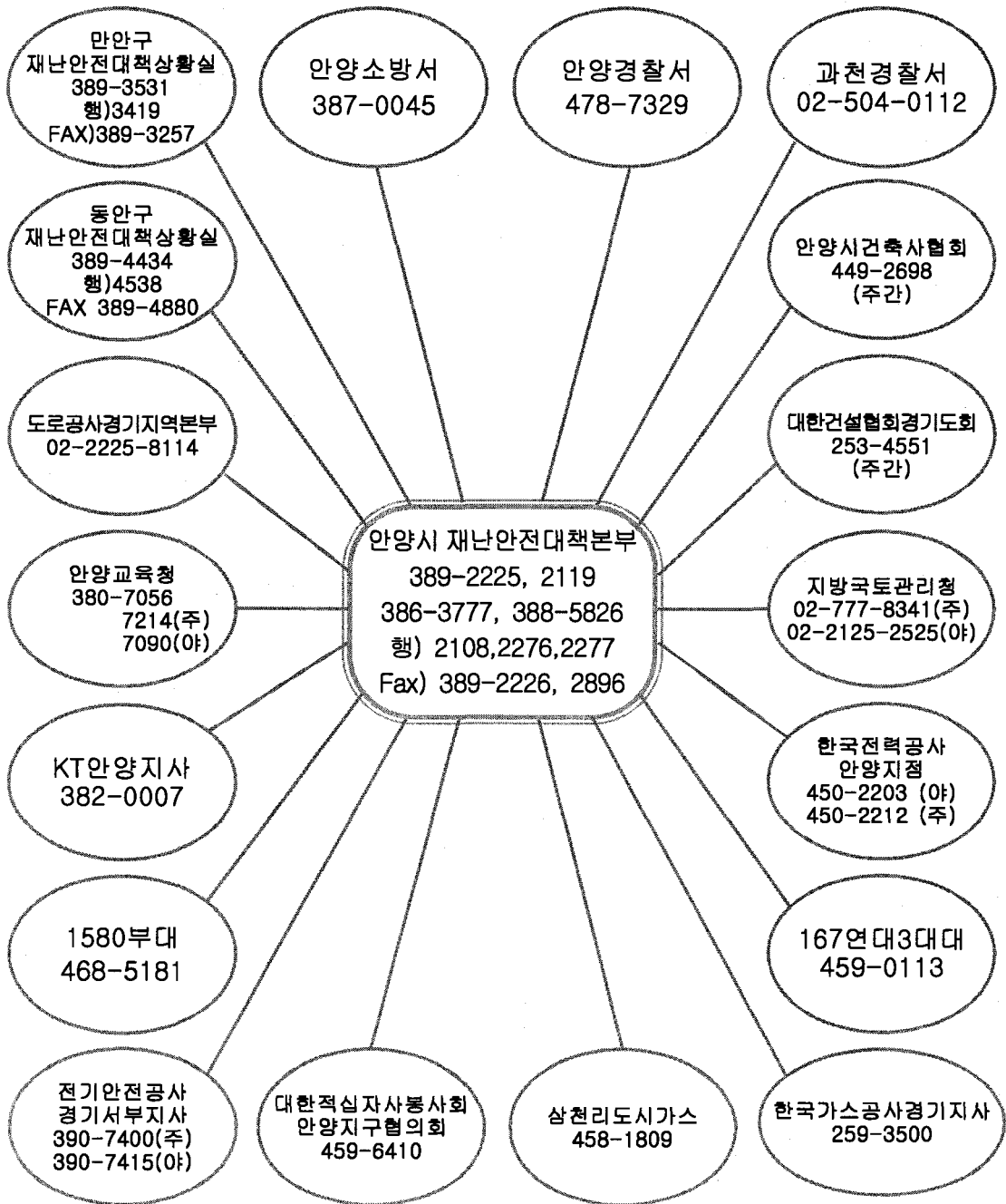


8. 단계별 재난보고 요령

구 분	보 고 시 기	보 고 사 항	보고방법
가. 발생보고	피해발생시(즉시) 재난원인계속되는 상황 1일 2회 ┌ 14시 까지 (12시기준) └ 20시 까지 (18시기준)	○ 재난대책조치결과 ○ 재난상황보고서 ○ 피해보고 ┌ 풍수해총괄표 └ 인명피해발생현황 └ 피해내역 └ 교통두절현황 └ 교통두절 및 제설작업 현황 ○ 응급조치 ┌ 수난구조활동 └ 응급구조조치상황 └ 응급복구조치상황 └ 응급복구지원상황 └ 군 지원 상황	구 두 전 화 서 면 F A X
나. 최종보고	재난 원인이 종료된 후 1일이 내	○ 일일보고내용 전체	서 면
다. 확정보고	최종 보고 후 3일 이내	○ 최종보고 내용전체 * 주요 피해현황 사진첨 (칼라 3" × 5") * 재난대장	
(피해보고 책임자 지정) ○ 1차 : 각동 주무 → 구 재난대책상황실 → 시 해당실·과·소 ○ 2차 : 구 해당과 및 시 관련 실,과 →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대책과) ○ 3차 : 재난대책과 또는 재해대책팀장 → 도 ○ 최종보고 : 피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최종보고 ※ 보고 서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9.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 유관기관



나) 유관기관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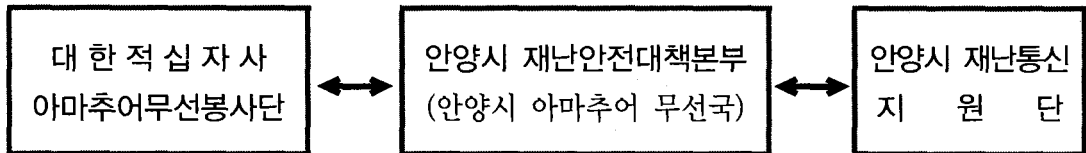
부서 및 유관기관	임 무	협 조 사 항
안 양 교 육 청	○ 학교시설 보호 ○ 비상 체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 이재민 발생에 대한 지원계획 ○ 교육시설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교실, 강당 체육관등) ○ 재난에 따른 사전조치 사항 통보 (교육 위원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예방 및 복구시 학생동원 (필요시) ○ 학생 및 학부모를 통한 대민 홍보 전개로 자율참여 의식고취
안 양 소 방 서	○ 인명구조 ○ 화재진압	○ 재난구조반의 인명구조 활동 ○ 재난안전대책본부상주근무(비상체제 시) ○ 헬기지원 요청 시 협조 ○ 실종자 수색 협조
한 국 전 력 안 양 지 점	○ 전력시설 보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방호대를 편성운영 ○ 중요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불량개소는 우기전 개보수	○ 수해침수지역의 감전사고 사전조치 ○ 피해 송·배선로의 신속복구 ○ 지중선 시설작업에 따른 재난사전 예방대책 강구 ○ 수해 시 전기취급 요령홍보 (수해지역주민, 감전사고 발생예상 전 지역 주민등)
1 6 7 연 대 3 대 대	○ 피해발생 및 복구계획보고 (군부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자체시설 보호	○ 응급복구 지원 및 인명 구조(병력, 장비) ○ 대민 지원(현역, 예비군 등) ○ 군사시설 보호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 정비 ○ 군 시설 피해 발생시 최단 시간 내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 ○ 헬기지원 요청 시 지원협조
경 찰 서 (안양,과천)		○ 교통통제, 사망·실종자확인 ○ 재난위험지역 예방순찰활동 강화
공 군 부 대		○ 안양시 국지기상 안내
농 협 중 앙 회 안 양 지 점		○ 피해 지역의 농약적기 공급 ○ 각종피해복구 용자금의 적기지원
K T 안 양	○ 각종 시설피해 예방대책 수립 ○ 피해 통신시설의 신속복구	○ 피해예방 홍보(낙뢰 등) ○ 피해시설 신속복구

다) 재난 구조 자원 봉사단

구 분	봉 사 단 체	협 조 사 항
인명구조 봉사단	○ 안양시지역자율방재단 ○ 안양시 의용 소방대 ○ 안양시 해병전우회(수중인명구조대)	○ 인명 구조 활동 지원 ○ 사망,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의료 자원봉사단	○ 한림대 병원 의료 봉사팀 ○ 메트로병원 의료 봉사팀. ○ 대한적십자사 129 구급 봉사대 ○ 안양시 의사(한의사) 연합회	○ 의료 방역 활동 및약품 지원
통신 지원 봉사단	○ 대한적십자사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 안양시 재난 통신 지원단	○ 통신 두절시 송, 수신 협조 ○ 긴급 상황 발생시 무선에 의한 상황 전파
차량 지원 봉사단	○ 안양시 모범 운전자회	○ 차량 지원 및 부상자 긴급 후송
자 원 봉 사 단	○ 대한적십자사 촛불 부녀봉사회 ○ 대한적십자사 안양부녀 봉사회 ○ 안양시지역자율방재단 ○ 시민안전봉사대 외 6개 단체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 ○ 재난 지역에서의 각종 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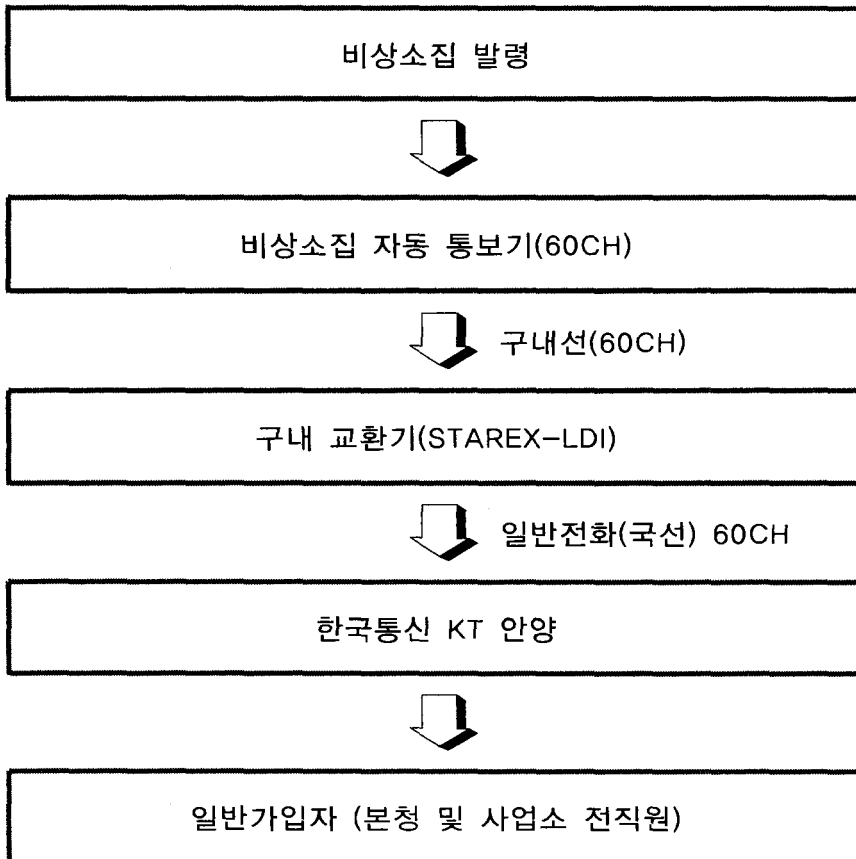
10. 재난 발생시 비상연락 통신 체계

가) 비상통신 연락체계 (유선 불통시)



나) 공무원 비상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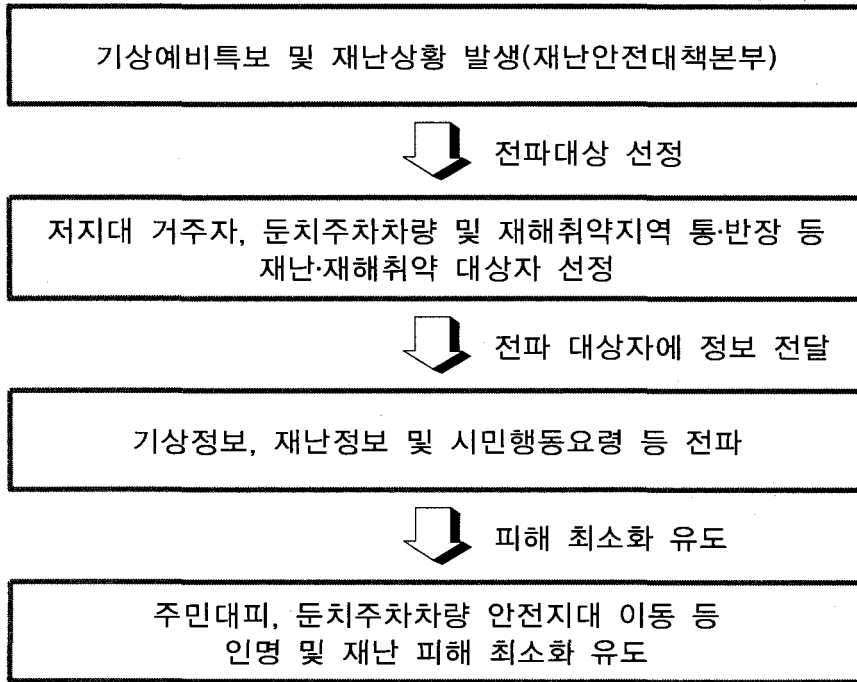
○ 공무원 비상소집 계통도



※ 1명 호출시 : 평균 1분 소요 (전직원 호출시 약 20분 소요)

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재난상황 자동수신계통도



제2절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추진

1. 추진과제

가. 평상시

- 주민 안전의식 고취 등 주민 홍보강화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계활동 강화
-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제대피 등 주민통제 제도 강화

나. 사태발생시

- 각종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기능 강화
- 주·야간 주민대피 및 통제활동 강화

2. 세부추진방안

가. 평상시

1) 주민 안전의식 고취 등 주민홍보 강화

- 대상지역 : 재해취약지역 및 돌발성 인명 피해 우려지역

- “재해취약지역”과 “돌발성 피해우려지역”의 홍보방안 마련

● 재해취약지역

- ▶ 주요하천변 : 5개 하천 16개동
- ▶ 반지하주택 : 886세대
- ▶ 대규모공사장 : 21개소
 - 대상지역 주민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회사)를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에 D/B구축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을앰프, 반상회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일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평상시에도 경각심 고취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평상시에는 피해우려가 없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강우

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급증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필요

- 위험표지판,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위험시 출입 통제
- 과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은 위험표지판 설치

○ 홍보문구 세분화 및 지속적인 홍보

● 지역·대상·방법 등에 따라 홍보내용 구분

- 지역별 : 재해취약지역, 돌발성 위험지역
- 대상별 : 지역주민
- 홍보방법별 : 각종안내판, 현수막, 전광판, 관용차량 등

● 방송문구는 재난 유형별로 작성하여 앰프 등 방송시설이나 방송차량 등에 비치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실제 행동요령 위주의 홍보

- 현지 주민에 대한 홍보는 지구별 담당자를 통하여 재난관련 행동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
- 기업체, 교회 등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단체 등에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 경각심 고취

- 기상관련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단계에서는 반드시 방송 등 홍보실시

2)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계활동 강화

- 대상지역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선정

● 마을 진입로를 횡단하는 하천, 징검다리, 낮은 교량, 세월교, 노후교량, 난간이 없는 교량, 기타 자연재난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

▶ 우려지역 선정 : 18개소

- 안양천 : 14개소(세월교 5, 징검다리 13)
- 학의천 : 4개소(징검다리 4)

○ 위험지역에 출입통제 담당자 지정 운영

● 돌발성인명피해 우려지역 또는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출입통제 담당자

지정

- 현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현지담당자” 지정 “현지담당자”는 재난위험 예견시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

- 담당자 전화번호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D/B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 전파

3)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제대피 등 주민통제 제도 강화

• 대상지역 : 재해취약지역 및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대피명령 운영강화

● 재난 예견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대피명령 발령 및 위험구역 출입 제한 등 응급조치 시행

● 대피명령 발령, 강제대피, 출입제한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명령 운영강화

- 대피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부과 등 법규정 엄격 적용 및 실제 강제대피를 대비하여 경찰과 사전협력체계 구축

•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가 필요한 경우 소방서·경찰의 즉시 협조 체계 구축

○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SAFE LINE」개념 도입

●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연결하여 「SAFE LINE」을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

- 위험지역 진·출입부에는 상시 또는 재난 예견시 사전에 바리케이트를 비치하고 비상시 즉시 출입통제

- 위험지역 진·출입 통제시 바리케이트 외에 출입을 제한하는 「SAFE LINE」 띠를 설치

“SAFE LINE”(안전선) 이란?

- ▶ 경찰에서 시행중인 POLICE LINE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연결한 선(線)으로
- ▶ “SAFE LINE” 내부지역에 거주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사태발생시

1) 각종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기능 강화

- 대상지역 : 재해취약지역 및 돌발성 인명 피해 우려지역

○ 재난 예·경보 시설 보강

● 기존 설치된 재난 예·경보시설의 보수·보강

- 현재 사용 중인 예·경보시설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보수를 실시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 특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전용회선방식) 보수·보강 실시

● 대피지구 주민, 대피담당자 등의 비상 연락처 D/B 확충

- 위험지역 내 주민 또는 위험지역 출입통제 담당자 등의 연락처 D/B구축

● 재난관리기금 활용

-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보강·확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2) 주·야간 주민대피 및 통제활동 강화

- 대상지역 : 상습취약지역 및 돌발성 인명 피해 우려지역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통제계획 보강

● 돌발성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 진·출입로에는 바리케이트, 재난안전선 등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비치
-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난 예상시에는 현지 출동 및 위험지역 출입 통제

● 도심지 맨홀은 관련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 한전, KT, 지자체 관련부서, 기타 맨홀을 관리하는 유관기관, 부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맨홀상태 수시점검
 - ▶ 평상시 비상연락망을 구축
- 공사 중이거나 열려있는 맨홀은 강우 전에 반드시 뚜껑을 덮도록 조치
-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급물살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통제자 1명을 배치하고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의 분전함 및 안정기를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설치 및 침수시 전력공급 중단

● 산사태 우려지역과 관련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대상은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구” 뿐 아니라 급경사지 또는

연장이 긴 경사지역·계곡 연장선상 하류에 인가가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

● 침수지역 노후주택 붕괴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건물이 붕괴된 지역은 이재민으로 분류하여 수용하고 있으나 노후주택은 퇴수 후 붕괴위험이 크므로 대비책 마련 필요
- 침수우려지역은 노후주택을 사전 조사하여 별도 관리하고 퇴수 후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붕괴 우려시 출입 금지
- 필요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강풍대비 도심 광고물 및 대형구조물 안전대책 수립

- 돌출간판 및 광고물 사전점검 및 고정조치

● 게릴라성 집중호우등 각종 긴급상황이 야간 발생시 주민대피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내판에 야광재질 사용 및 경광봉,후레쉬, 무전기 등 야간대피 자재 확보

방 송 문 구

[태풍주의보 예비 특보]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0년00월00일 00:00경 00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될 예정이오니 주민들께서는 TV·라디오 등의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노후가옥·위험축대·대형공사장등 시설물 점검·정비, 입간판·창문틀 등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 및 결속, 하수도·배수로 정비,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등 재난에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주의보 발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0년00월00일 00:00경 00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표, 000mm의 비를 동반한 태풍

피해가 예상되오니 저지대·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 예측지역 주민 대피, 노후가옥·위험축대·대형공사장등 시설물 점검·정비, 가로등·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 및 결속, 노약자 외출자제, 기상예보 청취 등 피해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경보 발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0년00월00일 00:00경 00지역에 태풍경보가 발표, 000mm의 비를 동반한 태풍피해가 예상되오니 저지대·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 예측지역 주민 대피, 노후가옥·위험축대·대형공사장등 시설물 점검·정비, 가로등·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아파트 등 고층건물 유리창 고정, 차량이용 자제, 야영·행락객 즉시 대피, 정전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확인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주의보 예비 특보]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0년00월00일 00:00경 00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예정이오니 주민들께서는 TV·라디오 등의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노후가옥·위험축대·대형공사장등 시설물 점검·정비, 하수도·배수로 정비, 농작물 보호조치,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등 재난에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주의보 발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0년00월00일 00:00경 00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 000mm의 많은 비로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오니 저지대·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 예측지역 주민 대피, 노후가옥·위험축대·대형공사장등 시설물 점검·정비, 침수예상 지하공간 사전대피, 가로등·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하수도 및 용·배수로 점검, 야영객 대피, 하천둔치 차량 안전지대 이동 등 피해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경보 발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0년00월00일 00:00경 00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 000mm의 많은 비로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오니 저지대·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 예측지역 주민 대피, 노후가옥·위험축대·대형공사장등 시설물 점검·정비, 침수예상 지하공간 사전대피, 가로등·신호 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하수도 및 용·배수로 점검, 야영객 대피, 하천둔치 차량 안전지대 이동, 정전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확인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야간대피 행동요령

산사태, 하천범람 등 자연재난이 주민들이 잠든 야간에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우려시 야간시간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

1. 개 요

가. 사전대피 순찰활동 강화

1) 사전대피

- 누적강우량이 많고 기상특보 발표 등 야간에 많은 강우가 예상될 경우 위험지역 거주자를 일몰 전에 사전대피 실시
- “현장 CP” 설치 및 야간 순찰활동 강화
 - 누적강수량이 많고 지속적으로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CP를 설치하고 “현장순찰팀”을 야간에도 계속 운영
- 강우량과 “현장순찰팀”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위험하다고 판단시 즉시 주민대피 실시

나.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야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주민대피를 위하여 경찰·소방·군부대 등과 사전 협조체결

다. 야간대피 보조 자재 확충

1) 대피로(소) 표지판 야광 재질 사용 및 보강

- 지자체에서 기존 설치한 대피로(소) 표지판 중 야광재질이 아닌 것은 야광으로 교체
- 갈림길이나 굴곡부위에 대피로 표지판이 없거나 표지판사이 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에는 추가설치

2) 야간대피 유도인력 및 물품을 충분히 준비

- 야간 주민대피 안내를 위한 인력을 단계별 비상근무자 외의 인력으로 사전 확보
- 안내요원들에게 필요한 경광봉, 반사조끼, 후레쉬, 무전기 등 사전확보

라. 야간대피 Action plan

① 대피 담당자 확보(비상근무자 명단 작성시 확정)

- 2인 1조(지자체 공무원 1명, 유관기관 1명)로 대피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전에 담당 가구를 지정하여 책임 대피제 확행

※ P-EP지구인 경우 기 지정된 대피안내요원을 포함하여 지정

- 담당자는 현장 출동 전에 현지상황 및 담당주민 연락처, 가족 수, 재해약자 여부 및 현장 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대피로, 비상연락처 등을 숙지하도록 조치

- 현지에서 사용할 반사조끼, 후레쉬, 무전기, 대피수첩 등 사전 배포

- 각 조별 담당업무 분장

- 총괄조 : 대피업무 총괄
- 대피조 : 현지에서 직접 주민 대피유도
- 안내조 : 대피로 중간에서 대피소 안내 및 대피로의 상태 전파
- 확인조 : 대피완료 후 가구마다 방문 점검(대피조가 병행가능)
- 대피소 운영조 : 대피자 도착 전에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 확보

※ 각 조별 인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하고, 활동 중 위험지역 접근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동요령 교육

※ 민간인은 반드시 재해관련 보험 가입(기 가입자는 제외)

② 사전 홍보방송 실시

- 위험요인 증대시 야간에라도 대피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하라는 홍보방송 실시

※ 방송 차량, 마을앰프, 전화(대피담당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 대피소, 대피방법(도보, 차량), 차량탑승 장소, 준비물 등 안내

- 개인별로 대피 시에는 이장 등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안내

- 위급시 귀중품 챙기기에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사전홍보 철저

③ 대피 유도시

- 거동 불편자,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재해약자는 최우선 대피

※ 사전 지정된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활용,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지정이 안 된 지역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우선 대피시키도록 조치

- 대피로 중간에서는 방향 유도 안내요원 배치(경광봉 휴대)

- 도보 대피자들이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소 입구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차량 불빛 등을 이용하여 위치 안내

※ 필요시 비상발전기 등을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

○ 대피조는 주민과 대피소까지 동행 하여야 하며 대피 중(또는 차량 탑승 후) 어떠한 이유에서도 다시 집으로 가려는 것을 저지

※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음

○ 경찰은 선두·후미에서 대피자(차량) 안내 및 낙오자 유무 점검

○ 확인조는 대피 완료한 마을을 가구별로 최종확인 후 철수

○ 대피완료 후에는 가구별 대피 담당자가 대피인원, 대피장소 등을 최종 보고

○ 주민대피에 참가한 담당자 중 낙오자 여부 확인 등

④ 대피완료 후

○ 대피조는 주민의 대피완료 및 인원수를 총괄반에 보고

○ 확인조는 철수하면서 위험지역 출입도로에 “재난안전선(S/L)을 설치 하여 출입 통제

○ 재난안전선 설치지역 출입통제(사전 지정된 담당자 또는 경찰)

※ 이때 출입통제자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근무

[야간 대피시 유의 사항]

▶ 집중호우 또는 침수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필 것

▶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있는 위치를 항상 숙지하고 행동할 것

▶ 단독행동 하지 말고, 낙오되거나 방향을 잃었을 경우는 즉시 비상연락을 취할 것 (무전기, 휴대전화, 비상연락망 등 휴대)

※ 혼자 방향을 찾으려고 시간낭비 하지 말 것(위험지역에서는 “시간은 곧 생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속하게 행동할 것)

▶ 집중 호우시 고함소리 등은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전등을 휴대하고 손전등 신호요령을 사전에 상호 약속할 것

[손전등 신호의 (예시)]

● 상하로 크게 움직인다 : 위험하다 도와 달라

● 좌우로 크게 움직인다 : 응급환자가 있으므로 구급대를 보내라

● 크게 원을 그린다 : 고립되었다 구조대를 보내라

▶ 반드시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행동할 것

▶ 대피 거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이나 주변 담당자 등에게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 시킬 것

※ 설득하거나 혼자서 강제대피 시키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제4절 재난안전선(SAFETY LINE) 운영방안

-
-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전략목표인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 “인명피해최소화 종합대책”상의 “재난안전선”(SAFETY LINE)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

1. 개 요

가. “재난안전선(SAFETY LINE)”의 개념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연결한 선(線)으로
- 이 지역 내부 거주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운영권자 : 시장

2. 운영방안

가. “재난안전선”은 재난의 예방단계, 사태발생시, 복구·수습단계까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활용

1) 예방단계

-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많은 비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기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재난안전선” 운영을 통해 경각심고취 및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 예방단계에서는 출입통제보다는 바리케이트의 현장비치 등 경각심 고취 위주의 활동 전개

2) 사태발생시

-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침수, 교량 월류, 하천급류 등이 발생한

경우로 직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을 출입하는 도로 차단 등
직접 통제 실시

3) 복구·수습 시

- 침수지역 퇴수 등 위험요인이 없어지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진행되는 단계로 피해지역 중 복구 작업이 지연되거나 복구·수습 중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띠 등 위험지역에 안전한 복구를 위한 통제

4)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아래 지역에 설치·운영

- ① P-EP, E-30지구 및 자연재난 위험지구 등 “상습취약지역”
- ② 하천변 야영장, 갯바위 낚시터, 방파제, 해변도로, 세월교 등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 ③ 장기간 침수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는 가옥
- ④ 함수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급경사
- ⑤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5)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책과 띠를 도로 또는 출입문 등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

- 사전 지정된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출입 통제
- 사전에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하거나 “지역 자율방재단원” 등을 긴급배치

6) “재난안전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한 방책이나 인근의 눈에 잘 띄는 지역에 위험지역의 범위, 설치 기간, 설치 사유, 긴급시 연락처, 우회도로 등을 표시하여 게시(붙임1)

- 지역내 주민, 관광객 등에게는 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위험을 알리고 대피소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대피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민대피와 동시에 “재난안전선”을 운영하고 출입 통제

- 대피 거부자 또는 “재난안전선”을 훼손하면서 위험지역에 진입하는 자는 강제대피

8) 시장·군수는 인명피해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재난안전선”을 철거

- 지역의 위험이 해소되었어도 침수지역내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후가옥 등은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출입통제
- ※ 이 경우 가옥의 출입문에 “재난안전선” 설치 및 출입통제

나. 단계별 운영방안

- 1)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예비특보 발령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 현지담당자의 위치·상태 확인 및 대기 지시
 - ※ 장거리 출타중이거나 즉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인원 신속 확보
 - 기 확보된 목책 등을 현장에 운반·비치
 - “재난안전선” 띠, 게시물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현지담당자에게 전달
 - 현지담당자를 담당지역에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현지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험시 대책본부에 통보 등 조치
 - ※ 현지담당자에게는 반사조끼, 지시봉, 우의 등 필요한 장구는 사전에 지급 되어 있어야 함
- 2) 재난으로 인하여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 실시
 - 대책본부는 대피담당자 등에게 주민대피를 지시하고, 현지담당자에게
“재난안전선” 설치·운영 지시
 - ※ “재난안전선” 설치·운영 여부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판단
(기상특보는 참고사항임)

3. 행정사항

- 평상시 방책(바리케이트 등)과 띠 등을 제작하여 재난발생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지담당자 지정
- 방책(바리케이트 등) 등을 현장에 상시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방책 사전확보
 - 이 경우 확보한 방책을 설치지역까지 최단시간 내에 운반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차량을 사전지정
- 긴급 상황시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경찰, 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 등과 사전 협조체계 구축

재난안전선
설치
표지

「재난안전선」 설치	
범 위	○○구 ○○동 일원 ※ 또는 ○○교량등 출입금지 지역을 표시
설치기간	0000년00월00일부터 해제 시까지
설 치 자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설치사유	집중호우에 의한 마을 침수 ※ 또는 집중호우에 의한 교량 월류 등 설치사유 표시
연 락 처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389-2225 또는 119)

< 우 회 도 로 >

※ 우회도로 약도 표시

붙임 2

「SAFETY LINE」띠

SAFETY LINE
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출입금지
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전선
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출입금
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색상 : 바탕색(노랑), 글씨(파랑, 빨강, 검정)
- 규격
 - 폭 : 150mm (비닐)

제7장

국민 행동요령

여 백

제7장 국민행동 요령

1. 태 풍

■ 태풍에 대비합시다

1) 태풍예보 시에는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시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2)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에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둡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3)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합니다.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근처에 가지 마시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 태풍 주의보시에는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니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 가스, 전기는 반드시 차단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 태풍경보 시에는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합니다.
-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니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2. 홍 수

■ 홍수에 대비합니다

-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나 등을 준비해둡시다.
-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지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경우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니다.
- 연못, 구덩이 등에 관한 안전표지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우물은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해 둡시다.

■ 물이 밀려드나요?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TV와 라디오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하천의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만일 독의 물이 넘치고 하수도로 물이 나온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합니다.
 -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니다.
 - ▶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 ▶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 둡시다.
- 홍수에 의하여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기름이나 오수로 오염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려 갈수 있습니다.
-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화되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재난발생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읍시다.

3. 호 우

■ 호우에 대비합니다

1) 호우가 예상돼나요?

-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주세요.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2) 호우가 지나갔나요?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관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시에는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는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한다.
- 천동·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둔다.
-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둔다.

4. 강 풍

■ 강풍에 대비한다

- 문·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머무른다.
- 유리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 비닐 또는 테이프를 창문에 붙인다.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로 가지 않는다.
- 라디오나 TV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들린다.
- 날아 갈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 강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 지붕 위나 바깥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나무 밑으로 피하지 않는다.
- 바닷가 근처로 가지 않는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인다.

5. 대 설

눈이 많이 내리나요?

-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합니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30cm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웁니다.
-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영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알아봅시다.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라는 기상정보를 들었나요?

1)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자가용차량을 이용할 때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와 고립에 대비하여 담요와 양초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 영화칼슘, 모래 등을 준비해둡시다.
-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 친지 집으로 대피합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에 대해 알아둡시다.

6. 한 파

한파에 대비합니다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피로,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 급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노인·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합니다.

■ 겨울 운동에 주의합시다

-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준비운동은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 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 수도관 및 계량기 보온

-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서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물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여야 합니다.

■ 보일러 배관 보온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현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동파방지 또는 외출 기능으로 두어야 합니다.
-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온열기(헤어드라이어 등)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친지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 둡시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함시다.
- 만약 자동차에 고립될 경우에는
 - ▶ 휴대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 차례로 수면을 취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차량 내 온도와 체온을 유지하고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을 준비합니다.
-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야를 넓혀서 빙판길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합니다.
-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으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 커브 길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를 돌면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빙판길에서 멈출 때에는 엔진브레이크(저속엔진 + 저속기어)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 후 서서히 풋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합니다.
- 저속 운행,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수칙을 준수합니다.

❑ 농림 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보온해야 합니다.
- 온실의 작물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난방, 온실커튼·물 커튼·축열주머니 설치 등)
- 온실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에는 보온벽(방풍벽)을 설치합니다.
- 온실의 둘레는 단열재를 두르고 위쪽은 보온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 정전으로 난방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태우거나 난로를 피워서 난방해야 합니다.
- 기온이 급강하할 것에 대비하여 난방·보온재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정비합니다.
- 축사 등은 바람구멍을 막고 보온재와 난방기를 준비합니다.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온으로 동파를 방지합니다.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합니다.

❑ 전기 분야

- 전열기나 난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서 용량이 큰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1시간 사용

15분 정지」를 생활화하여 과부하(정전)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하나의 콘센트를 다시 여러 개의 콘센트로 분리시켜, 많은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지 말아야 합니다.
- 전기 고장 시 즉시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개인이 임의로 조작하지 맙시다.
- 전기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퓨즈로 사용하지 맙시다.

7. 지 진

■ 지진 이렇게 대비합시다

-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맙시다.
-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둡시다.
- 가스·전기·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시다.
- 비상시 서로 헤어질 것을 대비하여 다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하고 모일 장소를 익혀둡시다.
-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도 미리 알아둡시다.
-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고 비상시 가족들이 취해야 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시다.

■ 지진 발생 전인가요?

- 지진발생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합시다.
-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부분을 수리합시다.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 크고 무거운 물건을 선반에 올려두지 않도록 하고, 선반은 벽에 단단히 고정시킵시다.
-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등은 잠글 수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합시다.
- 균열음, 진동 등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합시다.

-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니다.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합니다.
-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니다.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 지진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비상 물자를 준비하여야 하며, 집 주변의 대피장소(공터, 학교, 공원 등)를 미리 알아둡니다.
- 지진이 지나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합니다.

■ 지진 발생 중인가요?

- 지진 중 발생한 대부분의 부상은 건물을 출입할 때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것이므로,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욕실)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유리파편 등을 조심합니다.
-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으므로 빨리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 거리에서 심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건물·가로등·전선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합니다.
- 번화가(빌딩가)에서는 떨어지는 물체(유리 파편, 간판 등)가 가장 위험하므로 우선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로 대피하거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출입구로 몰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멀리하면서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물내 안전한 장소에 함께 머무르고 정전되거나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 이동 중인 차량은 가능한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도로나 교량의 피해정도를 살피며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합니다.
-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합니다.
-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휴대전화로 119신고를 하거나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검색하거나 방송을 청취하여 지진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합니다.

지진이 멈추었나요?

-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의하여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위치한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만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부위를 고정시킨 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만약 부상자의 호흡과 심장이 모두 또는 호흡이나 심장이 멈춘 경우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되, 환자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만약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불(양초, 성냥, 라이터)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 유리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신읍시다.

- 주택의 안전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면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시다.
- 건물(굴뚝, 담장, 벽체 등)을 점검하되,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최초 진단은 멀리 떨어져서 합시다.
- 건물 내에 쏟아진 약품, 표백제,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종류·처리방법을 모를 때에는 그대로 두고 대피합시다.
-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 주요 관로와 가전제품의 피해상황을 파악해둡시다.
- 가스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되, 가능하다면 메인밸브를 잠급시다.
-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밸브를 잠근 후, 관계기관[지역 도시가스회사 또는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가의 조치를 받은 다음 재사용합시다.
- 전기적인 이상이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립시다.
- 수도관에 피해를 입었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급시다.
- 하수관로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맙시다.
- 캐비닛은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문은 조심히 열어주세요
- 인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용을 자제합시다.
-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거리로 가급적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면, 지진에 의한 피해(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축대·교량·도로 등)에 주의합시다.
-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해일에 대비합시다.

지진이 끝난 직후의 점검사항

- 여진에 대비합시다.
- 부상자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시다.
- 이웃사람들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취합시다.
- 유리조각이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을 조심합시다.
- 화재 및 가스누출을 확인합시다.

- 상·하수도과 전기 안전을 확인합시다.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재난 방송을 통해 지진 상황을 확인합시다.

장소에 따른 대피방법

- ▶ 소파 혹은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합니다. : 크고 견고한 구조물 밑이나 아래에 생존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계단은 이용하지 마시다 : 지진발생 시 외부계단은 빌딩본체와 다르게 진동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계단과 빌딩본체가 충돌하여 파괴되면서 계단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단은 건물 중 가장 심각한 구조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진으로 바로 붕괴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무게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 가능한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외벽 쪽으로 대피합시다 : 건물 내부로 들어갈수록 대피로가 잔해로 막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외벽 쪽에 생존 공간이 생길 가능성과 붕괴 후 구조될 가능성이 높으나 유리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합니다.
- ▶ 복사지, 신문지 등 종이 더미 속은 생존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이를 쌓아둔 쪽으로 대피합시다.
- ▶ 1층보다는 2, 3층이 안전하므로 위층으로 대피합시다.
- ▶ 목재는 유연하고 지진력과 같은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조건물은 지진발생시 가장 안전한 시설입니다. 목조건물이 붕괴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앞의 ①과 같이 행동합시다.
- ▶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이 부서져서 많은 부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콘크리트 건물에 비하면 신체가 어스러져 사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니 앞의 ①과 같이 행동합시다.
- ▶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침대에서 굴러 내려와 앞의 ①과 같이 행동합시다.
- ▶ TV를 시청 중이거나 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재빨리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파나 큰 의자 옆으로 가서 몸을 구부린 태아자세를 유지합시다.
- ▶ 현관의 기둥이 부서졌을 경우 현관 위의 천정 붕괴에 유의합시다.
- ▶ 학교에서는 책상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합시다.
- ▶ 고가도로 아래는 고가상판이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서 신속히 빠져 나오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자동차에서 나와 자동차 바로 옆에 누워있거나 쭈그리고 있도록 합시다.(실제 지진현장을 조사한 결과, 상판 지지기둥이 차량으로 직접 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판 밑에 깔린 자동차 옆으로는 1m 높이 정도의 생존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 백

참고자료

- 기상특보 및 발령기준
- 하천 현황
- 재해관련 비상근무시 담당동 지정 현황
- 재해 예·경보 시스템 현황
- 배수펌프장 현황
- 보유자원(수방자재, 관용장비) 현황
- 사망자 안치소, 폐기물, 분뇨처리 업체 현황
- 제설장비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담당자 현황
- 상황판단회의
- 재해이력 및 위험요인분석
- 이재민수용시설 현황
- 재난관리시스템 담당별 행동요령(SOP)

여 백

□ 기상특보 및 발령기준

계절별	기상특보별	기 상 상 황	근무체제	근 무 자
여 름 철	호우(태풍) 주의보시 C 급	· 호우(태풍) 및 홍수주의보가 발표 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 이라고 판단한 경우	준비체제	분담관 등 17명 상황실 4명 사무실 13명
	호우(태풍) 경보시 B 급	· 호우(태풍) 및 홍수경보의 발표시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 이라고 판단한 경우	경계체제	담당관 등 33명 상황실 10명 사무실 23명 (상황근무자 외 전직원 1/3 교대)
	A 급	·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 한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 될 때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비상체제	통제관 등 83명 상황실 21명 사무실 62명 (상황근무자 외 전직원 1/2 교대)
겨 울 철	강설예보시	· 24시간 신적설이 3cm내외 예상	준비체제	팀장 등 6명
	대설주의보시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	경계체제	팀장 등 6명
	대설경보시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 다만 산지는 30cm 이상 예상,	비상체제	담당관 등 16명 전직원1/2 담당동 현장근무
비 계 절	강풍주의보시	· 평균 최대풍속이 14m/s이상 이고 이러한 상태가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0m/s이상 예상될 때	준비체제	팀장 등 6명
	강풍경보시	· 평균 최대풍속이 21m/s이상 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5m/s이상 예상될 때	경계체제	담당관 등 9명
		· 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체제	통제관 등 9명 전직원1/2 담당동 현장근무

□ 하천 현황

○ 국가하천

하 천 명	연 장	개수연장	개 수 율	비 고
안 양 천	5.10	5.10	100	안양철교하류

○ 지방2급 하천

하 천 명	연 장	개수연장	개수율	비 고
계	26.30	26.30	100	
안 양 천	6.75	6.75	100	안양철교상류
학 의 천	4.50	4.50	100	
수 압 천	5.50	5.50	100	
삼 성 천	5.30	5.30	100	
삼 막 천	3.50	3.50	100	
갈 현 천	0.75	0.75	100	

○ 법정 소하천

하 천 명	연 장	개수연장	개수율(%)	비 고
삼 봉 천	2.60	2.60	100	

□ 재해관련 비상근무시 담당동 지정 현황

구분		본청 (사업소 포함) 실·과		구
만 안 구 (14)	안양1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양2동	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양3동	위생과장	환경보건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양4동			민원봉사과장
	안양5동	문화예술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양6동	체육청소년과장		세무과장
	안양7동	평생교육과장		세무과장
	안양8동	만안구보건소장		복지문화과장
	안양9동	행정능률과장		복지문화과장
	석수1동	생활안전과장		환경위생과
	석수2동	시민봉사과장		환경위생과
	석수3동	정보통신과장	동안구보건소장	도시관리과장
	박달1동	홍보실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달2동	예술도시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도시관리과장
동 안 구 (17)	비산1동	맑은물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비산2동	맑은물공급과장		행정지원과장
	비산3동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부 흥 동			행정지원과장
	달 안 동			민원봉사과장
	관양1동	도시계획과장	경제산업과장	민원봉사과장
	관양2동	도시정비과장		세무과장
	부 립 동			세무과장
	평 춘 동	녹지공원과장		복지문화과장
	평 안 동			복지문화과장
	귀 인 동			복지문화과장
	호계1동	교통시설과장	세정과장	환경위생과장
	호계2동	시설공사와장	녹색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호계3동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범 계 동			도시관리과장
	신 춘 동			도시관리과장
	갈 산 동			도시관리과장

□ 재해 예·경보시스템 현황

○ 기상관측시설 운영 현황

장 비 명	시 설 위 치	관측요소	관측년도	비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2개소	안양시청	강우, 기온, 풍속	1996	
	석수3동 주민센터	강우, 기온, 풍속	2008	
수위계측기(5개소)	대한교, 호안교	수 위	2001	
	안양대교, 안일교	"	2002	
	산본2교	"	2003	
강우량 측정장비(5개소)	안양시청	강우량	1992	
	동안구청	"	1995	
	만안구청	"	1994	
	안양9동 주민센터	"	2003	
	서울대농대수목원	"	2003	

○ 재난 영상 감시시스템(CCTV) 운영 현황

연번	위 치	용 도	구축년도	비 고
1	만안구 충훈1교	하천감시	2003	상황실, 소방서 영상화면 제공 (자가망)
2	만안구 안양대교	"	2003	
3	동안구 덕천교	"	2003	
4	동안구 비산교	"	2003	
5	만안구 양명교	"	2004	
6	만안구 삼성교	"	2004	
7	만안구 충훈2교	"	2004	
8	만안구 동양교	"	2004	
9	동안구 인덕원교	"	2004	
10	만안구 석수교	"	2008	
11	만안구 신촌교	"	2008	
12	만안구 덕천빗물펌프장	"	2009	
13	만안구 박달빗물펌프장	"	2009	
14	만안구 수암천 하류	"	2010	

□ 배수펌프장 현황

덕 천	연 현
○ 위치 : 만안구안양7동250 애향공원내 ○ 시설규모 • 배수량(처리능력) : 300m³/분 • 펌프용량 200hp × 1대 × Ø700mm 360hp × 2대 × Ø1,100mm • 유수지용량 : 1,500m³ • 배수관거 : L=890m(D300-1,500) • 펌프형식 : 수중사류펌프 • 배수유역면적(ha) : 22 • 사업비(백만원) : 3,818 • 공사기간 : 1999.5.8 -2000.5.25 ○ 준공년도 : 2000. 4 ○ 시공사 : (주)덕천건설 김종연 ○ 책임감리 : 한국건설관리공사	○ 위치 : 만안구석수2동358-2석수역 앞 ○ 시설규모 • 배수량 : 440m³/분 • 펌프용량 170hp × 2대 × Ø800mm 300hp × 1대 × Ø1,100mm • 유수지용량 : 1,150m³ • 배수관거 : L=419m(D450-1,200) • 펌프형식 : 수중사류펌프 • 배수유역면적(ha) : 57 • 사업비(백만원) : 5,490 • 공사기간 : 1999.4.16-2000.5.25 ○ 준공년도 : 2000. 4 ○ 시공사 : 금강산업(주)김평해 ○ 책임감리 : 한국건설관리공사

박 달	비 산
○ 위치 : 만안구박달1동838-7 충훈1교옆 ○ 시설규모 • 배수량 : 36m³/분 • 펌프용량 30hp × 3대 × Ø800mm • 유수지용량 : 114m³ • 배수관거 : L=327m(D800-1,200) • 펌프형식 : 수중사류펌프 • 배수유역면적(ha) : 4 • 사업비(백만원) : 계 3,085 도비300, 지방비2,785 • 공사기간 : 2002.12.23-2003.6.30 ○ 준공년도 : 2003. 4 ○ 시공사 : 국토건설(주) ○ 책임감리 : 남원건설엔지니어링	○ 위치 : 동안구비산2동593-12 비산교옆 ○ 시설규모 • 배수량 : 90m³/분 • 펌프용량 200hp × 1대 × Ø700mm 40hp × 3대 × Ø300mm • 유수지용량 : 600m³ • 배수관거 : L=465m(D800-1,500) • 펌프형식 : 수중사류펌프 • 배수유역면적(ha) : 7 • 사업비(백만원) : 1,975 • 공사기간 : 2000.3.31-2000.11.25 ○ 준공년도 : 2000. 12 ○ 시공사 : 오림건설(주)오승일 ○ 책임감리 : 우대기술단건축사무소

□ 보유자원 (수방자재, 관용장비) 현황

○ 수방자재 확보 현황

구 분	P.P포대 (개)	비닐 (롤)	비닐끈 (롤)	삽 (개)	곡괭이 (개)	말뚝 (개)	SAFE LINE
계	141,682	260	144	1,119	356	168	43
만안구	37,870	95	27	687	209	0	33
동안구	103,812	165	117	432	147	168	10

○ 양수기 확보 현황

장소별	합계	전기식(보통수중식)			엔진식							
		소계	0.5	2.0	소계	1.0	2.5	3.0	3.5	5.0	5.5	8.0
합 계	632	237	228	9	245	87	4	29	151	35	86	3
시 청	9				9						9	
만 안	381	153	153		228				151		74	3
동 안	192	84	75	9	108	87	4			14	3	
안양소방서	50				50			29		21		

○ 관용차량 현황

구 분	지 정 현 황					비고
	소유기관	지정대수	지정차량번호	승차인원	전화번호	
계		4		145		
버 스 (대형)	안 양 시 청	1	경기 75도9231	41	389-5020	
“	“	1	경기 75도9147	45	“	
버 스 (중형)	“	1	경기 75도9264	35	“	
“	“	1	경기 75도9085	25	“	

○ 시신운구용 차량

구 분	명 칭	차량번호	사 용 자	비고
1	앰블런스(구급차)	경기75도8691	만안구 보건소	
2	“	경기71나4760	동안구 보건소	

□ 사망자 안치소, 폐기물, 분뇨 처리 업체 현황

○ 사망자 임시 안치소(병원, 장례식장 등) 지정·운영

시 설 명	위 치	전 화	안치실	비 고
계	5개소		49	단위 : 구
샘안양병원 장례식장	안양5동 613-6지하 (안양병원내)	467-9770	11	
석수장례식장	안양2동18-1 (남서울병원내)	473-2929 473-6919	6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8동 342-105 (메트로 병원내)	467-9010 449-9000	10	
성심장례식장	평안동 896 (한림대성심병원)	455-3388	12	
(주)안양장례식장	호계동167-1	382-5004	1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 설 규 모			
				인원 (명)	차량 (대)	중장비 (대)	수집운반량 (톤)
11개업체							
중앙개발(합)	권정애	안양3동 707-3	447-4916	21	9		15,974
동양환경(주)	전태수	안양8동 373-1	444-0139	18	9		10,602
세명개발(주)	서진식	호계3동 666-2	455-2132	13	7		15,034
(주)성일기업	홍형주	박달1동 7-12	448-2559	15	6		8,071
한우실업(주)	송두호	관양동 1473-1 부림빌딩 401호	422-2448	17	7		12,282
(주)현대산업	김중환	호계동 997(2층)	452-8504	14	5		11,081
(주)안양위생	원영희	안양2동 857-48	468-2861	16	6		10,614
원진개발(주)	박홍식	관양동1488-7 우정타운 202호	426-0484	19	7		9,434
남영개발(주)	양한두	비산3동 1026-11	388-9905	16	8		13,348
대정개발(주)	김춘자	안양6동 428-2 한솔주택상가102	444-9494	15	5		10,903
합동환경(주)	이종선	호계동 997(2층)	451-6427	15	7		9,40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 무 실		차량 보유	비고
		주 소	전화		
8개업체					
세창환경건설(주)	민영노	안양동 220-13	443-2060	4	
동방산업(주)	차상호	관양2동 896	421-4034	3	
오광기업(주)	박범의	박달동 703	466-8491	3	
경기환경건설(주)	김경숙	관양동 1594	422-3333	4	
(주)태산기업	최태식	호계동 801-4	457-9950	8	
(주)정우환경개발	성기연	호계동 1000-34	424-8211	4	
(주)우성환경	김종배	안양6동 504-4 계림빌딩 402	459-5553	4	
(주)대진환경개발	김원태	호계2동 923-13 동남아빌딩 302	451-4211	3	

○ 분뇨 수집 · 운반 업체 현황

영업구역 (담당지역)	업 체 명	사 무 실	비 상 연 락	
		전화번호	대 표 자	부책임자
안양6,7,8동	군자환경	444-8354	이수훈 342-6003	안복임 447-6003
			011-277-8354	011-434-8354
안양3동 호계1동 관양2동	대우환경 산업	469-1636	이영길 469-1636	김춘화 469-1636
			010-2532-3677	011-359-2767
안양2,9동 박달1,2동 비산2동	동우정화	443-2555	원명희 382-4577	이화선 382-4577
			010-5344-4867	010-3688-4867
석수1,2,3동	석수정화	472-5494	정광희 422-2177	정재현 427-2177
			011-9117-1912	019-494-4105
호계2,3동 평촌동	세명개발	452-5706	서진식02-893-9426	유치주 396-2537
			011-277-3325	010-5357-2537
안양1,4,5동	원진정화	472-3779	최성영 763-1772	김인홍
			011-739-8765	011-9048-8878
비산1,3동 관양1동	청수개발	446-3333	남유민 458-3777	오훈 388-7880
			010-5188-3339	011-475-8004
안양시 전지역 (재래식, 공사장)	그린위생	468-8210	김관웅 443-3030	김정래 391-9592
			011-344-0333	017-340-9933

□ 제설장비 및 긴급동원 장비 현황

○ 도로현황

(단위 : 노선, km)

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 도		비고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1,179	334.21	2	14.30	1	4.82	1,176	315.09	

○ 중정제설노선 : 12노선

- 만안 : 경수산업도로 → 박달우회로 → 박달로(시경계) → 중앙로 → 만안로 → 냉천로 → 석산로
- 동안 : 경수산업도로 → 흥안로 → 관악로 → 평촌로 → 시민로 → 방축로

○ 제설장비현황

- 시보유 장비 : 6 종 91대

(단위 : 대)

구분	계	다목적 제설차	부착용 삽날				탑재형 살포기	타이탄	더블캡	비고
			구청차	청소차	소방차	군용차				
계	91	2	3	2	4	5	37	7	31	
만안	42	1	1	-	2	3	17	4	14	
동안	49	1	2	2	2	2	20	3	17	

- 군부대 및 민간보유 지원장비 : 2종 6대

업체명	장비명 및규격	수 량	장 비 등록번호	장 비 기 사	연 락 처		비고
					사무실	장비기사	
계	2종	6대					
1113야공단	그레이다	2			468-5181		
세창환경	페이로다 3.5㎡	1	경기03마3032	박기준	443-2060	011-393-1243	
동방산업	페이로다 3.5㎡	1	경기03마3033	박상순	421-4034	011-9266-1514	
오광기업	페이로다 3.5㎡	2	경기03고1578 경기03고1782	황인남 진문국	466-8491	016-770-9323 018-565-8650	

○ 제설자재 및 적사함 현황

구분	'09 ~ '10년 현재 확보량			'09 ~ '10년 추가 구입 계획량			'10 ~ '11년 추가 구입 계획량				비고
	염화 칼슘 (25kg-포)	교량용 제설제 (25kg-포)	모래 (m³)	염화 칼슘 (25kg-포)	교량용 제설제 (25kg-포)	모래 (m³)	염화 칼슘 (25kg-포)	액 상 제설제 (톤)	모래 (m³)	소금 (톤)	
계	15,615	785	714	10,000	100	500	9,520	60	852		
만안	8,200	20	210	4,000	100	300	6,040	30	275		
동안	7,415	765	392	6,000	-	200	3,480	30	576		

○ 적사함 : 290개 (만안 150개, 동안 140개)

○ 제설작업 동원인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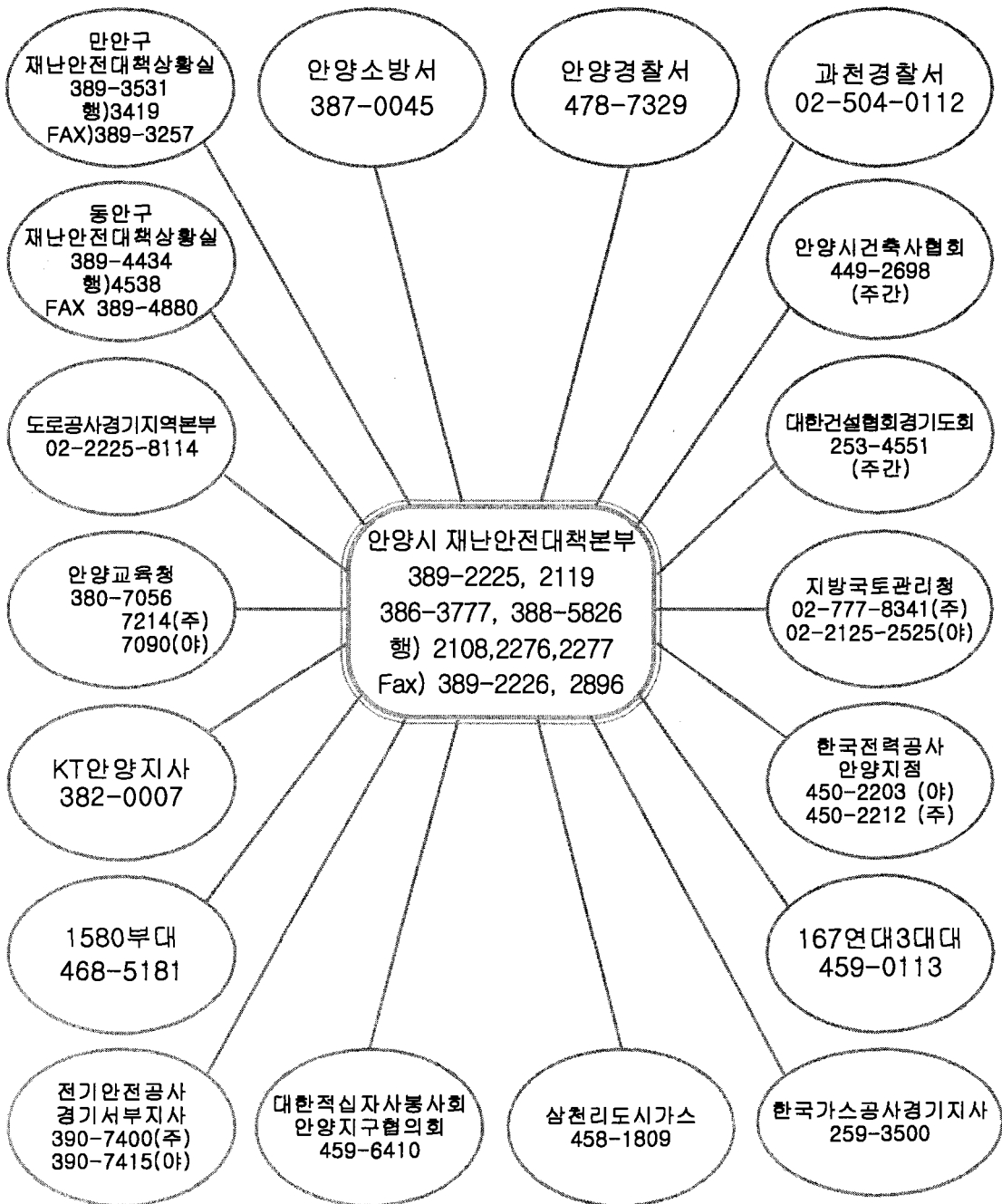
계(명)	공무원	수로원 (준설원)	미화원	공익요원	공공근로	비 고
2,324	1,678	19	217	252	189	

○ 재난 시 긴급 동원할 수 있는 장비 현황

기 관 (회사)명	연락전화	소재지	장 비 보 유 현 황			
			페이로다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육 군 1580부대	주·야 468-5181	박달2동	1대	02-1대	5톤-5대	
육 군 9703부대	주 468-1942 야 468-1942	박달2동		02-1대 08-1대	5톤-16대 15톤- 2대	
가나중기	주 451-1998 429-0606 야 451-1998 HP019-638-3230	호계1동		02-2대 03-3대 06-2대 08-3대		
오성중기	주 449-6277 야 449-6277 HP016-369-2937	안양6동		03-1대 06-6대 08-1대	15톤-6대	
대명건설	주 394-5347 야 394-5347 HP011-335-8853	군포시 당동		02-1대 03-4대 06-4대 08-1대		
대광건설	주 473-3917 HP018-796-3336	안양2동	6		2.5톤-1대	
오광기업	주 466-8491	박달1동	3대	08-1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담당자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유관기관 담당자현황

연번	기 관 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만안구	라대규	389-3531	
2	동안구	이호장	389-4434	
3	안양경찰서	하건용	478-7156	경비작전
4	안양소방서	이시옥	470-0313	방호구조
5	과천경찰서	김기영	02-504-7122	
6	안양과천교육청	이영은	380-7214	관재과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박현순	02-2125-2705	
8	한국전력안양지점	박근수	450-2285	설비관리
9	KT안양지사	조국형	387-0060	
10	1580부대(1113야공단)	서준영 대위	468-5181	군수장교
11	167연대 3대대	윤경선 대위	459-0113	작전과장
12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육준	02-2225-8262	
13	안양시건축사협회	도대수	449-2698	
14	삼천리 도시가스	김경구	428-0400	안전관리
15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이명렬	390-7401	
16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강미현	259-3562	
17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양시지구협의회	이인택	459-6410	
18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배정환	253-4551	

□ 상황판단회의

○ 구성원별 임무

- ▶ 본부장(시 장) : 본부의 대표로서 의장이 되며 본부 업무를 총괄
- ▶ 차 장(부시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
- ▶ 총괄조정관(행정지원국장)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 통제관(건설교통사업소장) : 본부장 및 차장,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실무반 지휘
 - ▶ 담당관(건설방재과장) : 본부운영의 실무 책임자로서 총괄 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 실무반 : 본부회의에서 정한 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설치

○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

기상 특보 단계	회의개최 결정 및 회의주재 책임자		참 석 대 상	비고
예비 특보	결정	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재난예방팀장, 복구지원팀장, 하천관리팀장, 주차시설팀장	
	주재	건설방재과장		
주의보	결정	건설교통 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방재과장, 재난예방 팀장, 복구지원팀장, 하천관리팀장, 도로정 비팀장, 주차시설팀장	
	주재	건설방재과장		
경 보	결정	부시장	부시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방재과장, 재해예방팀장, 복구지원팀장, 도로정비팀장, 하천관리팀장, 주차시설팀장	
	주재	건설교통 사업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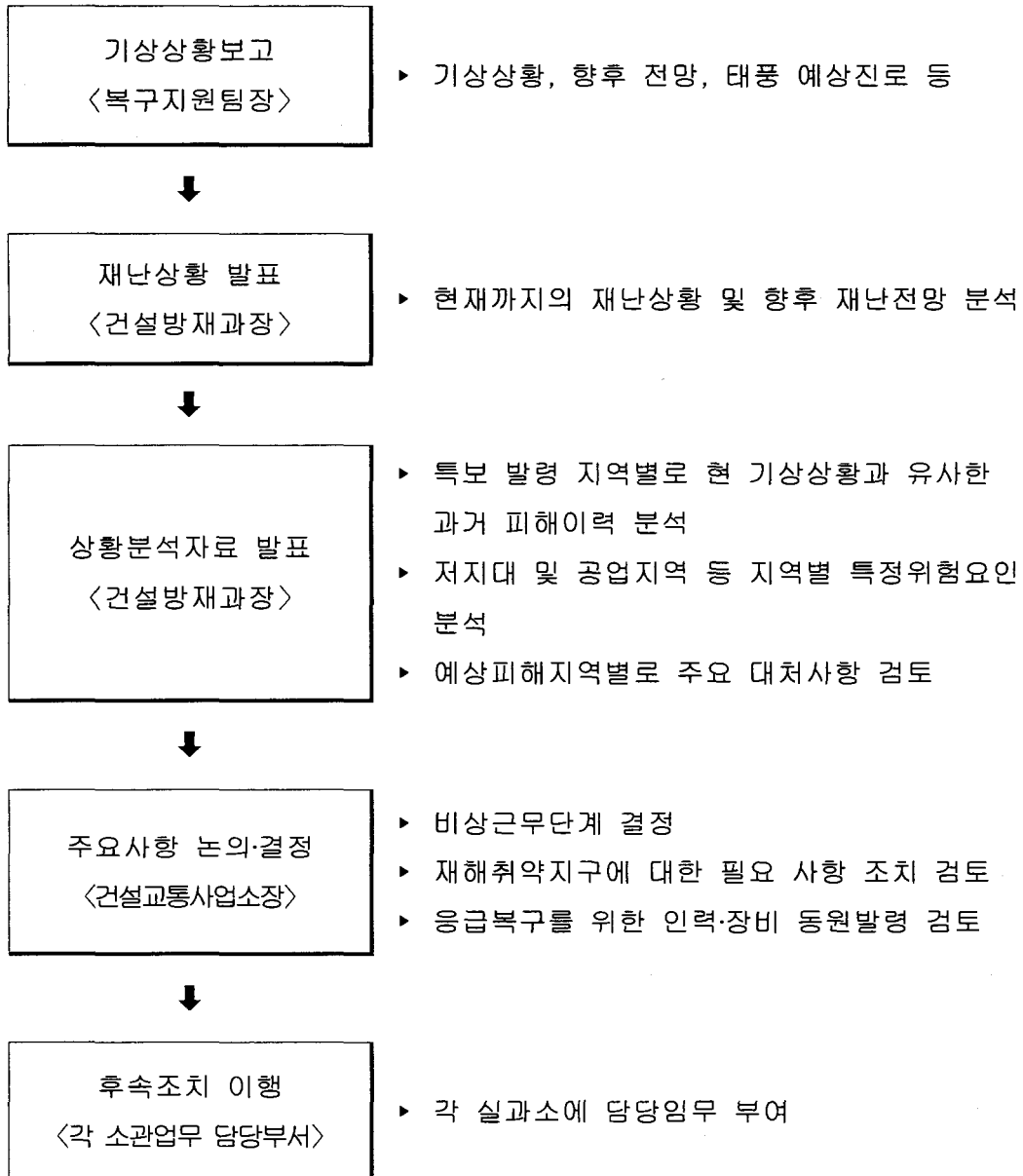
※ 토요일 및 공휴일에 기상특보 발령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

1.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기상특보단계별 회의주재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2. 회의주재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돌입 결정

○ 회의준비

- 준비단계·비상단계 : 재난종합상황실

○ 회의 운영



○ 상황판단회의 개최일지

일 시	장 소	참석대상자	회의내용	비 고

'00 . 0. 00 ()

건설방재과

-제○호 태풍 “○○○ ” 복상에 따른- 상 황 판 단 회 의

태풍 “○○○” 상황판단회의 절차

☐ 기상상황 발표

☐ 상황분석자료 발표

▶ 과거 유사태풍 피해이력 분석

▶ 태풍 “ ” 주요대책

☐ 주요사항 논의 · 결정

재해이력 · 위험요인 분석

□ 재해이력 및 위험요인 분석

- 과거 유사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 현황 : 재해상황 분석시스템
- 과거 유사 태풍에 의한 재산피해 현황 : 재해상황 분석시스템
- 지형·지세등 위험요인 분석 : 안양시재난관리시스템

태풍 “○○○” 예상진로 및 주요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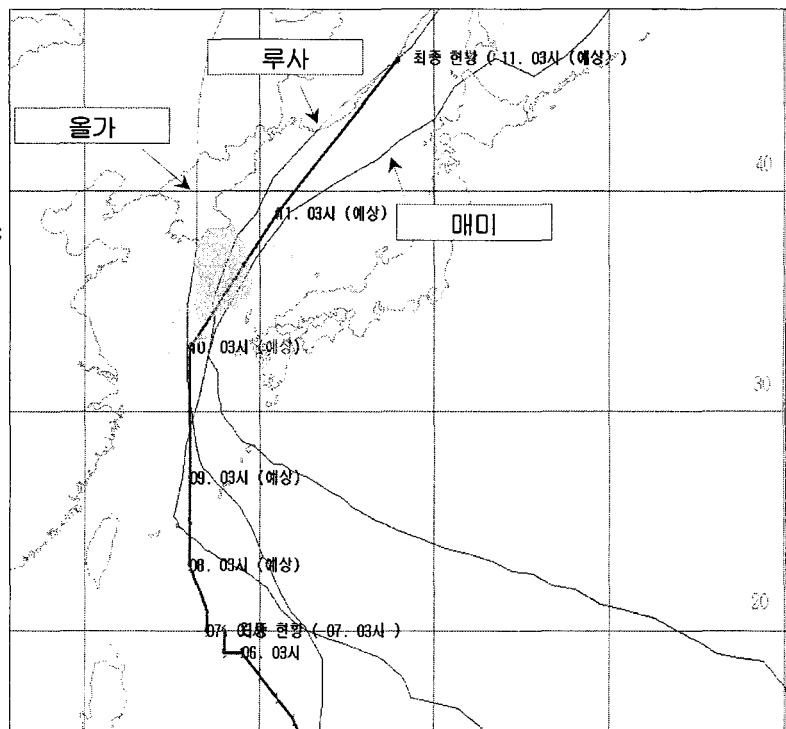
□ 특성 및 예상진로

○ 특 성

- 중심기압/풍속
: 940ha, 43m/sec
- 강도/크기 : 강,
중형
- 진행방향/속도
: 북북서, 11km/h

○ 유사태풍

- 올가('99년),
루사('02년),
매미('03년)



□ 유사 태풍 피해현황

구 분	1999. 7.23~8.4	2002.8.30~9.1	2003.9.12~9.13
	태풍 “올가”	태풍 “루사”	태풍 “매미”
중심기압	970ha	950ha	910ha
최대풍속	완도 : 46.9m/sec	고산 : 56.7m/sec	제주 : 60.0m/sec
최대일강우량	철원 : 280.0mm	강릉 : 870.5mm	남해 : 453mm
주요피해지역	전국	전국	전국(서울,인천제외)
이재민	25,327명	63,0850명	61,844명
사망실종	67명	246명	131명
피해액	1조 854억원	5조 2,620억원	4조 2,225억원

□ 태풍 복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 태풍 내습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총동원하여, 태풍 복상에 따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홍보

○ 상습취약지역 점검 지시

- 하천급류, 산사태우려지역, 세월교, 하천변 저지대, 산간계곡 등
- 비상상황 예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실시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및 재난상황대응계획서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인 확인·점검

금번 회의시 논의사항

□ 주요 결정사항

- 주요 대처계획 이외에 추가 보완·지시 사항
- 비상근무체제 돌입(. 일 1단계, . 일 2단계), 유관기관 비상대기 조치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일 . 예정)
- 재해관련부서장회의 개최 시기(. 일 . 예정)
- 화상회의(. 일 .) 실시
- 현장상황관리관 수행(. 일 예정)
- 시 Action Plan I 가동

□ 재해관련부서장에게 전화 점검 및 독려

-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철저

태풍진행 단계별 대응계획

□ . 일(북위 25°선 진입, 태풍예비특보 발령 예상)

- 비상근무 발령 검토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시·구 Action Plan I 지속가동 및 확인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가동 상태 점검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장비·물자 보유상태 확인
 - 인적·물적 자원 긴급동원체계 확인
 - 지역군부대, 건설기계협회,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단체 등

□ . 일(북위 28°선 진입, 태풍 주의보/경보 발령 예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구 Action Plan II·III 가동 지시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 CP 설치·운영
 - 책임자 전진배치 Safety Line 설치 및 출입통제 실시
- (산사태 우려지역, 절개지 붕괴 우려지역, 하천급류 예상지역, 하천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세월교, 산간계곡, 행락지 등)
- 지역본부장에게 브리핑 실시

'00 . 0. 00 ()

건설방재과

-호우 특보에 따른- 상 황 판 단 회 의

호우 특보 상황판단회의 절차

☐ **기상상황 발표**

☐ **재해대책 상황보고**

- ▶ 강수량, 하천수위, 배수펌프장 가동 등
- ▶ 주요 피해 및 응급조치 현황

☐ **주요사항 논의 · 결정**

기상특보 및 재해대책 상황보고

□ 기상특보 발표 현황

- 발표일시, 예상강수량, 발효지역, 강수량, 하천수위 현황 등

□ 재해대책 상황보고

- 비상근무 현황, 둔치주차장 차량 이동현황,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 등
- 주요피해 및 응급조치 현황

□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 집중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총동원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홍보
- 침수취약지역 점검 지시
 - 하천급류, 산사태우려지역, 세월교, 하천변 저지대, 산간계곡 등 비상상황 예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실시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및 재난상황대응계획서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인 확인·점검

금번 회의시 논의사항

□ 주요 결정사항

- 주요 대처계획 이외에 추가 보완·지시 사항
- 비상근무체제 돌입(3단계), 유관기관 비상대기 조치
-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일 예정)
- 재해관련부서장회의 개최 시기(. 일 예정)
- 화상회의(⇔) 실시
- 현장상황관리관 수행(. 일 예정)

□ 재해관련부서장에게 전화 점검 및 독려

-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철저

호우특보 단계별 대응계획

□ 일(호우예비특보 발령 예상)

- 비상근무 발령 검토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기상특보에 따른 시·구 재해관련부서 비상근무 실시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가동 상태 점검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장비·물자 보유상태 확인
 - 인적·물적 자원 긴급동원체제 확인
 - 지역군부대, 건설기계협회, 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단체 등

□ . 일(호우 주의보/경보 발령 예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가동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 책임자 전진배치 Safety Line 설치 및 출입통제 실시

(산사태 우려지역, 절개지 붕괴 우려지역, 하천급류 예상지역, 하천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세월교, 산간계곡, 행락지 등)

○ 지역본부장에게 브리핑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 총 괄 】

(개소/명)

구 분	계		학 교		교 회		관공서		경로당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계	158	17,426	50	7,807	36	5,783	3	670	69	3,166
만안구	67	7,608	18	3,573	16	2,542	-	-	33	1,493
동안구	91	9,818	32	4,234	20	3,241	3	670	36	1,673

【 학 교 】

일련 번호	학 교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m²)	수용가능 인 원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관리 담당 자	비고
계	50개소		25,864	7,807			
만안계	18개소		11,713	3,573			
1	안 일 초	안양 1동 85-1	371	112	444-1456	정연남	
2	만 안 초	안양 2동 848-1	660	200	444-4960 449-1110	주현재	
3	안양여고	안양 2동 840-2	628	200	469-2012	이윤로	
4	안양과학대	안양 3동 산39-1	1,650	500	441-1100 441-1022	권재혁	
5	안 양 초	안양 5동 378-1	2,098	635	441-1192 441-1191	학교장	
6	덕 천 초	안양 7동 192-5	990	300	447-8257	학교장	
7	명 학 초	안양 8동 349-13	140	40	449-9730	이윤희	
8	성 문 고	안양 8동 501-28	990	300	449-3607	송복순	
9	신 안 중	안양 9동 728	900	273	449-3947	홍경식	
10	안양서중	안양 9동 1055-3	495	150	447-1146	김광수	
11	삼 성 초	석수1동 169	864	261	070-714-6003	학교장	
12	화 창 초	석수2동 348-7	340	103	474-8982	학교장	
13	연 현 초	석수2동 산134-4	99	50	474-0248	학교장	
14	석 수 초	석수 3동 655-77	135	41	474-0480	한민희	
15	충 훈 고	석수3동595-3	184	55	472-5382	계필연	
16	박 달 초	박달 2동 128-7	330	100	447-8386	이근무	
17	삼 봉 초	박달 2동 114-3	250	75	466-1081	박동호	
18	안 양 고	박달 2동 144-3	589	178	443-2142	이도영	

일련 번호	학 교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	수용가능 인 원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관리 담당 자	비고
동안계	32개소		14,151	4,234			
19	대 립 대 학 교	비산1동 526-7	2,225	674	467-4752	제갈정웅	
20	안양중앙초등학교	비산2동 423	1,330	400	443-6032	김대운	
21	비 산 초 등 학 교	비산3동 315	165	50	388-1762	송인순	
22	부 흥 중 학 교	부흥동 1102-1	101	30	381-0168	오승희	
23	부 흥 초 등 학 교	부흥동 1102-8	113	34	381-0324	학교장	
24	부 흥 고 등 학 교	부흥동 1102-2	756	228	382-2080	최춘배	
25	달 안 초 등 학 교	달안동 1109-1	282	85	381-0333	학교장	
26	희 성 초 등 학 교	달안동 1101-1	165	60	382-4220	학교장	
27	관악정보산업고	달안동 1101	137	41	386-8323	학교장	
28	안양관악초등학교	관양1동 367-2	198	60	422-4824	학교장	
29	관 양 중 학 교	관양1동 1407-2	379	110	384-7304	학교장	
30	인덕원초등학교	관양2동 210	330	100	423-0460	학교장	
31	인 덕 원 중 학 교	관양2동 1482	840	254	424-7357	학교장	
32	부 립 초 등 학 교	부림동 1587-3	66	20	384-3833	김선중	
33	부 안 초 등 학 교	부림동 1586-2	66	20	387-4232	학교장	
34	부 립 중 학 교	부림동 1586-1	181	55	381-0228	이난영	
35	부 안 중 학 교	부림동 1588-5	247	75	387-4031	김원대	
36	평촌정보고등학교	부림동 1587-2	792	239	387-0274	김홍환	
37	별 말 초 등 학 교	평촌동 75-8	184	55	424-4161	홍순용	
38	동 안 초 등 학 교	평안동 898-1	202	61	381-0350	박종석	
39	동 안 고 등 학 교	평안동 898-3	904	273	387-6104	박주상	
40	백 영 고 등 학 교	귀인동 932	567	150	386-0510	유화웅	
41	민 백 초 등 학 교	귀인동 933-1	367	110	424-6106	학교장	
42	호 원 초 등 학 교	호계2동 338	1,880	569	070-7114-1505	학교장	
43	호 계 초 등 학 교	호계2동 923-17	198	60	452-7613	학교장	
44	호 성 초 등 학 교	호계3동 820	165	45	453-8437	학교장	
45	범 계 초 등 학 교	범계동 1052-1	198	60	383-7234	한민희	
46	신 기 초 등 학 교	신촌동 1056	200	50	381-0260	학교장	
47	신 기 중 학 교	신촌동 1075-1	200	50	459-4027	권남주	
48	안양남초등학교	갈산동 1215	248	75	458-7814	학교장	
49	대 안 중 학 교	갈산동 1228	330	100	451-1982	이정순	
50	평촌공업고등학교	갈산동 1105	135	41	390-4885	도재현	

【 교 회 】

일련 번호	교 회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	수용가능 인원(명)	연 락 처	시설관리 담당 자	비고
계	36개소		24,506	5,783			
만안계	16개소		13,701	2,542			
1	안 양 제 일 교 회	안양1동 622-168	1,039	315	449-1195	홍성옥	
2	동 산 교 회	안양2동 688-38	330	100	466-7485	김영만	
3	신안양감리교회	안양2동 42-16	330	100	473-9963	박계화	
4	안 양 성 결 교 회	안양3동 695-73	330	100	466-0623 466-0624	강대일	
5	안 양 성 도 교 회	안양3동 903-7	531	160	443-2743	최만수	
6	신 일 교 회	안양4동 714-4	1,700	200	442-7171	윤광중	
7	중 양 교 회	안양4동 676-117	1,650	200	449-6676	중앙교회	
8	은혜와진리교회	안양5동 458-5	76	23	443-3731	조용목	
9	은혜와진리교회	안양6동 474-5	1,636	494	443-3731	조용목	
10	강 남 교 회	안양7동 144-8	660	200	444-8895 011-9075-1065	김연선	
11	명 학 성 당	안양8동 551-1	2,069	100	449-1117	정진성	
12	양 지 교 회	안양9동 996-2	330	30	446-1295 011-208-6333	박병열	
13	석 수 교 회	석수2동 270-2	166	50	471-8110 471-4263	김찬곤	
14	팔 복 교 회	석수2동 302-16	973	290	471-8266	오윤모	
15	충 훈 부 교 회	석수3동 767-6	330	100	474-9191	기정부	
16	북 부 교 회	박달1동 42-1	1,551	80	449-1401	한상용	

일련 번호	교 회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m²)	수용가능 인 원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관리 담당 자	비고
동안계	20개소		10,805	3,241			
17	영 암 교 회	비산1동 498-16	759	230	443-0675	임태진	
18	늘 사 랑 교 회	비산2동 414-9	330	100	385-7922 011-478-3366	권성태	
19	안 양 평 안 교 회	비산2동 422-7	1,983	600	385-0691	정규천	
20	청 암 교 회	비산3동 324-2	141	40	388-5522	황수석	
21	비 산 동 교 회	비산3동 1018-6	925	280	388-0209	이현실	
22	안 양 소 망 교 회	관양2동 1491-25	135	40	423-3743	이동수	
23	인 덕 원 성 당	관양2동 1480-2	500	150	422-2791	김석훈	
24	평 촌 교 회	평촌동 134-4	495	150	421-0205	림형석	
25	새 중 앙 교 회	평촌동 158-3	1,320	400	425-3000	박중식	
26	목 양 교 회	평안동 898-4	330	100	382-7177	장래인	
27	평 강 교 회	귀인동 904	660	190	384-1659	유영길	
28	평 촌 평 성 교 회	귀인동 933-3	396	110	423-4253	고성제	
29	양 의 문 교 회	호계1동 985-12	200	60	427-9191	김갑용	
30	호 계 동 성 당	호계1동 953	330	100	456-0611	최덕기	
31	호 계 소 망 교 회	호계1동1000-20	330	100	456-4013	고용태	
32	새 포 도 원 교 회	호계3동840-5	264	80	451-3835	박문천	
33	대 영 교 회	호계3동968-14	812	240	451-1697	한성도	
34	세 계 복 음 교 회	범계동 1054-1	70	21	381-2782	정진모	
35	평 촌 감 리 교 회	신촌동 1056-4	495	150	383-2556	홍성국	
36	안 양 일 심 교 회	갈산동 1094-1	330	100	477-7701	신현대	

【 경로당 】

일련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	수용가능 인원(명)	연 락 처	시설관리 담당자	비고
계	69개소		12,241	3,436			
만안계	33개소		5,583	1,493			
1	진 흥 (아) 경 로 당	안양1동 97-3	264	80	447-4800	반용길	
2	삼성레미안(아)경로당	안양1동 90-1	330	100	346-5659	민병휴	
3	주공뜨란채(아)경로당	안양1동1380	87	26	466-8066	이기봉	
4	대 교 경 로 당	안양2동 823-7	155	50	468-4111	대교경로당	
5	양 지 경 로 당	안양3동 1195-33	200	60	448-7162	김기석	
6	대 능 경 로 당	안양3동 897-24	100	30	448-3073	이순례	
7	중 앙 경 로 당	안양4동 711-77	495	100	442-7768	박경립	
8	찬 우 물 경 로 당	안양5동 618-210	107	32	469-3579	홍정선	
9	안 양 5 동 경로당	안양5동	69	21	448-2555	왕우현	
10	노 송 경 로 당	안양6동 521-1	156	47	448-0466	지영철	
11	새 마 을 경 로 당	안양6동 396-1	176	53	466-9701	장시자	
12	소 곡 경 로 당	안양6동 588-48	101	30	447-7803	조태춘	
13	늘 푸 른 경 로 당	안양6동 523	164	49	443-2021	최정수	
14	안 양 7 동 경로당	안양7동 195-45	154	46	442-7439	성해용	
15	애 향 경 로 당	안양7동 146-9	190	56	466-1518	임복빈	
16	덕 천 경 로 당	안양7동 153-9	166	40	448-1615	유근우	
17	명 학 경 로 당	안양8동 1279-4	242	30	449-6180	김옥순	
18	봉 수 경 로 당	안양8동 402-34	162	30	447-6981	박희문	
19	병 목 안 경 로 당	안양9동1004-1	198	60	444-4655	문기원	
20	새마을복지경로당	안양9동	198	60	466-0085	정홍섭	
21	삼 성 산 경 로 당	석수1동 211-5	134	41	471-5211	오제현	
22	삼 막 경 로 당	석수1동 132-2	66	20	472-6562	조종수	
23	주공그린빌경로당	석수1동 805	96	57	472-4113	박병훈	
24	복지회관경로당	석수2동 266-19	403	40	472-8652	최준만	
25	석수 2 동 경로당	석수2동 295-1	165	50	471-9756	이영순	
26	충훈중앙경로당	석수3동 765	72	22	472-5405	이순복	
27	충 훈 경 로 당	석수3동 613-2	132	40	472-0133	문창희	
28	협 신 경 로 당	박달1동 5-9	194	50	449-4550	이근태	
29	박 달 경 로 당	박달1동 48-3	161	40	447-0608	류희형	
30	어 수 정 경 로 당	박달1동 70-18	136	40	466-4442	김계영	
31	호 현 경 로 당	박달2동 779-5	85	25	441-3354	김재봉	
32	금 호 경 로 당	박달2동 149-1	84	25	449-7616	이재술	
33	한 라 경 로 당	박달2동 114	141	43	464-0463	권 영	

일련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	수용가능 인 원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관리 담당 자	비고
동안계	36개소		5,786	1,673			
소 계	20개소		3,349	985			
34	비산삼성래미안@경로당	비산1동 425	396	110	447-4454	최석문	
35	그 린 빌 경 로 당	비산1동 1155	221	70	346-8857	김이식	
36	중 앙 경 로 당	비산2동 413-12	90	30	388-2501	김현순	
37	미 룡 @ 경 로 당	비산2동 406	132	40	386-0222	김창환	
38	동 비 산 경 로 당	비산3동 1051	165	50	388-9996	조재룡	
39	다 목 적 복 지 회 관	비산3동 305-43	186	50	389-4620	윤종형	
40	관 약 경 로 당	부흥동 1102	72	21	382-6041	이창한	
41	청 구 경 로 당	부흥동 1104	56	16	382-5417	지춘자	
42	희 성 경 로 당	달안동 1101-2	211	63	384-0488	이춘혁	
43	수 촌 경 로 당	관양1동 1393-4	66	20	388-6857	정기화	
44	동 안 경 로 당	관양1동 1447-10	99	30	384-7842	이경재	
45	부 립 제 2 경 로 당	관양2동 1471	166	50	421-1494	이규근	
46	인 덕 원 경 로 당	관양2동 1509-1	100	30	421-7186	김억복	
47	다 목 적 복 지 회 관	관양2동 1496-1	530	150	424-6742	이종환	
48	부 영 @ 경 로 당	부림동 1588	135	40	383-6760	하현석	
49	세 경 @ 경 로 당	부림동 1589	132	40	382-0085	이호봉	
50	민 백 경 로 당	평촌동 137-11	85	25	424-9883	이용수	
51	평 촌 별 말 경 로 당	평촌동 68-5	165	50	421-4285	박필원	
52	현대4차 @경로당	평안동 899-2	144	40	381-0566	김희직	
53	부 영 @ 경 로 당	평안동 896-6	198	60	382-4355	이용달	

일련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m ²)	수용가능 인원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관리 담당 자	비고
소 계	16개소		2,437	688			
54	귀인마을 경로당	귀인동 914	132	40	383-3300	이종호	
55	주 공 경 로 당	호계1동 976	122	37	454-6388	최정희	
56	인 호 경 로 당	호계1동 957-41	70	21	457-5815	이순덕	
57	호 계 경 로 당	호계2동 917-10	165	50	452-9557	이영범	
58	신 기 경 로 당	호계2동 935-19	106	30	456-2964	안필선	
59	구 군 포 경 로 당	호계3동 970-12	165	50	457-6369	한성수	
60	호 성 경 로 당	호계3동 840-6	165	50	455-7340	최동홍	
61	목련1단지경로당	범계동 1053-2	99	30	342-5252	안옥생	
62	목련2단지경로당	범계동 1052	105	32	382-5172	김재언	
63	목련3단지경로당	범계동 1052-3	83	25	383-3744	김봉주	
64	신 촌 경 로 당	신촌동 1059-5	99	30	388-4573	조대봉	
65	갈 산 경 로 당	갈산동 1093	132	40	429-8277	김화영	
66	샛 별 경 로 당	달안동 1109-4	276	83	382-4683	김옥윤	
67	내 비 산 경 로 당	비산3동1016	132	40	386-5318	차삼택	
68	뉴타운4차경로당	비산3동 245	245	50	386-7520	우귀근	
69	뉴타운5차경로당	비산3동 341	341	80	387-6342	박용시	

【 관공서 】

일련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가능 면적(m ²)	수용가능 인원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관리 담당 자	비고
소계	3개소		872	670			
1	비산1동주민센터	비산1동 475-1	562	170	389-4600	동 장	
2	신촌동주민센터	신촌동 1056-3	80	430	389-4750	동 장	
3	관양1동주민센터	관양1동1393-4	230	70	389-4650	동 장	

□ 재난관리시스템 담당별 행동절차(SOP)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상황 총괄	예비특보	기상청 방재기상 정보시스템 확인	1. 특보현황, 레이더 및 위성영상 등 확인 2.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연결	
		당일 비상근무자 SMS로 소집 통보	1. 총 5일차 비상근무자 중 해당 근무자에게 SMS를 통해 소집통보 2. SMS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일차 근무자에게 근무 통보	
		각 실과소별로 소관시설 점검 지시	1. 특보발생시 중앙에서 대응지시가 내려오면,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실과소에 전달	
		인명피해 담당자 사전대피 홍보방송 지시	1. 인명피해 담당자에게 사전 홍보 방송 지시 2.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시	
		예-경보 시스템 점검	1. 관측장비(수위,우량) 점검 및 음연동 장비 점검 실시 2. 재해문자전광판 작동상태 점검 3. CCTV 작동상태 점검 4. 자동우량경보시설 작동상태 점검 5. 이상여부 및 기타 사항은 특이사항 란에 입력	
	주의보/경보	기상청 방재기상 정보 시스템 확인	1. 특보현황, 레이더 및 위성영상, 태풍 진로 등 확인 2.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연결	
		강우량, 하천 수위 확인	1. 강우량측정 시스템 활용하여 강우량 확인 2. 하천수위계 시스템 활용하여 수위확인 3. "강우량, 수위 연결" 버튼을 이용하여 시군구관측정보 연결	
		상황판단회의 결과 통보	1. 상황판단회의의 결과를 상황전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	
		비상근무소집 강화	1. 주의보-경보 단계 비상근무자 중 해당 근무자에게 SMS를 통해 소집통보	
		지역대책본부회의 결과 통보	1. 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	
		민-관 현장예찰 실시	1. 풍수해 감시인 가동 통보 2. 지역자율방재단 가동 통보 3. SMS/유선을 이용하여 통보	
		현장 CP 설치 지시	1. 사전에 선정되어 있던 지구에 현장 CP 설치 지시	
		현장예찰 강화 지시	1. 해당 실과소에 소관시설 점검 강화 지시 2. 동 담당자에게 위험시설, 지역 점검 강화 지시 3. 유관기관에 소관시설 점검 강화 지시	

			4. 상황전파시스템/Safe On Messenger를 이용하여 강화 지시 전파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상황 총괄	특보해제	민·관 현장예찰 활동 강화	1. 풍수해 감시인 지속 가동 통보 2. 지역자율방재단 지속 가동 통보 3. SMS/유선을 이용하여 현장 점검 지속 통보	
		피해상황 파악 지시	1. 해당 실과소에 피해상황 파악 입력 요구 2. 유관기관에 피해상황 및 파악 입력 요구 3. 동에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조치 4.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파악 요구 전파	
		피해상황 파악	1. 아래 피해상황을 확인 2. 피해가 발생하여 이후 행동요령을 계속 수행해야 될 경우는 계속 수행 3.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단순피해 상황일 경우는 상황종료 ※ 상황종료를 선택하면 이후 행동요령 모두 완료됨.	
		비상근무소집 강화	1. 총 3일차 비상근무자 중 해당 근무자에게 SMS를 통해 소집통보 2. SMS를 이용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 통보 3. 유관기관 비상근무자 SMS를 이용하여 소집	
		자연재해지원 센터 가동	1. 대규모 피해지역 선정 2. 대규모 현장 자연재해지원센터 설치 3. 피해신고가 들어온 피해지역에 임시적으로 설치	
		인관군 긴급동원	1. 협약체결 군부대 지원요청 2. 자원봉사단체 지원요청 3. 재해쓰레기처리 민간단체(협회)지원 요청 4. 한국열관리협회 등 전문협회 지원 요청	
		응급조치 지시	1. #4949 화면, 피해신고, 접수 등을 확인 2. 상황전파시스템으로 유관기관, 실과소, 동에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통보)	
		라이프라인 긴급 복구 추진 지시	1. 전기공급 복구를 위하여 전력공사에 긴급복구 요청 2. 상수도공급 복구를 위하여 상수도 관련부서에 긴급복구 요청 3. 가스공급 복구를 위하여 삼천리도시가스 지점에 긴급복구 요청 4. 통신시설 복구를 위하여 KT 지점에 긴급복구 요청	
		응급조치 및 구호 상황 파악	1. 시설물 응급조치 진도파악을 "상황입력" 메뉴에 입력지시 2. 응급 구호활동 상황파악을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입력지시 3.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실과소에서 진도/상황 파악 입력토록 지시	
		부족장비 및 자재·인력 파악	1. 해당 실과소에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시 2. 유관기관에 파악하여 보고토록 요청 3. 읍면동에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시 4. 상황전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족장비 및 자재, 인력 파악하여 "상황입력" 메뉴에 입력토록지시 ※ 유관기관에 FAX, 전화 등으로 보고	
		응급조치 정비 및 자재추가 지원	1.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지원 2.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지원 3.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지원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산 사 태	예비특보	산사태 위험지구 현장 점검	1. 산사태 위험지구 목록 확인 2. 산림과 직원 및 읍면동 별로 점검자를 배정	
		산사태 위험지구 결과 확인	1. 산사태 취약지의 산사태 위험지 판정표 작성 여부 확인 2. 점검결과 사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서 작성하여 보고 3. 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 후 보고	
		장비 등 보유현황 점검	1.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는 읍면동의 수방자재보유 현황 점검 2. 자체 및 건설과 수방자재 비축량 확인 3. 자체 보유장비 현황 점검 4. 유관기관(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장비 현황 파악	
		유관기관(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비상연락망 점검	1. 유관기관(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비상연락망 점검	
	주의보/경보	현장 예찰 지시	1. 예찰일정, 지침물, 주요예찰 대상지 등으로 예찰 계획서 작성 2. 인명피해예상지구, P-EP 지구를 우선적으로 예찰 3. 현장 예찰결과를 입력	
		유관기관 지원 협조 요청	1. 유관기관 지원협조요청	
		현장 예찰 결과 및 피해상황 확인	1. 예찰 상황보고(전화) 및 대피준비 유도 확인 2. 자원이나 동원 가능한 장비의 현재위치를 파악 3. 피해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상황에 피해상황보고(피해면적, 인명피해여부, 가옥, 농경지 등) 및 입력 확인 4. 피해발생지 소유자, 관리청 연락망 확보 확인 5. 가옥, 축사 피해자의 신원파악 확인	
		2차 피해 예방 조치 여부	1. 응급복구를 마친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작업으로 유목, 유석제거, 배수로 설치, 비닐 덮기 등을 실시함 2. 현장안전조치(안전띠, 경고판), 가스/전기 안전조치	
	특보해제	피해현장 정보 확인 및 조사	1. 피해현장의 상세 상황을 조사 (사진촬영포함) 2. 피해상황보고 3. 발생지 소유자, 관리청 연락망 확보 4. 가옥, 축사 피해자 신원파악 5. 유관기관 지원 협조요청	
		피해현황 입력 확인	1. 누락 또는 추가된 피해현황을 입력함	
		2차 피해 예방조치 필요여부 확인	1. 응급복구를 마친 후 2차 피해 예방작업실시 2. 유목, 유석제거, 배수로 설치, 비닐 덮기 등을 실시 함 3. 피해현장 경고판/ 안전띠 설치, 가스/전기 안전조치 4. 상세피해 내역, 동원내역, 조치사항 등을 입력 5. 관할 내의 국유림이나 군부대내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책임 기관에 피해 현황을 요청	
		최종 산사태 피해 현황 확인	1. 산사태관련 피해내용을 입력/보고함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방역	예비특보	민간방역업체 지원여부 파악	1. 민간방역업체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전화로 파악 2. 지원가능 업체와 장비, 인력 지원가능 수량을 파악 입력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방역약품비축현황 및 방역장비 점검	1. 방역약품의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사용가능수량을 입력 2.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사용가능 장비와 이력을 입력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소요예산 장비· 인력·약품 부족분 확보	1. 필요시에는 장비, 인력, 약품 등을 시도 담당부서에 부족분을 요청 2. 해당사항에 지원요청 수량을 입력 3. 상황전파를 이용하여 요청 4.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특보해제	피해지역 확인 및 방역여부 결정	1. 피해지역을 확인하여 기동반 실사 여부를 체크 2. 기동반 실사 시 주 담당자, 부서, 직급, 실사인원 등을 기입 3.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방역실시지역에 방역기동반을 기동	1. 기동반실사 후 기동반 출동 여부를 체크 2. 출동반,출동인원,방역실시개소,방역약품,방역장비 등의 수량을 기입 3.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장비·인력·약품 등 부족분을 도 담당부서에 요청	1. 부족 시에는 장비, 인력, 약품 등을 도 담당부서에 요청 2. 해당사항에 지원요청 수량을 입력 3. 상황전파를 이용하여 요청 4.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지역에 장비, 인력,약품 등을 추가 지원	1. 피해지역에 추가지원여부를 체크 2. 지원인원,방역실시개소,방역약품,방역장비등의 수량을 기입 3.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방송 및 홍보	1. 피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방송 및 홍보 2. 홍보방법에 따른 홍보 횟수를 기입 3.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	1. 피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을 함 2. 예방접종 인원을 기입 3.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동 자율방역단 활동을 지원	1. 동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원 2. 약품지원 수량을 기입 3.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피해세대별 살균제를 배부	1. 피해세대별 살균제를 지원 2. 살균제 지원 수량을 기입 3.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시 군 도 · 지 방 도	예비특보	관할 재해취약시설물 점검 지시	1. 동 관할 재해취약시설물(도로,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점검을 SMS나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지시 2. 지시한 내용을 재해취약시설물 점검 리스트에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관할 재해취약시설물 점검 결과 확인	1. 동 관할 재해취약시설물의 점검결과를 확인 2. 점검결과를 활동관리에서 입력한 내용이 표시 됨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수방자재 보유현황 파악 및 부족분 요청(건설방재과)	1. 수방자재 및 수방도구의 보유현황 및 부족분을 파악 2. 부족분 발생시 건설방재과에 보충을 SMS나 유선을 통해서 요청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 및 소유자 파악	1.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 및 소유자를 확인 2. 확인결과에 따라 확인여부를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유관기관(건설중기업체)의 가용자원현황 및 비상연락망 확인	1. 건설중기업체의 가용자원현황 및 비상연락망을 확인 2. 확인결과에 따라 확인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주의보/경보	구 건설교통과에 동 단위로 관내취약 지역 예찰 지시	1. 재난관리담당자가 관할 재해취약지역의 도로,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예찰을 위한 공문 및 SMS를 작성 2. 재난관리담당자가 동 담당자에게 공문 발송 및 SMS를 통해 점검지시	
		예찰결과 입력 및 확인	1. 재난관리담당자는 예찰 점검 담당자로부터 예찰 결과를 확인 2. 예찰 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피해접수 후 피해현장 파악을 통해 지시	1. 재난관리담당자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해 접수 상황을 파악 2. 재난관리담당자가 동 담당자에게 SMS를 통해 피해현장 파악을 지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인력 요청	1. 재난관리담당자가 동원인력의 필요 여부를 파악 2. 재난관리담당자는 동원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력관리 담당자에게 SMS를 통해 인력 자원요청	
		응급복구장비 피해현장에 투입	1. 재난관리담당자가 동원 가능한 장비와 가동 인력을 파악 2. 재난관리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장비와 가동 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지시	
		라이프라인 피해통보 및 긴급복구 요청	1. 라이프라인 피해현황을 확인 2. 라이프라인 피해 시 관련업체(삼천리도시가스, 한전, 전기안전공사, KT 등)에 피해사실을 SMS 및 상황전파시스템으로 통보	
		응급조치 현황파악	1. 응급조치 진행상황 및 응급복구인력, 응급복구장비, 수방자재 투입현황을 입력 2. 응급조치 현황이 입력된 시군도의 상황보고서를 출력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시 군 도 · 지 방 도	특보해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현장 파악을 동에 지시	1. 정상운행을 위한 복구를 위해 담당자에게 피해현장파악을 지시 2. 담당자 현황에 지시여부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도로시설물 재해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지시	1. 도로시설물 재해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 지시 2. 담당자현황에 지시여부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복구를 위한 동원인력 요청	1. 피해복구를 위한 동원인력을 인력관리 담당자에게 지원요청 2. 담당자현황에 요청 여부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인력과 장비를 피해현장에 투입	1. 피해현장복구를 위해 지원받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 2. 응급복구장비 현황에 투입된 장비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라이프라인 피해 통보 및 복구 요청	1. 라이프라인 피해시 라이프라인 업체에 복구 요청 2. 라이프라인 업체현황에 요청한 업체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쓰레기 발생시 쓰레기 처리 요청	1. 재해현장에 쓰레기 발생시 쓰레기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 2. 담당자리스트에 요청한 담당자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읍면동에 추가 현장 파악 지시	1. 최종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읍면동에 현장파악 지시 2. 담당자리스트에 지시여부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최종 도로피해현 황 입력 및 확인	1. 최종 도로피해 현황을 입력하고 확인 2.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응급조치 현황파악	1. 응급조치 진행상황 및 응급복구인력, 응급복구장비, 수방자재 투입현황을 입력 2. 응급조치 현황이 입력된 시군도의 상황보고서를 출력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상 수 도	예비특보	현장점검 관리책임자 상황 전파	1. 현장점검 관리책임자에게 상수도시설 점검을 지시 2. 현장점검 관리책임자가 상황전파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 시·구 직원일 경우) 상황전파 시스템으로 상황전파, 그렇지 않으면 (예 : 통장) SMS로 상황을 전파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4.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 상태가 완료로 표시됨	
		수도시설 현장 점검	1. 상수도시설 담당자가 보고한 점검결과 이상유무 및 이상 발생시 상황을 등록 2. 이상 발생시 실시한 조치사항 내역을 입력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유관기관, 민간 단체 현황 확인	1. 상수도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현황 및 비상연락망을 확인 2.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목록에 없을 경우 자원정보 > 인력관리 메뉴에서 항목을 추가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응급복구 장비 가용자원 현황확인	1. 응급복구장비 목록 및 가용현황, 소유자, 소재지 등을 확인 2. 응급복구장비 현황을 수정하거나 신규 항목이 있을 경우 자원정보 > 물자관리 > 응급복구장비 메뉴에서 입력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주의보/경보	유관기관, 민간 단체 비상연락	1.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상연락을 하고 연락한 기관을 체크함 2.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응급복구장비 업체 비상연락	1. 응급복구 장비업체에 비상연락을 하고 해당 업체를 체크함 2.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조사 및 입력, 갱신	1. 상수도시설 피해 현황을 파악 2. 신규등록 시 피해입력 버튼 클릭 3. 목록 클릭시 수정 가능 4.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 상태가 완료로 표시됨	
		비상발전기 가동	1. 단전시 비상발전기를 가동 (변전소를 달리하는 복선화 선로 또는 자가발전기를 가동함) 2.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3.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 상태가 완료로 표시됨	
		응급복구 현황 파악	1. 응급조치 작업내역 및 응급복구인원 / 장비 / 자재 투입현황을 파악 2. 목록 클릭시 수정 가능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4.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 상태가 완료로 표시됨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상 수 도	주의보/경보	비상급수계획 수립	1.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2. 단수현황을 입력 (단수일시, 지역 등) 3. 비상급수계획을 입력 (급수활동유형, 급수원, 급수유형, 급수용량, 급수인구 등)	
		비상급수 공급	1. 비상급수를 공급하고 비상급수 공급 현황을 입력 2. 급수일시 및 지역, 급수활동 및 급수유형, 급수원, 급수용량 및 인구 등의 내용을 신규 입력하거나 비상급수계획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비상급수계획 수립 목록에서 기 등록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음 3. 급수차량유형 및 차량투입대수, 활동내용을 입력	
	특보해제	피해조사 및 입력, 갱신	1. 상수도시설 피해 현황을 파악 2. 신규등록 시 피해입력 버튼 클릭 3. 목록 클릭시 수정 가능 4.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 상태가 완료로 표시됨	
		응급복구 현황 파악	1. 응급조치 작업내역 및 응급복구인원 / 장비 / 자재 투입현황을 파악 2. 목록 클릭시 수정 가능 3. 기다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4.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 상태가 완료로 표시됨	
		비상급수 계획 수립	1.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2. 단수현황을 입력 (단수일시, 지역 등) 3. 비상급수계획을 입력 (급수활동유형, 급수원, 급수유형, 급수용량, 급수인구 등)	
		비상급수 공급	1. 비상급수를 공급하고 비상급수 공급 현황을 입력 2. 급수일시 및 지역, 급수활동 및 급수유형, 급수원, 급수용량 및 인구 등의 내용을 신규 입력하거나 비상급수계획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비상급수계획 수립 목록에서 기 등록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음 3. 급수차량유형 및 차량투입대수, 활동내용을 입력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쓰레기	예비특보	소각장 주변의 옹벽, 제방, 배수로 등 주요시설물 점검 지시	1. 소각장 주변의 옹벽, 제방, 배수로 등의 주요시설물 점검을 지시 2. 지시한 내용을 폐기물 처리장 리스트에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소각장 주변의 옹벽, 제방, 배수로 등 주요시설물 점검결과 확인	1. 소각장 주변의 옹벽, 제방, 배수로 등 주요시설물 점검결과를 확인 2. 점검결과는 활동관리에서 입력한 내용이 표시됨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응급복구장비 보유 현황 및 소유자 파악	1.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 및 소유자를 확인 2. 확인결과에 따라 확인여부를 체크하고 동원가능 수량을 입력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유관기관/민간단체 비상연락망 확인	1. 유관기관/민간단체의 비상연락망을 확인 2. 확인결과에 따라 확인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3.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특보해제	수해현황 파악 및 수해쓰레기 현황 파악을 지시	1. 수해발생시 수해지역에 (침수, 산사태, 유실)피해현황 파악을 지시 2. 수해쓰레기 발생시 종류별 파악을 지시 - 침수, 하천변/농경지, 가축사체 등을 구분하여 파악	
		수해현황 및 수해 쓰레기 발생 현황 입력 및 확인	1. 수해현황을 입력 및 확인 2. 특이사항 란에 기타사항을 기입	
		수해쓰레기 발생량 을 입력 및 확인	1. 수해쓰레기 발생량을 입력 및 확인 2. 발생량 보고절차 - 가옥침수, 하천변/농경지 등 육상쓰레기->청소관련과->시도(청소관련과)->환경부	
		임시적환장 관리	1. 임시적환장 리스트를 확인 2. 임시적환장 관리 유의사항 - 임시적환장 바닥은 침출수 배수가 가능하도록 2%이상의 구배와 주변배수로를 설치하고 고밀도 PE필름을 바닥에 포설 - 임시적환장은 매일 2~3회 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	
		수해쓰레기 처리 전 조치사항	1. 우선순위 선정 ①가옥침수 피해가 큰 지역 ②수해쓰레기 다량발생 예상지역 ③쓰레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④수해쓰레기로 인한 수해복구 지연 지역 2. 자체수거 여부 및 지원요청 판단 - 피해규모가 커 별도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민간단체에 장비/인력 지원 요청(비상연락망 이용)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쓰레기	특보해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1. 쓰레기 수거 및 운반 - 가옥침수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상차가 용이하도록 도로변지역으로 긴급인출 - 수해지역에 집게 차량을 분산 배치하여 덤프트럭에 상차가 용이하도록 조치 - 임시적환장에서 일정부분 물기를 제거하고, 재활용,매립,소각 등 분리하여 조치 - 수도권매립지 반입대상이외의 자치단체는 수해쓰레기 허용 반입 여부에 대하여 매립지 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조치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의 경우 사전에 매립지 운영기관에 임시 차량 등록 조치(스티커 부착 등 행정적인 절차 선이행) - "선처리,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	
		하천변 쓰레기 수거처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숙지	1. 동 쓰레기처리비용 예산배정 - 동 자체 하천변 쓰레기 수거 계획 수립 - 새마을 지도자회, 통장협의회, 부녀자회를 통하여 자원봉사인력 동원 - 지역주민 동원 공공근로사업 실시 - 사·구에서 쓰레기 수거 및 운송차량 지원	
		초목 쓰레기 수거처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숙지	1. 수해지역에 다량의 초목류 쓰레기가 일시에 발생하여 평상시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간이소각 및 재활용을 실시 2. 재활용 가능한 목재는 분리 보관 후 건조하여 톱밥 및 펄프로 사용 ※ 톱밥으로 재활용 할 경우 톱밥제조장비 확보 및 위탁업체 지정 처리 3. 재활용으로 분리 된 경우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 4. 재활용으로 분리 후 남은 초목 쓰레기는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낮 시간대에 간이 소각 후 잔재물 매립 5. 일반생활 쓰레기가 혼합되어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 철저	
		일반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숙지하고 쓰레기 처리량 입력 및 확인	1. 매립지에 임시차량이 수해쓰레기 이외의 다른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 2. 수거된 쓰레기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되 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별도 분리하여 최대한 재활용 3. 재활용으로 분리보관 할 경우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 4. 수해복구시한을 맞추기 위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는 사례 금지	
		수해쓰레기 매립지 반입비용을 입력 확인	1. 수해쓰레기의 매립지 반입처리 - 수해지역 침수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매립지 운영, 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우선 실시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시차량 등록을 실시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조치 후 반입	
		쓰레기 처리시설 피해 및 복구현황 관리	1. 쓰레기처리시설 피해와 복구관련 내용을 입력 2. 기타특이사항에는 쓰레기 관련 보고서에 첨부할 내용을 입력	
		전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고	1. 보고체계 : 지자체-> 시·도 관련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 매립장, 소각장 및 위탁소각 처리, 재활용분리 등 처리실적을 취합 보고	
		수해쓰레기 수거/처리 완료 시	1. 수거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보고는 피해발생시 청소과에서 별도 지시한 시점부터 작성보고	

		최종 집계보고	2. 재해기간의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추가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인명피해	예비특보	대피담당자의 즉시 활동가능 여부 확인	1. 대피담당자의 활동가능여부를 확인 (장기 휴가, 건강 상태 등) 2. 활동가능 불가일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 3. 활동불가 사유나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대피안내요원의 즉시 활동가능 여부 확인	1. 대피안내요원의 활동가능여부를 확인 (장기 휴가, 건강 상태 등) 2. 활동가능 불가일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 3. 활동불가 사유나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대피소의 즉시 활용 가능여부 확인 및 대피로 상태 육안 점검	1. 대피소의 활용가능 여부를 대피소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2. 대피로의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 하도록 대피로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대피에 필요한 자재 충분한지 확인	1. 대피 자재 보관 담당자는 대피자재인 경광봉, 반사조끼, 후레쉬, 무전기 물품들을 확인 2. 수량이 부족한 물품에 대해 보충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재난안전선 필요 지역이 있는지 확인	1.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지담당자,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원, 풍수해 감시인, 통장, 기타 현장 활동 인원에게 재난안전선 필요 여부를 확인 2. SMS를 보내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냄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재난안전선 추가 배포	1. 재난안전선 필요 여부 확인 연락을 받고, 필요 요청을 한 인원에게 재난 안전선을 추가 배포 작업 실시 2. 배포한 결과를 아래의 재난 안전선 배포 현황 필드 중에 추가 Roll에 추가 배포한 개수를 기입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군부대,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 유관 기관에 상황 전파	1. 유관기관 관련 업무담당자는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을 이용 상황전파 2.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황 전파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비상대기 및 인력, 장비 등 활용 가능한 자원 확보 요청	1. 비상연락망 또는 상황전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확인 및 자원 확보 요청 2. 기관별 담당자, 역할, 차량 등 자원 확보 요청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학생안전대책 추진 요청	1.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한 대책 추진을 요청 한다. - 강우상황에 따라 휴교 또는 조기 하교 등 권유 2. 각급 학교 담당자에게 SMS 발송 3. 교육청에 상황전파 시스템을 이용 또는 유선을 사용하여 추진 요청	
		현지순찰 요청	1.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는 판단 지역에 대해 현지 순찰을 요청 2. 순찰 담당자에게 계획이 수립된 P-EP지구, 상습 취약지역,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관내 산간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집중 순찰 지시 3. 현지순찰요청 현황에 대해 기입 (읍면동/상세주소/순찰자명 등) 4. 순찰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여부 및 조치사항 기입 5.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	1. 인명피해 우려지역 담당자에게 순찰 지시 2.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기입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인명피해	예비특보	행락 야영지 순찰	1. 행락 야영지 담당자에게 관내 산간계곡, 유원지 등 집중 순찰 지시 2. 순찰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여부 및 조치사항 기입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피관련 주민 홍보 실시	1.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홍보 담당자에게 홍보 방법을 이용하여 대피관련 주민홍보 실시를 요청 2. 홍보 방법 : 앰프, 가두차량, SMS,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홍보테잎, 민방위경보시설 이용 3.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주의보/경보	대피담당자 사전 현지 투입	1. 대피담당자의 활동가능여부를 확인 (장기 휴가, 건강 상태 등) - 예비특보단계에서 기 확인한 경우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2. 대피담당자의 투입여부를 선택 3. 투입 불가일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 4. 미투입 사유나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대피안내요원 사전 현지 투입	1. 대피안내요원의 활동가능여부를 확인 (장기 휴가, 건강 상태 등) - 예비특보단계에서 기 확인한 경우는 확인 하지 않아도 됨 2. 대피안내요원의 투입여부를 선택 3. 투입 불가일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 4. 미투입 사유나 기타 사항 등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 우려지역 재난안전선 (SAFETY LINE) 설치 및 출입통제	1. 인명피해우려지역에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하도록 지시 (설치자 사전지정) 2. 재난안전선 설치 현황을 기입- 담당자(읍면동, 실과소)에게 “재난대응활동>활동관리” 메뉴에 설치 현황을 기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본인이 아래에 해당 내용을 기입함 3. 필요할 경우 “지역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장소를 추가할 수 있음 4.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 발생지역 재난안전선 (SAFETY LINE) 설치 및 출입통제	1.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해당함 2. 피해발생지역에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하도록 지시 (설치자 사전지정) 3. 재난안전선 설치 현황을 기입 - 담당자(읍면동, 실과소)에게 “재난대응활동>활동관리” 메뉴에 설치 현황을 기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본인이 아래에 해당 내용을 기입함 4. 필요할 경우 “지역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장소를 추가할 수 있음 5.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인 명 피 해	주의보/경보	주인(행락 야영객) 대피명령 발령	1.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대해 기입 2. 필요할 경우 “지역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참고- 대피명령 발령 - 지자체장은 강우로 인한 주민피해 예상시 즉시 대피명령 발령 - 현장 도착시간,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명령 발령 - 도로유실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마을인근 군부대 등과 협조 체계 구축 - 지역별 주민대피조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대피 실시 - 야간에는 산사태나 침수시 시야확보 어려움으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피조건을 강화하여 적용 - 대피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경찰, 소방, 군부대 등에 통보하고 협조요청 : 대상지역, 대피시각, 대피장소, 기관별 임무, 현지 상황, 재해약자, 기타 사전에 파악하여야 할 사항 등을 통보하고 협조요청	
		피해우려지역 주민 (행락, 야영객) 사전대피 실시	1. 피해우려지역에 주민(행락, 야영객) 사전 대피 실시를 지시 후 대피여부를 등록 2. 새로운 피해우려지역이 발생하여 주민대피를 실시한 경우 “지역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추가 ※ 참고- 사전대피실시 - 거동이 불편한 재해약자 등은 최우선 대피 시켜야함 - 상습피해지역(인명피해우려지역) 주민 사전대피 실시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및 외지인(행락, 야영객) 출입통제 - 지역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대피 실시 - 사전 지정된 대피소에 주민대피 유도	
		주민대피 지역 치안요청(경찰)	1. 유관 경찰서에 전화해서 협조요청 2. 저장 버튼 클릭시 완료로 표시됨 ※ 참고 - 주민 대피 지역의 치안유지는 경찰에서 협조 - 경찰은 위험지역 마을에 들어가서 순찰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고 본인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활동하도록 사전 교육(당부)	
		구조 인력 장비 긴급 투입(소방)	1. 유관 소방서에 전화해서 협조요청 2. 저장 버튼 클릭시 완료로 표시됨 ※ 참고 - 구조 인력 장비 긴급 투입 필요시 소방소에 협조요청	
		주민대피 유도 및 군인,차량 등 투입(군부대)	1. 유관 군부대에 전화해서 협조요청 2. 저장 버튼 클릭시 완료로 표시됨 ※ 참고 - 사전에 군부대와의 협조사항을 구축할 것 (병력 및 지원가능 장비 파악) - 군부대 협조요청 예시 - 주민대피 유도, 대피거부자 강제대피, 대피차량 지원, 대피로 파손시 응급복구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인명피해	주의보/경보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관련 인력 장비투입 요청 (민간단체 등)	1.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여 대피에 필요한 차량·인력·장비 등 준비 및 대기 요청	
		학생 등하교 안전 대책 추진 지시 (학교, 교육청)	1.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한 대책 추진 지시 (학교)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확인 - 강우상황에 따라 휴교 또는 조기 하교 등 권유 2. 각급 학교 담당자에게 SMS 발송 3. 교육청에 상황전파 시스템을 이용 또는 유선을 사용하여 추진 요청	
	특보해제	대피인원 및 대피장소 파악	1. 대피인원 및 대피장소 파악 2. 신규등록 시 등록 버튼 클릭 3. 목록 클릭시 수정 가능	
		대피인원 및 대피장소 등록/수정	1. 대피인원 발생정보 등록 - 발생일시, 이재민/일시 대피자 여부, 발생요인, 위치 등 등록 2. 대피장소 등록 - 공동수용일 경우 지정된 대피장소 등록, 개별수용일 경우 친인척, 이웃집 등 선택 3. 대피인원 정보 - 피해종료 후 14일 이후까지 남아있는 이재민의 경우 명단을 등록함.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 직접 입력 4. 입력이나 수정 완료시 저장버튼 클릭	
		대피장소별 대피자 명단 공개	1. 대피장소별 대피자 명단과 정보를 파악 2. 대피장소별 대피자 명단을 공개 (지자체 홈페이지, 대자보등 활용) 3. 대피장소명, 대피자명, 주민번호 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됨 4.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이 완료로 표시됨	
		인명피해 현황파악 조회 및 보고서 출력	1. 인명피해 현황을 파악 2. 신규등록시 입력 버튼 클릭 3. 수정시 목록 선택 후 수정 버튼 클릭 4. 보고서 출력시 목록 선택 후 보고서 버튼 클릭 5. 완료버튼 클릭시 행동요령이 완료로 표시됨	
		인명피해 현황 입력	1. 인명피해 현황을 입력 - 담당자(읍면동, 실과소)에게 “재난대응활동>활동관리” 메뉴에 인명피해 현황을 기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본인이 아래에 해당 내용을 기입함 2. 입력이나 수정 완료시 저장버튼 클릭	
		사망자, 부상자 파악/위치 공개 (병원 등)	1. 병원별 사망자, 부상자의 명단과 정보를 파악 2. 이름, 주민번호, 병원/장소명 항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됨 3. 저장 버튼 클릭시 행동요령 대상이 완료로 표시됨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의료	예비특보	응급의료지정 병원 상황전파	1. 응급의료지정 병원에 유선/SMS를 이용하여 상황전파 2. 지정병원 00개소, 상황전파 00개소 로 결과표시 3. 상황전파를 하지 못한 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입력	
		이송업체 상황전파	1. 이송업체에 유선/SMS를 이용하여 상황전파 2. 지정업체 00개소, 상황전파 00 개소 로 결과 표시 3. 상황전파를 하지 못한 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입력	
	주의보/경보	응급의료지원반 비상연락	1. 비상연락망에 존재하는 응급지원반에 연락하여, 지원가능 여부 및 인원을 체크 2. 대상 00명, 지원가능 00명, 지원불가 00명 표시	
		응급의료지원 준비	1.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체크 2. 의료장비, 소모품,약품, 중증도 분류표 등	
		응급의료지원지역 교통상황 파악	1. 응급의료지원지역의 교통상황을 유선/무선 등을 경찰, 교통시설과 등에 확인 2. 도로유실 및 산사태 발생 등	
		응급의료지정기관 피해상황 파악	1. 응급의료지정기관의 피해 상황을 유선/SMS를 통하여 파악 2. 지정병원 00개소, 이송업체 00개소 피해	
		응급의료 활동 사항 파악	1. 응급의료지원반의 응급의료 활동사항 파악 2. 병원이송 00명, 현지조치 00명	
		의료기관 응급의료 추가협조요청	1.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추가 협조 요청 2. 지정병원 00개소, 추가요청 00개소	
		군부대 응급의료 지원 협조요청	1. 군부대에 응급의료지원 협조 요청 2. 협조요청 내용 : 인력 00명, 장비 00 대등 3. 상황관리자는 시군구 행동요령에 군부대 연락처를 기입하여, 상황시 바로 참조 / 연락 할 수 있게 함(예: 제 12334 부대 연락처 :1234-1234)	
		인접 시군구 지원요청	1. 인접 시군구에 의료 관련 지원 요청 2. 협조요청 내용 :인력 00명, 장비 00대, 약품 00종 등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파악	1. 이재민 발생으로 이재민 수용시설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 2. 지정시설 00개소, 이재민 발생 시설 00개소, 기타시설 00개소 - 기타 시설은 현장 시설을 뜻함	
		이재민 응급 의료지원반 비상연락	1. 이재민 발생에 따라 비상연락망에 존재하는 응급의료지원반에 연락하여, 지원가능 여부 및 인원을 체크 2. 대상 00명, 지원가능 00명, 지원불가 00 표시	
		이재민 응급 의료지원 준비	1. 이재민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체크 2. 의료장비, 소모품, 약품, 중증도 분류표 등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진료소 설치	1. 이재민 수용시설에 응급진료소 설치 현황 파악 2. 진료소 설치 00 개소	
		이재민 응급의료 활동사항 파악	1. 인접 시군구에 의료 관련 지원 요청 2. 병원이송 00명, 현지조치 00명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의료	특보해제	응급의료지원반 비상연락	1. 비상연락망에 존재하는 응급지원반에 연락하여, 지원가능 여부 및 인원을 체크 2. 대상 00명, 지원가능 00명, 지원불가 00명 표시	
		응급의료지원 준비	1.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체크 2. 의료장비, 소모품,약품, 중증도 분류표 등	
		응급의료지원지역 교통사항 파악	1. 응급의료지원지역의 교통사항을 유선/무선 등을 경찰, 교통시설과 등에 확인 2. 도로유실 및 산사태 발생 등	
		응급의료지정기관 피해상황 파악	1. 응급의료지정기관의 피해 상황을 유선/SMS를 통하여 파악 2. 지정병원 00개소, 이송업체 00개소 피해	
		응급의료 활동 사항 파악	1. 응급의료지원반의 응급의료 활동사항 파악 2. 병원이송 00명, 현지조치 00명	
		의료기관 응급의료 추가협조요청	1.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추가 협조 요청 2. 지정병원 00개소, 추가요청 00개소	
		군부대 응급의료 지원 협조요청	1. 군부대에 응급의료지원 협조 요청 2. 협조요청 내용 : 인력 00명, 장비 00 대등 3. 상황관리자는 시군구 행동요령에 군부대 연락처를 기입하여, 상황시 바로 참조 / 연락 할 수 있게 함(예: 제 12334 부대 연락처:1234-1234)	
		인접 시군구 지원요청	1. 인접 시군구에 의료 관련 지원 요청 2. 협조요청 내용 :인력 00명, 장비 00대, 약품 00종 등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파악	1. 이재민 발생으로 이재민 수용시설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 2. 지정시설 00개소, 이재민 발생 시설 00개소, 기타시설 00개소 - 기타 시설은 현장 시설을 뜻함	
		이재민 응급의료 지원반 비상연락	1. 이재민 발생에 따라 비상연락망에 존재하는 응급의료지원반에 연락하여, 지원가능 여부 및 인원을 체크 2. 대상 00명, 지원가능 00명, 지원불가 00 표시	
		이재민 응급의료 지원 준비	1. 이재민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체크 2. 의료장비, 소모품, 약품, 중증도 분류표 등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진료소 설치	1. 이재민 수용시설에 응급진료소 설치 현황 파악 2. 진료소 설치 00 개소	
		이재민 응급의료 활동사항 파악	1. 인접 시군구에 의료 관련 지원 요청 2. 병원이송 00명, 현지조치 00명	
		응급의료지원 활동사항 보고	1. 응급의료지원 활동사항 보고	
		응급의료지원반 비상연락망 정비	1. 응급의료지원반 관련 비상 연락망에 대해 신규/수정/삭제 등 정비 2. 이송업체 관련 비상 연락망에 대해 신규/수정/삭제 등 정비 3. 각 자원정보 > 시설관리 > 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센터정보 이송업체 정보 화면에서 정비	
		의료장비 점검	1. 의료장비에 대해 점검/정비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지방 하천	예비특보	중점관리대상 방재 시설 점검지시	1.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로 등재된 제방이나 수문의 점검을 지시 2. 목록 중 추가해야 할 지방하천 관련 방재시설이 있다면 자원정보 에서추가	
		중점관리대상 방재 시설 점검확인	1.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로 등재된 제방이나 수문의 점검을 지시 2. 점검 중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조치사항을 입력	
		지방하천관련 위험 지역 점검지시	1. 관할 위험지구 중 하천과 관련 있는 침수지역, 유실지역, 재해취약 방재시설의 점검을 지시 2. 지방하천 관련 위험지역의 담당자의 활동 가능여부를 체크하고 투입	
		지방하천관련 위험 지역 점검확인	1. 수방자재 및 수방도구의 보유현황 및 부족분을 파악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점검) 2. (만약 파악 할 수 있다면)시 건설방재과에 보충을 SMS 통해서 요청	
		지방하천 수방자 재 점검확인	1. 수방자재 및 수방도구의 보유현황 및 부족분을 파악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점검) 2. (만약 파악 할 수 있다면)시 건설방재과에 보충을 SMS 통해서 요청	
		지방하천 응급복구 장비 점검확인	1.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 및 소유자 파악의 결과를 확인 2.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비상대기 요청	1. 유관기관의 가동자원현황 및 비상면락망을 점검 2.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유관기관 가동자원 확인	1. 건설중기업체, 자원봉사단체, 민방위/예비군의 가동자원현황을 점검 2.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1. 건설중기업체, 자원봉사단체, 민방위/예비군의 가동자원현황을 점검 2.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주의보/경보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에 현장예찰 지시	1. 하천담당자가 관할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인 제방, 수문 등의 예찰을 위한 공문 및 SMS 문을 작성 2. 하천담당자가 읍면동 담당자에게 공문 발송 및 SMS, 상황전파를 통해 현장예찰을 지시	
		중점관리대상 방재 시설 보고확인	1.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로 등재된 제방이나 수문의 상태와 하천 수위를 예찰하고 확인 2. 하천의 현장예찰 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하천수위를 조치사항에 작성	
		지방하천주변 위험지역에 현장예찰 지시	1. 하천담당자가 관할 지방하천 주변위험 지역인 재해위험지구의 예찰을 위한 공문 및 SMS 문을 작성 2. 하천담당자가 읍면동 담당자에게 공문 발송 및 SMS, 상황전파를 통해 점검을 지시	
		지방하천관련 위험지역 현장예찰 점검확인	1. 지방하천 현장 예찰자가 현장 예찰한 내용과 긴급조치 내용이 보고된 것을 확인 2. 지방하천 관련 위험지역 내 수위 정보를 조치사항에 작성	
		현장예찰 후 유관기관 및 주민에게 상황전파	1. 지방하천 현장 예찰자가 현장 예찰한 내용 중 수위정보와 하천 계획홍수위 정보를 비교하여 위험한 지역에 SMS를 통해 풍수해감시인에게 경보 요청 2. 인명피해 담당자 및 의료지원 담당자에게 상황전파	
		피해현장 파악 조사 지시	1. 하천 담당자가 동원인력의 필요 여부를 파악 2. 하천 담당자는 동원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력관리 담당자에게 SMS를 통해 인력 자원 요청	
		피해현장 조사내용 확인	1. 하천담당자가 하천지역의 피해유무 및 피해내역, 피해사진을 작성하고 점검여부에 체크 2. 하천담당자는 동원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력관리 담당자에게 SMS를 통해 인력 자원요청을 함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지방 하천	주의보/경보	지방하천 응급복구 지시 및 요청	1. 하천담당자가 동원 가능한 장비와 가동 인력을 동원 2. 하천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장비와 가동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지시	
	특보해제	피해현장 조사 지시	1. 하천 담당자가 피해현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 2.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면 재난대응활동 피해접수에 피해정보를 생성하여 지시 3. 지시를 한 후 지시여부에 체크하고 모두 지시하면 저장을 함	
		피해현장 조사내 용 확인	1. 하천담당자가 하천지역의 피해유무 및 피해내역, 피해사진을 작성하고 점검여부에 체크 2. 하천담당자는 동원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력관리 담당자에게 SMS를 통해 인력 지원요청을 함	
		지방하천 응급복 구 지시 및 요청	1. 하천담당자가 동원 가능한 장비와 가동인력을 동원 2. 하천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장비와 가동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지시	
		유관기관 장비, 인력 협조요청	1. 하천담당자가 유관기관의 동원 가능한 장비와 가동인력을 요청 2. 하천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장비와 가동 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요청	
		야간 응급복구시 조명지원요청	1. 하천 담당자가 동원 가능한 조명 장비를 파악 2. 야간 조명 장비 담당자에게 조명 장비 동원을 요청	
		지방하천 응급복 구 진행상황 보 고 확인	1. 하천담당자가 장비투입, 인력투입, 수방자재투입, 작업내역 상세 등을 작성 2. 하천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인원 및 장비와 자재를 확인	
		최종 하천피해현 황 입력 및 확인	1. 최종 하천피해 현황을 입력하고 확인 2.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최종 종합보고	1. 하천담당자가 응급복구 완료보고에서 장비투입, 인력투입, 수방자재투입, 작업내역 상세 등을 작성 2. 하천에 관련된 피해상황을 보고 할 수 있게 나타내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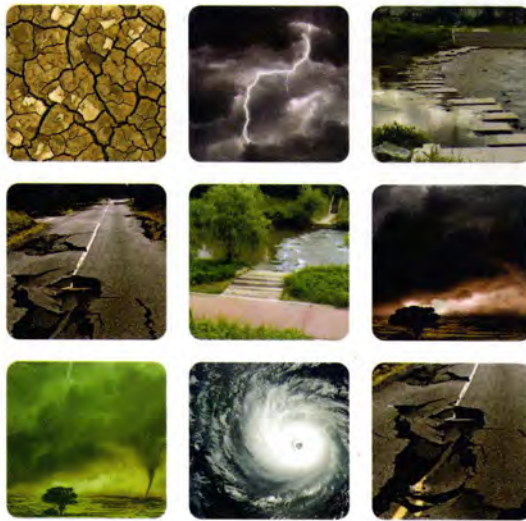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소하천	예비특보	중점관리대상 소하천 점검지시	1. 중점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소하천 점검을 지시 2. 목록 중 추가해야 할 중점관리대상 소하천이 있다면 자원정보에서 추가 3. 관리공무원 및 관리주인의 활동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가능한 사람에게 점검여부를 지시 4. 관리공무원 및 관리주인 모두 불가능하다면 대리인을 직접 입력하여 지시	
		중점관리대상 소하천 점검 확인	1. 중점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소하천의 제방이나 수문을 점검하고 확인 2. 점검중 이상이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체크하고 조치사항을 입력	
		소하천 수방자재 확인(건설방재과)	1. 수방자재 및 수방도구의 보유현황 및 부족분을 파악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결정) 2. (만약 파악 할 수 있다면) 시 건설방재과에 보충을 SMS 통해서 요청	
		소하천 응급 복구장비 확인	1.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 및 소유자 파악의 결과를 확인 2.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및 비상 대기 요청	1.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상황전파 및 비상대기 요청 2.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유관기관의 가용자원 확인	1. 건설중기업체, 자원봉사단체, 민방위/예비군, 군부대의 가용자원현황을 점검 2.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여부를 시스템에 체크	
	주의보/경보	중점관리대상 소하천에 현장예찰 지시	1. 하천담당자가 관할 중점관리대상인 소하천의 예찰을 지시 2. 하천담당자가 현장예찰 담당자에게 유선 및 SMS, 상황전파를 통해 현장예찰을 지시 3. 관리공무원 및 관리주인의 활동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가능한 사람에게 예찰을 지시 4. 관리공무원 및 관리주인 모두 불가능하다면 대리인을 직접 입력하여 지시	
		중점관리대상 소하천 현장예찰 보고 확인	1. 중점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소하천 제방이나 수문을 예찰하고 확인 2. 소하천의 현장예찰 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하천수위를 조치사항에 작성	
		피해현장 조사 지시	1. 하천 담당자가 피해현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를 함 2.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면 재난대응활동 피해접수에서 피해정보를 생성시키고 지시함 3. 지시를 한 후 지시여부에 체크하고 모두 지시하면 저장함	
		피해현장 조사내용 확인	1. 하천 담당자가 지시한 피해 하천 지역의 피해내역, 피해사진을 작성 2. 피해현장의 조사 중 추가피해가 파악된다면 재난대응활동의 피해접수로 이동하여 정보를 입력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소하천	주의보/경보	소하천 응급복구 지시 및 요청	1. 하천 담당자가 동원 가능한 장비와 가동 인력을 동원 2. 하천 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장비와 가동 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지시 3. 이미 계약된 응급복구업체에 연락하여 투입하고 투입한 장비에 대하여 투입여부를 체크	
		소하천 응급복구 진행상황 보고 확인	1. 피해소하천에 대한 응급복구 진행상황 보고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출력 2. 하천명을 클릭하여 입력양식에 따라 입력 3. 상황보고서는 보고서의 그림을 클릭하여 출력 4. 응급복구 진행상황을 보고 추가 요청할 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SMS를 통해 요청이나 지시	
	특보해제	피해현장 조사 지시	1. 하천 담당자가 피해현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를 함 2.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면 재난대응활동 피해접수에서 피해정보를 생성시키고 지시함 3. 지시를 한 후 지시여부에 체크하고 모두 지시하면 저장함	
		피해현장 조사내용 확인	1. 하천 담당자가 지시한 피해 하천 지역의 피해내역, 피해사진을 작성 2. 피해현장의 조사 중 추가피해가 파악된다면 재난대응활동의 피해접수로 이동하여 정보를 입력	
		소하천 응급복구 지시 및 요청	1. 하천 담당자가 동원 가능한 장비와 가동 인력을 동원 2. 하천 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장비와 가동 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지시 3. 이미 계약된 응급복구업체에 연락하여 투입하고 투입한 장비에 대하여 투입여부를 체크	
		유관기관 장비·인력 협조요청	1. 하천 담당자가 유관기관의 동원 가능한 장비와 가동 인력을 요청 2. 하천 담당자는 SMS를 통해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장비와 가동 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지원	
		야간응급복구 시 조명지원 요청	1. 하천 담당자가 동원 가능한 조명 장비를 파악 2. 야간 조명 장비 담당자에게 조명 장비 동원 요청	
		소하천 응급복구 현황파악	1. 피해하천에 대한 응급복구 결과를 입력 2. 하천명을 클릭하여 입력양식에 따라 입력 3. 응급복구 진행상황을 보고 추가 요청할 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SMS를 통해 요청이나 지시	
		피해현황 최종 입력 및 확인	1. 최종 하천피해 현황을 입력하고 확인 2. 기타사항을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현황 최종 보고 및 출력	1. 최종종합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에 대하여 수정 2. 하천에 관련된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완료 보고 내용을 나타내어 줌 3. 보고서를 출력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소교량	예비특보	재해위험 소교량 점검 지시	1. 재해위험 소교량 담당자 목록을 확인 2. 목록 확인 결과 변경사항이 있을 시 수정 - 확인항목 : 소교량 위치, 2차 피해 유형, 시설관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주의보/경보	피해현장 조사 지시	1. 소교량 피해신고 접수시, 피해 소교량 담당공무원이 피해현장을 시찰하고 피해상황을 파악 2. 피해현장 시찰이 불가할 경우, 전화로 피해상황을 파악 3. 소교량 침수, 파손, 붕괴, 유실 등으로 인한 소교량 통행불가 시 재난안전선을 설치 4. 응급조치(통행차단, 주민대피 등) 필요성을 파악 5. 다음의 항목 정보를 수집 - 수집항목 : 위치, 피해유형, 피해내역, 피해사진 등 6. 위의 사항을 실시 및 지시 후, 지시여부에 체크	
		피해현장 조사내용 확인	1. 피해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정보(피해구분, 피해내역, 피해사진)를 입력 2. 피해구분은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함 - 피해구분 : 침수, 파손, 붕괴, 유실, 기타	
		피해현황 확인	1. 소교량 피해로 인해 주변지역의 침수가 예상될 때, 피해상황을 전파하고 유관기관(경찰서)에 통행차단 요청, 주민 대피 지원을 요청 - 고립지역 발생-> 통행 차단 - 침수지역 발생-> 주민 대피	
	특보해제	피해현장 파악조사 지시	1. 피해 소교량 담당공무원이 피해현장을 시찰하고 피해상황을 파악 2. 주의보/경보시 설치한 재난안전선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설치 3. 응급복구(소교량 통행장애물 제거, 붕괴우려 소교량 보수) 필요성을 파악 4. 다음의 항목 정보를 수집 - 수집항목 : 위치, 피해유형, 피해내역, 피해사진 등 5. 위의 사항을 실시 및 지시 후, 지시여부에 체크	
		피해현장 조사보고 확인	1. 피해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정보(피해구분, 피해내역, 피해사진)를 입력 2. 피해구분은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 - 피해구분 : 침수, 파손, 붕괴, 유실, 기타	
		응급복구 지시 및 요청	1. 응급복구가 필요할 시, 응급복구를 요청 2. 동원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와 가용 인력을 확인하고 응급복구가 필요한 소교량에 투입	
		응급복구 현황 파악	1. 응급복구를 요청한 소교량의 응급복구 현황을 입력 2. 응급복구 진행상황 입력 후 보고서를 출력	
		피해현황 최종 입력	1. 시스템에 입력된 소교량 피해현황 및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오류 정보 발견시 이를 수정 2. 피해 소교량의 피해규모, 피해율량, 피해액을 취합하여 입력	
		피해현황 최종보 고 및 출력	1. 소교량 피해현황, 응급복구 이력을 최종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를 출력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배 수 펌프장	예비특보	펌프장 비상근무 인력 배치	1. 펌프장 상근인력에게 비상근무를 지시 2. (무인화 및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 시) - 비상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근무를 지시 3. (민간업체가 펌프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 민간업체에게 펌프장 비상근무를 지시 4.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기상관측 정보 확인 및 펌프장 시설물 점검	1. 홍수통제소 및 기상청 홈페이지를 연계, 실시간 하천수위와 만조시간을 확인 - 기상관측 수집정보 : 기상정보, 하천정보, 강수량 정보 2. 펌프장 관리책임자에게 펌프장 주요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시 (펌프장 시설물 설치 현황 참조) ① 토목시설 및 수문- 유수지 내 차랑 및 인력 상황 점검 / 토출구 내 장애물 제거 확인 / 수문의 작동여부 점검 ② 기계설비- 모터 펌프 시운전을 통해 펌프 작동상태 점검 / 스크린설비 내 제진기 작동여부 점검 ③ 전기설비- 전원을 ON/OFF하여 작동여부 점검 / 예비선로 및 예비변압기 상태 유지 ④ 계측제어설비- 컴퓨터 감시제어 설비, UPS 및 계측 기기 작동여부 점검 ⑤ 원격자동제어시스템 - 수동 및 자동 원격운전 상태 유지 / CCTV 및 자동화 기기의 작동여부 점검/ 통신상태 점검 3. 펌프장 시설물 관리운전을 통한 종합적 상황 파악을 지시 4.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펌프장 시설물 점검 결과 확인	1. 펌프장 별 시설물 점검에 대한 결과를 확인 2.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내용을 파악하고 입력 3.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유관기관 및 시 설물 제작업체에 사전대비 요청	1. 유관기관, 시설물 제작업체 비상연락망을 확인 2. 각 유관기관에 FAX로 사전대비를 요청 - 유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잠수협회 등 3. 각 제작업체에 전화로 비상대기를 요청 - 시설물 제작업체 : 모터펌프, 수문, 크레인, 제진기, 계측기기, 전기설비 등 4.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주의보/경보	현장예찰 지시	1. 현장예찰 요원에게 현장예찰을 지시 ① 유수지(집수정)내 수위 및 부유협잡물 확인을 지시 ② 수문설치 지역의 하천수위(해수조위) 확인을 지시 ③ 제내지 내 최저 표고지역의 하수수위 확인을 지시 2.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 시) - 중앙감시반 담당자에게 CCTV를 통한 시설물 확인을 지시 3. (주민영예관리자 지정 시) - 관리자에게 수문개폐 여부 및 펌프시설 가동 여부 확인을 요청 4.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분야	재난단계	행동업무	행동절차	비고
배수 펌프장	주의보/경보	현장에찰 결과 확인	1. 현장예찰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이상여부를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입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펌프장 시설물 가동 지시	1. 펌프장 시설물 가동을 지시 ① 내·외수위를 파악하여 수문 개폐를 지시 ② 인력감지 및 기기감지를 통해 펌프시설 가동을 지시 ③ 부유협잡물 제거를 위해 스크린설비 가동을 지시 2.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 시 - 펌프장 시설물의 자동 가동을 담당자에게 지시 3.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펌프장 시설물 가동상태 확인	1. 펌프장 별 시설물 가동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체크 2.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입 3.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펌프장 시설물 장애발생시 응급조치 작업 지시	1. 펌프장 시설물 가동 중 장애발생 시 펌프장의 담당자에게 응급조치 작업을 지시 ① 펌프장 정전 시- 변전소가 다른 복선화 된 예비선로나 비상발전기 가동을 지시 ② 펌프시설 장애 시- 예비 펌프 가동을 지시 ③ 상용변압기 고장 시- 병렬 운전이 가능한 예비 변압기 가동을 지시 ④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의 장애 시- 자동화 작업을 대신해서 수작업을 통한 단계별 가동을 지시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펌프장 시설물 장애발생시 응급 조치 작업 결과 확인	1. 응급조치 작업 후, 응급조치 한 내용을 기입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펌프장 피해발생시 인근지역 대피 관련 주민 홍보 요청	1. 펌프장 주변 인근지역 주민홍보 담당자에게 대피 관련 주민홍보 실시를 요청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특보해제	피해접수 후 피해현황 파악을 펌프장 담당자에게 지시	1. 피해접수 후 펌프장의 담당자에게 펌프장 시설물 피해현황 파악을 지시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현장 조사 보고 확인	1. 피해현장 담당자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받아 입력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응급복구 활동협조 및 지원 요청	1. 유관기관에 응급복구 협조 및 지원을 요청 - 유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장수협회 등 2. 펌프장 시설물 제작업체에 응급복구 협조 및 지원을 요청 - 제작업체 : 모터펌프, 수문, 크레인, 제진기, 계측기기, 전기설비 등 3. 건설중기업체에 응급복구 협조 및 지원을 요청 - 패이로더, 굴삭기, 덤프트럭 등 4.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응급복구 진행 상황 보고 확인	1. 응급복구 활동사항 및 결과를 보고 받아 기입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쓰레기 발생시 쓰레기 처리 요청	1. 쓰레기 처리 담당자에게 펌프장 및 인근지역 수해현장의 쓰레기 처리를 요청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방역활동 요청	1. 방역담당자에게 펌프장 및 인근지역 수해현장에 방역활동을 요청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펌프장 시설물 피해현황 파악 및 보고	1. 피해현장을 실시한 후, 펌프장 시설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보고 2.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특이사항 란에 기입	
		피해현황 최종 보고 및 출력	1. 최종 종합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에 대하여 수정 2. 배수펌프장에 관련된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완료 내역을 보고할 수 있게 나타냄 3. 보고서를 제출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431-7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Tel 031-389-2558 Fax 031-389-2226

www.anyang.go.kr